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2023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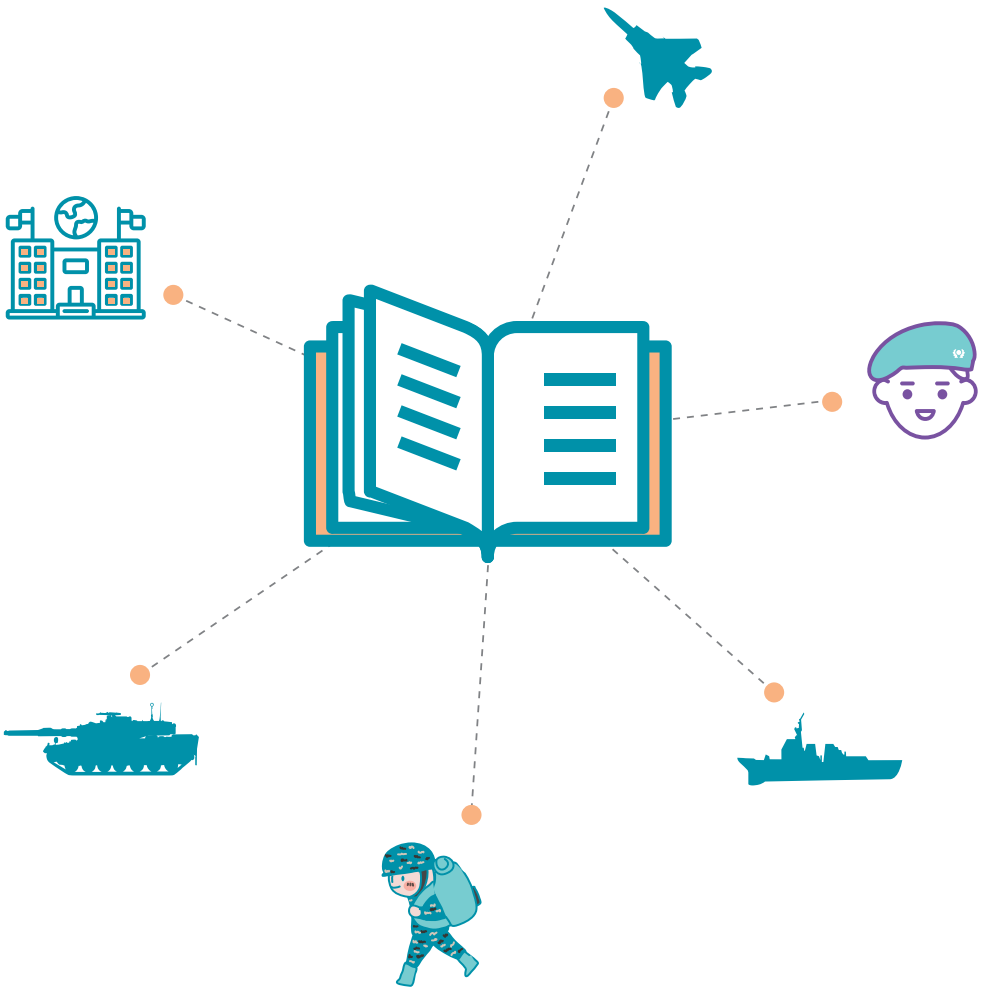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3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목 차 CONTENTS

PART 01 동원관계법령

CHAPTER 01 **통합방위법(법률)(제17686호)** ····· **3**

제1장 총칙 〈신설 2009. 5. 21.〉 ····· 3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 5. 21.〉 ····· 4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 5. 21.〉 ····· 7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 5. 21.〉 ····· 9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 5. 21.〉 ····· 10

제6장 보칙 〈신설 2009. 5. 21.〉 ····· 12

제7장 벌칙 〈신설 2009. 5. 21.〉 ····· 12

CHAPTER 02 **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68호)** ····· **13**

제1장 총칙 〈신설 2009. 11. 17.〉 ····· 13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 11. 17.〉 ····· 14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 11. 17.〉 ····· 20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 11. 17.〉 ····· 21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 11. 17.〉 ····· 25

제6장 보칙 〈신설 2009. 11. 17.〉 ····· 27

CHAPTER 0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제18682호)** ····· **29**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1.〉 ····· 29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 4. 1.〉 ····· 29

제3장 비상대비계획 〈개정 2022. 1. 4.〉 ····· 30

제3장의2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 1. 4.〉 ····· 32

제4장 비상대비 교육 · 훈련 〈개정 2007. 4. 27.〉 ····· 36

제5장 보칙 〈개정 2009. 4. 1.〉 ····· 38
제6장 벌칙 〈개정 2009. 4. 1.〉 ····· 40

CHAPTER 0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53호) ····· 42
제1장 총칙 〈개정 2009. 7. 1.〉 ····· 42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 42
제2장 비상대비조치 ····· 43
제3장 비상대비 교육·훈련 〈개정 2009. 7. 1.〉 ····· 49
제4장 정부연습 ····· 52
제5장 보칙 〈개정 2009. 7. 1.〉 ····· 53

CHAPTER 0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339호) ····· 57

CHAPTER 06 징발법(법률)(제12565호) ····· 61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17.〉 ····· 61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 3. 17.〉 ····· 61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 3. 17.〉 ····· 64
제4장 벌칙 〈개정 2010. 3. 17.〉 ····· 66

CHAPTER 07 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52호) ····· 68

CHAPTER 08 징발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891호) ····· 72

CHAPTER 09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제28704호) ····· 75

목 차 CONTENTS

CHAPTER 10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제759호)** ····· **76**

제1장 총칙 ····· 76
제2장 비상대비훈련 ····· 76
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 ····· 79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 109
제5장 자체연습 ····· 118
제6장 비상대비교육 지침 ····· 119
제7장 행정사항 ····· 121

CHAPTER 11 **국방전시대비연습 훈령(제2356호)** ····· **178**

제1장 총칙 ····· 178
제2장 임무 및 책임 ····· 181
제3장 계획단계 ····· 183
제4장 준비단계 ····· 185
제5장 실시단계 ····· 189
제6장 사후처리단계 ····· 192
제7장 연습 통제·평가조직 운영 ····· 193
제8장 행정사항 ····· 196

CHAPTER 12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2683호)** ····· **208**

제1장 총칙 ····· 208
제2장 국가동원령에 의한 동원 ····· 212
제3장 지역예비군 동원 ····· 224
제4장 동원준비태세 ····· 231
제5장 보칙 ····· 235

CHAPTER 13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603호) ····· 241
제1장 총칙 ····· 241
제2장 자료 구축 및 관리 ····· 243
제3장 체계 구성 및 연동 ····· 244
제4장 체계 운영 및 보안 ····· 245
제5장 교육, 형상관리 및 유지보수 등 ····· 246
제6장 보칙 ····· 247

PART 02 예비군관계법령

CHAPTER 01 예비군법(법률)(제19082호) ····· 255

CHAPTER 02 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18호) ····· 264

CHAPTER 03 예비군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1071호)····· 279

CHAPTER 04 병역법(법률)(제19081호) ····· 291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 291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 5. 29.〉 ····· 296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 5. 29.〉 ····· 297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 6. 9.〉 ····· 300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 6. 9.〉 ····· 308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 6. 9.〉····· 327

목 차 CONTENTS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 6. 9.〉 ····· 330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개정 2009. 6. 9.〉 ····· 332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개정 2009. 6. 9.〉 ····· 338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 6. 9.〉 ····· 339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 6. 9.〉 ····· 340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 6. 9.〉 ····· 344
제13장 전시특례 〈개정 2009. 6. 9.〉 ····· 350
제14장 벌칙 〈개정 2009. 6. 9.〉 ····· 352

CHAPTER **05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84호)** ····· **359**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7.〉 ····· 359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 11. 29.〉 ····· 362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 11. 29.〉 ····· 363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371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387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430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 12. 7.〉 ····· 438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446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 465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 12. 7.〉 ····· 471
제11장 병무행정 ····· 474
제12장 전시특례 ····· 486
제13장 벌칙 〈개정 2009. 12. 7.〉 ····· 488

CHAPTER 06 **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1088호)** ····· **489**
제1장 총칙 ····· 489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 11. 29.〉 ····· 492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 11. 29.〉 ····· 493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494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499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510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 516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 518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 528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 12. 10.〉 ····· 530
제11장 병무행정 ····· 531
제12장 전시특례 ····· 533
제13장 벌칙 〈개정 2009. 12. 10.〉 ····· 534

CHAPTER 0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제1094호)** ····· **535**

CHAPTER 08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제1068호)** ····· **543**
제1장 총칙 ····· 543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 544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 547
제4장 보칙 ····· 548

목 차 CONTENTS

CHAPTER 09 **예비군 조직 ·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2761호)** ····· **550**

제1장 총칙 ····· 550
제2장 지휘체계 ····· 551
제3장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553
제4장 예비군 운용 ····· 568
제5장 예비군 근무운영 ····· 571
제6장 예비군 군수관리 ····· 573
제7장 삭제 ····· 576

CHAPTER 10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765호)** ····· **607**

제1장 총칙 ····· 607
제2장 예비군훈련 목적 및 중점 ····· 608
제3장 예비군훈련 체계 및 임무 ····· 609
제4장 예비군훈련 지침 ····· 609
제5장 예비군훈련 관리 ····· 622
제6장 예비군훈련 보류·연기 ····· 627
제7장 예비군훈련 지원 ····· 634

CHAPTER 11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2587호)** ····· **653**

제1장 총칙 ····· 653
제2장 휴업보상 및 치료비 보상 ····· 654
제3장 치료 ····· 659
제4장 장례, 재해보상금 및 보훈 지원 ····· 661
제5장 전시운영 및 행정사항 ····· 663

CHAPTER 1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2775호)** …… **680**
제1장 총칙 …… 680
제2장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 687
제3장 직장예비군지휘관 …… 693
제4장 삭제 〈개정 2022.02.09., 2023.03.03.〉 …… 696
제5장 예비군지휘관 근무 〈신설 2023.03.03.〉 …… 696
제6장 인사기록 …… 698

PART 03 전시법령 등

1.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전시 행정조직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4. 전시 예산·회계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5. 전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규정
6. 문서고 관리·운영 훈령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제 1 장

동원관계법령

CHAPTER 01 통합방위법(법률)(제17686호)

CHAPTER 02 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68호)

CHAPTER 0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제18682호)

CHAPTER 0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53호)

CHAPTER 0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339호)

CHAPTER 06 징발법(법률)(제12565호)

CHAPTER 07 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52호)

CHAPTER 08 징발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891호)

CHAPTER 09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제28704호)

CHAPTER 10 비상대비훈련예규(국무총리훈령)(제759호)

CHAPTER 11 국방전시대비연습 훈령(제2356호)

CHAPTER 12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2683호)

CHAPTER 13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603호)

01 통합방위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02-748-3459

제1장 총칙 <신설 2009. 5.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의 여단장급(旅團長級) 이상 지휘관 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

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 5. 21.〉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

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09. 5. 21.]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조정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① 작전지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의 취

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 진행 상황 및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보도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 병력 또는 장비의 이동·배치·성능이나 작전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5. 21.〉]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 5. 21.〉

제11조(경계태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발령권자"라 한다)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요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경계태세의 종류, 발령·해제 절차 및 경계태세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협조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5. 21.〉]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① 통합방위사태는 갑종사태,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로 구분하여 선포한다.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20. 12. 22.>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선포 일시, 구역 및 작전지휘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그 때부터 시·도지사가 선포한 통합방위사태는 효력을 상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사태의 구체적인 선포 요건·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 5. 21.〉]

제13조(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 5. 21.〉]

제14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시·도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통합방위사태의 해제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시·도지사는 제4항 전단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려면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의회가 해제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5. 2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5. 21.〉]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 5. 21.〉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관할지역: 시·도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5. 21.〉]

제15조의2

[제15조의2는 제21조로 이동 〈2009. 5. 21.〉]

제16조(통제구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 또는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군·경 합동작전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2. 적의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절차 및 공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 5. 21.〉]

제17조(대피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이하 "대피명령"이라 한다)은 방송·확성기·벽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대피방법과 대피명령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09. 5. 21.〉]

제17조의2

[제17조의2는 제18조로 이동 〈2009. 5. 21.〉]

제18조(검문소의 운용) ①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검문소의 지휘·통신체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5. 21.〉]

제19조(신고)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군부대 또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9. 5. 21.〉]

제20조(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 5. 21.]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 5. 21.〉]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 5. 21.〉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9. 5. 21.>]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7조에서 이동 <2009. 5. 21.>]

제6장 보칙 〈신설 2009. 5. 21.〉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에게 해당자의 명단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또는 직장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19조에서 이동 〈2009. 5. 21.〉]

제7장 벌칙 〈신설 2009. 5. 21.〉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0조에서 이동 〈2009. 5. 21.〉]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㊿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02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타법개정]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02-748-3459

제1장 총칙 <신설 2009. 11. 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11. 17.]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3. 8. 20.>

②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24., 2020. 12. 31., 2021. 3. 23.>

1.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4.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5.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7.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8.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9.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10.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④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⑤ 시·도 협의회의 의장은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준비한다. <개정 2020. 12. 31.>

⑥ 통합방위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지방 통합방위회의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개정 2019. 7. 2.>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09. 11. 17.〉]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전문개정 2009. 11. 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9. 11. 17.〉]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 11. 17.〉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1. 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 11. 17.〉]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09. 11.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 11. 17.〉]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

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 11. 17.〉]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20., 2014. 11. 19., 2015. 1. 6., 2017. 7. 26., 2018. 8. 21., 2020. 10. 7., 2020. 12. 31., 2022. 11. 1.>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1. 1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9. 11. 17.〉]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전문개정 2009. 11. 1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9. 11. 17.〉]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직장예비군의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9. 11. 17.〉]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① 같은 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직장예비군 자원을 통합하여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산업단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단지협의회를 두는 경우에 의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 관련 기관의 관계관, 그 밖에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대표 등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산업단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단위의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예비군 부대의 육성·운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④ 산업단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09. 11. 17.〉]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등) ① 통합방위본부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정기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검열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한다.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제1항의 검열 또는 지도방문의 실시 결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현저한 공(功)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결과 통합방위작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포상을 건의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11. 17.〉]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 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 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②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 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11. 17.〉]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11. 17.〉]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①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하나의 군부대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합동상황실은 하나의 장소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09. 11. 17.〉]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해당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 11. 17.〉]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지역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09. 11. 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11. 17.〉]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면장·동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11. 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4조로 이동 〈2009. 11. 17.〉]

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운영한다.

1. 정보센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2. 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군·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②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군·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전지휘관(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한 차례 이상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를 통하여 취재기자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통합방위작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취재를 원하는 언론기관은 작전지휘관에게 취재기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작전지휘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된 취재기자에게 작전지휘관이 정한 식별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작전지휘관은 제2항에 따른 식별표지를 착용한 취재기자에 대하여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지휘관은 취재 활동이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작전지휘관이 정한 취재허용지역 범위 밖의 지역에서 현장취재를 원하는 취재기자는 작전지휘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전지휘관이 제공하는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취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전지휘관은 선정된 1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자에 대해서만 현장취재를 승인할 수 있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상황 및 그 경과에 따라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구체적인 침투·도발 행위의 내용과 아군(我軍)의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의 내용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09. 11. 17.〉]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에 중앙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구역의 작전지휘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는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 또는 통합방위작전 지휘소 인접지역에 설치하되, 필요할 때에는 취재 활동이 쉬운 지역에 현지 합동보도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09. 11. 17.〉]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 11. 17.〉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 연대장급(해군·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 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 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09. 11. 17.〉]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계태세는 적의 침투·도발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태세 3급, 경계태세 2급, 경계태세 1급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계태세 구분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09. 11. 17.〉]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1. 경찰관할지역: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한다.

③ 지역군사령관, 시·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 11. 17.〉]

제23조의2

[종전 제23조의2는 제32조로 이동 〈2009. 11. 17.〉]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도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 11. 17.〉]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 11. 17.〉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의 단계별, 관할지역별 지휘체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갑종사태가 선포된 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

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2.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 지역군사령관이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3. 병종사태가 선포된 때
   가. 경찰관할지역: 시·도경찰청장이 민방위대 자원 및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나.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관할지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다.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 안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국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작전지휘관은 통합방위작전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가방위요소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된 각각의 통합방위작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시·도경찰청장은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군사령관에게 작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0., 2020. 12. 31.>

⑤ 제4항에 따라 작전지원을 요청받은 지역군사령관은 군 작전지원반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8. 20.>

⑥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자체 경비·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고, 적의 침투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수립·시행하며, 대대(大隊)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방호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13. 8. 20.>

⑦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가방위요소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연락관으로 임명하여 통합방위본부 군사상황실에 상주시키고, 그 밖의 관련 기관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2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11. 17.]

[종전 제25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 11. 17.〉]

제26조(검문절차 등) ①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작전임무수행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거동이 수상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해당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 또는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검문소나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이 흉기나 총기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작전임무수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 소속, 직책 및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3조로 이동 〈2009. 11. 17.〉]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
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시·도지사등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할구역 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제구역이 있는 시·군·자치구·읍·면·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4조로 이동 〈2009. 11. 17.〉]

제27조의2

[종전 제27조의2는 제35조로 이동 〈2009. 11. 17.〉]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 전단 살포
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전문개정 2009. 11. 17.]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6조로 이동 〈2009. 11. 17.〉]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구역을 결정하고,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관·경·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7조로 이동 〈2009. 11. 17.〉]

제30조(안전대피 방법) ① 작전지휘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대피를 위하여 안전대피 통로·시간·방법 및 구역을 지정한 후, 대피구역 경계선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해상의 경우에는 안내선박을 배치하거나 통신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피구역의 주민 및 체류자는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의 지시나 안내선박의 신호 또는 통신 지시에 따라 안전구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요원 및 안내선박의 식별을 위한 표지는 작전지휘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3조에서 이동 〈2009. 11. 17.〉]

제31조(검문소의 설치·운용 등) ① 삭제 <2014. 11. 19.>

②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이하 "시·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공항·항만 등 지상과 해상의 교통 요충지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예비군을 지원받아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20. 12. 31.>

③ 시·도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경찰과 군의 합동검문소를 설치하거나 폐쇄하려면 미리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시·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려면 인접지역의 국가경찰관서 및 군부대와 검문소 간의 유선 및 무선 통신망을 미리 구성하고 차단물(遮斷物)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⑤ 시·도경찰청장등은 합동검문소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군의 각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되, 검문 등의 업무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전문개정 2009. 11. 17.]

[제18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 11. 17.>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0. 7., 2020. 12. 31.>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시·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 안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군·경찰·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경찰은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은 대대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 및 경찰서장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자체방호계획 또는 대대 단위나 경찰서 단위의 방호지원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로 통보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3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폭 30미터 이상, 길이 250미터 이상(길이 방향으로 전·후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200미터 이상을 말한다)의 규모
2. 탁 트인 곳의 경사도는 정방향으로 12도 이내, 좌·우측 방향으로 5도 이내
3. 호수는 수심 80센티미터 이상

[전문개정 2009. 11. 17.]
[제26조에서 이동 <2009. 11. 17.>]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역, 해안 및 섬 등의 지역 중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을 말한다.

②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및 시·도경찰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중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형의 특성, 적의 침투에 취약한 요소 및 지역개발에 따른 통합방위환경의 변화 실태 등을 검토·분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

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31.>

③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및 그 지역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고려하고,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7조에서 이동 〈2009. 11. 17.〉]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7조의2에서 이동 〈2009. 11. 17.〉]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되, 이동식 장애물은 평시에 제작·확보하고 그 설치 방법을 자세히 알도록 하여 유사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전문개정 2009. 11. 17.]

[제28조에서 이동 〈2009. 11. 17.〉]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

비책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1.>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
2.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이 경우 장애물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르며, 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역군사령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전문개정 2009. 11. 17.]
[제28조에서 이동 〈2009. 11. 17.〉]
[시행일: 2023. 5. 2.] 제36조

제6장 보칙 〈신설 2009. 11. 17.〉

제37조(문책요구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직무를 게을리하여 국가안전보장이나 통합방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여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통합방위작전 또는 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로 작전 또는 훈련을 기피하고 통제에 불복하여 훈련 또는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원, 장비 또는 시설 등 전투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보고·지연보고, 즉각 대응 미흡 등 대응조치의 부실로 적을 도주하게 하거나 잠적하게 하는 등 통합방위작전의 지연·변경 또는 실패를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허점이 생기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통합방위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의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의 합동조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방위본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보고받으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 대한 문책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17.]
[제29조에서 이동 〈2009. 11. 17.〉]

부칙 〈제32968호, 2022. 11. 1.〉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방첩부대"로 한다.

제3조 생략

0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2.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 4. 1.>

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2. 29.]

제4조의2 삭제 <2008. 2. 29.>

제4조의3 삭제 <2008. 2. 29.>

제4조의4 삭제 <2008. 2. 29.>

제4조의5 삭제 <2008. 2. 29.>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3장 비상대비계획 <개정 2022. 1. 4.>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1. 8. 4.]

제7조(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

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 8. 4., 2017. 3. 21.>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7. 3. 21.>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집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17. 3. 21.>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시행계획) ①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4.,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11. 8. 4.]

제3장의2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 1. 4.>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2. 1. 4.>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③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2. 1. 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⑤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4. 1.]

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1. 비상대비책임기관
2. 삭제 <2022. 1. 4.>
3. 중점관리대상업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1. 8. 4.]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노후화·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22. 1. 4.>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소관 인력·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7. 3. 21.]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2. 1. 4.>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2. 2. 22.]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

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⑥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2. 2. 22.〉]

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1.]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2. 2. 22.〉]

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4장 비상대비 교육·훈련 〈개정 2007. 4. 27.〉

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2.>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4. 제1호의 기관 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1.]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2. 2. 22.〉]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2. 1.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4. 1.]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②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자의 생산·수리 및 가공 시설
2.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 및 하역장비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 의료시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 1. 4.>

③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전문개정 2009. 4. 1.]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훈련이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멸실·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도로·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1.]

제5장 보칙 <개정 2009. 4. 1.>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9. 4. 1.]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

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훈련기간 및 훈련기간을 전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5조의2(확인·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2. 1. 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2. 1. 4.>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09. 4. 1.]

[제목개정 2022. 1. 4.]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인력자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군사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 5. 29., 2022. 1. 4.>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4. 1.]

제28조 삭제 <2001. 1. 16.>

제6장 벌칙 <개정 2009. 4. 1.>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9. 4. 1.]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09. 4. 1.]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전문개정 2009. 4. 1.]

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1. 제12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삭제 <2017. 3. 21.>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09. 4. 1.]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 1. 4.>
[본조신설 2009. 4. 1.]

부칙 〈제18682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제5항 전단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04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3호, 2022. 7.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7. 1.>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2022. 7. 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 7. 1.]

제2조의3 삭제 <2008. 2. 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3.]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1.]

제5조 삭제 <2007. 7. 26.>

제6조 삭제 <2007. 7. 26.>

제7조 삭제 <2007. 7. 26.>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13.]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8. 6. 26., 2019. 2. 8.>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전문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17. 9. 19.]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물자 또는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1. 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주소, 시설의 명칭·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⑤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물자 또는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12. 8. 23., 2022. 7. 4.>

⑥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 8. 23., 2022. 7. 4.>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7. 1.]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수리·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22. 7. 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22. 7. 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3조(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

자를 생산·수리·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3.]

제15조(정부 비축)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6조(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2. 7. 4.>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21. 1. 5., 2022. 7. 4.>

1. 식품
2. 의복류·가죽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석유·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제독(除毒)·예방 물자

[전문개정 2009. 7. 1.]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9조 삭제 <2009. 7. 1.>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3.]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2. 8. 23.〉]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5로 이동 〈2012. 8. 23.〉]

제3장 비상대비 교육 · 훈련 〈개정 2009. 7. 1.〉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2. 8. 23.〉]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본조신설 2009. 7. 1.]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2. 8. 23.〉]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2. 17., 2022. 7. 4.>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훈련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7. 1.]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4조 삭제 <2007. 7. 26.>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인수) ①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인수를 위하여 인도·인수 장소에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인수) 시·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손괴·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1조(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 7. 4.>

②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1.]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7. 1.]

제4장 정부연습

제34조(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5조(자체연습)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7. 4.>

② 자체연습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6조의2 삭제 <2009. 7. 1.>

제36조의3

[종전 제36조의3은 제44조로 이동 〈2009. 7. 1.〉]

제5장 보칙 〈개정 2009. 7. 1.〉

제37조(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22. 7. 4.]

제38조(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9조(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7. 1.]

제40조(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7. 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22. 7. 4.]

제41조(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 9. 20.>

1.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전문개정 2009. 7. 1.]

제42조 삭제 <2009. 7. 1.>

제43조(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28.>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상대비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연락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14일 이내
2. 훈련의 준비태세 점검, 지휘·통제, 기관별 진행상황 관리, 훈련 성과 분석 및 훈련 결과에 따른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보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훈련 기간과 그 전후 각 90일 이내

[본조신설 2022. 7. 4.]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4.>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관리
2. 비상대비 교육·연습·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목개정 2022. 7. 4.]
[제36조의3에서 이동 <2009. 7. 1.>]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면·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부칙 〈제32753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이 파견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05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2022. 7.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고용·해임·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24.]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3.]

제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가)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 협력을 위한 사전 동의는 별지 제4호서식(나)에 따른다.

③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본조신설 2012. 8. 23.]

제3조(훈련의 면제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은 영 제2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훈련면제대상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훈련 면제·면제해제 대상자 통보서를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제5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6조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등, 시장등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통
2.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훈련에 출석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전문개정 2009. 7. 24.]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전문개정 2009. 7. 24.]

제7조(훈련 참가자의 인도·인수) 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인도·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4.]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훼손 보고서를 시·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2. 7. 5.>

1.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

[전문개정 2009. 7. 24.]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22. 7. 5.>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전문개정 2009. 7. 24.]

제13조(서식)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 8. 23.>

1.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 별지 제2호서식
2.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3.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6.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40조제3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 별지 제24호서식

[전문개정 2009. 7. 24.]

부칙 〈제339호, 2022. 7. 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06 징발법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제1장 총칙 〈개정 2010. 3.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발관"이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징발집행관"이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 3. 17.〉

제3조(징발관) ① 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이 된다.
② 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4조(징발집행관)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전문개정 2010. 3. 17.]

제6조(종물) 징발목적물의 종물(從物)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조(징발 집행절차) ① 징발관이 징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집행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신(電信)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징발목적물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발증이 교부되기 전까지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9조(징발목적물 제출의무) ① 징발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 기일까지 지정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목적물이 부동산이나 권리인 경우에는 지정 기일까지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제11조에 따라 징발관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는 징발관의 허가 없이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原狀)을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1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3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 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5조(징발 해제)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6조(해제 절차) ① 징발관이 제15조에 따라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이 멸실되어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발관은 징발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징발대상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징발물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발관은 지체 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징발물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 3. 17.〉

제19조(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1조(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4(공탁)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2조의6(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4조의3 삭제 <2010. 3. 17.>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전문개정 2010. 3. 17.]

제25조 삭제 <2010. 3. 17.>

제4장 벌칙 <개정 2010. 3. 17.>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전문개정 2010. 3. 17.]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제12565호, 2014. 5.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07 징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5.>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영장을 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징발목적물을 요구하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징발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상태
   형상(形狀), 용도, 지상물[농작물,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무덤 등]의 종류·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를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공시지가 또는 시가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나.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시가
   다. 동산: 시가

②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 ① 징발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려면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징발물에 대한 형상, 공시지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통지한 조사의 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일 15일 이전까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0조(보상금액 결정) 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제12조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31., 2016. 11. 1., 2022. 1. 21.>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제15조(공탁) 법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1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육군·해군·공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재산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5.>

제17조(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재심 청구)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32352호, 2022. 1.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7>부터 <64>까지 생략

08 징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타법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발신청) 「징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징발영장 등) ①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발관이 발행하는 징발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발집행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징발물인수증)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제출받았거나 인계받았을 때에는 징발목적물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징발목적물 상태조사 등) ① 징발집행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미리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조사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징발물 상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징발목적물과 함께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인계받은 징발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발물인수증을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징발물 상태조사서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징발물 상태기록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징발증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징발증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① 영 제6조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발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교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징발증(징발증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징발집행관을 거쳐 징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발증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징발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舊) 징발증을 징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징발보고) 징발집행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징발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징발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징발관에게 징발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징발물의 멸실 또는 훼손 보고) 징발관(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징발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징발물 멸실(훼손)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물 매수 협의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발물의 매수 협의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발물 매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물평면도(징발물이 건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징발물에 입목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② 제1항에 따른 징발물 매수 협의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임야)대장 등본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임야)의 지적도(임야도)

제10조(징발해제통지서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징발해제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징발물 반환불능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전조사통지서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변경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보상금액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보상금액을 사정(査定)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보상기준이 될 공시지가와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 실례의 표준율, 그 밖에 보상금액의 사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를 미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징발보상금청구서 등) 영 제13조에 따른 징발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증권 교부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재심청구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는 서면의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4. 11.>

부칙 〈제891호, 2016. 4. 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9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시행 2018. 4. 6.] [대통령령 제28704호, 2018. 3. 20., 제정]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실) 02-748-6560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전시 특례) ①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전시에는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사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28704호, 2018. 3. 20.〉

이 영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비상대비훈련예규

[시행 2020. 4. 22.] [국무총리훈령 제759호, 2020. 4. 22.,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 044-205-4355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이 훈령은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세부준비와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법적근거

1.「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국가전쟁지도지침」 및「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절 적용범위 및 지침

1. 이 훈령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고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관련요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업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비상대비훈련에 적용한다.
2.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비상대비 훈련계획과 준비는 이 훈령과 그 해의 지침에 따른다.
3.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 기관의 기능별 비상대비훈련은 해당 기관장 책임 아래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상호 병행·통합하거나 별도로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음 각 목의 비상대비훈련을 총괄·조정 및 통제한다.
   가. 정부연습(을지연습)
   나.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다. 자체연습
5. 관계기관간의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한다.

제2장 비상대비훈련

제1절 비상대비훈련의 개념

비상대비훈련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 군사분야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관련요원의 위기관리능력 함양 및 업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연습과 훈련을 말한다.

제2절 훈련구분

비상대비훈련은 정부연습(을지연습),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교·안보 등 국정상황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에 대한 명칭 및 구분은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에 변경된 훈련명칭을 사용한다.

1. 정부연습(을지연습)
   정부연습(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전환절차 숙달, 상황조치연습, 현안과제토의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지칭한다.
2.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자원을 대상으로 실제 동원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훈련 등을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말한다.
3. 자체연습
   자체연습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책임 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제3절 훈련방법

비상대비훈련은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연습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도상연습(상황조치연습)
   가. 도상연습은 비상사태 시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 및 전쟁실상을 반영한 사건메시지에 따라 연습 실시자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상황조치연습을 말한다.
   나. 연습진행은 중앙계획통제단 및 각급 기관의 통제부에서 상황실에 사건메시지(상황)를 부여하면 상황실장은 사건 주무실·국 및 관련기관 등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을 접수한 실시부 및 관련기관은 전시대비계획의 제반 시행절차에 따라 각종 기능과 기관장의 지침을 반영하여 부여된 사건메시지(상황)를 처리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 상황실로부터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받은 관련 실·국·과에서는 연습 실시부와 별도로 과(계)단위로 기 작성된 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하여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요원들이 해당 기관의 전시업무수행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상황조치연습이 되도록 계획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2. 실제훈련

가. 실제훈련은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사용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시행절차를 실제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나. 실제훈련은 훈련에 참가하는 기관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동원능력 평가와 각종 동원제원의 산출 그리고 동원계획 시행 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동원훈련,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피해복구훈련, 전시직제편성 훈련, 접적지역 주민철수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창설훈련 등이 있다.

다. 실제훈련은 실시기관 및 참가업체의 동원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시대비계획의 분야별 실효성을 확인·평가하는 데 효과적이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라. 전시 증·창설부대 동원훈련은 인원·장비·물자를 동원 후 임무수행절차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마. 피해복구훈련을 위해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전시임무수행절차에 따라 긴급복구 능력 향상을 위한 피해복구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실제훈련은 실시기관(읍·면·동장 포함)의 세부행동절차를 숙달하고, 주민들에게는 전시행동요령을 교육하는 안보의식고취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실시한다.

사. 실제훈련 실시 전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며 안전에 관한 점검을 훈련단계별로 동시에 실시하되,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 안전대책 강구 후 훈련을 실시한다.

3. 토의형 연습

가. 토의형 연습은 전시대비계획 가운데 보완해야 할 사항 및 비상대비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관련 요원이 동일한 장소에 참석하여 선정된 전시현안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실시하는 연습을 말한다.

나. 각급 기관장은 소속직원과 관련기관 요원에게 토의과제 및 전시현안과제를 미리 부여하고, 연습 참가자는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거나 질의할 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토의형 연습의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 토의형 연습은 발표 및 토의과제를 부여받은 직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참가자는 다양한 질의와 토의를 실시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4절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

비상대비훈련의 시행체계는 전시대비계획의 임무를 분석하여 훈련계획·준비, 실시 및 통제, 평가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로서 각 훈련 단계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환류(Feed back)기능이 가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며 훈련계획은 중앙 및 상급기관에서 집권화하여 수립하고, 훈련실시는 기관별로 분권화(分權化)하여야 한다. 비상대비훈련 시행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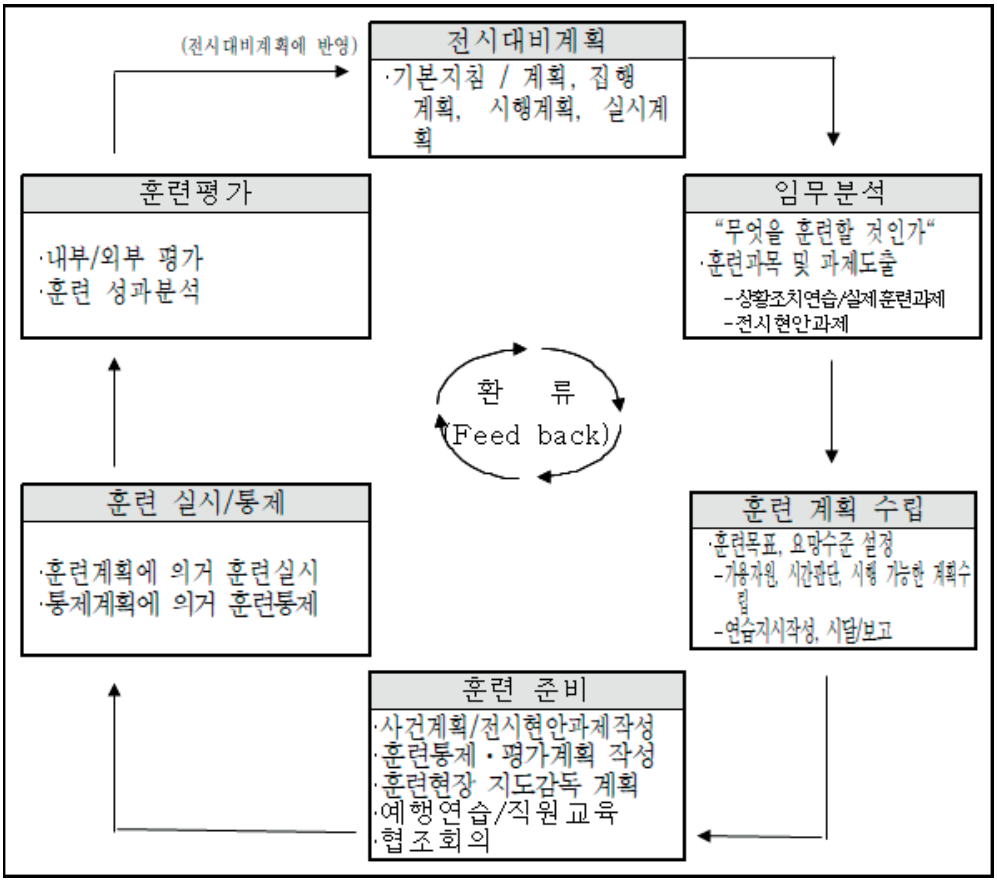

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

제1절 개요

1. 목표

전쟁이전 다양한 국가위기관리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하여 전·평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연습중점

가. 국가위기관리 및 국지도발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충무3대기능(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지원, 국민생활안전)에 부합된 연습을 실시한다.

나. 실제 상황을 고려한 행동위주의 전시전환절차를 숙달한다.

다.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등 실제훈련을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라. 안보체험관, 사진전시회, 기관별 충무시설 견학 등 국민 참여 및 체험훈련을 확대하여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한다.

※ 연습 목표 및 연습중점은 그 해의 연습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연습지침

가. 정부연습의 통상명칭은 『을지연습』으로 하고 연습사태선포 명칭은 『을지○종사태』로 한다.

나. 정부연습은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함께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연습에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대응반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응반이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참가규모 및 범위를 설정한다.

다. 정부연습 범위는 전시대비계획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필요한 때에는 특정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라. 정부연습은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토의형 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마. 정부연습은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인 규모로 동시에 참가하여 실시하되, 군사·비군사적 다양한 위기에 대비하여 연습·훈련분야에 민간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위기대응절차 숙달 등 "민간분야 위기대응 역량"을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통합·활용할 수 있는 연습·훈련을 실시한다.

바. 정부연습은 연(年) 1회 국무총리가 연습방법과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연습의 모든 분야를 계획하고 통제와 평가를 실시한다.

사. 정부연습의 계획·통제를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계획통제기구 및 평가기구를 편성·운영한다.

구분	행정안전부	국방부	부·처·청 등	시·도	시·군·구
명칭	중앙계획 통제단,평가단	군사계획· 통제단,평가단	계획·통제부, 평가부	합동계획· 통제부,평가부	합동계획· 통제반,평가반

※ 연습 참가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그 밖의 단체, 협회 등도 통제반 및 평가반을 둔다.

1) 중앙계획통제단은 정부연습기간에 운영되는 통제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습지침을 제공하고 연습통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습실시 전에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계획통제부장회의를 개최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계획·통제부는 필요시 산하기관과 통제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단체·협회의 통제부(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아. 정부연습 기간 중 기관별 실제훈련에 필요한 예산은 사전 편성 및 확보하고 중앙계획통제단에 그 해의 연습계획(안) 보고 시 실제훈련계획을 포함하여 보고 후 시행한다.

자. 실제훈련은 사전에 계획된 훈련위주로 실시하되 불시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민원야기,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등의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훈련종료와 동시에 훈련제원산출 결과가 포함된 실제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 세부 시행절차는 본 훈령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을 참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차. 정부연습 실시체제는 연습 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전시법령에 의해 통제·운영되고 기타 사항은 현행 평시체제를 따른다.

4. 참가기관

가. 정부연습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 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 및 을지연습 참가기관 일람표에 따른다.

나. 입법부(국회사무처), 사법부(법원행정처·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지방의회사무처(국·과) 등은 임의 참가기관으로 한다.

다. 참가범위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각 기관장의 임무

가. 국무총리

연습총감으로서 정부연습을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

1) 중앙계획통제단장으로서 연습총감을 보좌하고 정부연습의 제반분야를 계획·통제 및 평가한다.

2) 비상대비업무와 훈련분야의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1) 공통

가) 행정안전부에서 을지연습 기본계획을 시달하면 곧바로 해당 기관의 연습 집행계획을 작성, 10일 이내에 시·도에 접수가 되도록 하고, 시·도의 연습에 관하여 소관분야(기능)별로 통제 및 평가를 실시한다.

나) 중앙통제단 사건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전시대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제출하고 중앙계획통제단 편성·운영을 위하여 5급 이상 비상대비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파견한다.

다)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습감이 되고, 청장은 연습장이 된다.

2) 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비상대비훈련에 필요한 군사사항과 인원·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협조한다.

나) 비상대비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군사연습 각본을 중앙계획통제단에 제공하며 군사연습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합동참모본부와 협조하여 지원한다.

다) 군사연습 및 정부연습과 관련된 통제계획은 아래와 같이 각급 행정기관의 계획통제부(단) 편성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계 획 명	배 포 시 기
군사통제계획(군사사태계획)	각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편성 이전 (통상 3월말)
사단급 부대 연습통제계획	각 시·도 단위 합동계획통제부 편성 이전 (통상 4월말)

라) 군사연습에 정부의 대응 및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규모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연습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마) 비상대비훈련 사전 준비 도상연습통제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행정안전부에 상시 지원하되, 그 인원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라 선발된 인원으로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회선구성, 전환방법 및 장비운용에 관하여 중앙계획통제단장의 통제를 받아 관계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나) 연습 간 원활한 통신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중앙계획통제단장과 협조하여 그 해의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보도계획을 수립하고 연습총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나) 정부연습에 대한 보도는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주지를 위한 국민홍보위주로 시행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안보 영상물을 선정 또는 제작하여 그 해의 정부연습 실시 전까지 각 부·처 및 시·도에 배포·지원한다.
다) 각 기관의 정부연습과 관련된 주요 보도내용 및 출연프로그램은 언론사와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한다.
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계획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이를 기초로 자체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마) 정부연습과 관련된 군사연습에 대한 보도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바) 연습종료 후 보도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가) 본청, 관할 지방경찰관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를 정부연습에 참여 시키고 이를 확인·지도한다.
나)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은 시·도 및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부 및 합동상황실에 필수 소요인원을 각각 연락관으로 파견한다.

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통제 하에 연습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합동계획통제부와 종합상황실에 소요인원과 연락관을 각각 파견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습준비 및 계획, 연습 실시기간 중 각종 상황보고와 정기·수시보고를 실시한다.

마. 시·도지사
1) 해당 시·도의 연습계획을 작성·시행하고,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의 연습사항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며 중앙계획통제단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5급 이상 비상대비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파견한다.
2)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을 총괄

하고 연습기간 중 연습장이 된다.

3) 시·도지사는 해당 비상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시·도의 연습계획에 따라 시·군·구 연습계획을 작성·시행하며, 해당 기관 및 소속 읍·면·동의 연습을 지도 감독 및 평가하고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상황조치연습 간 가상으로 동원되는 인력에 대비하여 동원대장이나 충원소집명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훈련 실시지역 현장에서 전시역할 설명 및 국민 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을 총괄하고 연습기간 중 연습장이 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비상대비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할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

1) 중앙지정업체의 경우 지정권자인 중앙행정기관장의 연습지침에 따라 연습에 참여하고 주요사태, 메시지처리를 위하여 자체 통신망 점검 및 합동계획통제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2) 지방지정업체 및 지방 소재 중앙지정업체가 연습에 참여할 경우 관내에 속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요 상황처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사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정부연습 시행절차

정부연습의 시행절차는 연습개념 설정으로부터 계획, 준비, 실시, 통제, 평가, 사후처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일련의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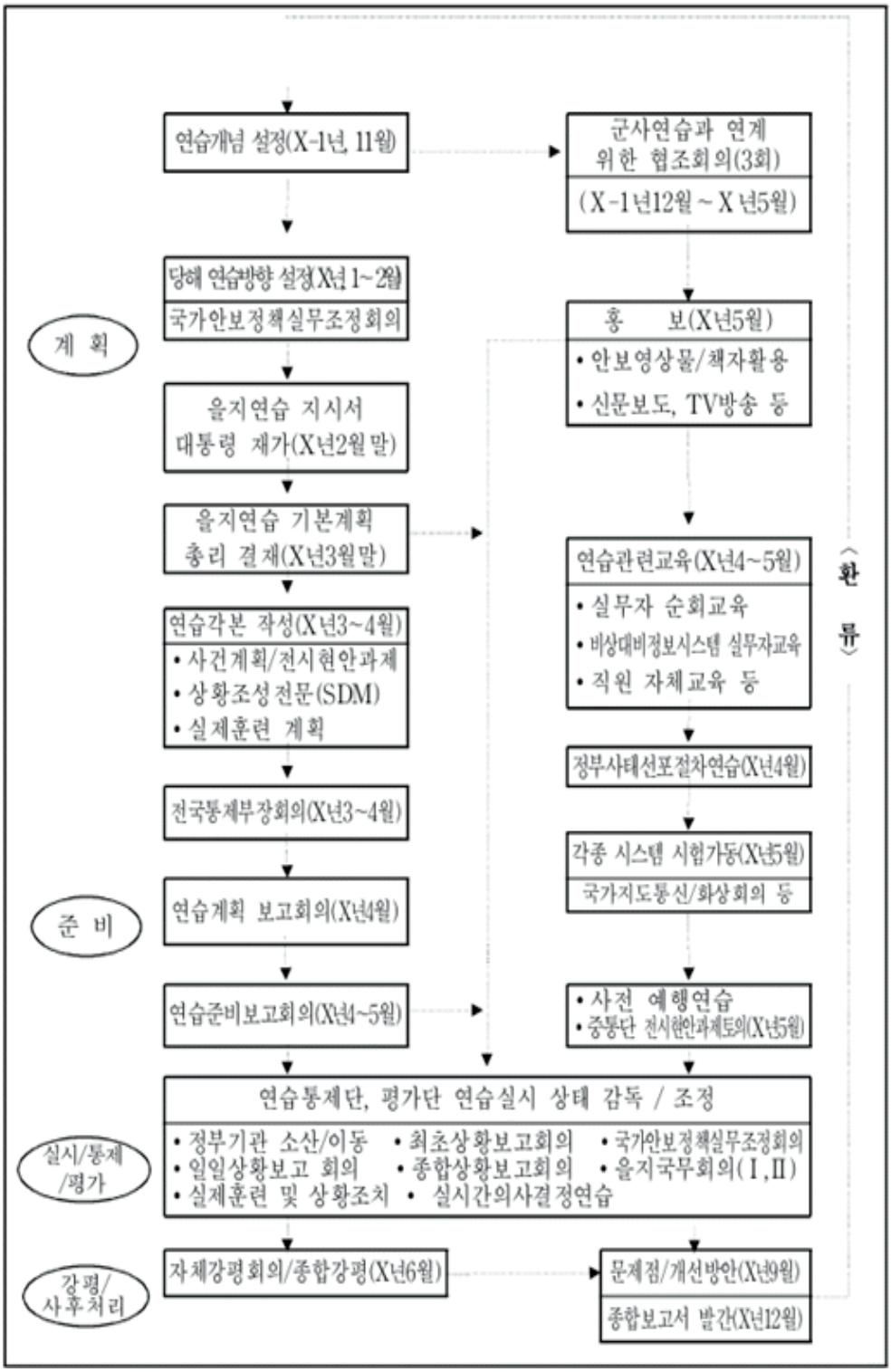
연습개념 설정(X-1년, 11월)
군사연습과 연계 위한 협조회의(3회)
(X-1년12월~X년5월)
당해 연습방향 설정(X년 1~2월)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
계 획
홍 보(X년5월)
• 안보영상물/책자활용
• 신문보도, TV방송 등
을지연습 지시서 대통령 재가(X년2월말)
을지연습 기본계획 총리 결재(X년3월말)
연습관련교육(X년4~5월)
• 실무자 순회교육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실무자교육
• 직원 자체교육 등
〈환 류〉
연습각본 작성(X년3~4월)
• 사건계획/전시현안과제
• 상황조성전문(SDM)
• 실제훈련 계획
정부사태선포절차연습(X년4월)
전국통제부장회의(X년3~4월)
각종 시스템 시험가동(X년5월)
국가지도통신/화상회의 등
준 비
연습계획 보고회의(X년4월)
연습준비보고회의(X년4~5월)
• 사전 예행연습
• 중통단 전시현안과제토의(X년5월)
연습통제단, 평가단 연습실시 상태 감독 / 조정
실시/통제/평가
• 정부기관 소산/이동 • 최초상황보고회의 •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
• 일일상황보고 회의 • 종합상황보고회의 • 을지국무회의(Ⅰ,Ⅱ)
• 실제훈련 및 상황조치 • 실시간의사결정연습
자체강평 회의/종합강평(X년6월)
문제점/개선방안(X년9월)
강평/사후처리
종합보고서 발간(X년12월)

1. 계획단계

가. 연습개념 설정

연습개념의 설정은 그 해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문제점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해의 연습개념 및 중점사항 등을 계획하는 단계로서 행정안전부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주관 하에 실시하는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정부연습 추진방향(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1) 연습개념발전회의(X-1년, 11월)

연습구상 단계의 핵심활동으로 차후연습을 계획하는 회의로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연습 일정, 연습중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다.

2) 최초계획회의(X-1년 12월 또는 X년 1월)

연습구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연습개념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연습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요시 정부연습계획 추진방향(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중간계획회의(X년 2~3월)

연습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한사항이나 현안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4) 최종계획회의(X년 4월)

연습계획 발전과 관련하여 협조하고 준비상태를 검토하며 세부사항 등을 최종 결정한다.

나. 추진방향 설정

행정안전부는 연습개념발전회의 및 최초계획회의까지 군사연습과 협의된 결과를 기초로 그 해의 연습일정, 중점사항 등 정부연습 추진방향(안)을 작성하여 국가안보정책실무조정회의에 상정한 후 그 해의 연습방향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연습내용을 연습지시서 및 기본계획 문서로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

다. 연습계획문서

1) 정부연습 계획문서의 종류와 작성책임은 아래와 같다.

계 획 문 서 종 류	작 성 책 임	승 인 권 자
연습지시서	행정안전부	대통령
연습기본계획(자체연습지침 포함)	행정안전부 (중앙계획통제단)	국무총리
부·처·청 연습계획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기관장
시·도 연습계획	시·도 합동 계획·통제부	시·도지사
시·군·구 연습계획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	시장·군수·구청장
자체연습계획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

2) 연습지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그 해의 연습실시에 관한 지침으로 연습목표, 중점, 기본방침, 가정, 일정 및 참가범위 등이 포함된다.

3) 연습 기본계획

연습지시에 명시된 연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습에 관한 계획, 통제, 실시, 평가 및 사후처리 등 연습전반에 대한 기본지침과 세부계획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국무총리 결재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시달하되 연습지시서 부록으로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은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산하기관의 계획·통제기구 편성 이전에 연습관련 각종 교육, 계획검토·과제부여, 보고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연습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연습 참가기관』을 선별 분류하여 연습총감(참조: 중앙계획통제단)에게 보고하고 연습총감은 이를 종합 분석하여 『을지연습참가기관 일람표』를 작성 및 배포한다.

라. 계획·통제기구 편성 및 운용

정부연습의 계획·통제기구는 그 해의 『연습지시서』와 『연습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습 참가기관의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운영한다.

1) 계획·통제기구의 임무 및 기능

가) 소관분야의 연습계획 작성

나) 하급기관과 산하단체의 연습계획 작성 및 지도

다) 차하급 계획단간의 이견(異見) 조정

라) 계획·통제부간 상호협조 및 정보교환으로 계획의 연계성 유지

마) 기타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의 종합 정리 등을 실시한다.

2) 기관별 계획·통제기구

가) 행정안전부 중앙계획통제단

그 해의 『연습지시서』와 『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직원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인원을 지원받아 편성하며, 정부연습을 총괄하여 계획·통제한다.

(1) 연습 전 그 해의 연습목표 및 중점사항과 사건계획, 전시 현안과제 선정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유도 및 조정·통제한다.

(3) 연습상황보고·접수와 연습진행상황을 파악한다.

(4) 연습상황 및 평가보고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1) 해당 기관의 조직과 직능분야별 요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소속기관 및 시·도의 소관 기능분야와 관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연습에 대하여 중

앙계획통제단과 연계하여 연습을 계획·통제한다.

(2) 계획·통제부장은 해당기관의 전시업무와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되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된다.

다) 시·도 합동계획·통제부

(1) 해당 시·도의 직능 분야별 요원, 지역 내 군부대,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밖의 산하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단체·협회의 대표요원을 포함하여 편성·운영한다.

(2) 해당 시·도 및 산하기관과 지역 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연습을 중앙계획통제단 및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와 연계되게 계획하고 통제한다.

(3) 통제부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이 된다.

라)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

(1) 해당 시·군·구의 인원과 군부대 및 경찰요원, 지역 내의 2차 특별행정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대표요원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시·도 합동계획·통제부와 연계하여 연습을 계획·통제한다.

(2) 통제반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마) 주요공단·중점관리대상업체의 통제반

중앙지정 주요공단·중점관리대상업체의 통제반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하급통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밖의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소재지 시·군·구의 하급통제기구로서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의 통제 하에 기능을 수행한다.

3)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기능에 따라 소속 청, 각 시·도 및 업체·단체·협회를 통제하되 군사부문과 관련된 작전통제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의 방위사단 및 지방경찰청, 1차 특별행정기관은 해당 지역 시·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주요 사건계획작성 협조 등)를 유지하여야 하며 합동계획·통제부 및 합동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여 통합방위태세에 입각한 연습이 실시되도록 조치한다.

5) 그 밖의 계획·통제기구의 편성, 편성표 모델(안), 업무분장은 별지 1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 계획 및 통제체계

연습계획·통제체계는 그 해의 『연습지시』 및 『연습 기본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래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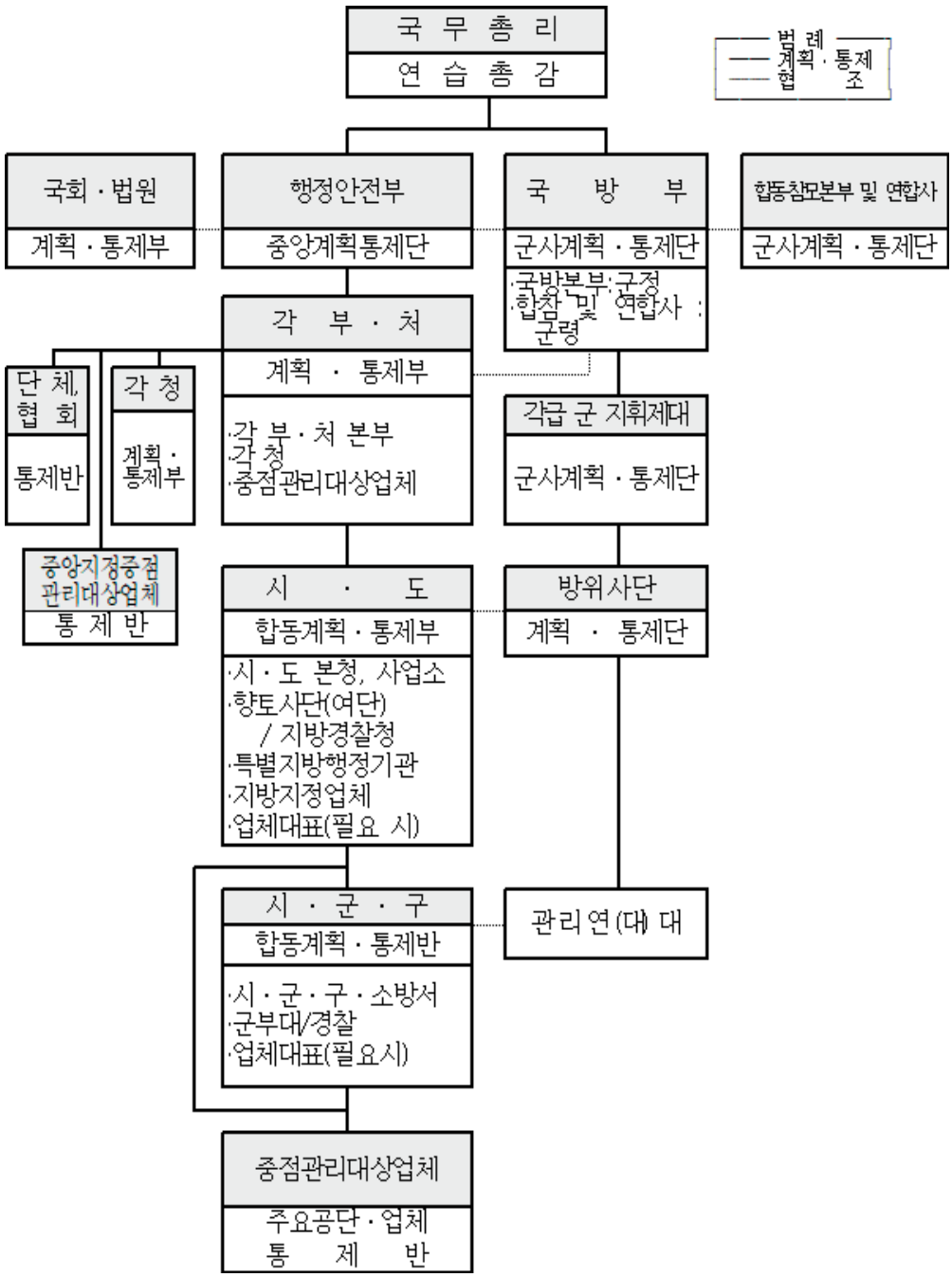
국 무 총 리
연 습 총 감
법 령
계획·통제
협 조
국회·법원
계획·통제부
행정안전부
중앙계획통제단
국 방 부
군사계획·통제단
·국방본부·군정
·합참 및 연합사 : 군령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군사계획·통제단
각 부·처
계획 · 통제부
·각 부·처 본부
·각 청
·중점관리대상업체
단 체,
협 회
통제반
각 청
계획·
통제부
중앙지정중점
관리대상업체
통 제 반
각급 군 지휘제대
군사계획·통제단
시 · 도
합동계획·통제부
·시·도 본청, 사업소
·향토사단(여단)
/ 지방경찰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지정업체
·업체대표(필요 시)
방위사단
계획 · 통제단
시 · 군 · 구
합동계획·통제반
·시·군·구·소방서
·군부대/경찰
·업체대표(필요시)
관리연(대)대
중점관리대상업체
주요공단·업체
통 제 반

바. 연습각본

1) 개념

연습각본이란 정부연습의 진행과 실시를 위하여 일련의 상황과 사태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작성한 연습계획으로 상황조성전문, 사건계획,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등으로 구분된다.

2) 상황조성전문(SDM: Scenario Development Message)

중앙계획통제단에서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연습 개시 이전에 배포하며 일반상황(국내·외 정세, UN동향 등), 특별상황(북한정치, 경제, 군사정세, 대남 및 대외동향), 특수상황(최근 북한 동향 및 군사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가) 상황조성전문 작성방법

(1)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등 비 군사 상황을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의 군사상황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2) 각종 위기상황과 전쟁발발 배경 등은 실제 전장상황과 부합되게 모의 및 유도한다.

※ 정부단독 연습 시 군사상황은 국방부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작성한다.

나) 작성·전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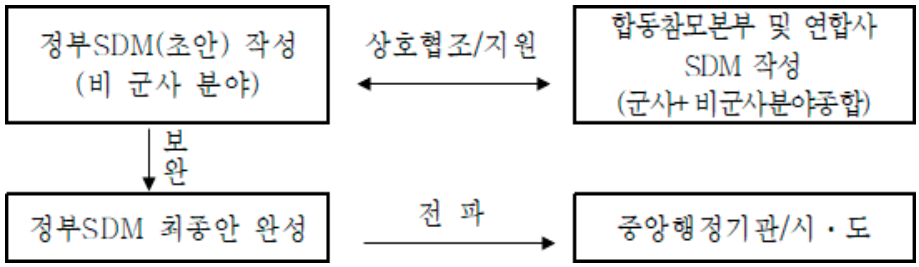

3) 사건계획

사건계획이란 체계적인 연습유도와 통제를 위하여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으로 표적사건계획과 비표적사건계획으로 구분한다.

가) 표적사건

표적사건이란 유형적인 표적(지역, 점)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으로 전시대비계획 실행가능성 검토와 긴급복구 대책 강구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표적을 선정하고 피해상황을 부여한다.

(1) 작성지침

(가) 중앙계획통제단은「국가중요시설현황(합동참모본부)」의 “가”급 목표와 충무계획상의 주요통제 목표를 선정하여 표적사건계획을 작성한다.

(나) 각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는 「국가중요시설현황(합동참모본부)」의 “가”급 및 “나”급 목표와 충무계획상의 주요통제 목표를 선정하되 중앙계획통제단의 표적목록과 중복되지 않도록 표적사건계획을 작성한다.

(다) 각 시·도 합동계획·통제부는 시·도와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다”급의 목표와 지역 군부대가 선정한 표적중 시·도 관련 표적과 중앙행정기관의 표적사건계획에서 제외된 국가중요시설 “가”급 및 “나”급 목표 중에서 자체표적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건계획을 작성한다.

(2) 표적 선정기준

표적선정은 소관분야 전시대비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별히 강조되는 표적의 선정은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르고 기타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가) 중앙계획통제단 표적

① 군사표적 및 정부차원의 중요표적

② 다수 부·처 기능이 관련된 표적

③ 초기동원·안보상 문제

(나)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표적

① 중앙표적과 연계된 표적

② 중앙계획통제단에서 선정하지 않는 중요표적

③ 기능 및 지역여건에 맞는 표적

나) 비표적 사건

비표적 사건이란 무형전력을 저해하거나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과 우리측 내부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을 총칭한다. 이는 전시대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일자별, 시간별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작성하되 특히 하나의 사건에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통합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사건계획 작성체계

각급 기관의 계획통제기구는 다음 절차와 일정에 의해 사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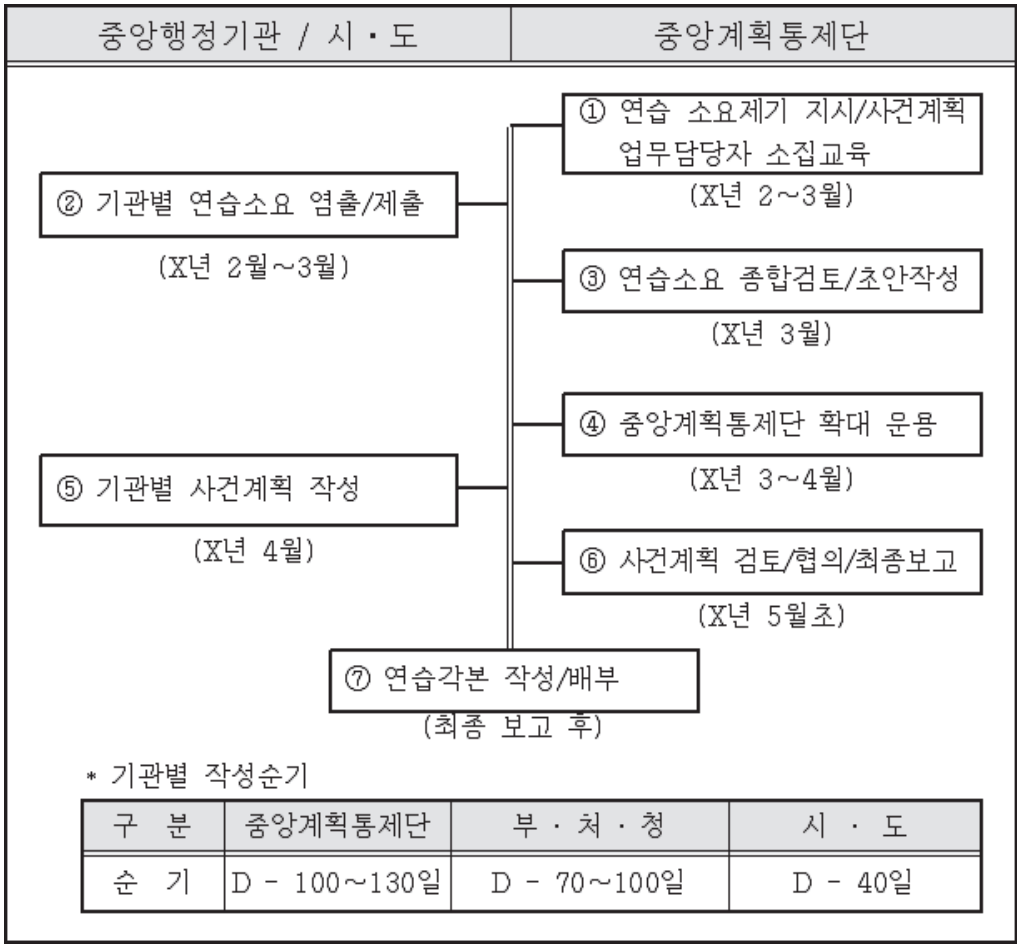

* 기관별 작성순기

구 분	중앙계획통제단	부·처·청	시 · 도
순 기	D - 100~130일	D - 70~100일	D - 40일

라) 기관별 사건계획 작성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중앙계획통제단

(가) 충무사태의 각 단계별 사건발생에 따른 정부차원의 조치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국가위기관리, 국가기반체계보호, 군사·비군사 분야 등 「포괄안보개념」에 부합하는 사건계획으로 구성하되, 다수 기관의 통합된 노력이 요구되는 복합사건으로 구성한다.

(라) 전시대비계획 검증 및 숙달을 위한 과제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무계획 3대 분야별, 일정별로 균형 있게 편성·작성한다.

(마) 각 기관별 변경된 충무계획과 기관의 임무 등을 반영하여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바) 기관장 및 주요 직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회의체에 의한 통합된 노력과 협조된 상황조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다.

(2)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가) 충무사태의 각 단계별로 사건발생에 따른 각급 기관의 조치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각 기관별 임무와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고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위주로 선정하여 관련부서의 협조증진과 통합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작성하되, 해당 기관장의 관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사건계획 세부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은 별지 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피해 산출기준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표적사건의 기본적인 피해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 배포한『피해율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다.

사. 전시현안과제

전시현안과제란 전시대비계획의 기본목표인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 안정 등에 관한 전시대비의 핵심이 되는 중요과제를 말한다.

1) 연습방법

전시현안과제의 연습방법에는 과제토의,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이 있으며 지역과 기관의 여건에 맞게 선정하여 실시한다.

2) 기관별 과제 선정기준 및 책임

전시현안과제의 선정과 연습계획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차상급 기관의 장에 있으며 전시현안과제의 선정기준, 작성지침, 과제토의절차, 양식 및 작성 요령은 별지 3을 참조하도록 한다.

아.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및 통합상황조치모델

1) 개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해당조직의 부서 운용과 활동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이 있다.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충무사태 및 전쟁진전 상황별 임무수행절차를 도표화한 것으로 기관장의 부서별 임무수행 절차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주요 상황별로 각 부서와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기능별 및 개인별 행동과 조치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시킬 수 있다.

2)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요령과 양식의 예문은 별지 4를 참조하도록 한다.

2. 준비단계

정부연습을 실시하기 전 최종단계로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사전 준비보고회의(전국통제부장회의, 연습계획보고회의, 연습준비보고회의), 연습관련 교육실시, 홍보, 위기관리연습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 사전준비회의

1) 전국통제부장회의(X년 3~4월)

그 해 정부연습의 추진방향과 통제 지침을 전파하고 중앙계획통제단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주관 최초 회의로서 연습목표 및 중점, 일정별 연습상황, 분야별 주요 연습계획을 협조하고 준비상태를 검토하는 기회로 실시하며 주요 참석자는 각급 기관의 통제부장(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한다.

2) 연습계획보고회의(X년 4월)

각 기관의 비상안전기획관 및 시·도의 을지연습 담당 국장이 참여하여 분야별 연습 준비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연습기간 중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 등을 토의하기 위한 중간성격의 회의이다.

3) 연습준비보고회의(X년 4~5월)

연습준비보고회의는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연습실시 전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연습총감 주재로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여 정부연습계획, 군사연습계획 등의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최종 점검·보고한다.

나. 연습관련 교육

1) 사건계획 작성 소집교육

그 해 사건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각급 기관의 업무담당자 소집교육은 기관별 연습소요 염출과 사건계획 작성 전 2월초에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 교육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한다.

2) 을지연습 순회교육

을지연습 순회교육은 통상 연습개시 1~2개월 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에서 연습 참가기관의 비상대비업무 관련 실무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세부 교육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달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는 전원 참석하여야 한다.

가) 순회교육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계획통제부요원, 실·국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 특별행정기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안전기획관)

(3) 기타 비상대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참석이 필요한 자로서 사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참석허가를 받은 자

나) 교육에는 을지연습의 개념, 세부연습계획, 연습준비사항, 후속조치 등 주요 연습내용이 포함되며 자료는 교육교재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 진행된다.

3)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을지연습 간 활용하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관련 실무담당자들에 대해 시스템 기능이해 및 사용방법·실습 등을 교육함으로써 시스템 숙달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집교육 또는 기관별 방문교육 등

으로 실시된다.

가) 교육 대상은 국가지도통신망 및 행정정보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등 임의참가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및 전산담당자가 된다.

나) 교육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사건전파·보고체계 운용요령 및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4) 기관별 자체교육

가) 각급 기관은 순회교육과 별도로 연습 전 고위공무원 등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상안전기획관의 교육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비실무 담당관 등을 지정하여 전시대비계획 및 전시 행동절차를 사전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5) 국가지도통신망 사용법 교육

가) KT중앙통신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통제 하에 국가지도통신망 회선구성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시달된다.

나) 각급 기관은 KT중앙통신지원단을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국가지도통신망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하고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다. 통신망 전환훈련(COMMEX)

1) 개요

을지연습 전 통신지원 관련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며 각급 기관의 국가지도통신망 단말기 사용자의 기량 향상을 두고 실시하는 훈련으로 KT중앙통신지원단이 주관하며 각급 기관 소산장소에서 이루어진다.

2) 통신망 전환 훈련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T중앙통신지원단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상 다음과 같다.

가) KT중앙통신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국가지도통신망 단말장비 이전·설치 훈련을 집중 실시한다.

나) 비상지령, 상황직통전화, 안보FAX, 데이터망, 교환간선, 안보전화 등 6종에 대하여 전시 소산장소 회선점검을 실시한다.

다) 각급 기관에서는 훈련종료 후 회선점검 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KT중앙통신지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훈련이 종료되면 각급 기관은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단말장비를 원 장소에 이동·설치하여 통신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통한 메시지 전파·보고체계의 원활한 가동 상태를 사전점검하고, 시스템 장애발생 시 사전조치 활동 등을 통하여 연습 간 상황조치연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산 전·후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1) 훈련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접속 및 가동상태 확인 등 을지연습 상황관리 절차의 숙달

나) 중앙통제단 사건 메시지의 전파·접수 및 상황보고(수시상황보고, 정기상황보고)의 원활한 소통 여부 점검

2) 가동훈련에 참여하는 각급 기관은 가동훈련에 필요한 컴퓨터를 준비하고 훈련요원을 훈련장소(소산 후 시설)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 훈련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시달한다.

마.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참여

1) 개념

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 시를 가정하여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주관 하에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으로 관련기관(국방부 등)의 참여 요청시 정부대응반을 운영할 수 있다. 위기관리연습 개념, 절차 등 진행방법 등은 별지 5를 참조한다.

2) 정부대응반 편성·운영

정부대응반 운영 요청 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부처와 일정을 협조하여 정부대응반을 아래와 같이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참가기관에 시달한다.

가) 참여기간 및 참가기관

(1) 참여기간은 위기관리연습 2일차에서 4일차로 하고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2) 참가기관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으로 하며, 국방부의 경우 정부 대응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는 관련기관의 정부 조치사항 연계 및 운영·통제 역할을 수행하되 참가기관은 그 해 연습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각급 기관 간 정부대응반 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는 위기관리회의실에서 정부대응반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안전부 대응반은 위기관리회의실에 설치 운영하고 관련 기관의 경우 각급 기관에 대응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국방부를 제외한 관련기관 근무 장소는 그 해 연습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 행정안전부 대응반 편성 및 주요임무는 아래와 같으며 각급 기관은 행정안전부 편성모델을 참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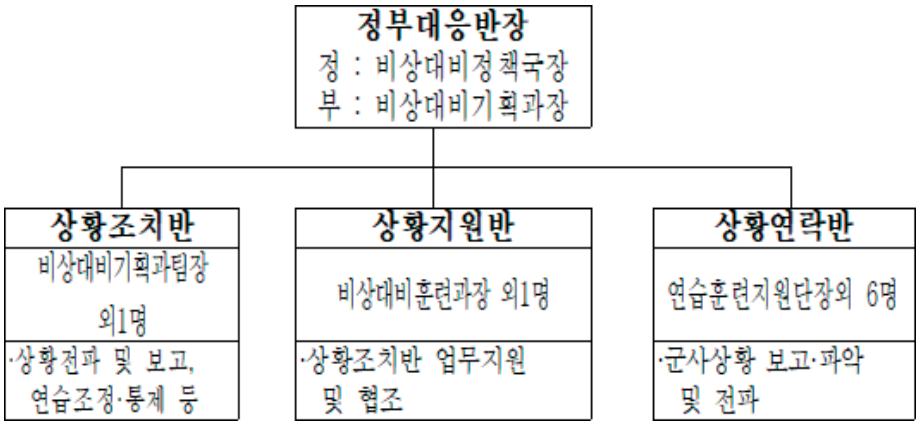

(2)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대응반장	- 정부대응반 운영 · 통제 - 연습상황 모니터, 기능별 임무 총괄 및 통합 - 전쟁 기능별 정부기관 조치사항 연계 및 대응
상황조치반	- 정부조치사항 접수 및 관련기관 전파 - 관련기관 기능별 조치사항 국방부 대응반 통보 등
상황지원반	- 상황조치반 업무지원 및 협조
상황연락반	- 국방부 / 합참 및 연합사 상황실 정부연락관 파견 - 군사상황 및 군 조치사항 파악 및 보고

라) 기관별 조치사항 전파·보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에서는 군의 정부기관 조치사항을 행정안전부 대응반으로 전파한다.

(2) 행정안전부 대응반에서는 조치사항을 접수·기록한 후 관련기관으로 즉시 재전파한다.

(3) 관련기관 대응반은 접수된 조치사항에 대해 접수·처리한 후 행정안전부 대응반으로 통보한다.

(4) 행정안전부 대응반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처리결과를 국방부 대응반으로 통보한다.

마) 연습간 통신망 및 조치사항

(1) 각 기관의 대응반 상호간 협조과제 전파 및 보고(통보)는 국가지도통신망의 데이터망과 안보FAX를 활용한다.

(2) 각급 기관 간 상황전파 및 보고(통보)체계를 위하여 연습 전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KT중앙통신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신속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바) 연락관 파견 및 역할

(1) 행정안전부 연습훈련지원단에서는 연습기간 중 중령·대령 1명을 교대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군의 주요 연습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각종 상황정보 분석, 연습진행상황

(나) 군사적 주요조치 사항 제공 등

바. 홍보

1) 정부연습에 대한 홍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가) 을지연습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연습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을지연습을 계기로 국민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확산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연습홍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가) 매년 5월 초부터 연습 종료까지를 “을지연습 홍보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기간”으로 설정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을지연습 일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홍보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보영상물, 을지연습 홍보영상물, 포스터, 슬로건 등을 적극 활용한다.

3)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및 청소년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보강연, 안보현장 방문, 장비·사진 전시회, 안보체험행사 등을 추진한다.

나) 청소년과 젊은층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인터넷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한다.

다) 옥외 전광판, 모니터,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 한다.

4)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홍보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5) 기관별 홍보와 관련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각 기관에서 을지연습 실시 관련 부정적 왜곡 언론(인터넷 등) 보도 사항 발생 시 즉시 을지연습 통제부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3. 실시단계

가. 개요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로 연습을 시행함으로써 기관과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비상대비훈련 시행절차의 핵심 단계로서 통상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며 분야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연습 실시 표준(안)〉

	①공무원 비상소집발령 (연습1일차/불시)	②최초상황/일일상황보고회의 (연습1일차/연습기간중, 기관장 주관)	③전시직제 편성훈련 (을지2종 사태 선포후)	④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종합상황실운영 (을지2종사태 선포후)	⑤6대 전쟁수행기구 창설훈련 (을지2종사태 선포후)	⑥상황조치 연습 (연습기간)	⑦전시현안 과제토의 (연습기간)	⑧실제훈련 (연습기간)
내용	-비상소집과 동시 을지연습 실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 군사 및 정부 연습상황보고 - 주요상황에 대한 조치 및 향후 대비책보고 등	-전시직제와 동일하게 기구와 정원 편성 -개인별 전시임무 확인	- 기관별 주소산시설로 이동 - 자체충무계획상의 종합상황실 편성대로 운영	-창설기구에 편성된 요원 전원참석하 훈련실시	- 중동단사건 메시지 및 자체사건 메시지에 따른 상황조치	-기관별 전시임무과제에 대해 관련기관 참석하 심층토의 전시대비계획보완	-국가기반피해복구훈련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훈련실시

나. 실시부 편성 및 운영

1) 실시부의 편성은 전시(戰時) 직제대로 편성하되, 필요시 효율적인 연습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연락반, 전시문서취급소, 행정반 등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급 기관은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부가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근무와 교대편성을 하되, 근무교대는 국장급과 선임과장, 총괄담당과 실무자가 교차되도록 한다.

3) 실시부 요원은 종합상황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상황조치 등의 연습을 실시해야 한다.

4) 연습 미 참가 기관과 연습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는 기관은 필요시 사건처리와 연습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응 조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5) 실시부의 세부편성과 운영은 별지 6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기관은 연습상황을 종합, 전파, 보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훈령인 「국가전쟁지도지침」 제2장제3절 전쟁지도·수행기구와 운영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시기·주요상황전파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훈령인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라. 연습기간 중 보고 및 회의

정부연습기간 중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은 중앙통제단과 전시정부종합상황실로 각각 통제보고와 실시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초상황보고회의 및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실시한다.

1) 통제보고

가)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 지침에 의하여 소

관 일일통제상황을 매일 24:00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일 06:00까지 중앙통제단과 소속 기관장에게 각각 보고한다.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은 별지 7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나) 정부연습통제단과 군사연습 통제단은 연습기간 중 연습총감에게 소관분야에 대한 통제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다) 연습기간 중 각급 통제기구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사 항	보고주기 및 요령
정기보고	(1) 부여된 사건의 조치 현황 및 결과 (2) 통제상의 문제점 및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3) 대통령 및 연습총감의 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4) 상급통제부로부터 부여된 주요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5) 계획된 사건의 변경 조정을 요하는 사항 (6) 기타 연습진행에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 그 해 연습기본 계획에 지정된 사항 이외에는 「전시정부종합 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다.
수시보고	(1) 군사교전, 대형재난사고 등 실제상황 발생 시 (2)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등 안전 사고 발생 시 (3) 기타 연습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 발생 시	◦ 보고요령: 상황실 계통으로 가장 신속한 통신 수단을 활용, 『실제』·『지급』을 표시하여 보고 ◦ 상황발생 즉시 보고

2) 실시보고

가) 연습기간 중 실시기관 상하간의 보고는 보고통제규정에 명시한 보고의 범주에 해당한다.

나) 연습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고는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의 상황보고 및 전파절차를 적용한다.

다) 각 시·도와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고사항은 각 기관의 해당 전시대비계획과 그 해의 연습계획에 따른다.

라) 연습 기간 중 중앙계획통제단 사건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는 주무기관에서 관련기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초상황보고회의

가) 각 기관의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침과 최초상황 및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로서 기관장 주재 하에 연습 첫날 오전 중 실시한다.

나) 보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되 통상 아래와 같으며, 필요시 실·국 및 산하기관 등을 지정하여 주요연습사항 등을 보고(발표)하게 할 수 있다.

1. 연습개요(연습 목표/중점)
2. 연습상황(적/아군 상황)
3. 국내/국제상황, 동원능력 판단
4. 기타 필요한 사항(해당기관 충무계획, 주요연습내용설명 등)
5. 기관장 당부말씀 등

4)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

가) 각급 기관은 연습기간 중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를 매일 08:00와 20:00에 기관장 주재하에 전 직원이 참석하여 각각 실시한다.

나)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일일종합상황보고회의는 국방부와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이 연습기간 중의 주요사항을 보고한다.

5) 정기·수시보고 시 포함사항, 목록 및 양식은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 통신망 운영

1) 운용지침

가) 을지연습기간 중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그 밖의 기관 종합상황실 간의 통신은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하고 통신망 개폐시간을 정부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지도통신망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각급 기관은 기관소산 등으로 인하여 통신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용 위성단말장비의 운용을 포함하여 소통 불능 시에 대비한 예비 통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연습 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설치 및 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상지령전화: 기관장실(야간·공휴일은 당직실)에 설치·운용하며, 지령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그 명을 받은 자가 각급 기관의 장에게 일방지령 시 사용한다.

(2) 상황직통전화: 행정안전부의 전시정부종합상황실과 각급 기관의 종합상황실 간에 설치·운영하며 비화기능을 구비하여 상황전파 및 보고 시 사용한다.

(3) 안보 FAX: 각급 기관의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며 각종 사태 및 훈련상황 전파, 정기보고 등에 사용하고 연습관련 2급 비밀문서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다.

(4) 안보자동전화: 비상대비업무 기관 간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보안장비가 미부착된 전화

(5) 교환간선전화: 타 통신망과 연결하여 소통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전화

(6) 데이터 통신망: 각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음성·데이터·영상정보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보안장비가 부착되어 있으며 FAX 동보, 음성동보, E-mail 송수신, 인터넷 전화 등의 기능이 있다.

(7) 무선통신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유선통신망 불통 시 및 지휘소 이동 간 통신공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8) 위성전화망: 각급 기관의 상황실에 설치하여 국가지도통신망의 유·무선 통신두절 시 최후의 통신망으로 사용한다.

라) 각급 기관은 비밀통화가 가능하도록 FAX와 보안장비의 소요를 산정 및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2) 통신통제 및 소통순위

가) 연습기간 중 통신망의 통제와 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집행계획」 및 「국가지도통신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다.

나) 국가지도통신망의 통신 소통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소통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비상지령통신
(2) 제2순위: 국가지도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통신
(3) 제3순위: 행정안전부에서 각급 기관으로 발하는 통신
(4) 제4순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행정안전부로 발하는 통신
(5) 제5순위: 각 기관 상호간 통신

4. 연습통제

가. 개요

연습의 통제는 연습 간 통합상황조치 여건을 조성하고 실전적인 연습 유도 및 직원의 연습 참여도를 높이고 단결력을 배양시켜주는 중요한 기능 및 절차이다.

나. 통제부 임무 및 기능

1) 임무 및 기능

가) 상급기관의 통제계획 및 지침에 따라 전 참가기관이 동일한 상황 하에서 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 및 산하기관의 연습을 하향식(Top-down)식으로 통제한다.

나) 소관분야 연습 미 참가기관의 대행지침과 연습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다) 실시기관에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계획(메시지)을 사전 준비하고 부여한다.

라) 실시기관의 조치 및 대응에 따라 실질적인 연습유도를 위해 추가적인 보조메시지를 준비하여 부여한다.

마) 연습 실시기관의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유도와 차하급 통제기구 사이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조정통제를 한다.

바) 각급 기관의 계획·통제기구와 사건계획 작성에 관하여 협조하고 연습기간 중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사) 그 밖의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 종합정리 등을 실시한다.

아) 연습상황 보고·접수와 연습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다.

2) 편성

가) 통제부는 자체계획통제부 인원을 모체로 편성하되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전

원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통제부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별 근무 편성 및 야간 근무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통제부 편성은 아래와 같이 통제총괄반, 상황조치연습통제반, 정보통신지원반, 각 기능별 통제반, 산하기관 및 지역통제반 등으로 기관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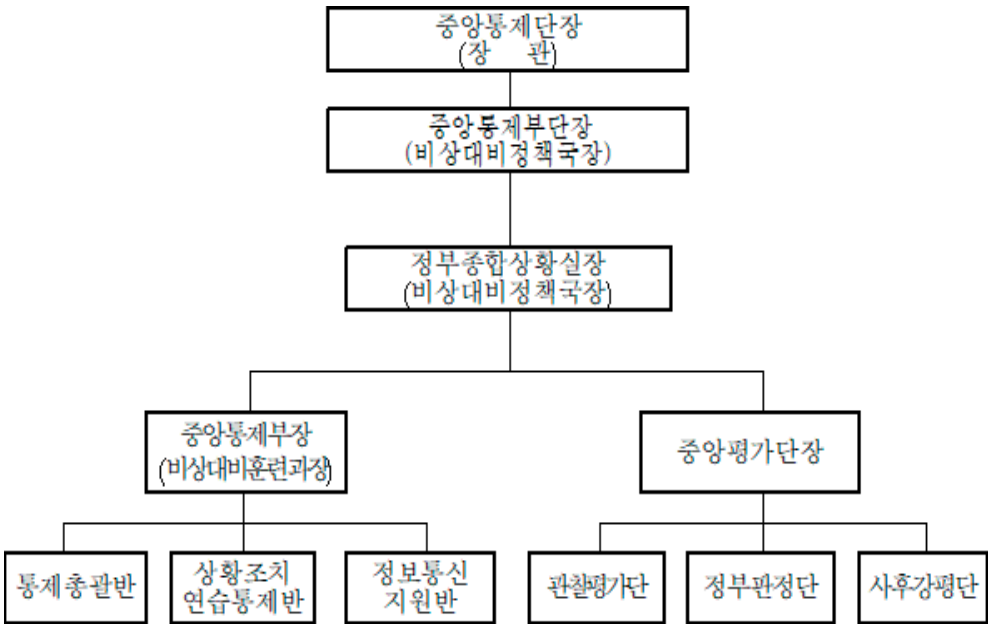

다. 통제수단 및 방법

1) 통제수단

연습통제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안보 및 일반FAX, 유·무선전화, 문서수발, 연락관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2) 통제방법

가) 연습상황의 유도

(1) 각급 기관의 통제관은 사건계획을 기초로 소관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메시지화 하여 처리기관(최초 사건 접수기관)에 부여함으로써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2) 각급 기관의 통제부는 계획된 사건메시지와 보조메시지를 활용하여 상·하 연계된 연습상황을 유도한다.

(3)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은 해당 기관의 통제관이 부여하는 메시지 처리 이외에도 타 기관의 통보(보고), 지시, 협조요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나) 표적사건에 대한 피해복구시간 판정

각 피해표적에 대한 복구완료시간은 해당 통제관이 실시기관의 모든 조치, 복구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인 후 결정하고 이를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황조치연습 간 동원상황 통제지침

(1) 각 동원 주무 중앙행정기관은 상황조치연습기간 중 시·군·구 지역에서 동원되는 인력 및 물자의 동원량을 결정하고 참가업체가 임무고지 된 물자를 생산하여 사용기관(군부대)에 인도·인수하는 절차와 미 참가기관에 대한 대행지침을 설정한다.

(2)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참가는 그 해의 연습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라목의 "대행지침"에 따라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상황조치연습 간 가상적으로 동원되는 인력과 물자는 동원집행 기능을 가진 하부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연습 당일의 동원능력을 기초로 하여 각급 통제관의 확인으로 결정한다.

(가) 시·군·구에 대한 동원인력과 물자의 결정은 읍·면·동의 사전 준비된 동원대장이나 충원소집 명부상의 현황을 종합하여 동원율을 결정한다.

(나) 각급 통제관은 연습 당일의 국가동원능력을 기준으로 실제 동원 가능한 물량을 결정하여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

라) 통제 상 유의사항

(1) 통제관은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

(2) 통제관은 연습상황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타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특히 유의한다.

(3) 통제관은 필요 시 주요 조치결과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4) 통제관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연습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가) 어떠한 처리사항에 대한 소정의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할 때

(나) 연습통제 상 수정이 필요할 때

(다) 사건계획과 일치되지 아니함으로써 연습진행상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

(라) 그 밖에 안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라. 대행지침

연습 미 참가기관의 역할은 통제부에서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행체제 설정 책임과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중앙계획통제단

가) 적 또는 적성(敵性) 비 군사집단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헌법상 기구,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다) 전국적으로 동일규모 및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기관

2) 중앙행정기관 계획·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중앙지정 통제 업체
다) 그 밖에 연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협회·단체·기관·업체 등
라) 외교부
(1)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외국정부
(2) 주한 외국공관
(3) 각종 국제기구

3) 시·도 합동계획·통제부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산하기관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기관, 관련단체, 협회, 시·도 위임 지방지정 통제업체

4) 시·군·구 합동계획·통제반
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산하기관·단체
나)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지역 내 2차 특별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5) 기타
가) 국회사무처 및 법원행정처 통제부는 각각 국회 및 법원의 기능을 대행한다.
나) 1차 특별행정기관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2차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대행한다.
다) 시·군·구 통제반은 연습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기관 대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미 참가기관의 대표요원을 지원받아 대행할 수 있다.
라) 대행기관은 통제능력 초과로 부득이할 경우 미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대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통제자료, 현황 등의 제출과 파견요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연습평가

가. 개요

연습의 평가는 연습목표 달성과 전시 임무수행 가능성 진단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 다음 해의 연습소요 산출 등을 위해 실시하는 단계이다.

나. 평가대상 기관

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한 평가는 중앙평가단이 실시한다.
2) 시·군·구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한 평가는 해당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다.

다. 평가부 편성 및 운영

1) 중앙평가단은 관찰평가단, 정부판정단 및 사후강평단으로 구성하며, 이는 행정안전부 직원,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의 인원을 지원받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편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중앙평가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관찰평가단은 정부연습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준의 관찰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언하며,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평가를 수행한다.

3) 관찰평가단은 사후강평단에게 사후검토자료를 제공하며, 사후강평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분야에 대한 관찰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도출된 평가대상기관에서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찰평가단은 평가대상기관별 일일관찰보고서를 작성하며, 연습기간 중 일일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연습종료 시 연습전반에 대한 최종관찰(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판정단은 중앙계획통제단에서 부여된 사건계획(메시지)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중앙통제단의 사건계획 조치결과를 실시간 추적하여 조치결과에 대한 미흡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정부판정단은 미흡 조치결과를 비상대비훈련과장 통제 하에 반려·보완하여 상황조치 연습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사후강평단은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분석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사후강평단은 국가위기관리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9) 사후강평단은 사후강평조정관, 사후강평분석관으로 구성하며, 각 조정·분석관의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은 별지 8를 참조하도록 한다.
10) 각급 기관의 평가부는 기관장 책임하에 감사관(실), 전문성 있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운영한다.
11) 평가부는 실시부 및 통제부와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연습의 전반적인 부문을 평가한다.
12) 평가부 구성은 평가부장, 평가반장,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업체 평가반 등이며 각 반의 업무분장은 별지 9를 참조하도록 한다.

라. 평가중점 및 지침
1) 연습의 평가는 중앙평가와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연습의 평가는 계획/준비단계·실시/통제단계·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연습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주요사태/상황조치실태, 전시현안과제/사건계획 처리실태, 실제훈련 시 상황조성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4) 평가부는 계량화된 수치가 부여된 평가표와 각급 기관별로 선정한 과제에 따라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한다.
5) 중앙평가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간의 기능별 연계성 유지와 민·관·군의 통합방위체제구축 실태와 그의 기능발휘 가능여부를 평가한다.
6) 중앙평가단은 각급 기관의 평가활동이 특정분야에 중첩되지 아니하고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내용과 기능을 강화한다.

8) 평가결과는 단체 및 개인포상에 반영한다.

마. 평가결과 보고

1) 평가결과 보고는 연습기간 동안 전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차후 연습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습에 참가한 각급 기관은 자체 평가결과를 연습 종료 후 사후보고서에 포함하되, 사진 및 영상물을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평가결과 보고 시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평가개요
  가. 평가중점
  나. 평가 대상기관
  다. 평가관
  라. 일정별 평가활동

2. 평 가 결 과
  가. 총  평     나. 장려사항    다. 현실태 및 문제점
  라.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 제    목(주요사건 제목)
     ○ 현    황(실태)
     ○ 분    석
     ○ 개선대책
        ※ 현실태 및 문제점과 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평가중점과 주요 사건 제목별로 제시할 것

3. 결       론
  가. 제도 및 정책에 반영시킬 사항
  나. 건의사항
```

6. 강평 및 사후처리

가. 강평

강평은 연습실시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발전시킬 사항을 도출하여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을지연습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1) 강평의 구분 강평은 소속기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자체 강평과 산하기관 및 단체(업체)의 연습결과를 종합하여 차상급기관에 실시하는 종합강평, 그리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종합강평회의로 구분한다.

2) 강평시기

가) 각급 기관은 연습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하급기관 및 단체로부터 상급기관의 강평에 이르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을지연습 강평을 실시해야 한다. 각급 기관의 강평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강 평 기 한(期限)
시·군·구	연습 종료 후 5일 이내
시·도	연습 종료 후 10일 이내
청	연습 종료 후 15일 이내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중앙종합강평	연습 종료 후 50일 이내

나)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연습 기본계획』에 따른다.

3) 강평의 참가범위는 연습 실시기관의 전 직원, 평가관 및 통제관, 그 산하기관(단체), 그 밖의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중앙통제단 요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강평에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의 강평에 각각 참관할 수 있다.

4) 중앙종합강평회의는 중앙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연습종료 후 실시하며, 참석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그 밖의 필요한 인원으로 한다.

나. 사후보고

1) 각급 기관은 을지연습 종료 후 아래와 같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구 분	보 고 기 한
시·도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30일(청의 경우는 20일) 이내

2) 산하기관/단체(업체)는 직근 상급기관 강평실시 이전에 사후보고서를 제출한다.

3)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 및 시·도의 소관분야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4) 사후보고 처리

각급 기관은 사후보고서에 분석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시대비계획과 제도의 개선, 차기 연습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근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 문제점 선정 및 처리

1) 문제점 선정

가) 연습 실시결과에 따라 각종 전시대비계획과 연습기간 중 상황처리, 통제, 평가 등 연습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완·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문제점으로 선정하되 그 내용이 유사한 분야는 통합하여 단일문제로 선정한다.

나) 문제점의 성격이 단순하고 부분적인 내용은 연습 종료 직후 해당 기관 자

체에서 보완조치하고 타 기관과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문제점으로 선정한다.

다) 과거에 이미 도출되었던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문제점으로 재선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문제점은 그 해의 문제점에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 보완하도록 처리한다.

라) 문제점의 내용이 전혀 실행 불가능하거나 평시계획과 상충되는 분야는 제외한다.

마) 문제점 제목은 문제의 핵심내용을 집약하여 간략하게 표현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가급적 서술식으로 설명한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경우는 추정 소요예산액을 명기한다.

2) 문제점 보고

각급 기관은 을지연습 종료 후 단계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기한 내에 문제점 선정 보고서』와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제점 선정보고서 및 문제점 처리결과보고서의 양식은 각각 별지 10 및 별지 11을 참조하도록 한다.

가) 문제점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 청 및 각 시·도의 소관분야 사항을 종합하여『문제점 선정보고서』를 작성, 연습총감(참조: 중앙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2) 각 시·도: 소관분야별 해당 각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다.

(3) 상급기관에 보고할 때에는 상급기관에서 조치할 사항과 수개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위주로 보고한다.

(4) 각 중앙행정기관은 시·도에서 건의한 문제점의 조치내역을 해당 시·도에 통보한다.

(5) 중앙통제단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된 문제점을 검토·조정하여 연도별 문제점으로 확정한다.

나) 문제점 보고 대상과 시기는 아래와 같다.

보 고 대 상	보 고 시 기
각 시 · 도 →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7일 이내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	연습 종료 후 14일 이내
각 중앙행정기관 → 연습총감(중앙통제단장)	연습 종료 후 20일 이내

3) 문제점 처리

가) 시정계획 수립

중앙통제단이 문제점을 확정하여 통보하면 각급 기관은 통보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계획을 전시대비계획반영, 법령보완, 예산사업 및 평시사업전환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급 기관은 선정된 문제점별로 별지 12에 따라 『문제점 처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그 처리진도를 기록 유지한다.

나) 문제점 처리

각급 기관은 보고서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종 전시대비계획과 차기 훈련에 반영, 제도 및 법령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정결과 보고 및 확인

(1)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청 및 각 시·도의 소관분야 사항을 포함한 문제점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을지연습 준비보고 시에 이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2) 각 청 및 시·도는 소관분야 문제점 처리결과를 매 반기 익월 5일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보고된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그 해의 연습준비 보고 시 포함한다.

(4)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훈련 사후처리 방침에 따라 문서보고 또는 현지 출장 등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제1절 개요

1. 목표

주요 자원동원 및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처능력 배양과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

2. 훈련중점

가. 훈련 대상 시·도의 전시대비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등 점검 분야별로 계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비상대비 준비 실태를 확인한다.

나.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상황에 대하여 상황조치연습을 실시하여 상황조치연습 능력을 배양한다.

다. 주요 자원에 대한 실제동원훈련 및 피해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단위 안보의식을 제고한다.

3. 훈련지침

가. 지역별 종합훈련의 통상명칭은 “충무훈련”으로 하고 훈련사태의 선포명칭은 『충무훈련○종사태』로 한다. 다만, 정부연습과 병행 실시할 경우는 정부연습 사태(을지○종사태) 선포로 갈음한다.

나. 지역별 종합훈련은 지역별 또는 부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조정하고, 중앙

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훈련의 제반분야를 계획하고 통제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 훈련횟수는 연 2회 이상, 훈련기간은 매회 7일의 범위 안에서 각각 계획하여 실시한다.

라. 지역별 종합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매년 권역별로 나눈 시·도를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시대비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1권역	2권역	3권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마. 훈련내용은 계획점검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 자원동원훈련, 실제훈련 순으로 실시하고 훈련종료 후 현지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 실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바. 계획점검은 해당 평가관에 의해 사전 분야별로 점검할 수 있으며 훈련당일 현장점검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사. 상황조치연습은 현장 통제·평가관에 의해 준비된 상황메시지를 부여하게 되면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상황조치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아. 부문별 종합훈련은 자원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기계), 주요시설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훈련 등을 실시하고, 동원물자 생산훈련, 병력동원훈련 등은 특정부문에 대하여 제원산출과 동원시간 단축 그리고 동원절차 숙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자. 훈련대상 시·도는 훈련과 관련된 군부대, 경찰관서 및 지역 내 특별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훈련준비와 실시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조하고 지도한다.

차. 훈련은 가능한 한 군사훈련(국방부 소관 화랑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카. 동원훈련은 가능한 긴급단계에 지정된 인력과 물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부분동원령 선포 시를 가정하여 동원대상자·동원대상물자를 포함하여 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실비를 보상한다.

타. 훈련절차는 전시대비계획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소집점검으로부터 인도·인수절차 단계까지 실시한다.

파. 훈련실시 시·도는 훈련기간 중 전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훈련에 필요한 상황을 조치한다.

하. 홍보는 그 해의『훈련계획』의 홍보방침에 의한다.

거. 훈련 실시기관의 경우 훈련보상비는 그 해의 『훈련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훈련 대상 시·도는 가급적 관할구역 안의

전 시·군·구가 실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훈련에 참가한 사람 및 물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참고한다.

4. 훈련참가기관

훈련참가기관은 훈련 시·도 지역 내의 관련 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군부대 등을 포함한다.

5. 각 기관장의 임무

가. 행정안전부장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계획통제단을 편성하여 훈련의 방법, 기간 및 계획, 통제, 평가를 총괄한다.

2) 훈련실시기관의 훈련보상금 소요예산을 확보 조치하고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1) 소관기관의 훈련소요제기와 훈련계획 수립, 훈련내용 선정 등 훈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를 지원하고 협조한다.

2) 국방부장관은 종합훈련 실시(국방부 주관 화랑훈련 등과 연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훈련실시 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지원 한다.

· 군사상황 · 동원자원 인수단 편성 및 인수준비 · 부대집결지 이용 및 진입협조 등

3)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평가요원을 파견하여 지원한다.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1)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해당 지역 지방행정기관장의 통제 하에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해당 지역의 시·도에 소관 훈련계획 제공, 훈련보상금 인수 및 사후정산처리, 소요인원 파악 등 훈련사항을 지원협조 한다.

라. 시·도지사

1) 행정안전부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 세부실시계획과 자체통제·평가부 운용계획을 작성 시행하며, 관할 시·군·구의 훈련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2)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 안의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하여 훈련을 총괄한다.

3) 동원훈련 훈련통지서 교부일을 지정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활한 훈련 진행이 되도록 한다.

마.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 훈련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훈련계획을 작성·시행하며, 소속 읍·면·동의 연습을 지도감독 하고, 물자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훈련통지서를 교부한다.

바. 읍·면·동장

시·군·구의 훈련계획에 따라 자원관리 및 연명부 확인, 전·출입 자원의 정리, 중점관리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원대상자에 대해 인력동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실제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전시조치사항을 점검 보완한다.

제2절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시행절차

통상적인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시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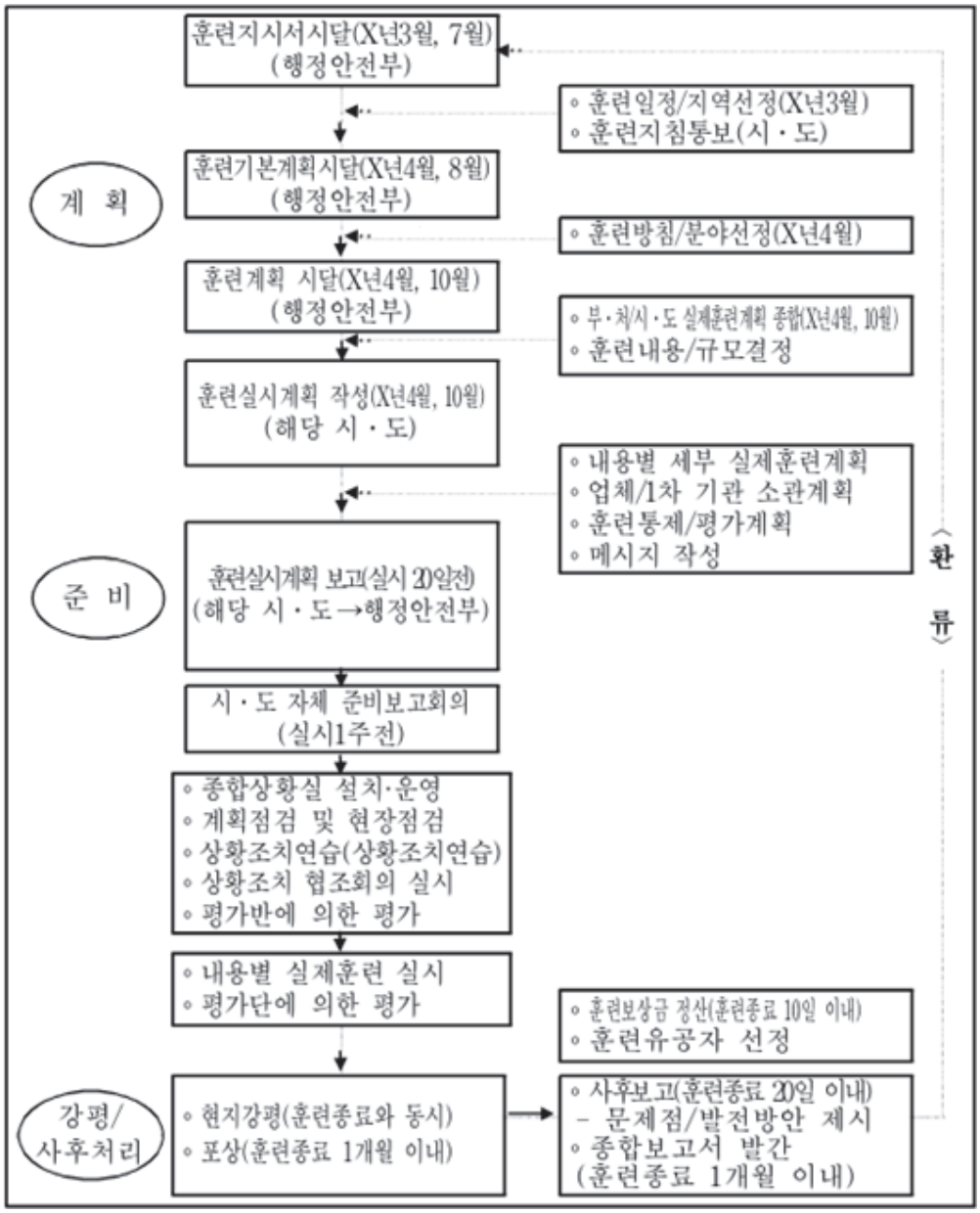

1. 계획 및 준비단계

가. 개요

훈련계획 및 준비단계는 그 해의 훈련시킬 소요와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훈련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나. 훈련계획 작성

1)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해 훈련에 관한 목표, 방침, 일정(기간), 참가범위, 훈련내용 등이 포함된『종합훈련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종합훈련 지침에 관한 사항을『을지연습지시』및『연습 기본계획』에 각각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때『종합훈련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3) 행정안전부는『종합훈련지침』에 따라 훈련내용, 규모를 선정 통보하여 훈련실시기관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훈련내용으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시달하고 "훈련내용별 실제훈련계획"을 작성, 행정안전부로 제출토록 요구한다.

4)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의 장은『종합훈련계획』에 의거하여『세부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5) 1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는 훈련내용으로 선정된 소관훈련분야에 대한 "소관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 훈련실시 기관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 동원자원의 인도관을 편성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공무원과 유관업체 및 단체 등의 실제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적극적인 참관을 유도한다.

7) 기타 훈련실시 기간 중 각종 안전대책 및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대책을 강구한다.

8)『훈련계획』작성 절차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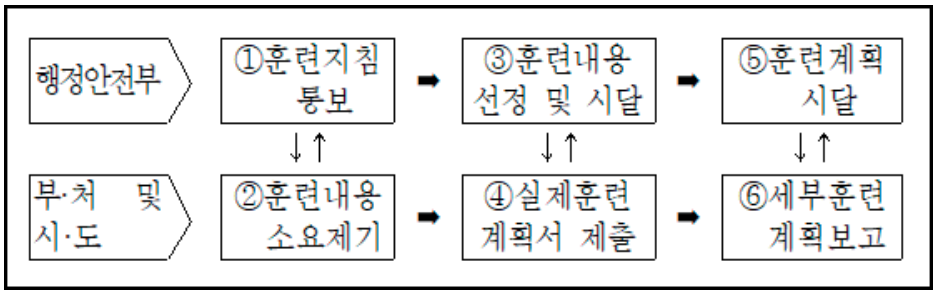

9) 훈련기간 중 계획 및 현장점검, 상황조치연습, 동원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성 위주의 훈련이 아니라 실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을 강화한다.

다. 훈련내용 선정

1) 그 해의 훈련시킬 훈련내용은 훈련 실시 대상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훈련소요 내용을 종합하여 현지답사 후 타당성을 분석하여 최종 선정한다.

2) 시·도지사는 전시대비계획의 3대 기능을 고려하여 매년 신규훈련 내용을선

정하되 다양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관 전시대비 계획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내용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역적 특성과 안보여건에 맞는 내용
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
다) 전투 긴요장비, 상용장비 동원우선
라) 각 기능의 통합조치가 요구되는 복합적인 상황조치 가능 내용
마) 시설피해 시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내용
바) 동원 저해요소로 동원목표 미달 시 우발대책 강구가 필요한 내용
사) 실제훈련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훈련은 절차 훈련으로 조정 시행

2. 실시단계

가. 개 요

지역별 종합훈련 실시단계는 훈련 전에 계획하고 준비한 사항을 실제로 시행하여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의 전반적인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각종 동원제원을 산출하며 시행 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단계이다.

나. 실시부 편성 및 운영

1) 훈련실시부의 편성은 전시 직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고 연락반, 행정반 등을 잠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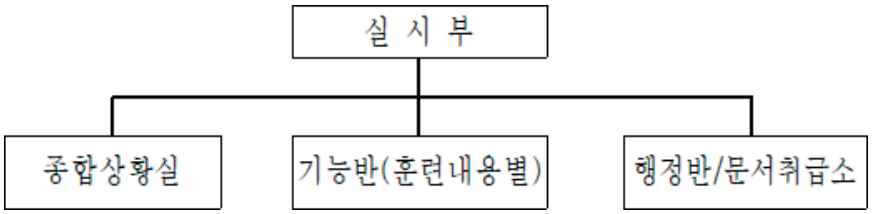

2) 실시부는 24시간 기능유지를 위하여 근무자를 2~3교대로 편성하고 근무교대도 직책별로 나누어 교차식으로 하여 업무공백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화랑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지역은 화랑훈련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일일실시결과 보고를 중앙통제·평가단에 정기·수시 보고를 한다.

4) 종합상황실 운영과 상황조치는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 실시부 임무 및 기능

1)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기능유지
2)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및 검토
3) 상황처리 및 대응조치 활동
4)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라. 종합상황실 편성 및 임무

1) 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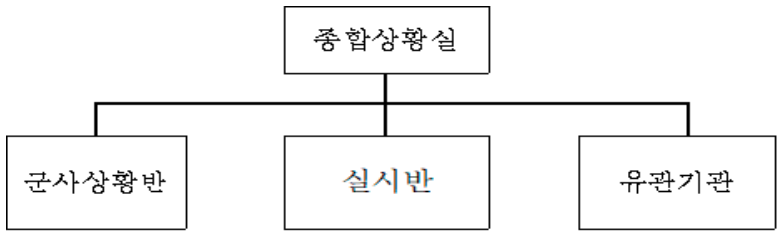

※ 실시반 : 상황총괄, 정부기능, 자원동원, 통신운용, 행정지원반 등

2) 임무 및 기능

가) 각종 상황접수·기록 유지·보고 및 전파(상황통합)

나) 실제훈련 추진 상황 종합 및 동향파악

다) 실제훈련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활동

라) 중앙통제·평가단 평가점검 사항 지원

마) 유관기관 간 협조요청 사항 처리

3) 훈련간 종합상황실 편성 및 운영과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은 「전시정부종합상황실 운영규정」과 별지 13을 참조한다.

3. 훈련통제 및 평가

가. 개요

지역별 종합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객관적인 평가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중앙통제평가단을 편성·운영하여 훈련 대상지방자치단체의 평시 비상대비 준비 및 실시태세에 대하여 통제·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

나. 통제 및 평가기구 편성운영

1) 편성

훈련 통제 및 평가단은 그 해의 훈련계획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편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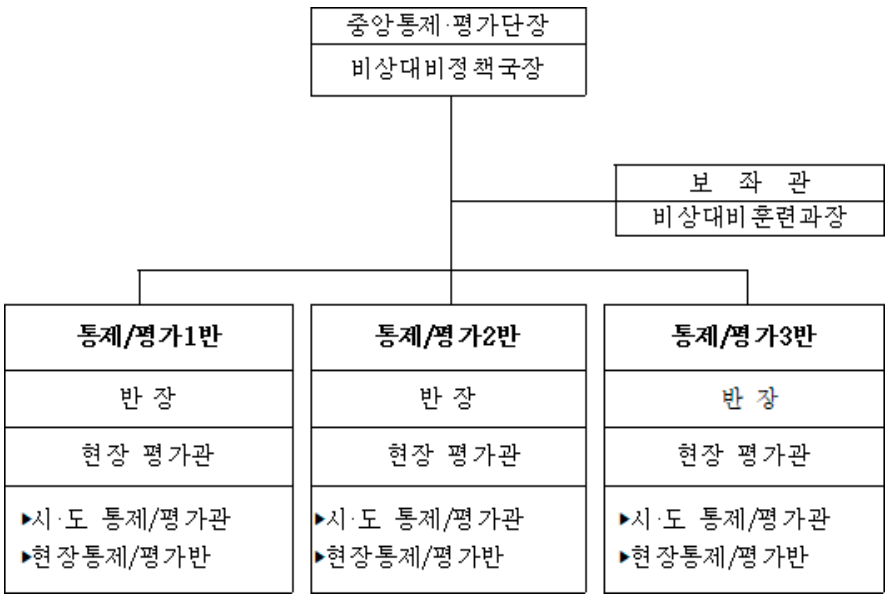

2) 훈련통제방법

지역별 종합훈련 실시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대비계획 전반에 대하여 일정별로 점검 및 통제를 실시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1일차	· 충무계획, 전시종합상황실운영, 비축물자 관리, 국지도발 매뉴얼, 안보교육실태 등 계획점검 · 주민대피시설, 충무시설 등 현장점검
2일차	·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상황 등에 대한 상황조치연습
3~4일차	· 동원훈련(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및 피해복구훈련 등

※ 계획·현장점검분야의 주요내용은 그 해의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임무

가) 보좌관

(1) 통제계획 및 중앙통제 상황메시지 작성

(2) 훈련간 통제상황실을 운영(주간)하여 실제훈련 조정·통제

(3) 일일 훈련결과 종합 및 결과 보고서 종합작성·보고

나) 시·도 통제·평가반장

(1) 해당 시·도의 평가계획 작성 및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2) 실제훈련 통제 및 평가진행

(3) 해당 지역 사후강평 실시

다) 시·도 통제·평가관

(1) 평가단장의 통제를 받아 실제훈련 진행(메시지 부여)

(2) 상황실에 위치하여 조치실태 평가

(3) 통제관을 통솔하여 훈련 안전통제 및 감독

(4) 일일 훈련결과 종합 후 통제·평가반장 및 보좌관에 보고

라) 현장 통제·평가관

(1) 훈련 현장에서 훈련 평가

(2) 필요한 경우 사전 시·군·구 계획 및 현장 확인 평가

(3) 일일 평가결과 작성, 시·도 통제·평가관에게 보고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통제·평가단 인원지원 요청 시 소속 직원을 파견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 시 주무부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훈련 시·도에 관찰관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훈련통제 지침 및 방법

1) 통제부는 훈련에 대한 통제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실시 기관에 훈련 상황을

조성하고 메시지에 의거 훈련을 통제한다.

2) 메시지는 통제단에서 훈련실시 기관에 직접 부여 하거나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으로 전파한다.

3) 다른 비상대비훈련(정부연습 또는 자체연습)과 병행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상황을 상호 연계하여 통제한다.

4) 동원훈련(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은 훈련 실시기관에서 작성하여 동원대상자에게 배부한 훈련통지서로서 상황을 유도하고 기타 실제훈련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 또는 통제관을 통하여 메시지를 부여한 시간부터 훈련 상황을 적용하여 통제한다.

5) 필요 시 통제요원이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 훈련평가지침 및 방법

1)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는 평가업무를 총괄하며 훈련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평가는 충무계획, 비축물자, 전시종합상황실운영, 국지도발매뉴얼, 비상대비 교육 등 평시 비상대비 준비실태, 국지도발, 전시전환절차, 전면전 상황 등에 대한 상황조치연습, 주요자원의 동원훈련,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훈련 등 실제훈련을 대상으로 계획, 준비단계로부터 실시 및 통제, 사후처리단계까지의 훈련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3) 평가는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및 상호연계성과 참가요원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 확인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는 평가업무 일부를 훈련실시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훈련실시 기관장은 자체 평가부를 편성·운영한다.

5) 평가결과는 훈련실시 기관에 위임된 자체평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련종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는 훈련종료 25일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6) 필요 시 평가요원이 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 강평 및 사후처리

가. 현지강평

1) 지역별 종합훈련의 강평은 현지강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훈련평가결과』에 의한 서면강평으로 대체 실시할 수 있다.

2) 정부연습 또는 국방부 주관의 훈련 등과 병행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평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한다.

3) 현지강평은 훈련 통제·평가관이 훈련종료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주관하여 훈련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4) 훈련강평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종합훈련계획』에 의한다.

나. 행정안전부 종합강평

1) 훈련결과 중앙 통제·평가단의 평가 결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

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는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주재한다.

3) 행정안전부 종합강평회의 참석 범위는 중앙 통제·평가관, 해당 부처 충무계획담당자, 국방부 동원업무 담당관, 외부 전문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관찰관, 훈련실시 시·도의 관계관, 비상대비정책국 직원 등으로 한다.

다. 사후보고

1)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훈련 실시결과서를 훈련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14의 양식을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로 제출한다.

2)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제기된 문제점은 소관 분야별로 보완하여야 하며, 그 문제점 처리실태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점검한다.

3) 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그 해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보상금 사용내역을 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 내용별로 종합하여 정산 보고하고 훈련 보상금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국고 반납 처리해야 한다.

라. 문제점 선정 및 처리

본 훈령 제3장 제2절의 "6. 강평 및 사후처리"를 준용한다.

제5장 자체연습

제1절 개요

1. 목적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 및 위기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2. 연습방법

자체연습은 과제중심의 토의형 연습을 원칙으로 하고 토의는 국·실 단위 토의와 종합토의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조치연습이나 실제훈련으로 실시한다.

3. 연습책임

자체연습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무총리 승인을 얻어 기관단위로 연(年)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 행정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자체연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연습을 총괄한다.

4. 연습지침

가. 자체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달되는 그 해의『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자체연습계획』을 수립하여 을지연습 전·후에 시행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조정, 통제 및 확인하고 연습 실시기간 중 참관요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자체연습계획』은 그 해의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기관의 장이 연습실시 2주전까지 국무총리(참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 자체연습의 방법은 과제위주 토의형 연습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라. 자체연습 실시결과 보고는 그 해에 시달된 『을지연습 기본계획』에 따른다.
마. 자체연습 실시 후 연습실시 기관단위로 기관장 주관 하에 강평을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강평을 생략할 수 있다.
바. 자체연습은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행동매뉴얼 검증 및 전시현안과제(국지도발 포함) 토의 등 다양하고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방위사단 에서 실시하는 BCTP(전투지휘훈련) 및 사후 검토회의에 참가하여 위기조치 및 전장상황을 이해하고 필요 시 자체연습에 반영하여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매뉴얼 및 전시대비계획의 보완소요를 도출한다.
사. 각급 기관은 자체연습 결과를 바탕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한 후 연습결과를 다음해의 전시대비계획과 차기 연습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아. 각급 기관은 자체연습계획 및 실시결과를 중앙계획통제단에 아래와 같이 기관별 을지연습 계획 및 사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보고	실시결과보고
기관별 을지연습 계획(안)보고 시	을지연습 사후보고서 제출 시

제2절 그 밖의 사항

1. 연습준비·계획, 실시, 통제·평가, 사후처리
   자체연습의 준비·계획, 실시, 통제·평가 사후처리 등의 상황조치연습과 실제훈련의 세부사항은 본 훈령 제3장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제4장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을 참조하도록 한다.

제6장 비상대비교육 지침

제1절 목적

비상대비교육의 목적은 공무원의 투철한 국가관·공직관을 확립하고 변화된 안보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과 국가안보의식을 제고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절 관련근거

1.「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3.「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교육운영방침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는 소속교육훈련 기관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내실 있는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 전문교육 실시하는 등 수요자중심 교육운영으로 교육 만족도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
3. 국정과제의 이해·확산 및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월례조회 및 직장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비상대비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한다.
4.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상대비 교육 강사풀(pool)제도를 활용하여 우수강사 요원을 양성하고 운용한다.
   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관련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연합사, 국방대학교, KIDA 등)간 강사요원의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기관 비상안전기획관 등을 강사요원으로 초빙한다.
5. 시간·공간적인 제약 없이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사이버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한다.
   가. 매월 초 개강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비상대비업무의 이해」 과목 수강신청 후 학습한다.
   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은 보다 많은 교육이수를 위하여 교육 신청 방법 및 교육시간 인정 등 수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6. 임용·전입 등 인사발령 등으로 비상대비업무 부서에 신규 보임된 공무원의 경우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직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7. 비상대비 교육확대와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인터넷, SNS, 블로그 등 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8.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은 각 과정별로 비상대비교육 과목을 8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집합교육 시간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9. 각급 기관은 내실 있는 비상대비교육·훈련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절히 확보한다.
10. 각급 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은 비상대비 교육강사 지원, 교재발간 등 비상대비교육 자료 공유 및 활용에 상호 협조한다.
11.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 비상대비 교육평가 및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각급 기관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비상대비교육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한다.
12. 비상대비 확인 점검 실시결과 우수기관(개인)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다.
13. 비상대비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 훈련시간(상시학습시간) 반영 외에 기관별 여건에 따라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포상

1. 개요

   포상은 비상대비업무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선발·포상함으로써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확고한 국가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포상지침

   가. 단체포상은 그 해의 비상대비훈련과 평소 비상대비업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한 단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개인포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포상대상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급 이상 전 행정기관, 임의 참가기관 및 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그 소속직원으로 한다.

   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해당 기관의 포상계획을 훈련실시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마. 기타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해의 『포상계획』에 따른다.

3.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가. 개인 포상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소속직원(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유공자를 선발하여 훈련종료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추천한다.

   나. 단체포상 대상기관의 추천과 선발은 평소 비상대비업무 수행상태 및 훈련실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4. 비상대비업무 유공 포상

   가. 포상근거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나. 포상훈격

   1) 단체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2) 개인포상 :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다. 기타

   포상규모, 포상심의 절차, 추천기준 등은 그 해의「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장관표창 업무지침」등에 따른다.

제2절 근무 및 복장

1. 근무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를 하여야 한다.

   나. 임신부인 경우 해당기관의 「을지연습 근무편성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자체

판단하여 그 해의 연습에서(공무원비상소집훈련 포함) 제외할 수 있으며, 만 7세 미만(0~83개월), 초등학교 1학년 이하 및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한다)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인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비상소집 훈련 종료 후 개인별 전시임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한다.

2. 복장

가. 을지연습 간 근무 편성된 인원 및 실제훈련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연습기간 중 지정된 민방위복(비상근무복) 상의를 착용하고 공무원증(신분증)을 패용한다. 유관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바지 등 훈련에 맞는 복장을 권장하되 임신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 하에 별도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나. 훈련기간 중 통제관과 평가관은 민방위복 상의 왼쪽 가슴부위에 실시자와 식별이 되도록 아래 양식에 따라 제작된 명찰을 패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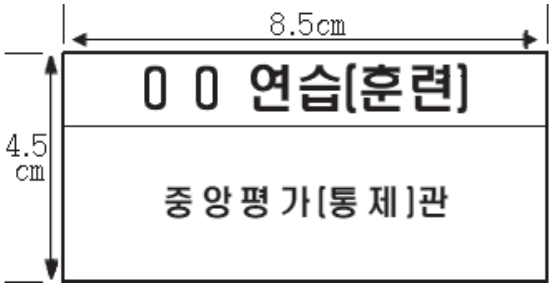

※ 평가관은 통제관 양식에 준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 근무와 복장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관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3절 보안

1. 개요

비상대비훈련 간 보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예규) 등 제반 보안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 간 실무차원에서 필요한 문서, 인원, 시설 및 지역,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분야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2. 문서보안

가. 훈련문서의 비밀분류는 문서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별표 1의 기본 분류지침표를 참고하고 훈련 상황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밀을 다음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비밀분류대상

가) 아측 작전계획 및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
나) 아측 전파탐지기 능력에 관한 사항
다) 합동참모본부 및 연합사의 작전권 행사에 관한 사항
라) 전시 동원체제와 동원능력에 관한 사항

마) 정부 소산계획과 소산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보호장비의 위치, 제원에 관한 사항
사) 국가요인 보호대상자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전시대비계획과 전쟁수행능력, 군사작전계획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항

2) 일반분류대상
가) 전쟁징후 등 상황전파에 관한 사항
나) 수도·가스공급중단, 교통체증 등 대국민 공보사항
다) 유언비어 유포 등 적의 심리전 대비 국민계도에 관한 사항
라) 북한 주민 귀순사항 등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금융질서유지 등 국민협조 유도사항
바) 불순세력의 데모, 약탈 등 일반 치안질서에 관한 사항
사) 문화재 유출 등 전쟁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항
아) 국민의 현금인출 등 전시 경제동원과 관련이 없는 사항
자) 비밀분류대상 중 단편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

나. 주요계획문서 보관기준

1) 정부연습(을지연습)

작 성 기 관	계 획 문 서	기관별 보관연한	
		원 본	사 본
행정안전부	(가) 종합보고서 (나) 연습지시서 (다) 연습 기본계획 (부록, 자체연습지시 포함)	명 구 명 구 5	1 1 1
중앙행정기관	(가) 연습계획(부록포함) (나) 사후보고서	3 3	1 1
시 · 도	(가) 연습계획(부록포함)	1	1
시·군·구	(가) 사후보고서	1	1

2)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작 성 기 관	계 획 문 서	기관별 보관연한	
		원 본	사 본
행정안전부	(가) 종합훈련지시 (나) 종합보고서 (다) 훈련계획(연도별)	영 구 영 구 5	1 1 1
시 · 도	(가) 훈련실시계획 (나) 훈련결과보고	1	1

다. 예고문 부여

1) 훈련기간 이전과 실시 중에 생산되는 사건계획, 상황조성전문, 전시현안과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상황조치문서 등 문서의 예고문은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원 본	사 본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요시 연장부여 가능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 ※ 해당 연도 초과부여 지양

2) 훈련비밀 문서는 예고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차후 업무수행상 참고가치가 있는 것은 보안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예고문 변경 및 재분류 조치 후 존안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3. 인원보안

가. 비상대비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통제·실시 및 평가요원과 기타 허가된 참관자는 공무원증 또는 소정의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외부 인원의 훈련참관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조회, 훈련장소 출입절차, 브리핑 내용 및 참관지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모든 훈련참가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받아야 하고 훈련개시 이전에 훈련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정보통신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설보안

가. 훈련기간 중 훈련시설과 지역에는 출입통제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설정 표시하고 잠금장치, 비밀취급 미인가자 등의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한다.

나.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의 출입은 승인된 인원에 한해 인솔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고 미승인지역의 출입과 휴대폰, 사진기, 녹음기 등의 장비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5. 정보통신보안

가.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밀문서 수발과 통화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유·무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문 수발과 통화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암호기 또는 비화기를 설치한 때에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평문으로 수발할 수 있다.

나. 유선망 불통 등 긴급 시에는 안보 및 위성전화 등 가용한 모든 정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상황 하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다. 정보통신수단 두절 등 우발상황 발생 시에는 인원 및 기타 수단에 의한 문서수발이 이루어지도록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정보통신보안 위반사항 기준은「보안업무 시행규칙」의 별표 2와 그 해『을지연습 기본계획』에 의한다.

제4절 문서작성 및 취급

1. 문서작성

가. 개요

훈련기간 중 문서의 작성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작성지침 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성지침

1) 통제부에서 실시부서에 공개하지 아니할 문서에는 표지 중앙부에『통제관외 열람금지』를 적색으로 표시한다.

2) 훈련계획 및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책자로 작성할 경우에는 청색표지를 사용한다.

3) 모든 훈련문서는 중앙 상·하단에 취급구분과 『'○○년 을지연습』또는 『'○○년 충무훈련』을 표시한다. 다만, 취급(비밀등급) 구분표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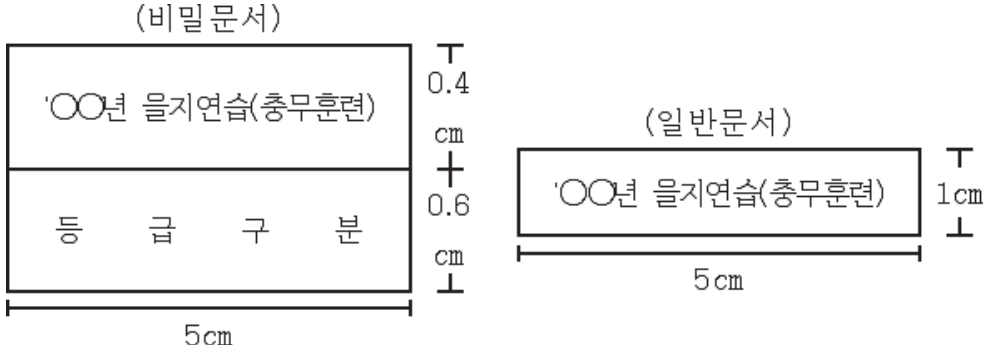

4) 통제관이 부여하는 메시지는 상황조치 문서와 백색용지를 사용하고, 실제훈련 메시지는 제목 끝에 “(실제훈련)”을 표기하여 상황조치연습과 구분한다.
(예) 제 목 : 인력동원훈련(실제훈련)

5) 훈련기간 중 메시지 및 상황조치문서에 사용하는 일시의 표시는 훈련상의 가상일시를 사용하되 필요시 실제일자를 병기할 수 있다.
(예) 3. 20(5. 20)일 18:00, 3. 21(5. 21)일 16:40

2. 문서취급

가. 개요

각급 기관은 훈련기간 중 문서의 수발과 통제를 위하여 전시 소산지역의 자체 충무시설 내에 전시문서취급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대외기관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수발을 통제한다.

나. 설치시기 및 운영

1) 전시문서취급소는 소산지역(자체 충무시설)으로 이동 완료와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훈련기간 중 전시문서취급소는 기관의 실정에 맞게 2~3교대조를 편성하되 24시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시문서취급소의 장비와 인원은 기관 실정에 맞게 확보하여 운영하고 전시 공문서 수발 시 설치 장소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4) 문서취급소는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가) 문서의 확인, 접수, 수송, 배포 및 대장기록 유지

나) 문서 배달의 운용 및 전달수단의 강구

다) 그 밖에 문서취급에 필요한 사항

다. 문서의 전달

1) 훈련참가기관의 문서는 전시문서취급소를 통하여 직접배달요원에 의하여 전달한다.

2) 일일 3회 이상 수발 조치하되 지급문서는 수시로 처리한다.

3) 문서전달의 수단은 직접배달, FAX 및 유선 등으로 하되, 기밀문서(통신문 포함)는 음어를 사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장비가 설치된 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Ⅱ급 비밀문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라. 문서통제

1) 접수되는 문서는 부서별 접수함에 분류하여 배포하고 지정된 직접배달요원이 주기적으로 수령하도록 한다.

2) 연습문서 처리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제단측의 문서와 메시지는 종합상황실의 행정반에서 경·중·완·급(輕重緩急)을 판단하여 상황조치 후 관련 부서에 전파되도록 한다.

3) 연습 실시부측의 문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표지 구분에 따라 처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발송되는 문서는 비밀취급 구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소정의 문서행낭에 넣어 직접배달계통을 이용하여 지정된 전시문서취급소에 배달되게 한다.

부칙 〈제00759호, 2020. 4.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계획·통제부 편성

1. 계획·통제부 임무와 기능

가. 소관분야의 연습계획의 작성

나. 하급기관과 산하단체의 연습계획 작성 및 지도

다. 차하급 계획단간의 이견(異見) 조정

라. 계획·통제부간 상호협조와 정보교환으로 훈련계획의 연계성 유지

마. 기타 연습에 관한 기록유지와 사후보고 및 강평자료의 종합 정리 등

2. 편성

계획·통제부는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하여 운용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기관의 임무 및 기능

나. 평시기구(직제 및 인원 등)

다. 동원자원 및 긴급복구대상

라. 지역적 특수성

마. 유관기관 통제 및 협조

바. 훈련내용 및 참가범위

1) 계획·통제부는 각종 자원동원, 정부기능 및 기타분야를 망라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편성하며, 그 규모와 세부내용은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통제부는 지역 내의 국가기관을 포함한 각종 연습참가기관을 포함하여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편성한다.

3) 계획·통제부는 구성은 해당 기관의 연습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담당과장

급으로 하고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전시대비계획을 숙지하고 있는 요원과 참가기관의 대표요원을 지원받아 편성한다.

4) 계획·통제부 요원은 계획 작성이 완료된 후 통제부 요원으로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연습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편성 모델(안)

가. 중앙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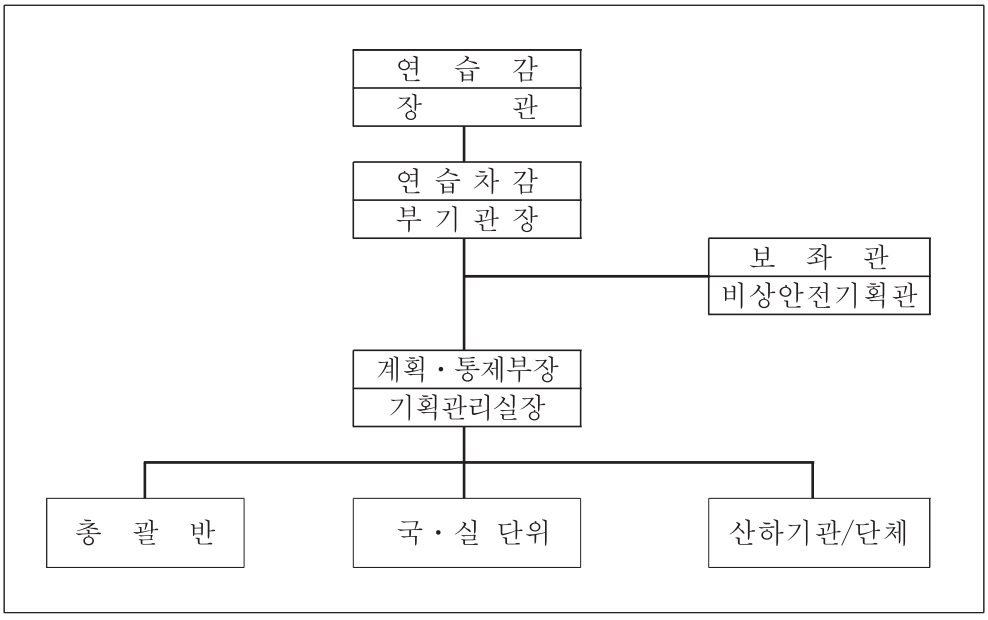

나.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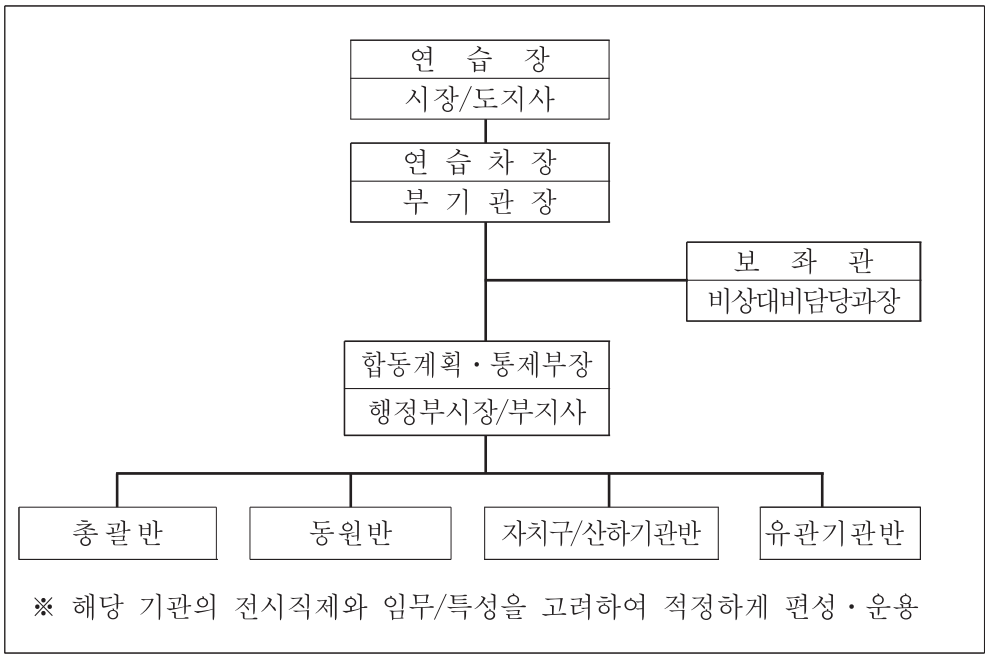

4. 계획・통제부 요원에 대한 교육시킬 사항

각급 기관은 계획・통제단 요원이 원활한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한다.

가. 계획・통제단 요원의 임무 및 기능

나. 전시대비계획, 예규 및 연습각본(사건계획, 충무계획시행도표 등)

다. 연습지침과 상부 및 기관장 강조 사항

라. 연습준비 및 계획 작성 절차

마. 기본연습계획을 포함한 각종 부록계획

바. 피해율 산정표 사용 요령

사.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의 작성지침과 조치결과작성 요령

아. 연습통제 요령 및 보안업무 등

5. 계획·통제부 업무분장

가. 계획·통제부장

1) 비상대비훈련 계획통제 분야 기관장을 보좌

2) 계획·통제부의 전반적인 운용 및 지도감독

나. 총괄반

1) 계획·통제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 총괄

2) 계획·통제부 교육 및 운영

3) 각 반별 업무조정 및 통제

4) 행정지원 및 그 밖에 지시된 업무수행

다. 각 기능반

1) 소관분야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

2) 각 반별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3) 그 밖에 지시된 업무수행

라. 산하기관 및 단체반

1) 소속기관 전시현안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

2) 상급기관의 지침과 정보를 획득하여 소속기관에 전파

3) 연락관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별지 2 사건계획 작성지침 및 작성요령

1. 개념

사건계획은 체계적인 훈련유도와 통제를 위해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각본(시나리오)을 지칭한다.

2. 작성지침

가. 기관별 작성주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앙계획통제단	•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사항 위주 • 다수기관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정책적·국가전략 차원의 조정·통제가 요구되도록 작성 • 각급 기관의 소요제기 사건계획(안) 조정·보완 작성
중앙행정기관 / 시·도	• 해당기관 임무·기능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시대비계획(충무집행·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 • 산하기관 및 업체를 연습시킬 수 있게 작성

나. 기능별 연계성을 유지하고 상호중복 및 누락방지를 위해 시차별로 Top-down 식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중앙계획통제단 → 중앙행정기관 → 시·도 順으로 작성하는 식이다.

다. 지역별, 단계별 상황에 맞도록 구상(構想)한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를 작성한다.

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동시다발 상황을 계획하여 다수기관(부서)이 협조하며 조치토록 묘사한다.

마.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부여하고 피해율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바. 접수기관에서 통보할 관련기관과 보고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시한을 명시한다.

사. 군사상황과 연계되어 발생 사건시간이 불명확한 사건은 별도표시를 한 후 실

시간에 통제(전파)하도록 작성한다.

(예) 동원령 선포 + 1H, 적 공격 개시와 동시 등

아. 사건내용은 실제 전쟁 상황에 부합되도록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을지3종사태 이전 정부 조치사항은 상황조성전문에 반영토록 한다.

2) 충무계획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묘사한다.

3) 실제훈련 상황도 가능한 상황조치연습과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한다.

자. 사건계획은 통제관 외에는 사전 열람이 금지되도록 보안 조치하고, 사건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건만 실시기관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사건계획 작성 시 고려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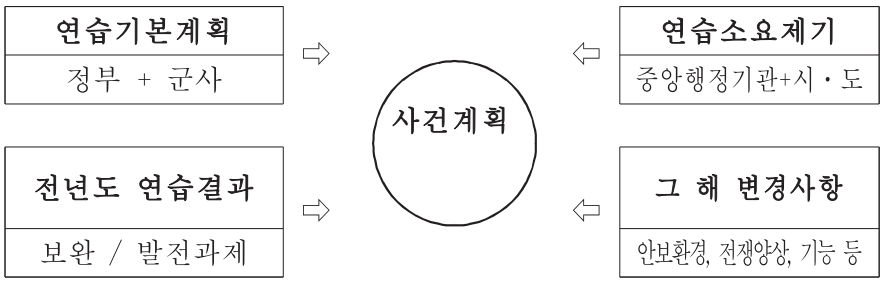

4. 사건의 유형은 표적사건과 비표적사건으로 구분된다.

가. 표적사건은 유형적인 표적에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건으로 다양한 가해수단에 의한 수개 분야의 피해누적을 묘사한 지역표적사건과 시설, 장비에 피해를 가하는 점표적 사건으로 구분된다.

(예) ① 점표적 : 교량, 활주로, 발전소 등

② 지역표적 : 공업단지, 아파트지역, 대규모시설 밀집지역 등

나. 비표적사건은 표적사건에서 제외된 무형전력을 저해하는 사건으로 표적사건의 파급효과로 간접영향을 받는 사건과 아측의 내부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들 수 있다.

(예) 적의 심리전에 의한 민심 동요사건 등

5. 가해수단별 표적과 표적 선정 시 고려사항

가해수단별 표적	고려사항
○ 항 공 기 :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표적 ○ 지 상 포 : 전방지역표적 ○ 함 포 : 항만·임해지역 중요시설 ○ 특작부대 : 후방지역 중요시설	○ 표적의 형태, 특징, 규모 및 위치 ○ 가해수단의 능력 및 제한사항 ○ 가해시기

6. 훈련유도와 통제

가. 연습 참가자에게 실전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되도록 연습 일정별 사건계획에 따라 작성된 메시지를 전파하여 훈련을 유도하고 통제한다.

나. 전시발생 가능한 실제 상황

구 분		전 장 실 상(예)
긴박단계	정부기능 유지	o 사이버테러에 의한 국가 기간시스템 마비 o 위협고조에 따른 경제 위기(주가폭락, 환율하락, 물가폭등 등) o 방송국 등 정부기관에 대한 방화, 시설 파괴 등 테러 o 반전시위 격화
	국민생활 안정	o 경쟁적인 언론보도 o 오열에 의한 사회혼란 및 민심동요 o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o 매점매석 행위 만연 o 선박을 이용한 해외도피 급증 o 접적지역의 심리전 전개
	군사작전 지원	o 주민 철수 및 전시동원으로 인한 교통마비 o 동원 및 징집 거부, 거주지 이탈 o 접적지역 주민 철수 거부 등 철수계획 시행 차질
초기단계	정부기능 유지	o 파괴 / 약탈 / 방화 등 치안공백 o 방송 / 통신체계 마비로 인한 국가홍보기능 마비 o 관공서 피폭 / 공무원 대량 사상자 발생으로 일부 행정기능 마비
	국민생활 안정	o 특수부대 침투 및 활동 o 대도시 피폭에 의한 단전 / 단수/ 가스공급 제한 및 중단 o 유독가스 / 유류 / 가스시설 파괴

		o 대량 인명피해 발생 o 화생무기 공격 피해 o 생필품 공급 부족 o 주요 핵심시설(공항, 항만 등) 주변 민간피해 급증 o 유언비어 확산 o 주요 대형병원 피폭 o 주요 은행 기능 마비(인출과다, 시스템 파괴 등) o 주민 이동/교통 체증 o 경기/수도권지역 대량 피난민 발생 o 양곡매도 명령 거부
	군사작전 지원	o 채혈명령 불응 o 동원 불응 o 산업체 전시전환 지연
지속단계	정부기능 유지	o 전시 법령 입안지연에 따른 혼란 o 주요 수송망 파괴로 물류수송 대란
	국민생활 안정	o 생활기반시설(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방송 등) 기능 상실 o 상·하수/쓰레기 처리 불가능 등 도시기능 마비로 전염병 확산 o 유통체계 마비에 따른 폭력사태 o 사상자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 o 적 특수부대의 후방지역 빨치산 활동
	군사작전 지원	o 징소집 기피 o 해상난민 유입으로 군사작전 제한

7. 작성요령

가. 사건계획(양식)

① (비밀등급 표시)

0000년 을지연습
Ⅲ 급 비 밀
(0000. 00. 00 파기)

② (메시지 통제부서 표시) ○ ○ ○ 통제단 메시지

③ (상황의 발생시간/장소 표시) 0000. 00. 00, 00:00
발생장소 :

수　　신 : 수신처 참조　　④ *(사건을 접수할 기관 표시, 통상 수신처 참조)*
분류기호 : 표적 I-C　　⑤ *(표적, 비표적, 기능별 구분 표시)*
일련번호 : 0000-0000　　⑥ *(통제부서 문서번호 구분 표시)*
제　　목 : 0000 공단 피격　⑦ *(사건의 주요 핵심내용 표시)*
내　　용 :
⑧ (상황조치의 구체화된 내용을 작성)

1. 상황
   - •출처 : ○○도 상황실 *㉮ (사건발생, 작성의 출처 표시)*
   - •내용 *㉯ (6하 원칙 적용하여 발생상황을 주무부서/유관기관이 관련 내용을 조치 가능토록 논리적으로 작성)*
   - •피해내용- ㉰ (발생상황에 따라 피해내용을 조치 가능토록 구체화 작성)

2. 주요검토/조치사항　*㉱ (사건처리의 주무-관련기관이 조치하여 협조하고 종합, 보고할 구체화 내용 표시)*
   - •○○○○부
   - •○○○○청
   - •○○○○지사
   - •○○○○군부대

3. 결과보고 *㉲ (사건처리의 시간한계 및 보고할 상급 대상기관 표시)*
   - •수신처 : ○○○종합상황실
   - •최초상황발생보고 : 접수후 즉시
   - •조치결과보고 : 접수후 6시간 이내

○ ○ ○ ○ 연 습 감 (장)　⑨ *(주 통제책임 표시)*
발　　신 : ○ ○ ○ 연습감(장)　⑩ *(연습장 표시)*
수 신 처 : 처리/보고기간 : ○ ○ ○ ○ *㉮ (사건접수/전파-보고/주무기관 표시)*
⑪ *(사건접수/처리기관)*　관련기관 : ○○부, ○○청, ○○사, ○○군부대 *㉯ (사건조치/협조 관련기관 표시)*

나. 기재요령

1) 비밀등급 표시 : Ⅲ급 이상(중앙 상・하단), 평문 미표시)

2) 메시지 통제기관 명시 : 중앙, 자체(부・처/시・도/업체 등)

3) 발생일시/장소 : 사건 발생일시 및 시・군・구 행정단위까지 명시

4) 수신 : 사건을 접수할 기관/부서(보고/처리기관), 다수기관은 수신처 참조

5) 분류기호(최초 입력 시) : 표적/비표적 구분, 중점별 분류표시

가) 표　적 : 유형적인 표적에 피해 발생사건(지역/점표적)

나) 비표적 : 표적사건에서 제외된 무형전력 저해 사건
(표적사건에 의한 파급효과의 간접영향이나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 정부연습 중점별 분류표

연습중점		연습내용	
1	정부기능 유지	A	전시전환체제 확립
		B	국가중요시설 복구관리
		C	전시 재정, 경제정책 운영
		D	전시 주민 및 차량 통제
		E	전시 국가 홍보 및 심리전 수행
		F	Cyber 공격 대비
2	군사작전 지원	A	지역단위 통합방위지원체제
		B	국가자원 관리
		C	병참선 관리 및 군수지원 관리
		D	Cyber 공격 대비
3	국민생활 안정	A	국민의 기본생활 안정
		B	사회 안정 및 치안질서 유지
		C	전시 국민보호대책 강구
		D	Cyber 공격 대비

6) 사건번호 : 기관별 일련번호 부여

7) 제목 : 사건의 전체를 알 수 있고, 관련분야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집약된 내용 기술

8) 내용 : 상황(출처, 내용), 피해내용(조치 관련 상황자료)을 기록

가) 출처 : 발생 사건의 제보기관을 기술

나) 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성, 논리성, 조치내용의 구체성, 피해주체 및 객체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기술

- 누가 : 적이~, 불순분자가~, 적 항공기가~, 적 미사일~
- 언제/어디서 : 일시 및 장소(시・군・구 행정단위까지)
- 무엇을 : 건물, 시설, 인명, 시스템 등
- 어떻게 : 가해자의 무기체계, 수단 및 방법 등

  - 복합 상황은 관련내용 추가

- 왜(필요 시 포함) : 조치할 내용을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경우

-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 있을 때

다) 피해내용 : 물리적·기능적 피해 포함(인명·시설·장비, 시스템 피해, 물자 수급/생산량 등) 산출근거에 의거 구체적 기술

라) 주요 검토/조치사항 : 주관/보고기관, 유관기관/업체가 조치 및 협조하여 조치결과를 제공해야 할 내용기술

* 기관명 : 조치기관에서 조치할 내용과 협조할 내용을 구체적 기술

마) 결과보고 :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기관, 최초/완료보고 기간(시간)

- 수신처 : 전시정부종합상황실

  * 자체사건은 부·처/시·도 경우는 해당 종합상황실 등

- 최초상황발생보고 : 사건접수 후 최초 처리하여 보고해야 할 시한
- 조치결과보고 : 사건처리결과를 종합(유관/업체), 종합조치결과를 보고하는 시한

9) 사건계획을 통제하는 주무 연습단장 : 중앙통제단장, 시·도 연습장 등

10) 발신 : 연습총감, ○○○연습감(장)

11) 수신처 : 처리/보고기관, 관련기관 구분 기록

가) 처리/보고기관 : 사건 접수 후 최초 사건처리기관/사건결과를 종합하여 주무기관으로써 조치 및 처리할 기관을 명시

나) 관련기관 : 사건을 처리하는데 관련 있는 기관/업체에 전파하고, 관련기관/업체가 해 분야의 협조/조치결과를 통보할 기관/업체 명시

사건계획조치 (예문)

1. 메시지 부여

- 통　제 : 중앙계획통제단
- 일　시 : 0000. 0. 00. 14:00~16:00
- 주무기관 : 행정안전부
-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 부여방법 : 비상대비정보시스템

2. 상 황

- 내 용
  - 용산구 일대에 적 SCUD에 의한 화학탄 5발 동시 투하로 건물 파괴와 대량 전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교통마비 및 대혼란이 발생하였음

- 피해내역
  - 인명피해(사망:15,660명, 중상:5,220명, 경상:5,220명, 실종2명)
  - 건물피해(서울타워 20% 파괴, 국제빌딩 30% 파괴)
  - 오염지역(용산역 광장에 300㎡ 신경 작용제 오염)

3. 사건조치 체계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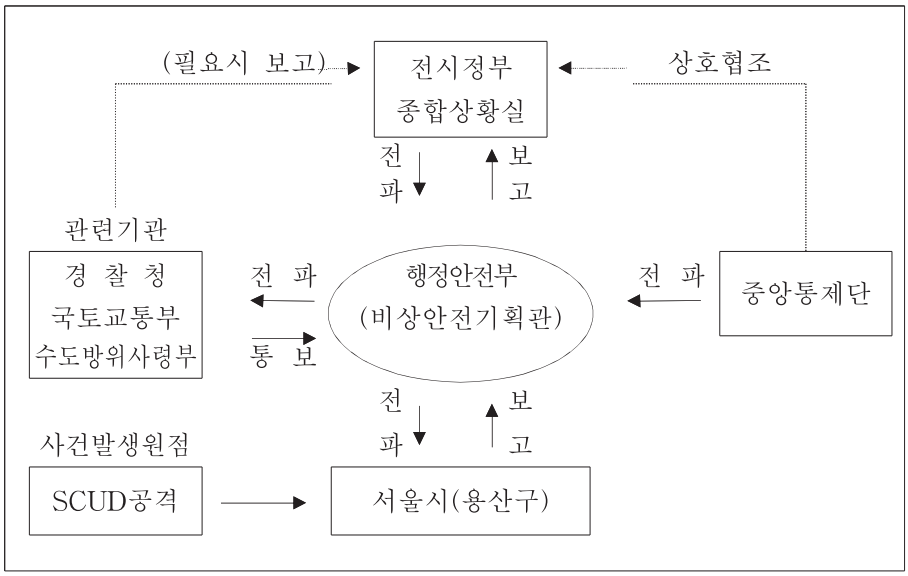

4. 연습내용 및 조치요원 행동은 다음과 같다.

○ 적 화학탄 공격 시 주민보호 및 관련기관과 협조대책(자치행정국장)

- 경보전파 수단(방송, 사이렌) 및 관련기관 연락 대책
  - 구청에서 주민에게 전파방법(충무계획 시행)
  -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인원지정(충무계획 시행)

○ 전 사상자 발생 시 처리대책(보건환경국장)

- 사망자 15,660명 매장, 중상자/경상자 5,220명은 치료 및 인근병원 후송(중환자 헬기로 후송)
  - 사망자 매장 및 화장 장소 선정 토의
  - 중환자 치료하는 의사 및 병원 토의

○ 오염지역(용산역 300m)에 대한 제독방법(자치행정국장, 軍화학대장)

- 오염지역에 대한 수방사 화학단 지원요청 및 제독
  - 제독차량, 지원인원, 위험지역 경시 등 토의

○ 비축방독면 방출 및 생필품 배급대책(경제통상국장)

○ 화학탄 공격 시 고층 및 지하 대피 시 안정을 위한 적절성 검토

5. 결과 보고

○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해당사항 및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시정부종합상황실에 보고

- 최초상황발생보고 : 사건계획접수 즉시
- 조치결과보고 : 접수 후 6시간 이내

○ 전시정부종합상황실장은 사건목적 달성 여부 판단 후 종결조치

별지 3 전시현안과제 작성지침

1. 전시현안과제 의의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각급 기관 전시임무와 관련하여 다수기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습기간 중 집중 토의함으로써 전시대비계획과 위기관리매뉴얼 보완

2. 과제별 선정기준・책임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책임
중앙통제단 전시현안과제	• 국가차원에서 검토 요구되는 사안 • 충무계획과 국가전쟁지도지침을 기초 • 부・처・청/시・도 임무와 기능, 특성 등을 고려 • 전년도 연습결과 검토 필요사항 • 다수 기관간 협조가 필요한 중요 사안	중앙통제단장 (각급 기관장)
기관자체 전시현안과제	• 부서별 임무와 기능에 맞는 과제 ※ 중앙통제단 전시현안과제와 연계 유지 • Top-down식 과제선정 부여 - 중앙행정기관 → 청 단위 - 시・도 → 시・군・구 - 중앙행정기관/시・도 → 산하기관/업체	각급 기관장

3. 작성지침

가. 각급 기관은 중앙계획통제단 전시현안과제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자체 전시현안과제를 작성한다.

나. 전시현안과제 연습방법인 과제토의, 상황조치연습, 실제훈련 등 연습방법을 결정하고 연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묘사한다.

연습방법	연 습 준 비 / 실 시
전시현안과제 토의	토의주제 선정→ 충분한 사전검토→ 토의일시, 장소, 대상판단, 주제발표기관 선정 등 세부계획 수립
상황조치연습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상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유휴부서가 없도록 전쟁수행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하여 사건처리
실제훈련	전시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

다. 전시현안과제 작성 시 착안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각급 기관 임무/기능별 현안과제

구 분	작성 시 착안사항
중앙행정기관	○ 충무 집행계획의 정책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할 사항 ○ 산하기관 및 통제 업체, 단체 등 관련기관(부서)이 상호 협조 처리할 사항
시・도 / 시・군・구	○ 충무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을 심층 검토할 사항 ○ 민・관・군의 통합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 ○ 국민 안보의식 고양 및 전시행동요령을 주지시킬 수 있는 사항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시현안과제

구 분	작성 시 착안사항
접적지역	○ 주민소산 및 이동, 재산거부 조치・활용 ○ 군사작전 지원 및 장애요인 해소
수도권지역	○ 주민 및 차량 통제 등 수도권 혼란, 마비 대비 ○ 전쟁초기 대량 전 사상자 및 시설파괴에 따른 구호 및 복구
중부지역	○ 피난민 수용 및 구호, 병참선 기능 유지
남부지역	○ 미증원군 및 물자기지 수용지원, 주요 산업시설 기능유지

3) 작전단계별 주요 현안과제

가) 국가 동원령 발령이전

○ 전쟁이외의 사태포함 위기관리와 관련된 과제
○ 사회불안심리 및 혼란 시 예상되는 주요 과제

나) 국가 동원령 발령이후

○ 전시체제 전환 및 정부행정기능 관련사태
○ 주민 및 차량통제 등 전쟁 공포심 확산으로 야기되는 사태

다) 전쟁발발 이후

○ 수도권 혼란 및 마비에 따른 각종사태
○ 전쟁초기 인명 및 시설 대량 피해 시 구호 및 복구
○ 국가 전쟁지도 및 행정기능과 군사작전 지원차질 사태

4) 전시현안과제를 선정,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감독 책임은 직근 상급기관에 있다.

4. 전시현안과제 토의 절차

가. 제1단계는 토의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 전시현안과제와 세부 소요과제 선정
○ 토의 장소, 일시, 참석대상, 발표자 및 사회자 선정
○ 발표과제에 대한 관련기관 협조조치
○ 부・처/시・도는 중앙지정과제에 대한 자체 세부과제 선정
○ 관련기관(청, 시・군・구 등)의 전시현안과제 선정 부여

나. 제2단계는 실제로 토의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 단계별 토의방법

	1차 : 부서별 토의 (小 group)	2차 : 종합 토의 (大 group)
토의 과제	기관자체 실·국 단위 선정과제	중앙지정 현안과제 (타 기관과제 포함)
주관	실·국장급	기 관 장
참가 대상	해당 부서 실무자급 이상	• 부·처 과장급 이상 • 유관기관/업체대표 • 타 기관 지정자
토의 형식	자유토론식 토의 (관련계획/법규 참조)	문제해결식 토의 (빔프로젝트 이용)
검토 사항	• 분야별 과제와 관련한 충무계획 검토 • 문제점 도출	• 타 부처를 포함 부여된 현안과제 종합 검토 • 정책/법령 반영사항 도출

다. 제3단계는 전시현안과제 토의 결과를 조치하는 단계이다.

○ 충무계획 수정 보완
○ 관계기관 협의, 정책/법령 개정사항 조치
○ 필요시 단기·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행
○ 다음 해의 사건계획/필요시 실제훈련 반영

5. 전시현안과제 작성 양식 및 요령

가. 전시현안과제 작성

전시현안과제 제목

(○○부・처/ ○○시・도)

1. 토의 목적

2. 상황 조성

3. 전시 주요현안 토의계획(기관장 주관)

가. 토의 일시/장소

나. 주 재

다. 참석대상

라. 발표

마. 주요 토의사항

4. 자체 실・국 토의 계획

가. 토의 일시/장소

나. 주 재

다. 참석대상

라. 토의 및 검토사항

나. 작성 요령

1) 과제 토의목적

주제 선정 이유 및 토의를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다.

2) 상황조성

가) 전시대비 중요과제

기관별 임무 및 특성, 안보환경에 부합된 토의 주제를 선정하여, 다수 기관의 협조 및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무계획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그 내용은 연습 간 군사상황 시나리오와 연계되어야 한다.

나) 위기관리 중요과제

표준매뉴얼의 위기대응방향, 기관별 책임과 역할,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되 실무 매뉴얼의 위기 경보별 제반조치 및 역할 등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며 그 내용은 연습간 군사 상황 시나리오와 연계되어야 한다.

3) 전시현안과제 토의계획

가) 토의 일시 및 장소 : 구체적으로 기술

나) 주재 : 토의주재 장관 또는 시·도지사

다) 참석대상 : 토의 참석자의 직책을 명시

라) 세부 발표과제 : 발표과제 제목 및 발표자 직책 명시

마) 주요 토의사항

과제 발표에서 제기된 대비책의 타당성 및 시행가능성 등 토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서 자유토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

4) 자체 실·국 토의계획

가) 일시 및 장소 : 토의 일정은 가급적 종합과제토의 이전에 계획/실시하고 장소는 각국(실)별로 별도의 장소를 사용

나) 주재 : 부서장 또는 유관기관장

다) 참석대상 : 각 국별 관련 실무자급 이상

라) 검토 및 토의사항 : 각 국별 전시현안과제와 관련하여 세부과제 선정

※ 현안과제와 관련이 없는 부서는 별도 과제 선정, 토의 가능

5) 과제반영 상황조치연습

가) 사건번호/제목 : 중앙통제단 부여 번호 및 제목

- 현안과제 해결 및 상황 유도에 필수적인 중앙통제단 및 자체사건계획 번호 및 제목을 기술

나) 주요 검토 및 조치사항

- 사건계획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주요검토 조치사항 및 대비책을 기술

다) 관련기관 : 관련 기관 및 부서명을 기술

전시현안과제 작성 (예문)

□ 과제명 : 충무사태·전시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식별 및 대처방안

(기관명)

1. 과제토의 목적

전쟁이전 충무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소강상태로 전환 또는 국지전 양상으로 전환되어 일부 경제활동이 보장될 경우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민생활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해요소를 식별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지속 발전시켜 전시대비계획에 반영

2. 상황 조성

상황 #1

충무사태가 발령된 후 전쟁이 발발되지 않고 장기화됨에 따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소비자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일부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상황 #2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국적으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소비자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독과점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위 남용행위와 일부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전시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3. 전시현안과제 토의계획(기관장 주관)

가. 토의일시 및 장소 : 2개 과제씩 3차로 구분해서 실시

구 분	일 시	장 소
1차토의	0000. 0.00(화) 09:30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2차토의	0000. 0.00(수) 09:30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3차토의	0000. 0.00(목) 09:30	공정거래위원회 상황실

나. 주 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다. 참석대상 : 8개국 48명

○ 본 부 :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임위원(3), 대변인

○ 각 국 : 국장(8), 총괄과장(8)

○ 상황보고 회의 참석대상자 / 발표부서 과장(25명)

라. 발표과제(발표자)

○ 전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000국)

○ 전시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방안(000국)

○ 전시 예산편성과 운영방안(000실)

○ 전시 독과점 구조형성 억제를 위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방안(000실)

○ 전시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000국)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000국)

○ 전시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000국)

마. 주요토의 사항

○ 1차 : 전시 단계별 공정거래 주요정책방향 검토 / 충무사태와 전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정책방안 / 전시 예산편성방안 토의

○ 2차 : 전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조사방안 검토 / 독과점기업 구조형성 기업결합 심사방안 검토

○ 3차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단속방안 검토 / 충무사태 및 전시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검토

4. 자체 실국토의 계획

가. 토의일시 / 장소 / 주재

일 시	장 소	주재
0000. 0.00(수) 14:30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실 회의실	000관
0000. 0.00(목) 14:30	000 회의실	000관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0. 0.00(금) 14:30	000국 회의실	000국장
	000국 회의실	000국장

나. 참석대상

○ 관련부서 사무관급 이상

다. 토의 및 검토사항

○ 000국 : 전시 단계별 임무분석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

○ 000국 : 전시 임무분석 및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방안 검토

○ 000실 : 전시 위원회 예산편성 검토

○ 000관 : 전시 독과점 구조형성 억제를 위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방안 검토

○ 000국 : 전시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지남용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방안

○ 000국 : 전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 검토

○ 000국 : 전시 단계별 임무분석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방안 검토

별지 4 충무계획시행도표(Matrix) / 통합상황조치모델

1. 개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해당 조직부서 운용과 활동, 관련기관이 협조관계를 종합 정리한 도표로 충무계획시행도표와 통합상황조치모델이 있다.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충무사태 및 전쟁진전 상황별 임무수행절차를 도표화한 것으로 기관장의 기능별 임무수행 점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주요 상황별로 각 부서와 관련기관의 조치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기능 및 개인별 행동과 조치절차를 체계적으로 숙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작성요령

가. 충무계획시행도표 작성요령

1) 도표양식

가) 횡열 : 위기조성과 전쟁단계별로 구분한다.

전쟁 이전	을지Ⅲ종, 을지Ⅱ종(동원령), 을지Ⅰ종, 계엄선포
전쟁 이후	적 공격 개시일(D일), 전쟁지속일 (D+1 ~ D+3일)

나) 종열 : 조치할 부서를 국·실단위로 구분한다.

2) 각 부서별 핵심 조치사항을 기술

통합상황조치 차원에서 중요 사항만 기록하고, 필요 시 관련 협조기관 및 법규를 제시한다.

3) 개념 위주보다 행정조치사항 위주로 상세히 기록하되 필요 시 세부현황, 기

록, 도표, 요도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특히 충무계획시행도표는 기관 전체 또는 실·국 단위, 산하기관별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해 보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전시대비훈련을 하는 것이다.

나. 통합상황조치모델 작성방법

1) 모델선정

중앙행정기관의 모델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취약상황을 고려하고 시·도 모델은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건 등을 선정한다.

2) 관련 중앙행정기관 처리내용을 통합하여 상황조치를 하도록 작성하되 보고 및 결심사항, 법규 및 참고문헌, 협조기관 등을 포함한다.

3) 개념위주보다 행동조치사항 위주로 상세히 기록하고 담당 부서의 세부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필요 시 현황도 첨부한다.

다. 충무계획시행도표 및 통합운용도표모델을 작성하여 활용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요소를 동시통합과 집중운용이 가능(Synchronization)하다.

2) 담당자의 업무숙지와 우발상황 대처가 용이하다.

3) 기관장의 신속한 판단과 결심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 기관 및 개인의 임무수행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누락요소와 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라.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상황으로 구성한 사건계획과 보조 메시지,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상황조치모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각 부서(기관)와 통합하여 조치해야 할 대형사건 “예”는 다음과 같다.

대량 사상자 발생, 집단괴질 확산, 피난민 폭주, 악성 유언비어 유포, 산업단지 피해, 동원시행 차질, Cyber피해, 저유/가스시설 폭파, 생필품 부족, 도시 공동구 파괴, 단전·단수, 독가스 살포, 국민홍보기능 마비 등

별지 5 위기관리연습(Crisis Management Exercise)

1. 개요

가. 위기관리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 발생 시를 가정하여 을지연습 전 실시하는 연합연습이다. 위기관리연습은 컴퓨터 모의를 하지 않고 주요사태목록(MESL)에 의해 사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기능별 관찰관과 사후 검토반을 운용한다.

나. 연습은 韓 합참 및 연합사의 위기조치반과 참모들의 위기관리능력을 숙달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연습에는 합참에서 통제하는 작전사급 부대 등이 참가하며 이들 부대는 대응반을 운용한다.

다. 위기관리연습은 합참 및 연합사의 장 등이 지휘관 상황보고와 사령관 통합보고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예하 작전사 및 구성군 지휘관들도 영상회의(VTC)로 연습에 참가함으로써 한·미 고위 지휘관들이 위기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한 가운데 제대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2. 연습진행

가. 위기관리연습의 기간 및 장소 등 일반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은 위기관리연습(CMX#1)의 경우 1일로 하고 위기관리연습(CMX# 2~4)까지는 3일간 실시한다.

2) 군사대응반 장소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경우 용산에 설치·운영한다.

나. 위기관리연습 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구분	위기관리연습 (CMX#1)	위기관리연습 (CMX#2)	위기관리연습 (CMX#3)	위기관리연습 (CMX#4)
내용	· 위기선포 결심 · 라운드 하우스 건의 결심 · FDO / FMP 요구	· 라운드 하우스 건의 · NEO 지원준비	· 라운드 하우스 승인 · 화스트 페이스 건의 결심	· 화스트 페이스 건의 · NEO 시행

3. 진행방법

가. 위기관리연습은 CMX#1과 CMX#2~4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연습 각본에 의해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고조시켜, 실시자들이 방어준비태세변경을 건의하는 등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나. 위기관리연습(CMX#1)은 사전 발간된 상황조성전문(SDM#1)의 상황에 따라 초기대응반 및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어 상황조성전문에 근거한 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작전참모부장 보고 및 사령관 결심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다. 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적절히 관리할 경우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나, 자칫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 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쟁으로 치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연습 시에는 군사적 대응과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 정보, 군사, 경제요소를 함께 고려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대응반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라. 위기관리간 적의 오판에 의한 군사도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외교, 정보, 경제 분야의 다양한 조치가 요구되므로, 한·미 국방부, 합참 및 연합사는 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회의(MCM) 등을 통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면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며, 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분석하는 동시에 도발 시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억제방안(FDO)과 전투력증강(FMP)요청 등을 실시한다.

마. 위기관리연습(CMX#1)이후 위기관리연습(CMX#2)가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치, 군사, 전략적 상황은 상황조성전문(SDM#2)을 통해 조성하며, 방어준비태세 변경 승인 및 비전투원후송(NEO)인가, 미 합참의 준비 및 전개명령 발행과 최초 신속억제방안(FDO) 및 전투력증강(FMP) 요청전력 전개가 이루어지면 위기관리연습(CMX#2)이 진행된다.

바. 이후 위기관리연습(CMX#2~4)의 상황 조성은 통제부에서 발행하는 주요사태목록(MSEL)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미간 주요현안토의를 위한 군사위원회의(MCM),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된다. 위기관리연습(CMX#4)에서는 1부 모의지원하 연습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상황이 건의 또는 선포되어 1부 연습에 연계되거나, 연습각본에 따라 위기관리연습을 1부 연습에 연계시키지 않고 실시한 후, 1부 연습은 별도의 연습개시상황을 조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별지 6 실시부 편성 및 운용

1. 실시부 임무 및 기능

   가.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기능유지

   나. 전시대비계획의 시행 및 검토

   다. 상황처리 및 대응조치

   라. 산하/유관기관 협조

2. 실시부의 일반적인 편성은 다음과 같다.

   (“예”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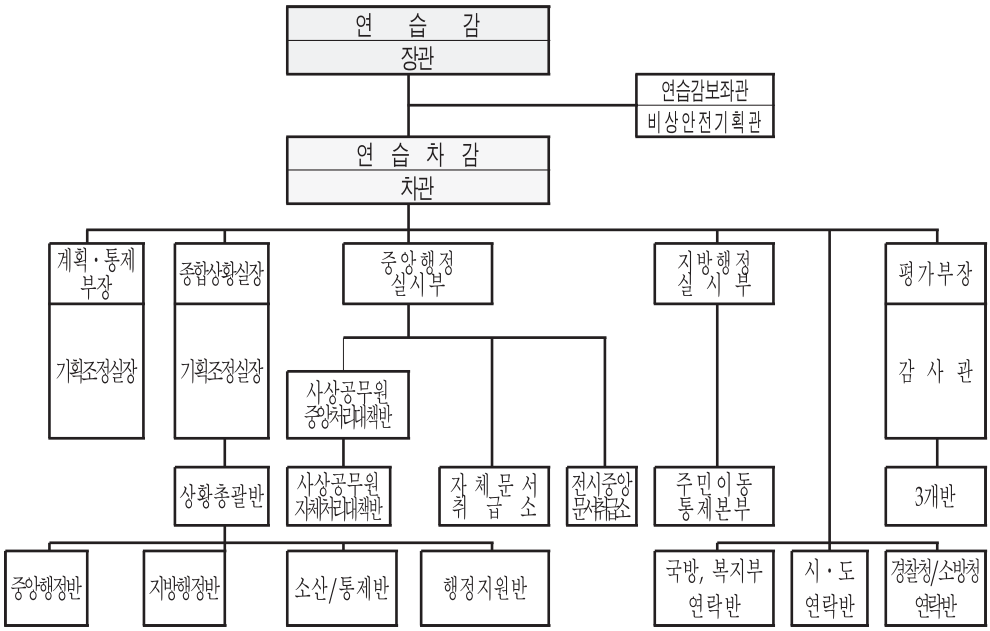

   가. 실시부(반)는 전시 직제로 전환된 기구이며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용한다.

   나. 실시부는 24시간 기능유지를 위해 2~3교대로 근무를 편성하고, 근무교대는 국장급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3. 실시부 요원 교육내용

실시부는 연습에 직접 참여하여 연습각본에 따라 부여된 상황을 처리하고 결과를 유지하는 비상대비훈련의 핵심요원이다. 비상대비담당부서에서는 각 국·실의 실시부 요원이 전시 임무는 물론 아래 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분야별 연습 준비 요령

나. 전시대비계획 및 전시 직무수행 절차

다.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상황처리 및 보고요령

라. 상황(메시지) 처리요령

마. 상황실 운용 및 기능반별 활동

바. 각종 보안업무 준수사항

사. 그 밖에 업무에 관한 협조사항 등

4. 상황조치 요령

가. 상황접수 즉시 관련 실·국장 및 반원을 소집하여 충무계획시행 도표 및 통합상황조치모델을 활용하여 여러 부서가 함께 상황을 처리하여야 하며 실무자 임의로 사건을 단독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각급 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상황조치연습이 되도록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상황(메시지)을 처리한다.

〈상황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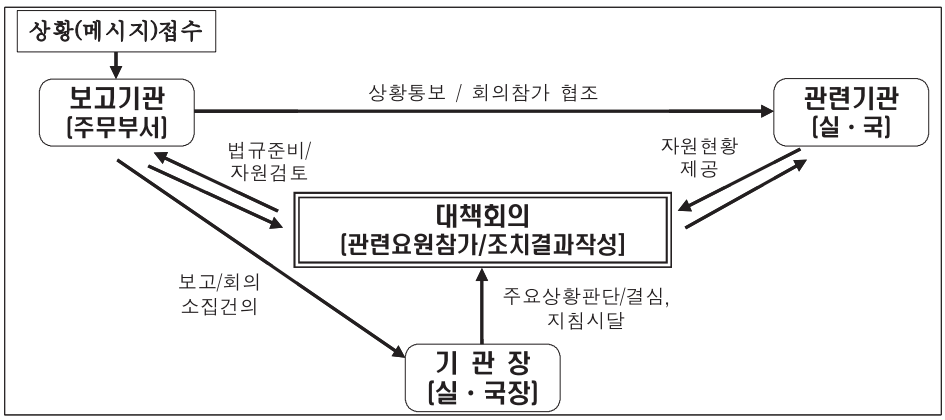

별지 7 정기 일일통제보고 양식

(기 관 명)

1. 사건접수 / 부여현황

가. 중앙통제단 사건접수

사건번호	사건전파일시	사건제목

나. 자체사건 부여

구 분	계 획	실 시	증 감
금 일			
누 계			

2. 실제훈련현황(충무훈련)
가. 훈련종목 나. 훈련일시/장소/주재 다. 참가기관/인원
라. 훈련내용 마. 기타 특이사항

3. 전시현안과제 토의현황
가. 과제명 / 과제구분(중앙통제단, 기관 자체)
나. 일시 / 장소 다. 참석자
라. 발표기관 마. 토의내용

4. 주요 실시사항
가. 일 시 나. 장소 다. 내용
라. 홍보반응(주민/시민단체참여, 홍보, 위문활동, 주요인사 방문 등)

5. 특기사항
○ 중앙통제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긴급보고사항(안전사고, 실제상황 발생 등)

별지 8 사후강평단 구성, 업무분장 및 운영사항

1. 사후강평단

   가. 정부연습의 계획/준비단계, 실시/통제단계, 사후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찰 및 분석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국가위기관리연습 및 전시대비연습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강평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다. 구성은 사후강평조정관과 사후강평분석관으로 한다.

2. 사후강평조정관 임무

   가. 분야별 사후강평분석관 업무 감독 및 조정, 통제

   나. 연습 전 사후강평 의제 선정 등을 포함한 사후강평계획 수립

   다. 연습 전 관찰/평가단과 업무협조·조정 및 연습진행 관찰·분석 실시

   라. 연습 종료 후 연습결과 종합, 사후강평회의 참석하여 발표

3. 사후강평분석관 임무

   가. 연습 전 평가대상기관별 연습관련 각종 계획 및 주요 현안 정책업무 연구 및 자료 수집

   나. 기능별 사후강평 의제 선정 및 세부 사후강평계획 수립

   다. 연습 간 업무분장에 따른 기능별 관찰 및 분석

   라. 연습종료 후 을지연습 발전을 위한 각 기능별 정책발전 소요 등 사후강평회의 자료 작성

4. 계약, 과업수행, 보수 및 근무지원

구 분	내 용
선발	○ 연 1회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선발하는 수시선발로 구분 ○ 기회평등 및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 선발을 원칙
계약	○ 계약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업무수행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시 익년도 재계약 ○ 계약의 해지사유는 해당 연도 계약서에 명시 ○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실시 ○ 재계약을 원하는 관찰/평가단, 사후강평단 요원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에 제출
과업수행	○ 연간 과업수행 내용, 기간 및 시간은 해당 연도 계약서에 명시 ○ 행정안전부(비상대비훈련과)는 관찰/평가단, 사후강평단 요원의 과업수행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는 재계약의 근거로 활용
보수 및 근무지원	○ 보수는 해당 연도 배정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 근무일수와 출근부에 서명된 근무일수를 확인한 후 개인계좌로 지급 ○ 기획재정부 예산방침 등에 따라 해당 연도 계약금액 변동 시에는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보수는 수정계약에 따라 지급 ○ 근무수행을 목적으로 청사 출입을 위한 출입증을 발급하고, 2급 비밀문서 취급 인가 ○ 사무실 배정, 책상, 의자, 서류함 등을 포함한 사무비품 제공 등

별지 9 평가부 업무분장

1. 평가부장

   가. 훈련평가분야 기관장 보좌

   나. 전반적인 훈련평가 및 통제

2. 평가반장

   가. 평가부장을 보좌하여 평가의 전반을 조정·통제

   나. 평가결과자료 종합 및 보고서 작성

   다. 평가요원의 직무교육

   라. 상급 및 인접 그리고 산하기관 평가단과 업무협조

3. 부서 평가반

   가. 소관 분야별 세부 평가계획수립 및 점검표 작성

   나. 분야별 실시 및 통제부 업무 전반적인 평가

   다. 분야별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평가반장에 보고

   라.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유관 / 산하기관 평가반

   가. 기관의 고유 임무와 특성 고려한 평가/점검표 작성

   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별지 10 문제점 선정 보고서

1. 문제점 제목 일람표

기 관 명 :

(1) 연 번	(2) 분 야	(3) 처리성격	(4) 문제점 제목	(5) 관련계획 또는법령	(6) 도출기관	(7) 처리기관

(작성요령)

(1) 연 번 : 1, 2, 3, 4, ... 로 순번기입

(2) 분 야 : 충무계획 구조의 분야(정부기능, 국가동원)를 구분 기입

(3) 처리성격 : 문제점 처리성격에 따라 계획관련 문제는(계획), 법령 관련 문제는(법령), 예산관련 문제는(예산)으로 구분 기입

(4) 문제점 제목 : 문제점 제목을 기입

(5) 관련계획 또는 법령 : 문제점과 관련되는 법령(전·평시), 계획(전·평시)명을 기입. 예: 충무4700

(6) 도출기관 : 문제점을 도출한 기관명(본부, 외청, 시·도, 산하기관, 단체)

(7) 처리기관 : 문제점을 조치 처리하여야 할 기관명(본부, 외청, 시·도, 산하기관, 단체)

2. 문제점 선정 보고서식

※ 각 문제점별로 1문제당 1매로 작성하되 추가도 무방함.

□ 제　　목

(문제점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붙임)

□ 현 실 태

(문제가 되는 현행 실태를 기술)

□ 문 제 점

(문제되는 부분을 항목별 명시)

□ 개선방향

(개선 또는 시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적인 조치 계획을 설명)

□ 관련계획 또는 법령

(문제점과 관련되는 전·평시 계획 또는 법령명을 명시, 예산관련 문제는 소요예산(추정)액을 제시)

□ 도출기관 : 문제점을 도출한 기관명

□ 처리기관 : 문제점을 조치 처리하여야 할 기관명

별지 11 문제점 처리결과 보고서

관리 번호	문 제 점	대 책	실 적	비 고
	제목(실태 및 문제가 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술)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향을 개조식으로 기술, 예산 관련 사업은 소요예산액 기재	대책에 대한 기간 중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기재, 예산관련사업은 기간 중 예산집행액을 기재	완료된 사업은“완료”, 추진 중인 사업은 완료예정일을 기재

별지 12 문제점 처리카드

<table>
<tr><td colspan="2">(1) 번호 및 서식</td><td colspan="2">(3) 도출기관 :</td></tr>
<tr><td colspan="2" rowspan="2">(2) 문제점</td><td colspan="2">(4) 처리기관 :</td></tr>
<tr><td colspan="2">(5) 분　　야 :</td></tr>
<tr><td>(6) 조치계획</td><td>(7) 완료예정</td><td>(8) 추진실적</td><td>(9) 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기재요령)

(1) 번호 및 제목: 문제점 번호와 제목을 기재한다.

(2) 문 제 점: 문제가 되는 실태와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록한다.

(3) 도출기관: 문제점의 도출기관을 기재한다.

(4) 처리기관: 문제점의 처리기관을 기재한다.

(5) 분　　야: 문제점이 관련되는 전시대비계획 분야를 기록한다.

(6) 조치계획: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기록한다.

(7) 완료예정: 조치계획의 조치완료 예정 연·월일을 기록한다.

(8) 추진실적: 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반기별(6. 30 현재 12. 31현재)로 기록한다.

(9) 비　　고 : 본 문제점에 관련된 법규, 중기 사업계획 반영여부, 문제점 처리진도 결과보고서 제출여부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본 카드는 뒷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양면 인쇄한다.

(규격 : A4지)

별지 13 실제훈련 상황조치예문

(훈 련 명 : 교량시설 긴급복구훈련)

1. 상황

적 특작부대 공격에 의해 000 교량 일부구간이 파괴되어 차량 통행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인명피해 : 사상자 5명(사망1명, 중상2명, 경상2명)
- 시설피해 : 교량 일부 파괴(10M)

2. 훈련중점

가. 피해 상황발생 시 상황전파체계 및 초동조치요령

나. 교량복구 및 우회도로 개설 등 복구절차 숙달

다. 복구업체·물자 동원능력 및 계획의 실효성 검증

3. 상황조치 절차

가. 훈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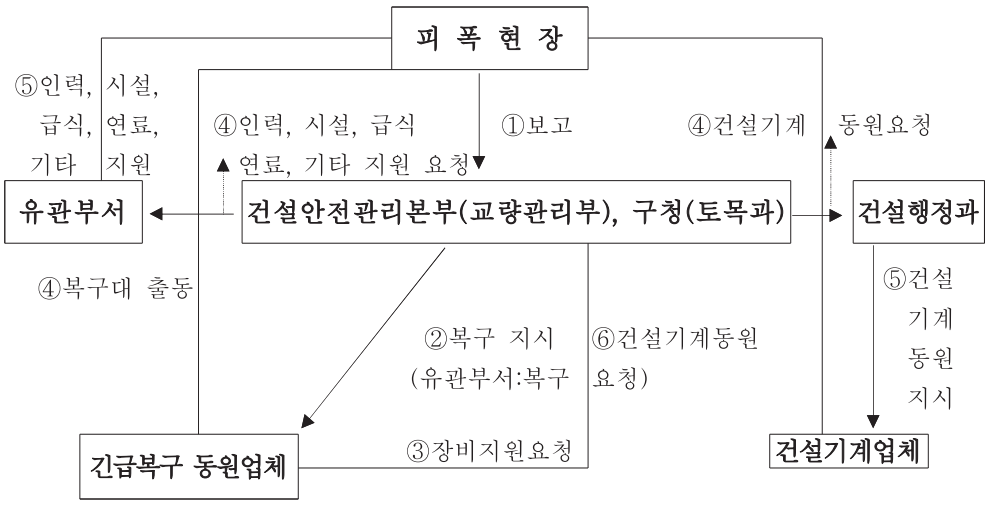

나. 계획 및 준비단계

1) 훈련계획수립

가) 총괄계획 : 시・도 건설안전관리본부(과)/시・도 비상대비업무담당과

나) 기관별 세부계획

(1) 군부대・경찰 : 피해지역 경계계획・출입차량・인원통제 등 도로통제 계획

(2) 시・도 건설과 : 건설・중기・중기정비업체 등 훈련 참여 중점관리 대상업체 동원준비 및 관련계획 검토

(3)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구(군)청 토목과 : 관련 부서에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 기타 지원 사항 협조 등 계획준비

(4) 긴급복구 동원업체 : 훈련자재 동원계획 및 비축물자 확인・준비 등

(5) 기타 관련기관 : 교량 부설시설물 관련 조치 및 협조계획 등 훈련 실시에 대한 홍보계획 등

2) 관계관 협조회의

가) 1차 : 총괄계획 수립 후, 관련기관 담당자 참석 훈련계획 설명

나) 2차 :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기관장 및 담당자 참석 하 협조 및 조정

다. 실시단계

1) 피폭 상황발생 시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및 관련 구청(토목과, 보건소)에 상황보고 실시 및 유관부서 상황 전파

- 사상자 후송 조치, 피해지역 인원 및 차량 출입 통제/경계 실시 등

2) 상황을 접수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긴급복구 업체(참가시설, 유관 부서)에 긴급복구를 지시

3) 긴급복구 동원업체는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건설안전 관리본부(교량관리과) 및 군·구청(토목과)에 요청한 후 복구대를 출동

4) 건설안전관리본부(교량관리부) 및 군·구청(토목과)은 건설과에 건설기계 동원을 요청하며,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은 관련 부서에 요청

5) 건설과는 건설기계업체에 건설기계 동원을 지시, 관련 부서는 인력, 시설, 급식, 연료 등을 현장에 지원

6) 피해현장에 도착한 복구반(복구감독)은 피해위치, 피해정도, 유관 부서 피해(상수도,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등 피해수량) 등을 파악, 자재 이동로 및 불가능 시 기 지정된 우회도로 활용여부 등 확인

7) 복구감독은 출동 확인사항에 대한 결과를 복명(피해사항 복구방법 검토, 자재종료 및 사용수량 등) 복구방법을 결정

8) 동원업체는 복구자재 운반 후 긴급복구를 실시

가) 복구단 편성 : 관리반, 기술반, 자재반, 장비반, 시공반 등(자체실정에 맞게)

나) 복구인력 및 자재

(1) 인력 : 토목기사,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콘크리트공, 장비조장, 기타

(2) 중기 조종원 : 크레인, 트레일러, 덤프트럭, 불도저, 윈치, 디젤함마, 콤퓨레샤, 기타

(3) 자재 : 조립식 교각, 복구용 강판현, 복공판, H-BEAM, H파일, L형강, 가마니, 볼트넛, 브레이싱, 플레이트 기타

다) 예정 공정표에 의한 복구실시

복구대이동→인력·장비지원요청 및 인수→자체구입 자재확보→진입로 구축→파괴물제거 및 준비→H-PILE항타 및 가마니쌓기→조립식 교각 설치→L형강설치→복공판설치→정리작업

라. 종료 및 후속조치단계

1) 훈련결과 보고/자료존안

가) 훈련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발췌

나) 향후 훈련을 위한 참고자료(훈련계획, 유인물 영상물 등)

2) 훈련간 동원된 자재·물자에 대한 원상복구 및 추가 존안·관리확보

가) 사용간 손상된 자재·물자추가 확보

나) 훈련간 부족자재·물자 예산반영 확보 등

4. 훈련참여기관 임무

참여기관		임 무
군 부 대		◦ 피해지역 경계병력 배치
경 찰 서		◦ 피해지역 도로 및 인원통제, 원점보존
시·도	건설과	◦ 건설·중기·중기정비업체 동원지정
	비상대비 담당부서	◦ 인력동원지정, 훈련실시 홍보협조
	보건소	◦ 병원, 의료시설 동원·지원
	농수산유통과	◦ 양곡 배급소 동원·지원
	교통기획과	◦ 수송장비 동원·지원
건설안전관리본부		◦ 기동복구반 출동지시 ◦ 복구감독 현장 도착 피해정도 파악 및 복구방법결정 ◦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복구지시
군(구청)		◦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자원·시설 지원 ◦ 복구공사소요 1종 인력중 복구대 능력초과 자원지원 ◦ 복구공사 소요 주유권 교부 ◦ 복구공사 종사원의 취사 및 급식 요청시 지원 ◦ 기타 긴급복구동원업체 요청사항 지원·협조
긴급복구동원업체		◦ 복구대 현장출동(복구인력/자재) ◦ 예정공정표에 의한 복구실시

별지 14 훈련실시결과 보고 양식

(기 관 명)

1. 훈련실시 개요

가. 목 적

나. 중 점

다. 기 간

라. 대상지역

마. 훈련분야 및 대상

훈련분야	훈련내용	훈련규모	비 고

바. 참가기관 현황(기관수/참가인원)

1) 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3) 단체 및 업체

2. 분야별 훈련결과

가. 동원훈련 결과

1) 훈련통지서 교부현황

구분 / 훈련분야	계획인원 및 대수	통지서 교부				미교부	미교부 사유
		계	수령자				
			본인	가족	기타		
계							
인력							
차량							
건설기계							

2) 응소현황

구분 / 훈련분야	계획인원 및 대수	응소자수	응소율	시차별				미응소
				H시 이전	H+ 30분	H+ 1시간	H+ 1시간이후	
계								
인력								
차량								
건설기계								

3) 지연 도착자 내역

지연자	지연사유	비고

4) 미응소자 내역

미응소자	미응소사유	비고

5) 기타 특기사항

나. 복합피해대비훈련 결과

1) 훈련내용

2) 주요검토사항

3) 시간(* 실시일시 및 소요시간)

4) 장　　소

5) 실시기관

6) 훈련실시내용(* 훈련실시의 목적, 양적 실적을 망라한 일체의 훈련실시결과)

7) 훈련성과(* 목표달성여부 등)

8) 기타 특기사항

3. 문제점 도출현황

분　　야	문　제　점	조 치 계 획

4. 교육·홍보실적

5. 총평 및 건의

별지 15 정부연습(을지연습)/지역별종합훈련(충무훈련)변천사

□ 정부연습(을지연습)

○ **실시 배경**

- 1968. 1. 21. 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 5. 11)에 의거, NSC 주관하 비정규전 상황을 상정하여 '68. 7. 5 ~ 7. 7일까지 상황조치연습으로 '태극훈련' 최초 실시

○ **연 혁**

- '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 「포커스렌즈 연습」 실시
- '68년「태극연습」으로 최초 실시('68.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 이후)
- '69년 훈련명칭을 「을지연습」으로 개칭, 연 1회 실시
- '76년「을지연습」과 유엔사령부 「포커스렌즈연습」 통합('73. 대통령지시)
- '79년「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 통합('78 연합사 창설)
- '91~'93년「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연습」 분리, 6월·9월에 실시(남북고위급 회담)

1991년	1992년	1993년
9. 2 ~ 9. 5(4일)	6. 22 ~ 6. 27(6일)	6. 21 ~ 6. 26(6일)

- '94년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 경색, 정부·군사연습 통합실시로 환원
- '08년 UFL연습 ⇒ UFG연습으로 명칭변경(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 2008. 2. 25일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

- '13. 2. 2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비상대비기획관실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으로 기관명칭 변경
- '14. 11. 19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비상대비 민방위정책관실로 기관명칭 변경

- '17. 7. 26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통합·기관명칭 변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으로 업무 이관

□ 지역별 종합훈련(충무훈련)

○ '81년 국방부 주관 동원훈련으로 사업추진

○ '92년도 "향토방위훈련"은 합참주관 "화랑훈련"에 통합하고, "충무훈련" 명칭으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동 업무 이관

○ '93년 이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충무훈련" 실시

○ '08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동 업무 이관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국에서 동업무 수행

○ '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실에서 동 업무 수행

○ '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에서 동 업무 수행

별지 16 용어의 정의

1. 연습(演習, Exercise)
   실전상황 상정 전시대비 절차를 실제와 같이 모의하여 도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을지연습, 키리조블/독수리연습 등)

2. 훈련(訓練, Training)
   임무·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과 행동체득을 위한 조직적 숙달과정(충무훈련, 화랑훈련 등)

3. DEFCON(defense readiness condition) : 군 방어준비태세
   적의 전면전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규정한 체계

4. WATCHCON(watch condition) : 대북정보감시태세
   적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를 가리키는 군사용어

5. CAX(Computer Assisted Exercise) : 모의지원연습
   1, 2부 연습 연계를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모의로 실시(지원)하는 연습

6. CMX(Crisis Management Exercise) : 위기관리연습
   국내 또는 국제적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대를 방지하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절차연습

7. SDM(Scenario Directed Message) : 상황조성전문
   연습개시 이전까지 안보부처가 분석한 각종 위기상황과 연합사의 북한 주요 군사활동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전문으로써, 연습 참가기관들에게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유발 배경을 인식시키고 실전감 있는 연습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전문

8. C일(Commencement-Day) : 증원개시일
   미군 본토에서 부대 및 물자, 장비 등을 한국으로 이동하는 일자

9. M일(Mobilization Day) : 동원개시일

10. H-hour : 공격개시시간
    북한의 공격에 따라 한·미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을 받아 작계5027의 위기조치 대응종료 및 2단계(북한공격 격퇴)로 전환

11. D일(Day Attack) : 공격개시일

유엔군/연합군 사령관이 북한군과의 전투작전을 개시하는 일자

※ 출처 : 작계 5027-04 수정3호, 부록C, 연합사 작전시행지침서

12. MSEL(Master Scenario Events List) : 주요시나리오 사건목록

상황조치연습 실시를 위해 주요 사건 내용을 작성한 목록

13. WINS(wartime host nation support) : 전시주둔국지원

전시한반도에 증원되는 연합군에 대한 정부의 지원

14. STORY LINE : 연습각본

체계적인 연습진행과 실시를 위해 일련의 사건계획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묘사하여 작성한 연습 실시계획

11 국방전시대비연습 훈령

제정 국방부 훈령 제1244호(2010. 5. 19.)
개정 국방부 훈령 제1259호(2010. 7. 14.)
개정 국방부 훈령 제1321호(2011. 4. 14.)
개정 국방부 훈령 제1874호(2016. 1. 25.)
개정 국방부 훈령 제2164호(2018. 5. 18.)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56호(2019. 12. 13.)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05, 52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가 참여하는 각종 위기관리 연습 및 전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전반적인 체계와 절차를 명시하고 세부준비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해·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육·해·공군본부의 예하부대 및 기관

②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합참 규정 「연합 및 합동 연습·훈련규정」, 제대별 연습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쟁대비연습·훈련"이란 전쟁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관련요원의 위기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업무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이나 훈련을 말하며 정부연습 및 훈련, 군사연습 및 훈련으로 구분한다.
2. "정부연습"이란 전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정부연습,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이 관련된 가운데 실시하는 종합훈련, 단일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으로 구분한다.
3. "도상연습"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가상한 모의상황 하에서 사전에 진행계획을 준비하여 도상(圖上)으로 1개 기관 또는 수개 기관이 전시대비 계획에 따른 절차를 숙지시키고 숙달시키는 연습을 말한다.
4. "실제훈련"이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가상한 모의상황 하에서 준

비된 전시대비계획을 적용, 실제수단(인력, 물자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처하는 모든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5. "연습계획"이란 연습지시서에 의하여 통제 및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세부적인 연습의 통제와 실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연습각본"이란 연습을 위한 단계적 사건 전개과정을 각본(시나리오)이란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7. "사건계획"이란 체계적이고 실전적인 정부연습 유도와 통제를 위해 워게임 모의모델로는 묘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황을 조성하고 전시 발생 가능한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작성되는 주요사태에 대한 연습문서를 말하며 군사작전 모의시의 주요사태목록(Master Scenario Event List : MSEL)과 동일한 개념이다.
8. "주요사태목록(Master Scenario Event List : MSEL)"이란 군사작전 모의시 워게임 모델로 묘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상황을 조성하고 연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태의 목록을 말한다.
9. "PDE주기(Planning, Decision, and Execution Cycle)"란 대통령의 주요 결심사항 구현을 보좌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방부장관의 계획·결심 및 시행 주기를 말한다.
10. "훈련"이란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 숙달과정을 말한다.
11. "종합훈련"이란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이 관련된 가운데 일정지역(시·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역의 지리적, 안보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하는 실제훈련으로서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을 말한다.
12. "연습지시서"란 연습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발하는 연습준비 및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13. "전시전환훈련"이란 전시 편제대로 전환하여 전시 임무 수행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훈련을 말한다.
14.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이란 인터넷, 국방망 및 C4I망에 바이러스 침투 또는 해킹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상황조치훈련과 연계하여 이를 조치하는 훈련을 말한다.
15. "전시 국방상황 브리핑 훈련"이란 각 실·국의 지정된 브리퍼가 일일 전시 국방상황을 모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훈련을 말한다.
16. "해외 장비·물자 긴급조달훈련"이란 전시 또는 유사시에 구매토록 계획된 해외 장비·물자(또는 국내 긴급 조달 품목)를 조달하는 훈련을 말한다.
17. "병력동원훈련"이란 사전에 선정된 특정 부대를 불시 동원하는 훈련을 말한다.
18. "예비 지휘소 이동훈련"이란 현 지휘소 사용 불가 시 예비로 지정된 지휘소로 이동하여 전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휘하도록 보장하는 훈련을 말한다.
19. "관찰과제"란 관찰관들이 연습 간 집중 관찰하여 평가하고 조언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0. “사후검토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이란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기능과 합동 및 연합연습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예비역 장성으로 각종 전시 관련 연습시 사후검토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하고 사후검토회의를 주도하는 자를 말한다
21. “사후검토분석관”(이하 “분석관”이라고 한다)이란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기능과 합동 및 연합연습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예비역 영관장교 또는 국방부에서 퇴직한 일반직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각종 연습시 사후검토조정관의 통제를 받아 사후검토를 위한 사전연구, 사후검토과제 선정 및 수집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연습간 전쟁 기능별 사후검토과제를 분석하는 자를 말한다.
22. “연습”이란 전쟁기획, 준비, 시행을 포함하여 모의된 전시 군사작전이나 군사기동, 즉 전쟁계획(국가전쟁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훈령 등)이나 작전계획에 대한 절차를 숙지 및 숙달시키는 것으로서 연습은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기능으로부터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기능별 절차와 교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실제와 같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관찰단장”이란 예비역 장성으로 전시기능(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등) 및 각종 재난, 사이버 위기, 합동 및 연합연습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정책적 수준의 관찰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조언하고 사후검토반에 사후검토 자료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4. “관찰관”이란 전시기능(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등) 및 각종 재난, 사이버 위기, 합동 및 연합연습, 정부 부처 간 협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관찰단장을 보좌하여 기능별 관찰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25. “연습계획단”이란 제대별로 연습목표와 중점을 구체화하고 연습기본계획을 작성하며 사건(사태)계획, 연습각본, 연습지침, 일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작성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6. “상황조성 전문(Scenario Development Messages : SDM)″이란 본 연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가상적인 일반상황 및 특별상황을 모의한 문서로서 연습개시 후 최초보고 시 각종 상황판단 및 결심사항의 자료로 활용된다.
27. “통제단장”이란 계획된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유도하고 조정할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전·현직 장성급 장교 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선발·지정된 자를 말한다.
28. “전문통제관”이란 통제단장을 보좌하여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조정하고 기능실별로 제출된 자체사건계획을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추어 수정 보완할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영관장교 중에서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4조(연습의 종류 및 수행체계) ① 이 훈령에서 적용할 연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전쟁지도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
   가.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관련 중앙부처 주관)

나. 계엄 관련 연습(국방부 주관)
다. 자유화통합 관련 연습(통일부 주관)
라. 기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연습

2.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유형별 위기관리 연습
가.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 연습(행정안전부 주관)
나. 안보분야 연습(관련 중앙부처 주관)

3.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연합사 주관의 군사연습·훈련
4. 기타 해당부대장 또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연습

②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연습계획 및 통제체계는 별표 1과 같으며 특히,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정부연습을 시행함에 있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등 관련 부서(부대) 및 기관과 계획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합동 및 연합연습 체계 및 절차는 합참 규정을 적용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모든 연습은 관련법령 및 해당 연습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의한다.

④ 계획부터 평가 및 사후처리에 이르는 연습주기는 별표 2와 같이 지속적으로 환류되어 이루어지며 군사연습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에 대한 국방부 업무수행 추진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임무 및 책임

제5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정부연습에 관하여는 국방부차관, 군사연습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보좌를 받아 국방부 연습업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차관은 정부연습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국방부 및 각 기관에 대한 연습업무를 관장한다.

③ 동원기획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관리연습을 제외한 정부 및 국방부의 전시연습의 계획 및 통제업무를 총괄한다.
2.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연습계획 및 통제에 필요한 연습지시와 통제계획 등을 작성하여 관련 실·국과 각 기관에 제공한다.
3. 연습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합참, 연합사 등 대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정부부처와 군사연습 부대의 창구 역할을 한다.
4. 관련기관의 건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연습에 참가할 국방부본부와 국직부대 및 기관의 규모를 결정한다. 단, 합동부대는 합참에서 결정한다.
5. 연습을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통제, 관찰, 실무 요원들의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각 실·국과의 업무를 조정한다.
6. 국방부 사후검토반의 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연습결과 사후검토반 및 실·국 자체에서 도출된 후속조치 과제 처리에 관한 진도를 파악하고 종합현황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그 추진 실태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7.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을 위한 중앙통제단 사건계획 작성 시 국방부 각 실·국 및 합참, 각 군 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상황과 연계한 국방부 관련 사건계획의 작성을 협조, 조정, 통제, 감독한다.
8.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충무계획 등의 전시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 등 군 조직의 전시대비연습 시행태세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부 및 국방부 위기관리연습 계획 및 통제업무를 총괄한다.
2. 연습 간 국방부 전시 의사결정기구를 운용하여 장관의 정책적 판단과 결심을 보좌하고 군령업무 보좌 등 전쟁수행체계 정립 및 결심 지원 분야 임무를 수행한다.

⑤ 각 실·국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분야의 전시계획 발전을 위한 연습소요를 제기하며 연습에 관하여 동원기획관 또는 정책기획관과 협조한다.
2. 소관분야의 연습에 관한 각종 제원과 자료를 관리 유지하고 동원기획관 또는 정책기획관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자체 연습준비 및 교육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4. 연습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계획단과 통제단 편성요원 지원 요청 시 편성요원을 일정기간 지원한다.
5. 연습기간 중 실시할 소관분야의 연습과제를 도출하여 목적에 따라 실제훈련 또는 절차연습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관 계획, 예규 등을 발전시킨다.
6. 통제 및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직부대 및 기관에 대한 연습목표, 중점, 주요지침 등을 수립하여 하달하고 연습 간 시행여부를 조정, 통제, 지도·감독한다.

⑥ 국방부 연습 주무부서(동원기획관실, 정책기획관실)는 소관 분야의 정부연습 또는 군사연습시 정부부처와 군사연습 부대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⑦ 그 밖의 각 부서별 세부 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합참) ① 합참의장은 군사연습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합동부대에 대한 군사연습 업무를 관장한다.

② 군사연습을 위한 한·미 합의각서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하고 연합사와 협조 및 연락을 유지한다.

③ 효율적인 군사연습을 위하여 정부연습에 통합시킬 사건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중앙통제단 통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이 상호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국방부 연습계획·통제단과 합참 연습계획·통제단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연습간 전시업무수행체계 및 절차에 따라 국방부와 군사작전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정부연습이 군사연습과 분리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연습의 지원을 위하여 합동작전본부(Joint Operations Center : JOC)에 참모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적

정규모의 대응반을 편성, 운영한다.

⑥ 평시 합참(연합사 포함) 및 예하 작전부대의 연합 및 합동 군사연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도록 합동연습 및 훈련체계(Joint Training System : JTS) 및 합동연습·훈련계획(JointTraining Plan : JTP) 절차를 발전시키고 각종 연습 시에 적용한다.

⑦ 그 밖의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각 군 및 기관) ① 국방부의 연습계획 및 통제계획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② 연습에 참여하는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계획단 및 통제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대)과 협조하여 연습계획을 작성하고 연습실시 및 통제를 상호 협조한다.

④ 각 군 본부는 국방부에 대한 보고 및 정보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주요사건목록(MSEL, Master Scenario Event List)을 작성하여 공동 처리하는 등 연계성 있는 연습체계를 유지한다.

⑤ 국방부 연습 통제·평가조직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병력 파견은 수도권에 주둔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국직기관(부대)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파견병력 복귀 시에는 부대별로 위로휴가 등의 보상방안을 시행한다.

⑥ 그 밖의 세부임무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연습문서 작성) 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연습문서는 연습주관 기관(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및 합참, 연합사와 협조하여 작성한다.

② 해당연도의 국방부 각종 전시대비 연습을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와 작성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연습준비계획 : 연습계획단
2.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 : 연습계획단
3. 연습통제계획 : 연습통제단
4. 전시 주요현안 토의과제 및 사건계획 : 연습계획단
5. 강평 및 사후검토보고서 : 국방부 사후검토반
6. 그 밖의 필요시 작성되는 문서 : 해당 부대 및 기관

③ 기타 각 부대 및 기관 주관 하 실시하는 자체연습은 자체 계획에 따른 필요한 연습문서를 작성하여 연습 간 적용한다.

제3장 계획단계

제9조(한·미 합의각서의 교환) ① 연합연습 시 적용되는 한·미 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는 해당연도 연합연습을 위하여 합참과 연합사간에 교환되는 연습에 관한 기본문서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합의내용을 명시한다.

1. 연습개념

2. 연습단계 및 일정
3. 연습목표 및 중점
4. 연습장소
5. 연습 참가범위
6. 지원 및 협조 요구분야

② 합참은 연합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합의각서(안)를 확정한다.

③ 합참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국방부(동원기획관실)에 보고한다.

④ 합의각서 관련문서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연습목표와 중점 설정) 전시대비 연습의 다음연도 연습목표와 중점 설정은 해당연도 연습 종료와 동시에 착수하여 연습계획 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각 실·국은 연습중점을 설정하여 동원기획관실에 제출한다.
2. 동원기획관실은 국방부 전시 기능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정리하여 연습목표 및 중점(안), 다음 연도 통제단 및 관찰단 운용계획 등 조기에 확정할 사항을 포함하여 연습준비계획을 수립,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는다.

제11조(연습각본의 확정) ① 전시대비 연습 계획단계에서의 연습각본은 컴퓨터와 주요사태목록으로 모의되는 군사연습 분야와 사건계획으로 모의되는 정부연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사연습만으로 이루어지는 기타 군사연습은 컴퓨터로 모의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각본과 모의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주요사태목록(Master Scenario Event List : MSEL)으로 구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②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 각본은 각 실·국이 실시할 실제훈련 계획의 발전과 세부 사건계획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정부·군사연습에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국가 통수권자 및 국방부장관 차원의 결심사항(DP)과 전시전환에 관련된 내용 및 시행시점 등을 행정안전부, 연합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연습계획단 편성 및 운영) ① 국방부는 장관이 결심한 연습목표와 중점을 구체화하고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을 작성하며, 전시대비 연습을 위한 사건계획, 연습각본과 전시주요현안 과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연습계획단을 편성, 운영한다.

② 연습계획단의 단장은 동원기획관이 되고 각 반장과 반원은 각 실·국에서 지정한 요원으로 구성하며 연습계획단 편성표는 별표 6과 같다.

③ 합참 및 각 군 본부, 연습 참여 부대 및 기관은 필요시 국방부와 별도로 연습계획단을 편성하되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연습계획을 수립한다.

④ 합참은 연합 및 합동연습 시행주기(구상, 계획, 준비, 시행, 분석 및 측정)에 따라 연습계획을 단계별로 구체화시키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부연습계획과 군사연습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⑤ 국방부 연습계획단은 임무 종료 후 일부 인원을 통제단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연습계획 수립) ① 정책기획관은 국방부 위기관리 연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동원

기획관은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을 포함한 모든 국방부 전시연습 계획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습목표, 중점, 각본, 연습계획단 편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한 연습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 각 실·국은 통제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직부대 및 기관에 연습목표, 중점, 지침을 하달하고 부대 및 기관의 세부 연습계획 수립을 지도·감독한다.

③ 합참은 계획 수립 시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연습, 군사연습이 연계되도록 하고 각 기능실 간에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연습이나 자체연습을 계획하는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차 상급 지휘관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준비단계

제14조(연습준비) ① 연습준비는 전시연습 단계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연습개념, 연습지시, 지원계획, 사건계획 및 주요사태목록과 기타 계획들이 완성되고 연습일정표 및 연습통제계획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전시대비 연습 계획 수립 및 준비 기간 중 국방부 연습계획단의 정기회의는 최초계획회의, 중간계획회의, 최종계획회의로 구분하여 동원기획관 주관으로 실시하며 회의별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최초계획회의 : 최초 전시연습의 구상 단계로 연습목표, 중점 등 해당연도 연습지침을 전파하고 관찰단에게 제시할 관찰과제를 선정하고 실제훈련 소요를 염출한다.
2. 중간계획회의 : 연습계획 수립 단계로 연습계획의 초안을 완성하고 관찰과제와 실제훈련을 확정하고 연습각본에 따른 사건계획 작성에 착수하며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 초안을 작성한다.
3. 최종계획회의 : 연습계획 준비 단계로 회의 종료 후 연습지시를 확정, 배포하고 연습관련 최종적인 협조 및 준비를 완료한다.

③ 동원기획관은 필요시 연습계획단 요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 일정은 행정안전부와 연합사의 각종 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국방부 주관의 회의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연합사 주관의 회의에도 참가하여 전반적인 진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⑤ 장관주재 연습준비 최종보고회의는 연습 개시 1개월 전에 실시한다.

⑥ 국방부 본부 일부(대응반)가 참여하는 연습은 동원기획관 또는 정책기획관 책임 하 연습을 준비한다.

제15조(연습계획 작성) ① 국방부 연습계획은 연습준비계획과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으로 구성한다.

② 국방부 연습준비계획은 연습 준비일정과 목표, 중점, 방침을 설정하고 각 실·국별 임무 분담사항을 포함한다.

③ 국방부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은 해당연도 연습을 위한 기본지침서로 정부연습지시, 군사연습계획, 장관의 연습지침 및 각 실·국에서 제공하는 연습소요를 기초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습목표 및 중점
2. 연습통제 및 실시에 관한 세부 지침
3. 연습참가 각 실·국 및 기관 등 모든 제대의 연습계획, 통제, 실시, 사후처리 등에 대한 세부지침
4. 실제훈련계획을 포함한 각종 부록(근무지원, 통신망 운용 등)

④ 합참은 완성된 군사연습계획을 국방부에 사전 보고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고 각급 제대 및 기관에서는 정부 연습계획과 군사연습계획에 기초하여 자체연습계획을 수립한 후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⑤ 각 실·국 및 기관은 국방부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을 기초로 하여 자체 연습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사건계획 및 주요사태목록) ① 사건계획은 정부와 군사연습의 연계상 필수적인 연습각본을 기초로 발전되며 중앙 통제단에서 모의해 주는 중앙 사건계획과 보조 상황 또는 별도의 분야 연습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자체 사건계획으로 분류된다.

② 중앙 사건계획은 정부차원의 조치 절차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통제 하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각 실·국에서 작성한다.

1. 전통적인 안보위협, 핵심기반체계, 재난분야 등을 포함한 위기 시 및 전시에 조치해야 할 소요를 제기한다.
2. 사건계획 소요는 각 부서에서 분야별(군사작전, 국가동원, 정부기능, 민생안정, 자유화통합), 단계별(전쟁임박, 개전 및 방어, 반격 및 격멸, 종전 및 전후처리) 등 현실적인 여건과 임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 사건계획은 가급적 6하 원칙에 의거한 작성으로 명확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4. 모든 사건계획은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5. 기관장 및 주요직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회의체 운용으로 통합 상황조치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한다.
6. 대통령 결심사항(DP), 또는 국무총리가 주도하여 조치해야 할 상황, 중앙 정부부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국방상황, 2개 부처 이상 협조가 필요한 국방·군사상황 등을 사건으로 작성한다.
7. 국가 정책수립 및 결정 차원의 전략적인 사항으로 작성한다.

③ 각 실·국에서 제출한 중앙사건계획은 동원기획관실 주관으로 세부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④ 국방부 자체 사건계획은 연습계획단의 각 실·국 담당이 해당 실·국장의 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 사항에 유념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1. 정부연습 및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각 실·국, 합참, 각 기관, 각 군 본부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작성한다.

2. 매 사건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실제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부여한다.
3. 전시계획, 조직 및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고려한다.
4.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내용을 선정한다.
5. 재난관련 상황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서 선정한다.
6. 장관 및 차관 지시사항 및 전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한다.
7. 전 구성원이 연습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건을 구상하여야 한다.
8. 연습에서 열외 되는 부서가 없도록 각 실·국의 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
9. 핵심적인 관찰 및 검토과제는 모두 사건계획화 되어야 하며 연습 간 세부적으로 관찰되고 사후검토반에서 분석 및 평가되어야 한다.

⑤ 합참을 비롯한 각 부대 및 기관은 연습목표와 중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실제상황을 상정한 주요사태목록(MSEL)을 작성한다.
1. 주요사태목록은 중앙 사건계획과 군사작전 연습각본 일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작성시 단순사건보다는 수개의 부대 및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된 작전을 수행하도록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성한다.

⑥ 모든 사건계획과 주요사태목록(MSEL)은 연습 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연습통제단에 의해 추가, 삭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사연습은 자체계획에 기초하여 사건계획 및 주요사태목록을 발전시키고 연습 간 국방부 지침을 적용한다.

제17조(상황조성 전문 작성) ① 상황조성 전문은 본 연습이 시작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의 가상적인 일반상황을 모의한 문서로서 정치, 외교 등 정부 상황은 중앙계획단에 의해 작성, 배포되며 군사 상황조성 전문은 합참·연합사에서 작성, 배포된다.

② 본 전문은 연습개시 당시 일반 및 특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습개시일 최초보고 시 상황인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③ 국방부 각 실·국은 국방부 관련 분야(합참은 군사작전 상황분야)를 작성, 동원기획관실에 제출하며 동원기획관실의 종합과 검토를 거쳐 정부 중앙계획단에 제출되고 타 부처 내용과 통합되어 전파된다.

④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에서 합참은 연합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연습 목표와 중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황조성 전문을 작성하고, 기타 연습 시 주관 부대 및 기관에서는 연습목표 및 중점에 부합된 상황조성 전문을 작성하여 연습성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제18조(전시 주요현안 토의과제 선정 및 토의) ①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 시 전시 주요현안 토의과제는 중앙 통제단 토의과제와 기관 자체 토의과제로 구분한다.
1. 중앙 통제단 토의과제 : 다수기관의 협조 및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부·처 및 시·도에서 토의할 과제
2. 자체 토의과제 : 국방부 및 각 기관, 예하부대와 협조 및 토의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구체화가 필요한 국방부 차원의 토의과제

② 자체 토의과제는 해당연도 연습목표와 중점, 국가정책, 전쟁지원 관련사항 및 최근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고 관련 실·국, 합참, 각 군 본부, 및 각 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방부는 각 실 단위 연습주무과장이 차관에게 보고하고 각 부대 및 기관은 차상급 지휘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작성된 전시주요현안 토의과제는 사건계획화 하여 연습간 처리한다.

④ 국방부 전시주요현안 토의과제 종합토의는 연습간 국방전략회의 및 전쟁지원실무회의, 국방종합상황실 단위로 1일 1~2개 과제에 대하여 실장이상 주관으로 실시하고, 세부계획은 해당연도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에서 구체화시키고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계획에 따라 발전시킨다.

제19조(실제훈련 계획) ① 각 실·국 및 기관은 자체 전시 과업 중 도상연습으로는 필요한 제원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보다 사실적인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습상황과 연계하여 시행할 과제들을 선정, 실제훈련계획을 발전시키고 중간계획회의 시 동원기획관실에 제출하여 그 세부내용이 해당연도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실제훈련은 전시상황을 전제하여 다수의 부서, 기관,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하여 시행한다.

③ 각 부대 및 기관은 전시 임무를 고려하여 전시전환훈련,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 전시 국방상황 브리핑 훈련, 해외 장비·물자 긴급조달훈련, 병력동원훈련, 예비 지휘소 이동훈련 등 실제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소요를 도출해야 할 과제를 실제훈련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각 실·국은 훈련목적, 훈련중점 및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실제훈련 소요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동원기획관실에 제출한다.

⑤ 제출된 실제 훈련계획 중 전체적인 전장상황 조성이 필요한 훈련은 사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 통제 하 실시한 실제훈련 실시결과는 훈련종료와 동시에 정기보고 문서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동원기획관실에 제출하고, 각 부대 및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제훈련은 훈련 결과를 합참, 각 군 본부, 각 부대 및 기관 단위로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연습통제 계획) ① 국방부 연습통제계획은 해당연도 연습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연습통제단에 의해 작성된다.

② 국방부 연습통제계획은 연습계획, 정부연습 및 군사연습 통제지침, 장·차관 지침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③ 국방부 연습통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습통제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일자별 통제 중점
3. 통제단 PDE(계획, 결심 및 시행) 주기
4. 중앙 및 각 기관별 통제단과의 상황연계를 위한 보조 기구(연락반 등) 운용 지

침, 근무지원, 통신에 관한 사항 등

④ 합참과 각 군 본부, 각 부대 및 기관의 연습통제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상급 부대 및 기관에 보고, 승인 후 시행한다.

제21조(관찰 및 사후검토 과제 선정) ① 국방부 본부를 포함한 각 부대 및 기관은 해당 부서 및 부대·기관의 전시 임무, 기능, 당시의 안보상황과 주요 현안업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주제를 관찰 및 사후검토 과제로 선정한다.

② 각 실·국에서 작성된 관찰 및 사후검토 과제는 동원기획관실 주관으로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에 반영하고, 동원기획관실은 국방부 관찰단 및 사후검토반에게 과제를 부여하여 연습계획에 반영한다.

③ 관찰단 및 사후검토반은 부여받은 과제와 자체적으로 도출한 관찰 및 사후검토 과제에 대하여 관찰 및 사후검토계획을 수립하고 연습 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연습 종료 후 관찰 및 사후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합참, 각급 부대 및 기관별로 운용하는 관찰단 또는 사후검토반, 연습통제단은 연습결과를 해당제대 지휘관 및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문서고 준비) ① 문서고 지역내 상황실 및 사무실 준비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예행연습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문서고 준비에 관한사항은 「문서고 관리·운영 훈령」을 적용한다.

③ 합참,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전시지휘소 운용계획을 수립, 준비를 하여 연습 간에 실제훈련으로 시행한다.

제23조(교육 및 예행연습) ① 동원기획관실은 각종 전시연습 실시 전 해당연도 연습과 관련하여 전 직원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국방부 본부는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 시행 전 차관 주관으로 각 실·국의 연습준비 실태점검, 전시전환 절차 및 사건처리에 관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기타 전시연습은 참가규모 및 성격에 따라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③ 합참,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 및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연습성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제5장 실시단계

제24조(연습 인원 편성) ① 국방부 본부 연습인원의 편성은 현행 및 전시직제에 따라 전 구성요원이 연습에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참이나 각 부대 및 기관 요청 시 적정 규모의 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실·국 및 기관은 24시간 연습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시 근무교대 방법을 적용하여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 야간근무조 인원에 대한 휴무사항은 「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국방부 예규 제559호) 제7조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행안부령 제76호) 제

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예규 제7조 및 규칙 제4조제2항 중 "숙직근무자"는 "야간 근무조 인원"으로 본다.

④ 휴일근무조 인원에 대한 휴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375호) 제11조를 준용하여 다른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합참,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전시 편제표에 따라 편제상의 임무, 기능에 부합되고 세부 연습계획에 의한 연습을 실시한다.

제25조(연습 절차) ① 상황 조성 단계에서는 평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처리한다.

② 상황 발생 시 국방부는 「국방위기관리 훈령」, 「국방부 전쟁수행예규」, 연습계획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연습을 실시한다.

1. 사건계획에 따라 국방부 통제단이 전산망을 통하여 각 실·국에 메시지로 상황을 부여한다.
2. 정부부처 상황이나 군사작전 상황 중 관련부서 및 부대, 기관에서 알아야 할 모든 상황은 가용 C4I 체계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정부부처, 국방부 각 실·국, 합참이나 각급 부대 및 기관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 실·국에서는 부여된 상황에 따라 전시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계획을 검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조치하며 합참, 각급 부대 및 기관에서 건의한 상황은 대통령 결심사항, 중앙 행정부처와 협조하여 조치할 사항, 국방부 자체 조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상황을 조치하고 결과는 해당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한다.
4. 사건계획 및 주요사태목록, 군사작전 묘사 결과 건의사항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중앙 통제단에서 부여된 사건은 관련 실·국에서 합참이나 각급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종합상황실로 보고하고, 국방부 통제단에서 부여한 사건도 동일한 절차로 조치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종합상황실과 국방부 통제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타 정부 부·처에서 처리를 협조 요청한 사건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접수 즉시 국방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해결하며 조치결과를 해당기관과 국방부 통제단에 동시에 통보한다.
   다. 주요사태목록이나 군사작전 모의결과 국방부나 정부부처에서 조치해야 할 상황 발생으로 합참 및 각급 부대 및 기관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한 각 실·국에서는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관련 부서 및 통제단에 보고 및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종합하여 건의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건계획 및 주요사태 목록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 통제단(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하는 사건계획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하여 정부 각 부처에 전파하고, 국방부 기능별 상황실, 합참, 관련부대 및 기관에는 국방지휘통제체계(KDCCS),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전파하며 국방부 통

제단 사건계획은 국방지휘통제체계(KDCCS),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가용 C4I 체계를 통하여 실시부서 및 부대, 기관에 전파한다.

2. 실시부서 및 부대, 기관에서는 사건계획 및 주요사태목록을 접수시 조치해야할 관련부서와 해당 상황실에 즉시 이를 전파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3. 제대별, 기능별 상황실은 접수된 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조치 완료시까지 실시부서의 조치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실시간대 진행 상황을 파악, 유지한다.
4. 실제훈련이 실시될 때는 실제훈련 주관부서 및 부대와의 연결을 통해 실시간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훈련 종료시 결과를 보고받아 상황보고에 포함한다.
5. 사건계획 및 주요사태목록 조치결과 응신은 1항의 가용 지휘통제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중앙 통제단과 국방부 통제단 및 해당 기능 상황실에도 이를 보고 및 통보하고 필요시 각 부대 및 기관도 동일한 절차에 의거 보고 및 통보한다.

제26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모든 국방 관련 상황은 국방종합상황실을 단일창구로 하여 각종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보고되고 전파되어야 한다.

② 상황전파 체계도는 별표 7과 같다.

③ 중요상황은 국방종합상황실에서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전체 실·국에 전파하고 국방지휘통제체계(KDCCS),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탑재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상황은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부서에서 확인 및 조치하며 주요상황을 국방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⑤ 연습간 분야별 주요 조치사항은 국방부 일일보고회의 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별도 보고가 필요한 중요상황은 지체없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장·차관에게 수시 보고한다.

⑥ 합참과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정부 각 부처 및 국방부 본부 관련 중요상황에 대하여 가용 C4I 체계 및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상황처리 절차) 연습 간 상황처리는 「전쟁수행예규」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며, 접수된 상황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접수된 최초상황의 신뢰성 확인 :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보고 및 통보된 상황은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출처로부터의 첩보는 확인해야 한다.
2. 신속한 상황보고 및 경보전파
   가.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보가 발령되는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 필요한 지침을 받는다.
   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위 및 부서에 우선적으로 전파한다.
3. 선 조치 후 보고
   가. 신속한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 또는 예규나 계획상에 명시된 사항은 상황처리 절차에 의거 선 조치 후 보고 한다.
   나. 선 조치 후에는 지휘계통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추가지침을 받아 후속조

치를 취해야 한다.

4.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최초 조치사항의 문제점 및 추가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상황이 종결되도록 한다.
5. 상황종료 후에는 6하 원칙에 의거 최종 결과보고를 한다.
6. 상황처리 간 합참과 각 군 본부는 긴밀히 협조하되 반드시 국방부에 보고 및 건의 후 국방부 본부(각 기능실)에서 타당성·적시성 등을 검토, 승인한 후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합동작전지원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라도 국방부의 승인 후 시행해야 한다.

제28조(전시 의사결정체계 및 정보공유) ① 국방부는 합참, 각 군 본부와 보고 및 정보 공유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는 국방상황(일일정기보고, 국방부 일일보고회의, 정부 일일연습상황보고를 포함한다)을 합동지휘 통제체계에 의해 합참, 각 군 본부에 전파한다.

③ 합참은 군사상황(군사상황보고, 정보요약 및 현행작전사항을 포함한다)을 가용 C4I 체계를 통해 국방부 각 실·국에 보고한다.

④ 각 군 본부와 국직부대 및 기관은 일일상황보고(작전지원보고, 종합상황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고, 기능별(인사, 군수, 시설, 동원 등 각 실·국 단위)로 일일정기보고를 실시한다.

⑤ 국방부 본부를 포함해서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연습 간 의사결정회의체 운영절차를 숙달하여 전시 주요국면 변화에 대한 즉각 대처능력을 숙달하고 특히, 국방부는 연습 간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정부부처와의 의사결정회의체 운영절차를 숙달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처리단계

제29조(사후검토) ① 국방부 및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제4조에 따른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국방부 사후검토는 국방부 본부가 참여한 연습종료 즉시 연습 간 발생한 주요 문제점을 식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군사연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정부연습의 경우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본부 각 실·국, 국직부대 및 기관, 합참 및 각 군 본부 관계관, 필요시 정부부처 관계관 참석 하에 사후검토를 실시한다.

② 국방부 사후검토 의제는 장·차관의 관심사항과 연습목표와 중점, 당 해년도 국방 관련 주요 현안과제 등을 토대로 선정한다.

③ 합참과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계획에 따라 사후검토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함으로써 전시임무수행태세를 확립하고 차기 연습 시 동일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검증한다.

제30조(사후검토 후속조치) ① 연습에 참가한 모든 부대 및 기관은 연습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자체 사후검토를 실시하고 훈련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조치계획을 연습 주무

부서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 연습 주무부서에서는 각 실·국의 사후검토 후속조치 과제를 종합 시 사후검토 시 제시된 과제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후 확정하고, 해당 과제별 조치권자 지정과 조치완료시기 판단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장관에게 종합 보고한다.(미반영 과제는 조정 요구시 타당성 검토 후 승인)

③ 국방부 연습 주무부서는 확정된 후속조치 과제별 각 실·국의 조치 경과를 매월 확인하여 추진 진도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는 매 분기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며, 다음연도 연습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이전 연습의 후속조치 과제는 해당연도 연습 시 관찰과제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조치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합참과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31조(정부 종합강평) ① 정부의 종합강평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연습종료 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행정안전부 종합강평계획에 따른다.

② 정부의 종합강평 시 국방부 발표내용은 행정안전부를 포함하여 정부기관과의 협조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 위주로 준비한다.

제7장 연습 통제 · 평가조직 운영

제32조(연습단 편성 및 활동지원) ① 조직적인 연습통제는 성공적인 연습실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연습통제를 위해 연습 주관부대 및 기관은 적정규모의 연습단을 편성, 운용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연습의 목표와 중점에 부합되고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습단을 편성하며, 연습단 세부 편성표는 별표 8과 같다.

1. 연습단장은 국방부장관(차관)이 되며, 연습간 1일 2회 연습단 협조회의를 통하여 연습의 전반적인 통제와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2. 연습단은 국방부 전시기능에 따라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의 3개 분야로 구분된 통제단, 관찰단, 사후검토반, 지원반으로 구성된다.
3. 통제단, 관찰단, 사후검토반 편성 및 운영 세부사항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4. 지원반은 연습 주무부서 인원으로 편성하며, 연습단 전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 회의소집 통보, 지원 및 행정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각종 전시연습 간 주관 부대 및 기관은 적정규모의 연습단을 편성, 운영하고 연습실시부대 및 기관은 필요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연습에 참여하는 기관 및 부대는 1항에 따라 편성된 통제단, 관찰단, 사후검토반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연습·훈련 관련 정보자료(비밀문서 등) 열람 및 관계자 토의요청 등에 적극 참여·지원한다.

제33조(국방부 관찰단 편성 및 운영) ① 국방부 관찰단은 연습·훈련 상황에 맞추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관찰단장과 국방부 전시기능(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

원), 재난(유형별), 사이버 위기 등의 분야별 관찰관으로 구성된다.

② 국방부 관찰단은 전문지식을 구비한 인원으로 편성하기 위해 매 1년 단위로 선발하여 필요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라 편성인원, 운영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관찰단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목표, 안보, 정책적 수준의 관찰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조언
2. 국방부 사후검토반에 사후검토자료 제공
3. 국방부 차원에서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 종합, 장관에게 보고

④ 관찰단장은 분야별 관찰관을 조정, 통제하여 연습계획 수립 및 준비과정 중에 각 실·국에서 검토한 관찰과제와 관찰단 자체에서 도출한 관찰과제별로 연습 간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장관에게 조언하고 일일 관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검토반에 제출한다.

⑤ 분야별 관찰관들은 일일관찰보고서 외에 사후검토반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분야에 대해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습 종료 시 연습 전반에 대한 최종 관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습단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검토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국방부 사후검토반 편성 및 운영) ① 국방부 사후검토반은 국가안보, 국방정책, 군사작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전체 사후검토반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사후검토조정관과 국방부 전시기능에 따라 통수기구 보좌 및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분야 사후검토분석관으로 구성한다.

② 국방부 사후검토반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목표, 안보, 정책, 군사전략 수준의 연습계획, 준비, 실시결과를 관찰 및 분석 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2. 국방부 전시기능인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분야별 연습결과를 분석하여 보완하거나 발전시킬 과제를 도출, 사후검토회의를 통해 발표
3. 사후검토회의 시 발표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각 실·국별 후속조치 과제에 포함 및 추진 여부 확인

③ 직책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검토조정관
   가. 분야별 사후검토분석관 업무를 감독 및 조정, 통제
   나. 연습 전 사후검토 의제 선정 등을 포함한 사후검토계획 수립
   다. 연습 간 국방부 관찰단과 업무협조·조정 및 연습진행 관찰·분석 실시
   라. 연습 종료 후 연습결과 종합, 사후검토회의 진행 및 발표(사후검토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연습은 관찰결과 종합 후 서면 보고)
   마. 국방부 본부의 사후검토 후속조치 과제 조치 여부 확인
2. 사후검토분석관
   가. 연습 전 국방부 연습 관련 각종 전시계획 및 주요 현안정책업무 연구 및 자료수집
   나. 기능별 사후검토 의제 선정 및 세부 사후검토계획 수립

다. 연습 간 업무분장에 따른 기능별 관찰·분석
라. 연습 종료 후 국방부 전시임무수행태세 발전을 위한 각 기능별 정책발전 소요 등 사후검토회의 자료 작성
마. 사후검토조정관의 지침에 따른 국방부 본부의 사후검토 후속조치 과제조치 여부 확인 등

④ 사후검토회의 또는 관찰결과 보고 시 주요 포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습 간 도출된 전쟁수행 관련 통수권자의 전쟁지도 보좌, 정부 부처와 협조할 사항, 국방부 자체에서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완시킬 사항
2. 국방부의 전쟁지도 보좌, 전쟁수행, 전쟁지원 기능 임무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합참, 각 군 본부, 각급 부대 및 기관에서 보완시켜야 할 과제
3. 연습 계획, 준비, 실시 및 지원 등 전반적인 연습체계 상의 보완사항
4. 기타 전시업무수행태세 확립을 위해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사항 등

제35조(통제단 편성 및 운영) ① 통제단은 해당연도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에 의하여 연습 참가 부대 및 기관장 책임 하에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방부 통제단은 연습계획단의 임무 종료 후 준비단계로부터 종료시까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통제단장은 계획된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제단의 전반적인 운용책임을 가진다.
2. 전문통제관은 통제단장을 보좌하여 기능실별 자체사건계획을 안보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유도하고 조정한다.
3. 통제단에 내부직원(방위사업청, 병무청 파견자 포함)을 총괄반과 사건계획반에 골고루 편성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통제단은 연습통제업무 수행에 필요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상근체제로 운영하며,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습상황을 유도하고 조정한다.
2. 통제계획에 따라 연습실시 기관에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계획을 사전준비 후 사건을 부여한다.
3. 실시기관의 조치 및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사건계획을 작성, 부여한다.
4. 연습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의 대행임무를 수행한다.
5. 정부 중앙 통제단, 합참 통제단과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6. 연습통제에 관한 기록과 사후보고, 강평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사후검토반에 지원한다.

④ 통제관은 일일 사건처리현황 및 통제결과를 통제단장에게 보고하고 연습이 최종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조정·통제하여야 한다.

⑤ 통제관은 연습통제 간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실·국의 임무 및 기능, 전시대비계획, 통제계획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사건계획을 실시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정부 부·처에서 협조 및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4. 연습진행 간 다음과 같은 경우, 연습을 통제 또는 조정한다.
   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
   나. 연습통제 목적 상 사건 부여시기 및 내용의 조정이 필요할 때
   다. 연습상황과 사건계획이 일치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할 때

제36조(외부전문가 선발절차 및 위촉·계약 횟수) ① 제33조의 관찰단과 제35조의 통제단장 및 전문통제관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하여 위촉한다.

1. 예비역 장성 또는 영관 및 퇴직한 국방부본부 출신 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 전역 및 퇴직한 자 중에서 인사기획관실과 운영지원과 및 각 군의 추천을 받아 장관 결심으로 선발한다. 다만, 재난 및 사이버 위기 분야 관찰단은 군수관리관실 및 정보화기획관실 등의 관련부서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도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선발인원 위촉·계약 횟수는 최장 3개년까지로 제한하며, 연임기간 중에라도 과업수행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한다.
3. 다만, 희망자 및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발자격 확대 및 위촉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후검토반은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하여 매년 계약한다.

1. 최근 3년 이내 전역(퇴직)한 자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절 채용방식을 준용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공개경쟁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2. 선발된 인원의 최장 연임은 3개년까지로 제한하고 매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별지 5호 개인별 과업수행실적 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결과는 다음해 근로계약 근거로 활용한다.
3. 다만, 희망자 및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발자격 확대 및 계약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4. 사후검토반은 기간제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직위별로 업무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대가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서에 반영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37조(연습문서 관리 및 수발) ① 연습간 처리되는 모든 문서의 처리는 「사무관리규정」및「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문서관리

1. 모든 일반 연습문서는 표지의 중앙 상·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비밀은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해당 비밀등급 표시를 한다.



2. 실제훈련에 대한 메시지 및 제반 문서는 제목 끝에 '(실제훈련)'으로 표기하여 도상연습과 구분되도록 한다.
   『예』 제목 ○○○○○ (실제훈련)
3. 연습용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연습각본의 적용일시를 사용한다.
   『예』 D일 18:00, D+1일 16:40 등
4. 통제단에서 실시 부서에 공개하지 아니할 문서에는 표지중앙부분에 "통제관 외 열람금지"라는 적색 표시를 한다.

③ 문서수발

1. 연습기간 중 문서취급소는 24시간 운용한다.
2. 문서취급소에서는 문서의 확인, 접수, 배포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제38조(보안대책) 각종 전시대비 연습·훈련간 문서·인원·통신 등에 관한 보안 준수사항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한다.

부칙 〈2010. 5.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연습계획 및 통제체계	제4조제2항	199
2	연습주기	제4조제4항	200
3	전시대비연습 업무 주기	제4조제4항	201
4	부서별 세부 임무	제5조제7항, 제6조제7항, 제7조제5항	202
5	한·미 합의각서 관련문서	제9조제4항	205
6	전시대비 연습 계획단 편성표	제12조제2항	206
7	상황전파 체계도	제26조제2항	207
8	연습단 세부 편성표	제32조제1항	207
9	사후검토반 운영	제34조제3항	207

【별표 1】

연습계획 및 통제체계(제4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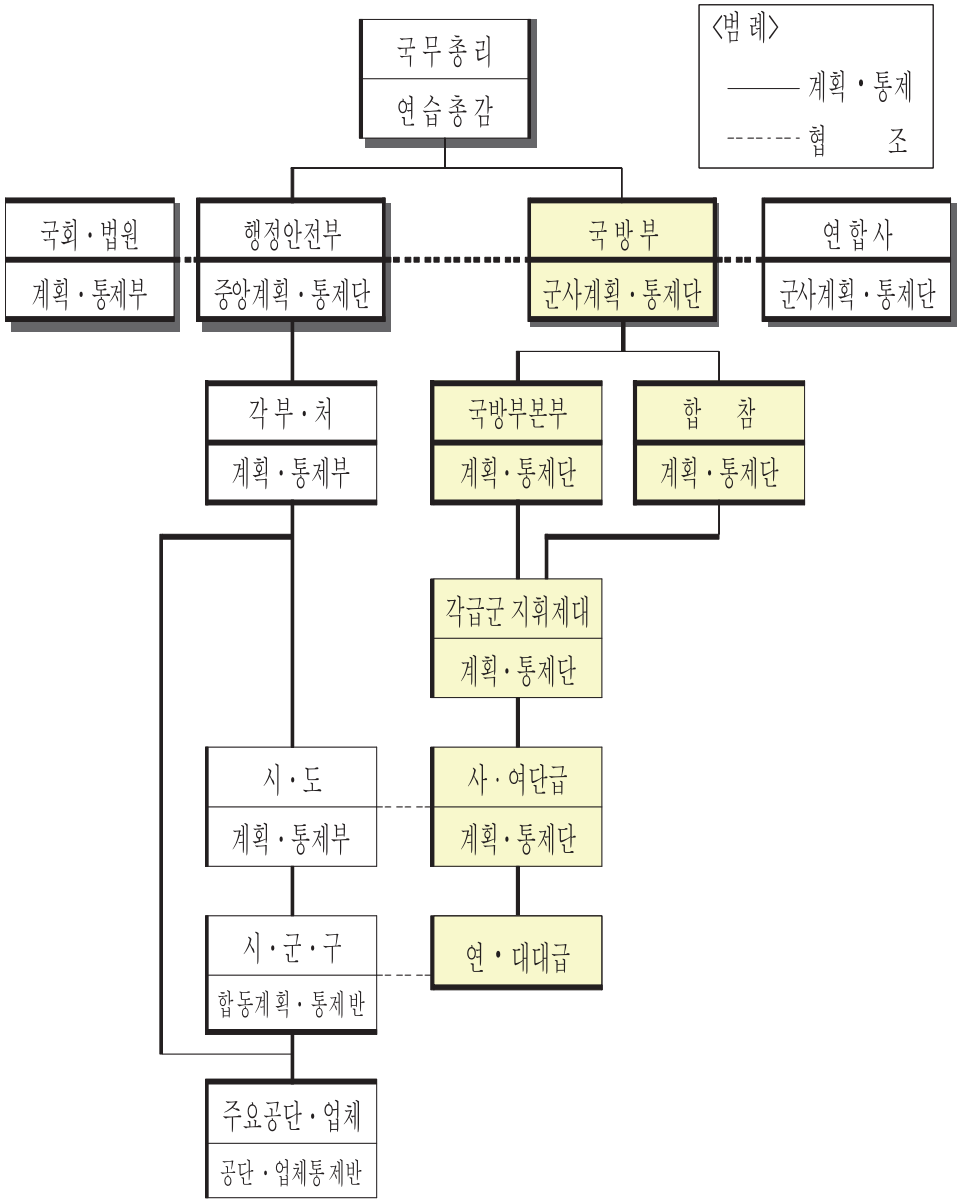

* 세부 내용은 국가전쟁지도지침 참조

【별표 2】

연습주기(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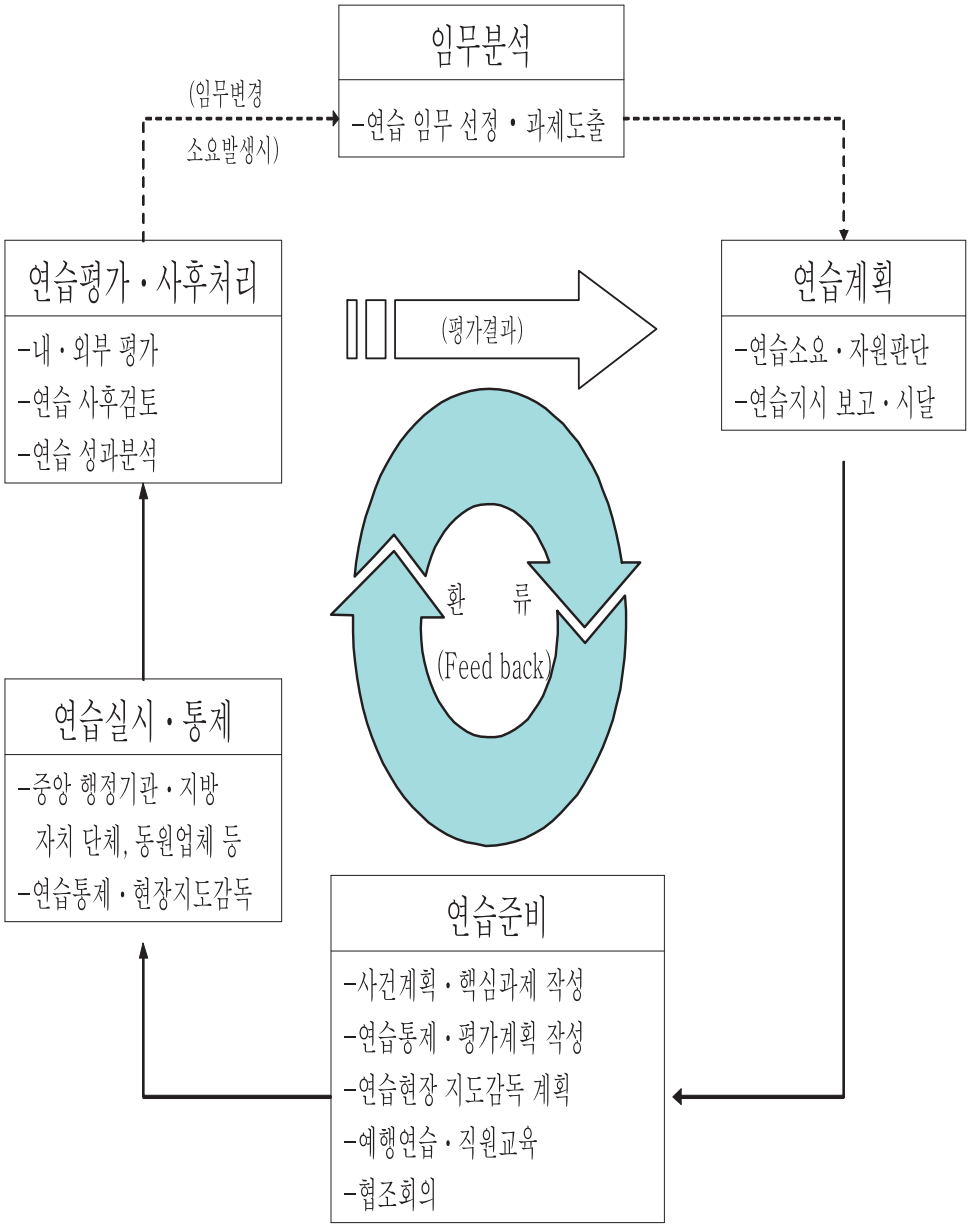

【별표 3】

전시대비연습 업무 주기(제4조제4항 관련)

(S : 연습개시, E : 연습종료)

주 요 업 무	시 기	비고
최초 보고(장관 : 연습목표, 중점 등 방향설정) - 관찰단/사후검토반 운용계획 포함	S - 3개월	동원기획관
최초계획회의(연습일정, 협조사항 토의)	S - 2개월	필요시
후속조치과제 추진결과 보고 - 각 실 단위 연습주무 실무자 대면보고	S - 2개월	동원기획관
중앙 사건계획 토의(동원기획관) 및 보고	S - 2개월	
전시 주요현안 토의과제 선정 및 실무토의	S - 2개월	
중간계획회의(연습일정, 협조사항 토의)	S - 2개월	합참 일정과 통합
연습준비계획 보고	S - 2개월	필요시
최종계획회의	S - 1개월	합참 일정과 통합
후속조치과제 추진결과 보고(실장) - 각 실 단위 연습주무 과장이 대면보고	S - 1개월	
연습기본계획(연습지시서) 보고(장관)	S - 1개월	
통제단운용, 통제·사건계획 작성	S - 1개월	
연습통제계획 보고(장관)	S - 1개월	
전년도 연습 후속조치과제 추진결과 보고(장관)	S - 2주	
연습준비 최종회의(동원기획관 주관)	S - 1주	
최종점검 및 Pre-CPX(차관 주관)	S - 1주	
연습실시	S	
사후검토(장관)	E + 1주	
연습 후속조치과제 추진계획 보고(장관)	E + 1개월	

【별표 4】

부서별 세부 임무(제5조제7항, 제6조제7항, 제7조제5항 관련)

부 서	임 무
공 통	○ 계획단·통제단 편성, 운용지원 ○ 부서별 연습계획 수립 ○ 부서별 문서고 소산 및 이동계획 작성 ○ 최종점검·예행연습, 전시전환 절차 연습준비 ○ 제1·2문서고 연습준비 및 관련기관(부대) 통제 ○ 연습 간 전시 직제에 의한 연락장교(관) 파견, 운용 ○ 각 실·국 상황실 운용
정책기획관실	○ 연습관련 안보상임위 준비 •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처와 업무협조 • 각 부처 보고안건 사전조율 및 보고내용 준비 • 회의관련 장관 보좌 ○ 실시간 국방회의, 정책 실무회의 준비 ○ 비상대책회의, 국방상황평가 회의 등 전시 의사결정회의체 토의과제 선정
대변인실	○ 연습관련 대언론 홍보·준비 ○ 전시 국방 홍보정책 수립·조정
교육정책관실	○ 전시 교육 계획 수립·조정
기획조정관실	○ 계엄령 안건 상정 준비 ○ 대통령, 장관 지시사항 전파
법무관리관실	○ 연습관련 국무회의 준비 • ○○2종 사태, 동원령, 계엄령 선포제안 안건종합, 상정준비 • 회의관련 장관보좌
인사기획관실	○ 연습간 정부종합상황실 근무요원 파견 조치 ○ 연합사 통제요원 파견 조치

부 서	임 무
동원기획관실	○ 비상대책회의, 연습관련 안보상임위·국무회의 준비 • 동원령 선포 안건상정 준비 ○ 국방부 사후검토 총괄 및 각 실·국 연습업무 조정 ○ 제1문서고 사무실 배치 확인
군수관리관실	○ 재난 통제상황실 운용 • 상황실내 VTC, 국가지도통신망 등 유지
정보화기획관실	○ 연습 간 국방지휘통제체계(KDCCS)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 연습통제·실시단 정보통신 운영 교육 ○ B-1내 C4I망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행
국제정책관실	○ 국제정책반 운용 준비
감사관실	○ B-2 지원실 운용
운영지원과	○ 국방부 통제단 인사명령 조치 ○ 비상소집·전시전환계획 수립, 시행 ○ 제1·2문서고 출입증 발급 ○ 청사지역 근무계획 작성 ○ 출·퇴근 버스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제1문서고 이동·급식인원 파악 ○ 제1문서고 소산계획 수립, 시행 ○ 연습 관련요원에 대한 각종 명령 조치
국방전산정보원	○ 제1, 2문서고 지역 전산망 운용 지원(국방부) • 인터넷, 인트라넷, 빔프로젝터/컴퓨터 등 유지보수
국 방 부 근무지원단	○ 연습기간 중 근무지원계획 수립, 시행 ○ 연습기간 중 실·국 소요차량 지원 ○ 비상급식 계획 수립 ○ 국방부 통제단 행정병 지원 •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 보고, 시행

부 서	임 무
국군지휘통신사	○ 제1, 2문서고 지역 전장관리체계 운용 지원 • 국방전산정보원과 협조(IP할당, 네트워크 통제 등) ○ 행정안전부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지원 ○ 지휘소 간 화상회의 준비(CCTV설치) ○ 국방부 연습전화번호부 발행 ○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 시행 관련 운용 지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 운용, 전군 CERT 상황통제 조치 ○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계획 수립·보고·시행 ○ 모의공격팀 편성 및 실제훈련 지원 ○ 사이버 위기상황·CERT 관제상황 전파, 보고
합 참	○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준비(관련부서 사전협조) • 정부주관 의사결정회의 자료 준비 ○ 정부연습과 군사연습 각본 일치를 위한 계획발전 ○ 국방종합상황실, 국가종합상황실 연락관 파견 조치 ○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계획 수립·보고·시행 ○ 전군 사이버작전 통제 ○ 연습 간 군령분야 장관 보좌, 군정분야 각 군과 협조
각 군 본부	○ 국방부와 정보공유체계 발전 ○ 연습과제 목록 작성 및 연습간 조치 ○ 기능별 상황보고 체계 확립 ○ 화상회의(과제토의, 상황보고) 준비 ○ 사건계획 보고 ○ 각 군 사이버 위기대응 통합훈련 계획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 ○ 연습 간 국방부 통제 하 군정분야 지원
각 부대 및 기관	○ 자체 연습계획 수립 보고 및 시행 ○ 실제훈련계획 수립 보고 ○ 기능별 정보공유 상황보고체계 확립 ○ 국방부, 상급부대 및 기관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필요시) ○ 자체 연습단 운영 및 사후검토 실시, 결과 보고

【별표 5】

한·미 합의각서 관련문서(제9조제4항 관련)

1.「한·미 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연합연습 양해각서」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98. 2.11)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간 협조에 의해 실시하는 한·미 연합사 주요 연합 연습을 위한 계획, 군수지원과 비용 상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합참 작전본부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이 상호합의 하에 체결한 문서

2.「연합 연습에 관한 작전합의각서」

(OMOA : Operational Memorandum of Agreement)

주요 연합 연습별 연습목적, 목표, 일정, 연습각본, 연습지역, 개략적인 참가부대 규모, 편성, 지원, 한·미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합참 교리연습부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이 상호합의 하 매 연습개시 120일 전에 체결하는 문서

3.「상호지원 및 상환 합의각서」(SRMOA : Mutual Support and

Reimbursement Memorandum of Agreement)

주요 연합 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부대에 지원을 제공하고 그 지원에 따른 연습비용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상호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합참 교리연습부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작전참모부장이 상호 합의 하 매 연습개시 60일 전에 체결하는 문서

【별표 6】

전시대비 연습 계획단 편성표(제12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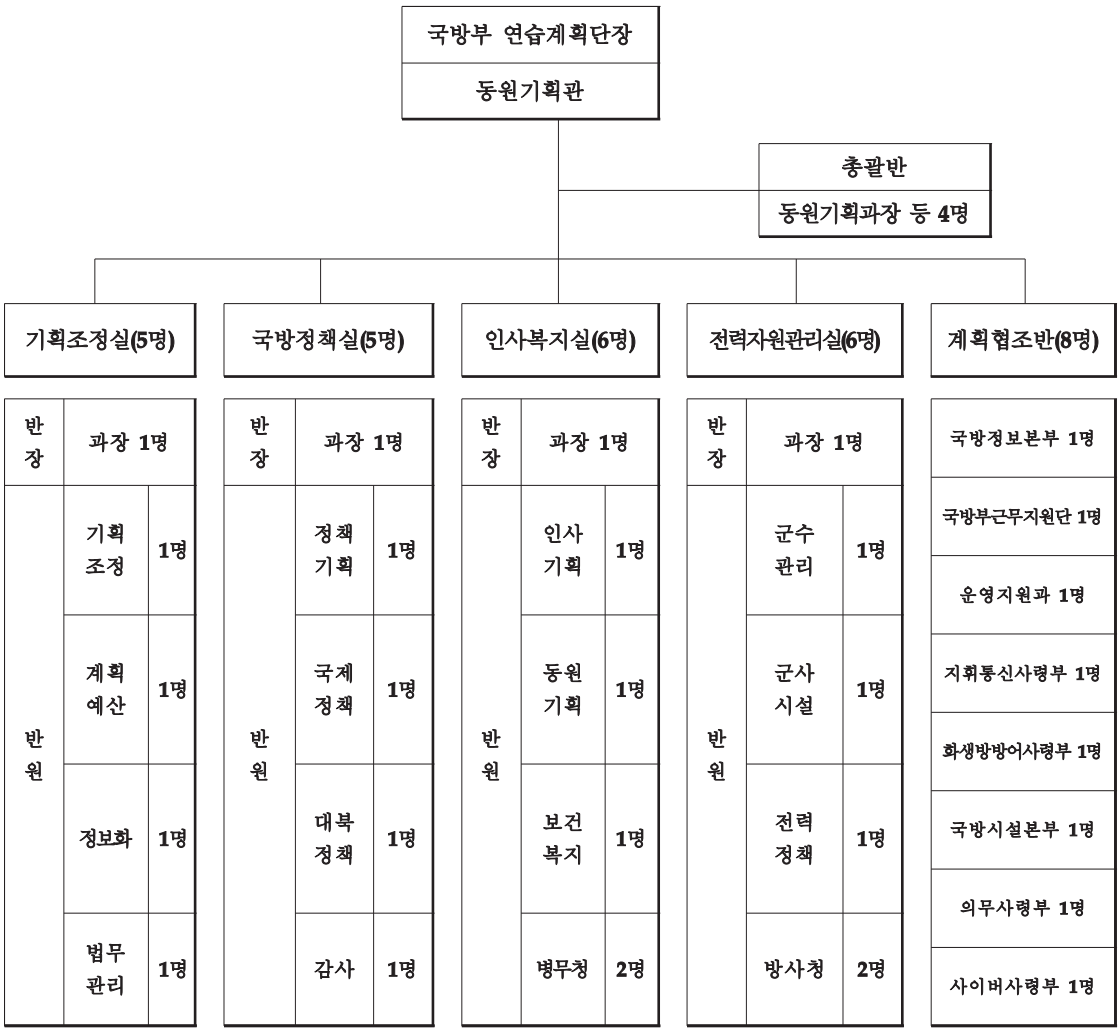

【별표 7】

상황전파 체계도(제2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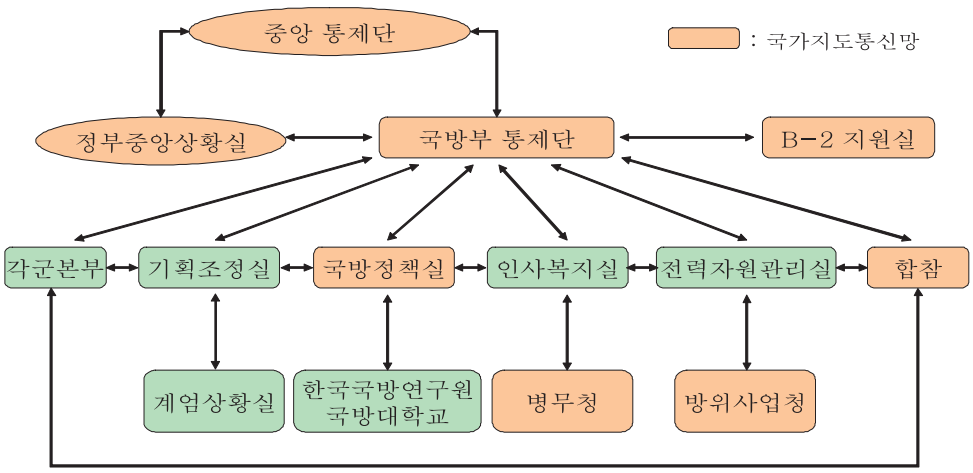

【별표 8】

연습단 세부 편성표(제32조제1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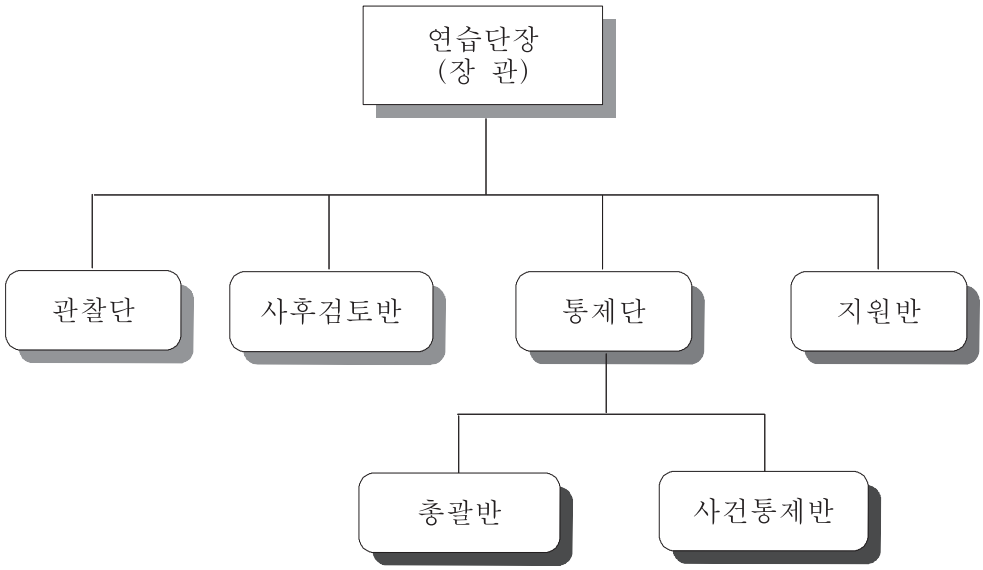

【별표 9】

사후검토반 운영(제34조제3항 관련)

12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정 국방부 훈령 제801호(2006. 11. 10.)
개정 국방부 훈령 제1360호(2011. 11. 28.)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02호(2013. 12. 27.)
개정 국방부 훈령 제1993호(2016. 12. 26.)
개정 국방부 훈령 제2241호(2018. 12. 28.)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63호(2019. 12. 24.)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61호(2020. 9. 1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683호(2022. 7. 5.)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총동원”이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
3. “부분동원”이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의 발생, 적의 포격 또는 침투·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필요한 범위에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예비군동원”이란 전·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재난 시 동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에 따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관리 주관기관”란 동원 대상인 인력·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중점관리대상업체”란 전시동원계획에 따라 동원할 업체로 지정되어 임무를 고지받은 업체를 말한다.
8.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인도·인접(수)”이란 동원인원 및 물자를 병무청·자원관리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인계·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써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11. “수임군부대”란 「예비군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12. “동원업무 대행부대”란 동원업무 수행 시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 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의 업무를 병무관서 및 수임 군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
13. “지역사(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란 책임지역 내 물자동원업무를 총괄하는 부대로서 자원관리부대의 동원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동원준비태세·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긴급동원 소요발생시 시・도지사에게 긴급동원요청, 동원집행 시 응소결과 종합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14.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 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동원지정업체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6. “산업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시 산업체제를 전시 산업 체제로 전환하고 식량·유류·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송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필요한 육상·해상·항공의 수송 장비와 정비업체, 육상 및 선박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8. “건설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19. “정보통신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정보통신 업체, 통신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4조(동원대상자원) ① 동원대상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한다.

② 인적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병력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전시근로자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군사교육 소집에서 제외된 자, 전시근로역(기술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기술인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③ 물적자원은 별표 1의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5조(동원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시달한 충무기본지침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에 관한 충무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시달한 충무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관업무인 병력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련 지방행정기관의 장, 관련 국방부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 통보 또는 시달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술인력 및 물자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을 근거로 기술인력 동원분야 및 물자 동원분야의 국방부 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 또는 하달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집행계획에 따라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분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국방부의 물자분야 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각 군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하달한다.

제6조(동원방법) 전시 동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개별동원 : 인적자원을 개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집단 및 부대단위 동원 : 동원의 단순화와 동원속도 단축을 위하여 일정 지역의

인적자원을 집단으로 동원하거나, 일정부대에 지정된 인적자원을 부대단위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화 동원 :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와 연계하여 동원예비군을 동원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시동원 : 장비, 시설, 업체 등을 동원할 때에 그 조작요원이나 종사자도 함께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용동원 : 양곡, 의류 등 소모성 물자의 경우 인도 인수와 동시에 동원 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동원 : 장비, 건물 등을 동원주체가 일정기간 사용하고 복원하여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제운영 : 동원주체가 업체의 운영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그 외는 업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동원단계) 동원단계는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에 부응한 전쟁수행 단계에 따라서 1년을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은 긴급단계(1~3단계)와 지속단계(4~12단계)로, 기술인력동원 및 물자동원은 초기단계(1~4단계)와 지속단계(5~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동원단계별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tr><td rowspan="2">단 계</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d>11</td><td>12</td></tr>
<tr><td>M
~
M+1</td><td>M+2
~
M+3</td><td>M+4
~
M+6</td><td>M+7
~
M+30</td><td>M+31
~
M+45</td><td>M+46
~
M+60</td><td>M+61
~
M+90</td><td>M+91
~
M+120</td><td>M+121
~
M+150</td><td>M+151
~
M+180</td><td>M+181
~
M+270</td><td>M+271
~
M+364</td></tr>
<tr><td>일 수</td><td>2</td><td>2</td><td>3</td><td>24</td><td>15</td><td>15</td><td>30</td><td>30</td><td>30</td><td>30</td><td>90</td><td>94</td></tr>
<tr><td>병력 및 전시근로</td><td colspan="3">← 긴 급 단 계 →</td><td colspan="9">지 속 단 계</td></tr>
<tr><td>인력 및 물 자</td><td colspan="4">← 초 기 단 계 →</td><td colspan="8">지 속 단 계</td></tr>
</table>

제8조(동원집행) ① 동원은「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의 형태로 시행하며,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와 주관기관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 동원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야별 충무집행계획과 시행·실시계획 및 국방부와 각급 부대의 자원동원운영계획 등에 따른다.

제9조(동원해제) ① 인적자원의 경우 소집 요건이 해제(전시 사변이 끝난 때 또는 동원령이 해제된 때를 말한다)되거나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가조치 하여야 하며, 사용 부대장 또는 기관장은 귀가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가증을 교부하고 귀가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원을 해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복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의 해제를 선포한 때
2. 동원기간이 종료한 때
3. 동원요청기관의 장으로부터 동원 해제 요청이 있는 때

제10조(동원보상) ①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은「병역법」제48조 및 제54조,「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원된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은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제42조와 국방부 전시 물적자원 보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동원령에 의한 동원

제1절 병력동원

제11조(동원가용자원 파악)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예비군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년 3월에 보고 받은 지방병무청별 예비군 자원 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 연도 동원가용자원을 파악한다.

제12조(동원소요 산정) ① 동원소요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증감하여 산정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직'이라 한다) 및 각 군 직할부대를 포함한다}은 동원소요표를 작성하여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6월 30일까지 소요 제기하되,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과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장은 소집부대에 대한 소요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단, 육군동원전력사령관은 예하부대에 대한 소요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제12조의2(소요제기) ① 각 군은 소집부대 단위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X-1년) 동원소요제기를 실시한다.

② 소집부대는 다음해의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③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 및 중간제대는 소집부대의 소요제기 내용을 소요검증 절차를 거쳐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④ 각 군은 소요 검증시 인사참모부와 공동 검증 후에 6월 15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13조(병력동원계획 작성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제94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병역법 시행령」제94조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계획서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동원지정 대상) ① 동원지정 대상은 장교, 준·부사관은 예비군 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4년차 이내로 하되, 희소특기 및 전방군단 등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의하여 연차초과 자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육군동원전력사령관은 예하 부대에 한해 육본 건의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동원자원은 소집부대의 동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요대비 110% 이상 지정한다.

제15조(동원지정범위) 4단계까지의 증·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은 평시에 동원지정하고 소집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을 참조한다.

제16조(동원지정 우선순위) ① 증·창설부대 요원 지정 후 손실보충요원을 지정한다.

② 부대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③ 부대 유형별로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포병여단, 지역방위사단, 상비사단, 그 밖의 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사단 내에서는 주요 특기 소요부대인 전투근무 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제17조(동원지정 책임) 동원지정은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동원운영계획,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지역배정서, 소집부대의 동원소요 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8조(신분별 동원지정) ① 장교는 병과에 우선을 두고 6년차 이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되, 병과별 자원 부족 시에는 유사병과로 대체 지정하고, 계급별 자원 부족시에는 1계급 상·하위자로 동원 지정한다.

② 준·부사관은 병과 및 특기에 우선을 두고 6년차 이내 자원으로 최대한 지정하되, 계급별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1~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한다.

③ 병은 계급 구분 없이 예비역 4년차 이내 자원을 우선하여 지정하되,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4년차 초과자를 동원 지정한다.

제19조(동원지정결과 분석)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함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수령 즉시 동원지정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배정의 적절성, 정예자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동원지정자 관리) ① 동원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자명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하여 각 군 본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소집부대 및 지역(직장)예비군부대 등에 전송한다.

③ 각 급 소집부대의 장은 유대강화를 통한 전투력 제고를 위하여 부대초청행사 등 평소 동원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1조(병력동원 소집) ① 병력동원소집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병역법」 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사전교부하고, 전시에는 TV방송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동원을 집행하며, 소집통지서 추가 교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 집결지와 전시근로소집 집결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집부대장과 협조하여 주·예비 집결지를 선정한다.

④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로서 군 동원 장비 및 업체와 동시 동원된 경우에는 동시동원이 우선한다.

제22조(수송 및 호송) ① 국군수송사령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별 동원병력 수송계획을 종합 통보받아 이를 전시 연합 수송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군수송사령관은 전시 연합수송 지원계획에 각 지방병무청이 요구한 수송로, 도착시간 등을 변경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변경 내용을 소집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병력수송계획은 지방병무청장 책임하에 시·도지사 및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 부대장),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예하부대에 한함)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④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개별 입영하도록 하고, 자·타도 자원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수송한다.

⑤ 타도자원에 대한 호송책임은 동원사단은 동원사단장, 전방부대는 동원자원 호송단에게 있다.

제23조(인도·인접) ① 소집 부대의 장은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 부대)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예하부대에 한함) 통제 하에 인도·인접지를 선정하며, 해당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인도·인접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고, 야간이나 악천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 및 수임군부대(동원업무 대행부대)의 인접관과 지방병무청 인도관은 사전 선정된 장소에서 합동으로 동원병력의 소집통지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병력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인접지에서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병력수와 동원소집 병적기록표만 확인하는 간이 방법에 의거 인도·인접할 수 있다.

③ 초과입영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보충부대로 전환,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한다.

제2절 전시근로소집

제24조(임무)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보급품 및 탄약 운반
2. 진지구축, 도로·교량·항만·공항시설 보수 및 피해복구
3. 보급물자의 적재 및 하역

4. 환자 후송, 병실관리 및 영현처리
5. 전시 급유·급수·취사지원
6. 그 밖에 소속부대장이 지시하는 노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의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 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제25조(소요제기) ①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 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검토 확정하여 매년 6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시근로부대가 편제화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한다.

③ 전시근로소요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대별·단계별 운영소요와 손실보충소요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소요산정 기준) ① 전시근로부대가 편성된 부대의 소요는 당해부대의 편제표에 의한다.

② 부대의 특성상 전시근로부대 편제가 곤란한 부대의 전시근로소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도수운반 근로소요 = [(1일 1인 보급기준량×병력수)÷(1인 1회 운반량×1일 운반횟수)] - 현역 가용인력
   가. 1인 1회 운반량/거리 : 산악(13㎏/6㎞), 준산악(19㎏/9㎞), 평지(25㎏/12㎞)
   나. 1인 1일 운반횟수 : 4회
2. 하역 근로소요 = [(1일 물동량-장비사용시 작업량)÷(1인 1일 작업능력)] - 현역 가용인력
   가. 1인 1일 작업능력 : 8톤(작업시간 10시간, 시간당 능력 0.8톤)
   나. 장비 1일 작업능력 : 지게차 160톤, 거양장비 270톤(10시간 기준)
   다. 장비 가동률 : 83%
   라. 물동량은 전시 예상 물동량이며, 전시 물동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물동량을 기준으로 판단
3. 의무부대 근로소요
   가. 병실관리 : 50병 상당 1명 기준
   나. 환자운반 : 500병 상당 들것조 1개반 4명/2교대(8명)
   다. 영현처리·수집소 운반조 : 500병상 당 운반조 1개반 4명 편성(2교대 8명)
4. 시설피해복구 근로소요 = (월간 시설 피해면적÷30) - (1일 가용장비 복구면적 ÷ 1인 1일 시설피해 복구면적)
   가. 전시 피해복구대를 편성·운영 중인 부대는 자체 규정을 적용 산출

5. 취사지원 근로소요 =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50) - 편제 반영 병력 +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
   가. 단계별 급식대상 증가인원 50명당 1명 소요
   나. 취사장 증가에 따른 소요인원(취사장 1개소별) : 기존시설 2명·신규시설 4명
6. 손실보충소요 = (단계별 운영소요 × 손실 보충률 × 단계 운영일수) ÷ 30
   가. 손실 보충률은 각 군별 자체 판단 손실률 적용

③ 제2항의 소요산정 기준 적용이 곤란한 부대는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차상급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전시 창설부대 등과 같이 전시 소요는 예상되나 정확한 물동량 판단이 곤란한 부대는 유사 기능부대의 소요를 기준하여 판단한다.

제27조(자원관리)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 자원은 병무청장이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 소집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응소거리, 자원분포, 수송로 등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별로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을 배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배정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제29조(전시근로소집자 지정) ①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은 보충역을 우선 지정하며, 보충역 자원 부족지역은 보충역 자원이 충분한 타 지역의 보충역 자원을 지정하여 전환할 수 있다.

② 전시근로소집자 지정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1~4년차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5~8년차
3.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9년차 이상
4.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연소자 순
5. 대체역 중 연소자 순

제30조(전시근로소집대상자 후순위 조정)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병역법」 제67조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근로소집을 후순위로 조정한다.

제31조(전시근로소집자 명부작성 및 관리) 소집부대장 및 예비군 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매년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송신한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원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전시근로소집통지서 교부) ① 4단계까지의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게는 평시에 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상에는 전시근로소집 지정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여 결격대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하여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신상이동자 대체지정)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중 신상 이동자가 발생한 때에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대체지정하고, 대체지정자 명부를 매월 20일과 다음 달 5일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송신한다.

제34조(전시근로부대 편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근로소집자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 부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근로부대 편성기준은 합동참모본부 전시 부대확장계획에 따른다.

제35조(운영계획 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은 국방부장관은 8월 31일까지 승인하고,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매년 9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 받은 병무청장은「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시근로 소집 운영계획서와 함께 매년 9월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계획서와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05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동원시기 결정) ① 동원 시기는 충무기본계획에 의한 동원단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동원 단계는 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7조(인도·인접절차) ① 인도·인접은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이 집결지 또는 인도·인접지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소집부대의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는 지방병무청 인도관이 서명 날인 하고, 지방병무청 명부에는 소집부대 인접관이 서명 날인한다.

③ 지방병무청 인도관과 소집부대 인접관은 전시근로소집자의 병적기록표를 인계·인수하고, 인도·인접서를 각 1부씩 교환한다. 다만, 상황이 긴박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과 소집부대장 간에 협조하여 전시 근로소집 병적기록표와 병력 수만을 확인하는 간이방법에 의하여 인도·인접할 수 있다.

제38조(인도·인접지) 인도·인접지는 소집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이 협조하여 자원소재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부대 또는 장소로 선정한다.

제39조(수송 및 호송) ① 육로이동 관리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수송계획을 검토하여 전시 육로 이동통제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②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및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가급적 개별 입영토록 하고, 타도 인도·인접지 중 원거리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집단 수송한다.

③ 집단 수송하는 전시근로 소집자는 최초집결지에서 인도·인접지까지는 지방병무청

장이, 그 이후는 소집부대장이 수송을 담당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전시근로 소집자 수송에 동원된 차량을 인도·인접 지로부터 소집부대 요구 장소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

⑤ 전시근로 소집자 호송 및 경계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업무협조)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 대행부대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전시 근로소집계획 수립, 자원관리,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국방부 집행계획 적용) 이 훈령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충무집행계획(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에 따른다.

제42조(소집해제 및 귀가) ① 소집의 요건이 해제되거나 소집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집을 해제하여 귀가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귀가자에 대하여 귀가증을 교부하고 귀가여비를 지급 한다.

제3절 기술인력동원

제43조(소요제기) ① 각 군은 국방부 동원소요 제기지침을 기초로 인력동원 소요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3월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각 군 본부에서 요구한 인력동원 소요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국방동원소요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1년 전 4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4조(동원운영계획 작성 등) ① 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기술인력(2종) 자원을 군별, 지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직할기관(부대)에서 자체 기술인력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동원운영계획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년도 전시부대 계획
2. 기술인력동원 소요 계획서
3. 상급부대 동원운영 계획
4. 행정관서 동원자원 배분 인원(충무집행·시행계획)

제45조(자원관리)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기술인력 사용부대, 사용기관 및 기술인력 동원업무 주관부대가 관리한다.

제46조(인도·인접) ① 인도·인접시 동원된 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또는 면허 등을 확인하고,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임무수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인도 인수증 3부를 작성하여 인도·인접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② 인도·인접 장소에서 사용부대 또는 사용기관까지는 사용부대 또는 사용 기관 책임하에 수송한다.

제47조(순번부여) ① 동원된 기술인력에게는 해당 연도 기술인력 동원자 순번 할당표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동원업무 대행 부대는 지역 내 순번 부여권을 가진 부대로부터 사전에 순번을 할당받아 부여한다.

제48조(동원기간 및 인사관리) ① 기술인력의 동원기간은 연 18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180일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술인력으로 동원된 사람은 사용부대에서 영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사용부대는 동원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거주를 위한 공간 및 통제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만 지속 단계(M+31일)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사용부대장의 판단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동원된 자의 피복은 사용부대에서 전시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동원기간 중 급식은 전시급식방침에 따라 사용부대에서 제공한다.

④ 동원대상별 임금지급 기준은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5~6급, 산업기사는 7~8급, 기능사는 9급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되,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 직급과 호봉을 부여한다.

제4절 물자동원 공통

제49조(소요제기) ① 각 군 및 국직은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판단 지침 또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소요제기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 및 미 증원군 소요)를 동원기능 부서와 합동으로 검증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1월까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정보화기획관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국방자원동원 소요판단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도 2년 전 12월까지 국방부 동원기획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년 전 2월까지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및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50조(동원소요심의) ① 국방부와 각 급 부대에 국방자원동원소요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동원소요심의회를 둔다.

② 국방부 동원소요심의회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 소요 관련 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되, 그 밖에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원기획관이 정한다.

③ 국방부는 산업(품목, 업체)·수송·건설·정보통신 분야별 심의를 하며,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실무심의회를 둔다.

④ 실무심의회는 국방부 자원동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원소요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1조(동원운영계획 작성 등) ①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은 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분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충무집행계획에 의하여 획득한 국가의 동원자원을 군별, 지

역별, 단계별로 재분배하는 문서로서, 각 군 및 지역사(해·공군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자체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전시 동원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평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② 각 군 및 지역사(해·공군은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운영계획 작성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연도 전시부대계획
2. 분야별 동원 소요서
3. 상급부대 동원운영계획
4.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동원 자원 배분물량(충무집행·시행계획·실시계획)

제52조(동원지정방침) 물자분야 동원지정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납업체 및 대형업체를 우선 동원한다.
2. 전시 대량소요 및 전투 긴요 물자를 우선 동원 지정한다.
3. 동원업체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지양하고 지역별로 분산 지정한다.
4. 주요장비 및 업체 동원 시 조작요원과 종사원은 동시 동원하되, 동원대상, 물자, 시설, 업체는「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제18조(동시동원) 및 자원 주관기관 충무집행계획에 따른다.
5. 긴요 물자는 정부비축 확대 및 업체비축을 권장한다.
6. 부족품목 및 생산제한 품목은 민수용 물자를 수용 동원한다.
7. 정상동원 차질 발생 등 긴급동원 사유 발생시 지역사의 장(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장)은 시·도지사 등에게 긴급동원을 요청한다.
8. 자동차, 건설기계는 1~4단계까지 지정하며, 5단계 이후는 소요 현황만 유지한다.

제53조(자원관리) 자원관리 책임은 자원관리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군은 사용자 입장에서 각 군의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가 관리한다.

제54조(동원지정업체 필수요원 선발 및 후순위 조정 등) ① 각 군은 전시 군 동원지정업체(국방부직할부대의 업체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필수 요원을 심의 선발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업체의 장에게도 통보하여 해당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후순위 병력동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군은 동원지정업체의 전시 인력확보를 위하여 동원지정업체 필수요원 선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에서 후순위조정 승인요청을 받을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후순위 조정 승인된 자가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등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후순위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후순위조정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 동원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

2.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
3.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⑥ 군 동원업체의 필요한 세부방침 및 절차는「군 동원업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한다.

제55조(지정결과 분석) ① 제대별 심도 있는 물자동원 지정결과 분석을 통하여 상·하 제대 간 연계된 물자동원운영계획 수립 및 정책 발전을 강구한다.

② 지정결과 분석은 지역별 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로부터 각 군 본부까지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지정결과 분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정결과 분석 시 제대별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 검토, 소요제기 및 동원 지정의 문제점 분석, 그 밖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실시부대별로 1~2단계의 하급부대 및 기관 관계요원을 참석토록 하여 물자동원의 문제점 및 발전사항을 도출하되 정책 및 제도개선소요는 차상급 부대 및 기관에 건의한다.

⑤ 각 군 본부는 지정결과 분석 최종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제56조(전시 미증원군 지원) ① 전시 미증원군에 대한 물자지원은 한·미 전시지원협정에 따라 동원 가용한 자원을 지원한다.

② 미 증원군 지원물자는 미군 요청에 의거 미군부대 주둔지의 한국군 물자 동원업무 수행부대에서 동원 및 지원할 책임이 있다.

③ 계획된 물량은 미군에서 요청 시 동원하여 미군 집결지에서 인도·인수한다. 다만, 동원계획 물량은 미군의 요청이 있을 시 동원하여 미군에 제공한다.

제5절 산업동원

제57조(소요산정) ①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통보한 국방동원소요 판단서에서 요구하는 동원소요를 자원의 가용성, 업체 생산능력 등을 고려, 심의·조정하여 국방동원 소요서를 작성한다.

② 동원소요는 전시 증·창설부대계획과 현역·군무원 및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전시 군수지원 총 소요에서 현 보유량과 수입 예정량 등을 차감하여 부족량만을 산정하되, 국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원소요에는 보급지원과 근무지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초도소요와 보충 소요 및 전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되, 종별·단계별·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전시 안전수준은 최대 인력유지를 기준으로 하되 현존 및 증·창설 부대의 완편 기준을 적용하여 1단계 초도 소요에 반영한다.

④ 동원소요는 군수지원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소요만 제기한다. 단, 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소요를 검증하여 제기하되, 국내 생산능력이 부족한 군용물자에 대하여는 기능이 유사한 품목을 대체 동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제58조(품질검사) ① 군 전용 물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제1항의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생산업체에 생산지 도관을 파

견하여야 한다.
③ 동원물자는 군 규격(또는 사양)에 의한 물자이어야 한다. 다만,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체품으로 한다.
④ 품질검사는 군수품 품질보증을 위한 제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인도·인수) ① 동원물자의 인수 시기는 동원 1~3단계는 각 단계 말일에, 동원 4단계 이후는 일주일 주기로 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자의 생산기간, 수송물량 및 수요부대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물량이 소량인 경우는 생산능력, 포장단위, 수송물량 등을 감안하여 전·후 단계에 포함하여 인수한다.
③ 물자 인수부대는 생산 업체와 충분히 협조하여 세부 인수 계획을 발전시킨다.
④ 동원업체 인수 시는 부속시설 및 장비와 종사인원을 동시 인수한다.
⑤ 동원물자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인도·인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각 군은 동원업체의 수송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최기지역 단일 군수시설에서 동원물자를 인수하도록 한다.

제6절 수송동원

제60조(소요산정) ① 동원소요는 해당연도 2년 전에 해당년도 각 군의 전시 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동원대상 장비 및 업체는 다음과 같다.
1. 장 비
가. 자동차는 지휘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한다.
나. 선박은 사용용도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바지선, 어선으로 구분한다.
다. 항공기는 고정익, 회전익으로 구분한다.
2. 업체는 자동차 및 화물 운송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항만 하역업체, 해상 운송업체, 항공 운송업체 등으로 구분한다.
③ 증편(창설)부대의 동원 소요는 편제장비 부족 소요를 반영하고, 단계별 해체부대의 보유 장비는 창설 모체부대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인가량을 초과한 장비는 부대 간 조정 후 소요를 산정한다.

제61조(수송장비 및 업체 사용동원 방침) ① 군이 소요로 하는 자동차, 선박, 공기 등 개별장비와 증·창설 군수지원부대에 소요되는 업체는 사용 동원한다.
② 군 사용동원장비 중 특수자동차, 항공기, 선박(어선을 포함한다)의 조작 인력은 동시동원 한다.

제62조(인도·인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개별 장비 인수 부대는 집결지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동원업체는 업체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제7절 건설동원

제63조(소요산정) ① 동원소요는 해당 연도 2년 전에 해당 연도 각 군의 전시 부대계획과 전시군수방침 및 절차, 부대별 장비편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동원소요는 건설기계·건물·토지·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정비업체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단계별, 지역별, 소요부대별로 작성한다.
③ 의료시설 소요는 산업동원 소요에 반영하되, 부족병상은 의료시설 인근의 이용 가능한 시설을 건설동원 소요로 반영한다.
④ 건설기계에 대한 동원소요는 증·창설부대의 편제장비 부족소요와 소모 보충소요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제64조(인도·인수) 건설기계 인수부대는 건설기계 집결지별로 인수관을 파견하여 인수하고, 건물, 토지,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는 소재지에서 인수한다.

제8절 정보통신동원

제65조(동원대상) ① 통신회선은 국제회선, 시외회선, 시내회선 및 위성회선을 대상으로 하고,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주파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프트웨어 사업자,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대별 편제 편성표에 포함된 장비 및 물자 등은 산업동원 계획에 반영한다.
④ 군 지휘통제통신체계에 대한 전시 활용성을 판단하여 평시 운용·유지하는 외주용역 업체를 동원 소요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66조(동원방침) ① 국가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동원지정업체를 신속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통신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동원자원의 배분 우선 순위는 군·관·민 순으로 한다.
③ 모든 자원은 최 근접 지역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동원한다.
④ 통신동원업체는 통제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대별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업체는 사용동원, 수시 소요는 통제 운영으로 지원한다.
⑤ 동원 지정된 공사업체의 인도·인수는 업체의 현 소재지에서 대표자 입회하에 소요부대 인수관에게 인도한다.
⑥ 통신회선의 동원집행에 관한 사항은 (주)KT가 위탁받아 시행한다.

제67조(소요산정) ① 전기 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 포함)가 지원 가능한 회선으로 한다.
② 평시 사용 중인 회선의 피해 발생 시 대체 소요 및 시내회선은 소요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내회선 중 초기단계에 긴급한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전화 소요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업체의 동원소요 산정은 육군은 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독립 전대급, 해병대는 독립 연대급 이상 부대를 기준으로 하며, 국직기관은 해당기관의 본부를 지원하는 통신부대를 기준으로 하고, 전시 증·창설부대 등 작전소요를 고려

하여 포함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은 부대별 전시임무를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소요를 산정한다.

⑤ 위성회선은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위성 통신장비의 필수 소요 주파수를 산정하고, 전술위성 통신장비에 대한 주파수는 제외한다.

제68조(인도·인수) ① 통신회선은 공중통신 책임구간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성하고, 소요부대의 통화자가 서로 확인함으로써 인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보통신업체는 업체의 현 소재지에서 대표자의 입회하에 지방전파관리소 동원집행관이 소요부대의 인수관에게 인도하고, 동원집행관은 대표자가 제출한 정보통신업체의 보유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이 명시된 인도·인수증을 작성한다.

③ 인도·인수시 군 관계자는 지방전파관리소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지정인원과 협조 후 처리한다.

제3장 지역예비군 동원

제1절 지역방위동원

제69조(지역예비군 동원권자) 동원명령은 국방부장관 및 권한을 위임 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 또는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이 발령하며, 이때는 위임 및 위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제70조(지역예비군 동원 기간) 지역예비군 동원권자는 지역예비군 동원령이 발령된 시점부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동원된 예비군을 운용할 수 있다.

제71조(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 ① 국가동원령 선포 이전 지역예비군동원 대상자는 전 예비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보류된 사람
2.「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전면 보류자
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한 방침 일부보류자 중 예비군 동원 보류자

② 국가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제1항의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서 증·창설 및 손실보충요원으로 동원된 예비군을 제외한 인원이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이며, 예비군 추가편성 시 추가 편성된 자원도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제72조(예비군 운용) ①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에 동원된 지역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예비군 동원지역 안의 직장예비군은 직장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책임부대와 협조하여 1지대의 목진지 점령 및 차단 작전, 제한된 기동타격 임무에 운용할 수 있다.

제73조(예비군 편성) 지역 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편성은 조직편성 지침을 기본으로 적

용하되 부대별 지역 방위작전에 부합되게 편성하여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74조(교육 및 홍보) 예비군지휘관은 가용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방위작전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75조(자원관리) ① 예비군지휘관은 지역예비군 동원 초기의 동원응소 보장과 작전구상, 전투근무지원 협조 등 유사시 즉각적인 지역방위 임무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전·출입자 확인 위주의 행정적인 자원관리가 아닌 병력, 물자 및 장비를 포함하여 상시 전투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투결산 체제에 의한 자원관리를 실시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상시 지역예비군 동원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자원결산과 병행하여 실제 지역예비군 동원 가용자원을 전투편성 제대별, 응소가능 시간대별로 일일 전투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 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전투 세부시행규칙에유지하고, 현역 군부대는 자대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현황을 유지 및 파악해야 한다.

③ 전투결산은 병력과 물자 및 장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력

제 대	예비군부대(중·소대)	대대/연대	수임군부대
시 기	일일단위	월 단위	분기단위

2. 물자와 장비는 월간 단위로 월말 기준 최신 현황을 유지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전투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예비군동원 대상범위 선정과 초기의 작전구상 및 무기지급, 급식, 수송, 교대 등 전투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여행 또는 7일 이상 장기출타 시 또는 타 지역 거주 시에는 출타 전 여행 또는 출타목적지, 기간, 연락처 및 기타 연락방법 등을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세대주 등"이라 한다)와 소속 예비군부대에 인터넷, 전화, 방문 또는 기타 간편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예비군중대에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장기 출타자 현황을 정확히 유지하고, 유사시 출력하여 경보발령이나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 등에 즉시 연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76조(지역예비군동원 하령 및 전파)

① 지역예비군동원 하령대상(범위)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구 분	상 황	가 용 자 원	예비군운용 시 제한요소
고 려 사 항	• 작전의 긴급여부 • 적 상황 • 지형적 여건 • 작전시간(주/야) • 기타	① 5~6년차 예비군(우선투입) ② 7~8년차 예비군(가용자원 부족/작전 장기화시) ③ 1~4년차 예비군(가용자원 부족/작전 장기화시) ※ 작전소요 충족여부와 예비군신분별 특성 고려	• 예비군 신분 (생업, 경제성) • 근무교대, 무장 • 전투근무지원 • 보상 문제

② 지역예비군동원 지역은 적 상황, 즉 적 또는 무장공비 침투 및 출현시간, 출현지점(원점), 적의 규모, 행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필요한 지역만 동원하며 적이 출현하지 않은 인접지역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명령을 하달하여 즉시 동원에 응할 수 있는 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한다.

③ 지역예비군동원 대상 선정은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하며 상황 및 가용자원과 예비군 운용 시 제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하령할 수 있다.

④ 지역예비군동원령 경보전파를 위한 제대별 임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해당부대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관련기관에 협조한다.

국방부/합참	• 중앙매스컴(TV/신문/라디오)
군사/사단	• 지역매스컴(TV/신문/라디오, 유선)
연대/대대	• 방송차량 운용 • 경보전파 협조(지역매스컴, 경찰/행정관서)
예비군부대	• 비상소집 전파(SNS, 전화, 구두) • 게시판 공고 • 앰프/사이렌
지·파출소	• 사이렌 • 주민신고망 활용 전파 • 가두방송(순찰차량)
해당관서 (방위지원본부)	• 앰프 • 행정조직망 이용 • 지역매스컴 이용보도 • 가두방송
※ 취약시간대(22:00-05:00) : 민방공 경보기를 이용한 경보전파	

⑤ 지역예비군동원령은 TV, 라디오, 신문, 전화, 방송, 사이렌, 타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파하며, 지역예비군동원 선포 일시, 동원 대상 지역/대상자(범위), 집결장소/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전파한다.

1. 직접통지 방법
   가. 인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 시는 동원명령서를 교부하되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나. 유선으로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명령 수령인에게 통지할 경우 명령수령인의 주소, 성명과 본인과의 관계, 통지일시, 통지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2. 간접통지 방법
   가. TV/라디오, 신문은 2개 이상 중앙 및 지방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공지 하되 TV/라디오는 1일 2회씩 2일 이상 연속 공지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은 2일 이상 공고한다.
   나. 그 밖에 구·시·군·읍·면·동 관할지역 단위로 가두방송은 1일 이상 연속 방송하며,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이를 동원대상자에게 알린다.

⑥ 신속한 경보전파체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한다.

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지방매스컴 등 공공전파 수단, 경찰·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및 마을단위 개인별 연락 체제 등의 다중 연락체제를 평시에 유지하며,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전파대책을 준비한다.
2. 비상소집망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수시 점검 및 최신화하고 평시에 소(분)대장 또는 마을단위 연락책임자에게 배포하여 인지시키고 필요시 비상소집 전파훈련을 실시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지역예비군훈련 시 비상소집망에 의한 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대별 비상소집명부에 전화카드를 평시에 비치한다. 또한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체신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시 비상소집전파 및 상황 문의전화 등에 의한 예비군중대 통화마비 초래를 방지해야 한다.
3. 예비군은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소집에 대비하여 지역예비군동원명령 등이 신속·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타 시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와 소속 예비군부대(직장예비군부대 포함) 등(이하 "명령수령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과의 연락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명령수령인 등"은 소속예비군부대로부터의 지역예비군동원명령이나 발령 시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한다.

제77조(지역예비군 동원 응소) ① 지역예비군동원 응소시간은「예비군법 시행령」제12조(동원 응소시간)를 적용한다.

② 지역예비군동원 소집을 통보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최단시간 내에 지역예비군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 이내에 집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동원령을 발령한 시점에서 해당지역 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해 지역 동원에 응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예비군지휘관은 위 사항을 예비군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예비군동원 발령일시로부터 응소기준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원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예비군법」제5조(동원) 위반자로 고발조치한다.

제78조(지역방위작전 실시) ① 예비군지휘관은 경보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들이 소집되기 전에 각자의 임무부여사항을 재확인하고 지휘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각종 경보전파를 통한 예비군소집과 동시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조기 개최를 요구하고, 개최 즉시 작전상황 설명과 지역예비군 동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조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지역 예비군동원에 따른 전투근무지원(홍보, 급식/ 수송/의료, 기타 등) 계획을 시행 하도록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동원령 발령과 동시에 진공포장무기 해체 및 탄약 분배지침을 하달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지휘관은 지역예비군동원령 발령 및 응소예상 인원과 교대 등을 고려, 급식 대상인원을 판단하여 해당 지역방위지원본부와 협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급식지원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⑤ 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에서 응소한 예비군 인원확인과 편성 및 임무 숙지 등을 확인하고 통신장비 및 연락체계, 목진지 전투낭 지급, 정신교육 및 작전상황 전파 등 무기수송차량 도착 시까지 필요한 작전투입준비를 실시한다.

⑥ 작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교대는 근무와 휴식/생업이 조화 되도록 2교대 이상 교대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1개조 24H 투입(주기시간) 2교대(교대주기)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작전상황과 가용자원 및 예비군 운용 시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주기시간 및 교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지원이 연계되도록 한다.

⑦ 이 훈령에서 정하는 외에 세부적인 지침은 합참에서 구체화하여 발전시킨다.

제79조(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 ① 평시에 각 제대별로 지역방위 동원태세를 불시에 점검하여 계획발전 및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제고시킨다.

② 불시 지역방위 동원태세 점검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특별 감사반과 수임군부대장급 이상 제대에서 자체 주관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중점은 지역방위작전 임무수행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예비군 불시 지역예비군 동원 응소율과 관련기관의 계획보완, 지역예비군 동원 절차 연습에 두며, 세부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방위 작전임무 수행능력 수준
   가. 조직편성 및 예비군운용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
   나. 자원관리 실태
   다. 무기·탄약, 수송, 급식 등 전투근무지원 계획
   라. 지역예비군 물자 및 장비관리 실태
   마. 비상소집 및 경보전파 요령
2.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응소 실태 : 응소율 및 예비군임무 숙지실태
3. 행정관서의 계획 : 방위지원본부 편성 / 지원계획, 합동상황실 운영실태
4. 비상발령 / 소집 - 무기수송 - 지급 - 배치까지의 절차 및 제원산출

④ 훈련점검은 예비군부대와 군 및 행정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⑤ 경보하달은 “불시 지역예비군동원 훈련소집”으로 발령하며, 참가 예비군에 대해서는「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에 명시된 훈련시간으로 대체한다.

제80조(지역예비군동원 후 행정처리) ① 지역예비군동원 개시일부터 개인별 참석 유무를 확인하고, 국방 동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지역예비군 동원 종료 후 보상 및 처벌과 사후 처리의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위작전 진행 간 또는 종료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예비군에 대해서는 국방 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지역예비군동원 응소여부를 확인 후 예비군 관련 자료를 전출부대로 이송해야 하며, 불참자의 경우는 불참일시 및 시간/내역, 범죄사실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 이송하여 전입지 예비군부대에서 바로 고발조치토록 한다.

제2절 재난 시 동원

제81조(목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시 예비군 동원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82조(재난 시 동원권자) 재난 시 동원권자는 국방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임군부대장)이며, 예비군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제83조(재난 시 동원시기) 재난 시 예비군의 동원권자는 예비군법 제5조(동원)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제84조(재난 시 동원기간) 예비군의 개인별 재난 시 동원기간은 연간 교육훈련방침 시간과 관계없이 동원령 발령 시부터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제85조(재난 시 동원대상자) ① 수임군부대장은 재난상황, 재난유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 동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수임군부대장은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2. 수임군부대장은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단,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감염병(전염병)의 위험에 노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이 필요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역방위작전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 또는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을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예비군(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은 재난 시 동원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그 밖의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른다.

제86조(재난 시 예비군 편성)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 편성에 관하여는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유형별 동원 목적에 맞도록 재편성할 수 있다.

제87조(재난 시 예비군 운용)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 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재난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투입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을 지역단위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범위 내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재난 시 동원된 지역의 직장예비군은 직장 단위로 이를 운용하고, 지역 부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제88조(재난대비 교육 및 홍보) 수임군부대장(예비군지휘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시 동원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89조(재난 시 예비군 자원관리)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재난유형별로 자격·면허증 보유자 등 필요한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유형별로 필요한 자원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여 유사 시 타 지역으로의 자원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일일 단위로, 대대·연대장은 월 단위로, 수임군부대장은 분기 단위로 재난관리지원(인적·물적) 활동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

제90조(재난 시 동원 하령 및 전파) ① 재난 시 동원은 재난 발생 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원대상과 동원지역, 동원 시기 및 기간을 적절히 반영하여 하령한다.

②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상 지역과 동원 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그 동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한다.

③ 재난 시 동원령을 전파할 때는 방송, 신문, 전화, 기타 가용한 수단을 이용한다. 또한 동원령 발령일시, 동원 대상 지역, 동원대상자, 집결장소,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지역방위동원 절차를 따른다.

제91조(재난 시 동원 응소) 재난 시 동원은 지역방위동원 절차에 준하되, 별도의 지정된 시간에 응소한다.

제92조(재난 시 동원 실시) ① 예비군지휘관은 동원령 전파 시 초동조치 요원인 주요직위자를 우선 소집하여 예비군이 소집되기 전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지휘 통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집결지로 응소한 예비군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편성·임무와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재난관리 지원을 위한 제반 활동을 실시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동원 응소 인원을 고려하여 지역별 투입 우선순위 선정 및 투입 인원 조정·통제 등 효율적인 예비군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상황 및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교대 주기를 조정·통제한다.

제93조(예비군 근무지원) ① 수임군부대장(군부대의 장)은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의 장비·물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관리 지원을 요청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임군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의 요청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의 임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재난 시 군부대 지원을 요청한 경우,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 방재물품, 수송 등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기관장)의 요청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 등 국방부가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재난 시 동원 준비상태 확인) ①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수임군부대장은 재난 시 동원에 대비한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확인 사항은 재난유형별 자원관리 및 예비군 동원절차, 유관기관 간의 협조 계획, 예비군 교육 등에 중점을 둔다.

제95조(재난 시 동원 행정처리) ① 재난 시 동원의 행정처리와 불참예비군에 대한 고발조치 등은 지역방위동원 행정처리 절차를 따른다.
② 재난 시 동원된 예비군의 동원시간 결산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18조에 따른다.
③ 재난관리 지원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 및 치료는「예비군법」제9조에 따른다.

제4장 동원준비태세

제1절 동원자원조사

제96조(동원자원조사) 국방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원조사 기본계획을 근거로 국방동원자원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에 시달한다.

제97조(조사의 범위) ① 소요품목 및 업체에 대한 조사는 각 군에서 실시하며, 신규소요품목 및 업체에 대한 동원능력조사는 추가로 국방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업체를 방문 조사할 때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 또는 일선 지방행정관서 공무원과 군 조사요원이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8조(조사대상) 조사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99조(조사방법) ① 조사에는 중점관리지정업체나 인력동원 대상자 및 물적 자원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현장 조사방법과, 서면에 의하여 동원 대상자 또는 업체로 하여금 조사에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서면조사방법이 있다.
② 육·해·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육군에서, 해·공군 및 국직부대에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는 해군에서 주관하여 조사하되, 자치단체와 일정을 협의 후 타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한다.
③ 동시 임무 고지된 중점관리 대상 업체를 조사한 군에서는 자원조사 실시 결과를 군 간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제100조(조사내용) ①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단계별 생산 능력, 장비보유 여부, 비축능력, 설비투자의 필요성과 전망, 원·부자재 공급능력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임무고지 수행능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전시초기 단계 부족품목에 대한 동원능력 판단 및 대체지정업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제101조(조사 실시 요령) ① 본인이 조사 요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다.

②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명의로 통보된 임무고지서를 확인한다.
③ 임무고지 품목과 단계별 임무 고지 내용을 참조하여 업체의 능력을 정확히 검증한다.
④ 서면조사의 경우 자원조사 기간 중 조사표 회수 시 누락 부분 및 잘 못 작성된 부분 유무를 확인한다.

제102조(조사결과 보고) 조사를 수행한 각급 부대는 해당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조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조사결과 활용) 각급 제대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원지정된 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와 협조하여 대체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제104조(행사목적)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해 연중 정기적인 민·관·군 합동점검으로 완벽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국가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있다.

제105조(행사계획 수립, 실시)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되, 1분기 행사는 국방동원 자원조사로 갈음하고, 1~2개 분기는 시·군·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1개 분기는 시·도 또는 군부대의 주관으로 종합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③ 충무훈련을 실시하는 지역은 충무훈련으로 갈음하되 충무훈련 직전 기술인력·자동차·건설기계 분야를 확인·점검하고,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시·도는 훈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서 기술인력·자동차·건설기계 분야를 확인·점검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제3절 비상대비(동원)업무 발전 협의회 시행

제106조(행사목적) 전시 국가동원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시·도 단위 관·군 합동 협의회를 실시하여 동원업무 관련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동원관계자의 상호 교류활동 및 협조 등 동원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107조(행사계획 수립, 실시) ①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충무기본계획의 행사지침을 근거로 국방부 행사지침을 동원운영계획에 포함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행사는 시·도 행정관서와 관할지역의 지역방위사단급(함대사, 비행단) 책임 군부

대가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관·군 의사결정권자 공동주관으로 비상대비(동원)업무담당관이 참석하여 관련업무 발전 토의와 상호 업무관계 및 협조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④ 행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제4절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제108조(목적) 동원지정업체·행정관서·군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 등 생산능력 검증 및 행동절차 숙달을 위하여 생산훈련을 실시한다.

제109조(훈련중점)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한다.

1. 동원지정 업체의 전시 생산체제 전환능력 배양
2. 동원지정 업체의 전시 임무고지 적절성 확인
3. 전시 생산 및 수송, 인도·인수절차 등을 숙달

제110조(기본방침) ① 생산훈련은 전시 물자동원절차 개념을 적용, 매년 5~10월간 불시훈련으로 실시한다.

② 훈련품목은 반드시 전시 임무고지와 동일한 품목으로 선정하며, 방산물자는 국방부(동원기획관실)와 방위사업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일반물자는 각 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부대조달 품목 중에서 선정하되, 지역예비군전투장구류 등 일반물자 위주로 선정한다. 다만, 각 군의 지역예비군전투장구류 목표물량 확보 시 점차 방산 물자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방산물자 생산훈련은 가급적 장비와 구성품, 부품 등 다양한 유형의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전시 동원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이 중단된 품목을 일부 포함하여 훈련함으로써 동원 업체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시킨다.

④ 훈련 대상업체는 해당 연도 중점관리지정업체와 방위사업법 제3조에 의한 방산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⑤ 훈련규모는 조달납품 가액이 3,500만원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⑥ 훈련은 전시상황 하에서 임무수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 과정을 망라하여 실시한다.

1. 임무고지, 훈련통지서 교부
2. 원·부자재 품질검사, 생산 감독, 품질검사
3. 수송 및 인도·인수, 보상금 지급 등

제111조(훈련계획 및 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에 시달한다.

② 각 군 및 방위사업청은 동원지정 품목 중 일반·방산품목을 대상으로 생산훈련 적격 품목을 선정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③ 국방부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선정한 훈련대상 품목을 토대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후 훈련계획을 관련 부서에 시달한다.

④ 각 군 및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부에서 시달한 산업동원 생산훈련 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훈련계획을 수립 및보고한다.

⑤ 각 군은 생산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훈련 종료 후 1주 이내에 국방부에 보고한다.

⑥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는 별표 2와 같다.

제112조(업무분장) ① 생산훈련 관계기관(부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훈련지침 및 훈련계획 수립·시달, 관련부처 협의
   나. 전반적인 훈련조정·통제 등
2. 각 군 본부
   가. 자체 세부 훈련계획 수립·부대조달 훈련품목 선정 및 보고
   나. 훈련실시 주관 및 훈련 전 과정 통제·평가
   다. 생산물자 분배계획 수립·분배, 보상금 지급 등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1. 방위사업청장
   가. 방산물자(품목) 선정·생산업체 계약체결
   나. 계약현황(재고번호, 조달요구번호, 납기, 납지 등) 관련부서 통보 등
2. 국방기술품질원장
   가. 업체별 생산일정 확인,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보고
   나. 품질검사요원 파견, 생산과정 지도감독 등

③ 국방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

1. 생산업체에 대한 임무고지, 시·도 통제, 업체별 생산물자 인도관 파견
2. 생산물자 납지 수송 등

제113조(보상비) ① 각 군은 산업동원물자 불시생산훈련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국방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보상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시 물적자원 동원 보상 지침에 따른다.

제5절 동원태세 점검

제114조(목적) 국방부장관은 동원업무체계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하여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인원 및 물자동원 준비태세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 한다.

제115조(점검중점) 현장 확인 및 점검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동원 관련 방침 및 규정의 이행 상태
2. 부대 증·창설 준비 실태

3. 충무계획 및 동원운영계획과의 연계성
4. 동원자원 관리 및 동원지정 결과분석 후속조치 실태
5.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제116조(점검실시) ① 동원태세 점검은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동원태세 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부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동원태세 우수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17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기술품질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06.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11.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규정 폐지)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201호)은 이 훈령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1602호, 2013. 12.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호, 2016. 12.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호, 2018. 12. 28.〉

이 훈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3호, 2019. 12.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1호, 2020. 9. 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호, 2022. 7.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물적자원	4③	238
2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	103⑥	239

❑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전시근로소요현황	25③	240

【별표 1】

물 적 자 원(제4조제3항 관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②항 별표)

1. 물자
   가. 무기·탄약·폭약과 그 밖의 군용물자
   나. 식품·음료 및 담배
   다.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 기기류와 그 밖의 공산 품류
   라.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그 밖의 연료
   마.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
   바. 농약·비료 및 동물사료
   사.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하역장비와 그 밖의 수송 및 건설용 장비
   아. 토지·건물·토목건축용 물자·공작물과 그 부속물자
   자. 전산장비·통신설비·통신용품과 그 밖의 통신용물자
   차. 방송·인쇄시설과 그 밖의 홍보용 물자
   카. 물의 사용권, 광업권·조광권·어업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건 및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업체
   가. 물자의 생산·수리·가공·수출입·보관·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나. 전력·운수·방송·통신·보건·건설·금융·조폐·신문·출판·영화·문화·관광·환경·연구개발·사회복지·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단체 및 기관

【별표 2】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흐름도(제103조제6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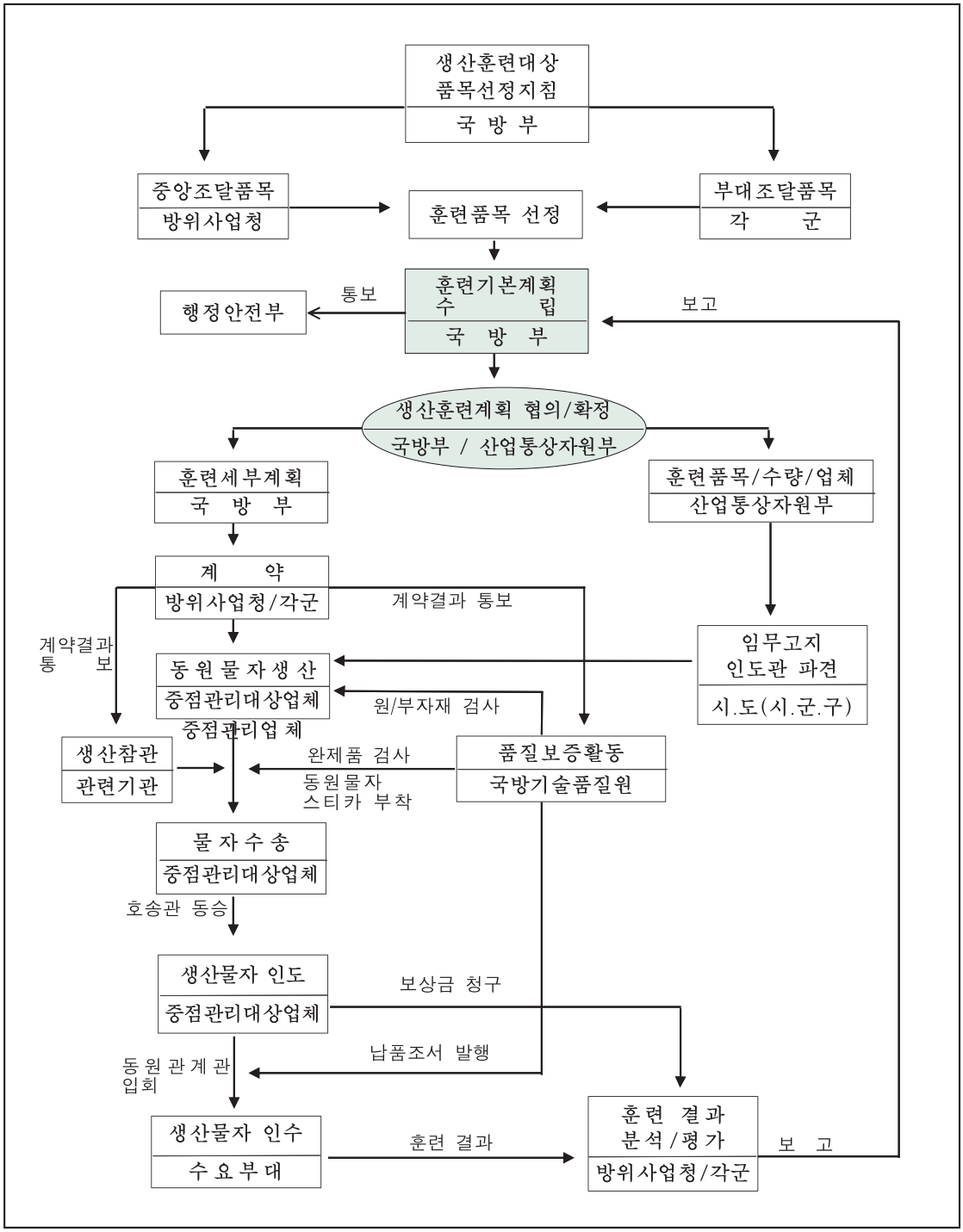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전 시 근 로 소 요 현 황(제25조제3항 관련)

지 역 (지방청별)	소집 부대	인도·인접지	동원소요			긴급단계						지속단계			
			계	운영 소요	손실 보충 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12단계
						M+1	M+2	M+3	M+4	M+5	M+6	M+7	M+31	M+46	M+61~364

※ 군별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사용은 가능하나 상기 내용은 필히 포함되도록 작성

13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국방부 훈령 제2140호(2018. 3. 12.)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2288호(2019. 6. 24.)
일부개정 국방부 훈령 제2603호(2021. 12. 16.)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34, 5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동원정보체계(이하 "국동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동체를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국방전산정보원(이하 "국전원"이라 한다)
3. 국직
4.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5. 각 군(軍)
6. 한국국방연구원
7. 병무청
8.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 〈삭제〉

제4조(업무분장) 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부서·기관 및 부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동원기획관(이하 "동원기획관"이라 한다)
   가. 국동체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나. 국방동원정보화 관련 법령·제도·방침 개정 및 종합
   다. 국동체 기능개선 및 품질관리 총괄

라. 국동체 사용실태 확인 및 감독
마. 국동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구축 사업 예산 반영
바. 국동체 사용자 교육 지원
사. 데이터 관리의 조정 및 통제
아. 국동체 사용자 화면에 대한 비밀분류 및 관리
자. 국동체 사용자 경연대회 개최

2.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하 “정보화기획관”이라 한다)
가.「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표 3호에 따른 국방정보화사업 관련 정보화기획관 업무분장 준용
나. 〈삭제〉

3. 국전원장
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의 총괄적인 책임 및 수행
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소요제기, 계약
다. 소프트웨어 관제 및 보안, 장애관리
라. DB 내 데이터 관리
마.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라 한다) 교육용서버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 업데이트
바. ~ 타. 〈삭제〉

4. 국방부 직할 기관 및 부대의 장 : 사용자 아이디 관리 및 업무권한 설정

5. 육·해·공군 참모총장(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
가. 예하부대 요구사항 종합 및 반영 건의
나. 업무별 정보화 관련 법・제도・규정・방침 개정 건의
다. 화면·메뉴 관리 및 개선 요구
라. 공지사항・동원제도발전 제언 등 해당내용 확인 및 조치
마. 국동체 부대정보 연동관리
바. 국동체 사용자 교육 지원
사. 중간제대·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동원사단 체계 운용자의 임명 및 운영
아. 기술인력동원의 지역대표부대 선정 및 관리
자. 미8군 한국군 근무지원단의 국방망 사용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최기 수임군부대에서 지원토록 조치

6. 중간제대・수임군부대・동원업무대행부대・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의 장
가. 소집부대・사용부대・소요부대・예비군부대의 국동체 상 지정된 자원(인원, 물자)의 관리・운영 및 예하부대 요구사항의 종합, 반영 건의
나. 국동체 운용 관련 요구사항 접수・검토 후 상급부대로 개선 및 반영 요구
다.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 자원조사 및 민수용 물자관리 결과를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의 동원정보 유지
라. 공지사항・동원제도발전 제언 등 해당내용 확인 및 조치
마. 소집부대・사용부대・소요부대・예비군부대에 대한 보안 교육・감사 실시

바. 병무청의 인터넷망 국동체 사용관련 보안 점검 실시
사. 예하부대 국동체 사용자 교육

7. 소집부대·사용부대·소요부대·예비군부대의 장
가. 국동체 상 해당부대로 지정된 자원(예비군, 인원, 물자)의 관리 및 운영
나. 지정된 자원의 충족여부 판단 및 필요할 경우 적정자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다. 국동체 기능개선 요구사항 소요제기
라. 인원동원 소요제기 및 완편명부 작성(소집·사용부대장)
마. 물자동원 운영계획 조회(소요부대장)
바. 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결과 입력
사. 국동체 사용 불가시에 대비하여 예비군자원에 대한 백업체계 유지

8. 학군교장
가. 각 군 및 국직 국동체 사용자에 대한 교육
나. 국동체 교육용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다. 국동체 교육용 서버 내 데이터 관리, 백업 및 복구
라. 국동체 사용자경연대회 주관(시험 출제 및 채점, 시험장 제공 등)

9. 병무청장
가. 국동체 내 병무청 공지사항 게시판 관리
나. ~ 마. 〈삭제〉

10.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장
가. 국동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체계의 관리 및 운영
나. 국동체 사이버 보안위협 관제
다. 재해 재난 등 유사시 국동체 체계 복구를 위한 데이터 백업 관리
라. 국동체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체계 및 기반SW의 장애 조치 등 장애 관리

11. 한국국방연구원장
가. 제3호 국동체 운영업무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89조 제5항에 따라 국전원이 위탁하는 유지보수 계획수립 등 일부 업무

제2장 자료 구축 및 관리

제5조(자료의 구축) 국동체에 구축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조직관리·운영지원·자원관리·교육훈련·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기록 등 예비군 운용에 관한 자료
2. 소요관리·운영관리·동원집행·분석 및 평가에 관한 예비군동원자료
3.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기술인력동원 등 인원동원에 관한 자료
4. 산업동원·건설동원·수송동원·정보통신동원 등 물자동원에 관한 자료
5. 국가주요시설, 기상·지형정보, 사회기반시설 등 동원능력분석에 관한 기초자료
6. 기타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자료의 관리) ① 동원기획관은 국동체 내 동원 및 예비군 자료 구축·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체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방부 체계담당자는 화면별·부대규모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로그를 관리하는 등 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각 군 및 국직의 국동체 사용자는 자료의 입력·수정·삭제에 유의하여 정확한 자료를 작성·저장하여야 하며, 출력 및 다운로드 시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전원장은 체계의 자료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활용) ① 국방부, 각 군 및 국직의 국동체 사용자는 동원 및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용권한 범위 내에서 국동체에 보관 중인 정보를 검색·입력·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각종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은 훈련 계획을 조회하고 훈련 신청 또는 연기를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동원기획관은 대내·외로부터 국동체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등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동원 및 예비군 정책·계획 등을 검증함으로써 국방경영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원능력분석 기능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보호) ① 국동체에 구축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②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사용자 비밀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자료는 비인가자가 접근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비밀화면 접근은 암호장비 사용자에게만 허용하고, 모든 작업에 대한 로그는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최신자료의 유지) ① 동원업무 담당자 및 예비군지휘관은 국동체에서 통합 관리되는 기존 자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동체에 반영하여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 국동체와 연동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부대(부서) 및 기관의 장은 상호 연동 협의 결과에 따라 수시로 최신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

제3장 체계 구성 및 연동

제10조(체계의 구성) ① 동원기획관은 국동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야로 구성하되 국방

동원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구성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1. 국방망(군부대용) : 예비군운용, 예비군동원, 인원동원, 물자동원, 동원태세, 동원능력분석
2. 인터넷망(예비군부대용) : 부대관리, 자원관리, 교육훈련, 병력동원, 예비군동원
3. 예비군홈페이지 : 인터넷 PC로 예비군 훈련신청 및 조회
4. 예비군 모바일 앱 : 모바일기기로 예비군 훈련신청 및 조회

② 다른 체계와의 연동 및 상호운용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체계를 구성하되 향후 기술발전 추세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및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체계의 연동) ① 국동체는 국방전장관리체계, 국방자원관리체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통합관리체계, 병무청의 병무행정통합정보시스템 등 대내·외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계관리자는 국동체에 보관중인 정보가 유관정보체계로 임의 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수시로 연동 실태를 점검하여 연동항목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부서를 포함한 연동대상체계 관련기관 간의 합의를 거쳐 연동통제문서(ICD)를 수정한 후 이를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삭제〉

제4장 체계 운영 및 보안

제12조(체계운용자의 임무) ① 국방부, 각 군 본부,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 중간제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는 체계운용자 “정”, “부”를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체계운용자 “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운용자 “부”의 임명, 지도 및 감독
2. 국동체의 전반적 사용에 대한 확인 및 감독

③ 체계운용자 “부”는 사용자 아이디 및 부대정보 관리, 사용자별 권한 및 겸직부대 부여,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및 기능개선 소요제기·종합 등 체계운용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부대정보 관리, 화면별 비밀등급 설정 등 주요업무에 대한 임무수행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체계운용자에 한한다.

④ 국방부의 국동체 체계운용자 “정”은 동원기획관, “부”는 자원동원과장이 된다. 다만, 체계운용자 “부”의 임무 중 예비군부대정보 관리, 예비군업무 사용자의 권한 부여 임무는 예비전력과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국동체 접속은 지정된 컴퓨터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동체는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해야 한다. 다만, 국방망 사용자에 한해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국동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무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여러 부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겸직부대로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국동체는 실명제로 운용하므로 신규 보직자는 아이디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접근권한 관리) ① 동원기획관은 사용자별 역할부여 기준을 정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등록·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동체의 비밀화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망 국동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PC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체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등록한 PC의 위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④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체계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1개월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은 미사용으로 자동 변경되며, 체계운용자는 미사용으로 2년 이상 유지되는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제15조(보안 관리) ① 국동체 DB는 "군사Ⅱ급 비밀"로 관리하고, 특별정보와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②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비밀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자원동원과의 인원동원·물자동원·동원능력분석 업무담당자를 비밀관리자로 지정·운용한다.

③ 국동체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현황의 비밀등급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분류하고, 화면별 비밀등급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④ 국동체상의 비밀화면을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생산비문의 사본으로 등재·관리한다.

⑤ 국동체 화면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사용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이 부여된 화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기록이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삭제〉

제5장 교육, 형상관리 및 유지보수 등

제16조(교육) ① 국방부 및 각 군은 국동체를 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사용자 또는 체계운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집 또는 방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수임군부대장(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예하 소집부대를 대상으로 교육 시기, 장소 및 대상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군교는 국동체 사용자 중 해당연도 동원 및 예비군 교육 대상자로 편성된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가 요청하는 경우 순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국전원장 및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포함)은 국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17조(형상관리) ① 국동체의 형상에 중대한 변경을 요하거나 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계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와는 별도로 국전원이 주관하고, 국동체 사용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형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상관리 방안을 결정한다.

② 국동체의 형상관리에 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을 적용한다.

제18조(유지보수) ① 국전원장은 국동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군은 법령과 제도·방침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기능 개발 또는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는 국동체에 이미 구현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공문으로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④ 동원기획관은 기능개선소요에 대하여 개선 필요성 여부 검증을 위한 국동체 기능개선소요 검증회의를 업무분야 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생략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9조(헬프데스크 운영) ① 국전원은 사용자의 질의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② 〈삭제〉

제6장 보칙

제2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훈령 개정) ① 국동체를 운용하는 전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와 개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 동원기획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규정 적용) ① 이 훈령에 포함된 각종 법령 및 훈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훈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개정된 법령 및 훈령에 따른다.

② 동원기획관은 국동체의 업무별 기능과 업무수행절차 등 세부 운영 및 관리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제2140호, 2018. 3. 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8호, 2019. 6.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호, 2021. 12. 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1】

정 의(제2조 관련)

1. “국방동원정보체계(Defense Mobilization Information System)”(이하“국동체”라 한다)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해·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2. “예비군운용 분야”란 예비군 조직관리, 운영지원, 자원관리, 교육훈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기록 등의 업무를 말한다.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4. “예비군동원 분야”란 지역예비군의 소요관리, 운영관리, 동원집행, 분석/평가 업무를 말한다.

5. “인원동원 분야”란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 기술인력동원 업무를 말한다.

6. “물자동원 분야”란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정보통신동원 업무를 말한다.

7. “동원태세 분야”란 동원상황, 제원표, 동원정기보고, 동원전투준비태세 보고 등의 업무를 말한다.

8. “동원능력분석 분야”란 전장 상황을 고려한 컴퓨터 모의에 의해 전시 동원율을 예측하고 동원집행 제한사항 도출 및 동원상황을 재연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사용자”란 국동체를 이용하여 직접 동원 및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군무원, 공무원 및 예비군 등을 말한다.

10. “체계운용자”란 수임군부대에서부터 국방부까지 국동체의 체계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체계담당자”란 국방부에서 국동체 자료의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계관리자”란 응용소프트웨어(SW)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비밀관리자”란 국동체내에서 각 업무별로 비밀을 분류하고, 등급 표시, 일괄 생산 및 배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지역예비군”이란 행정구역단위(읍·면·동 등)에 편성되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15. “예비군부대”란 지역 및 직장단위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말하며 지역은 읍·면·동단위 중대급으로, 직장은 직장단위의 분대에서부터 여단급으로 편성된다.

16.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의 소집, 운용하는 단위부대로써 충무계획(3700)에 명시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17. “지역대표부대”란 시·군·구 단위로 그 지역에 위치한 각 군 및 직할부대 중 해당 시·군·구청의 기술인력 지정자 명부를 확보하여 국동체에 입력 임무를 수행하도록 1개씩 선정된 대대급 부대를 말한다.

18.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관리·운영 및 지역부대의 동원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대를 말한다.

19. “동원업무 대행부대”란 동원업무 수행시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 부대 또는 전시 창설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업무 등 제반 동원업무를 병무청과 협조, 조정 통제하는 부대를 말한다.

20. “중간제대”란 각 군의 경우 본부와 수임군부대, 동원업무대행부대,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 사이의 중간 지휘 관리제대로서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 2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해군은 해군본부 직할, 해군작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를, 공군은 공군본부 직할, 공군작전사령부, 방공유도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를, 국방부 직할 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이라 한다)는 각 기관·부대별 최상위 제대(사령부)를 말한다.

21. “사용부대”란 소요·지정된 기술인력을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최소 단위부대를 말한다.

22. “소요부대”란 소요·지정된 동원물자를 물자동원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부대로 물자동원의 최소 단위부대를 말한다.

23. “물자동원업무수행부대”란 물자동원 운영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자원 지정 및 관리 등 제반 물자동원업무를 조정 통제하고, 자원 관할 주무부서와 협조하는 부대로 산업, 수송, 건설, 정보통신 동원업무수행부대로 나누어진다.

24.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이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대(부서)를 부호화·표준화하여 체계 구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부대코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5. “국방정보통신망”(이하 “국방망”이라 한다)이란 국방부에서 운용하는 군 내부 인트라넷을 말한다.

26. “유지보수”란 장애진단 및 수정, 보수, 법령·제도·방침의 제·개정 등으로 인한 기능 개발 또는 개선, 자료의 관리·유지, 사용자 교육 및 지도 등의 제반 업무를 말하며, 이에 대한 계획, 조정, 통제, 수행 활동을 말한다.

27. “형상관리”란 정보체계를 개발, 운영함에 있어 대상체계의 규격이 확정된 이후 사용자의 요구변화와 관련기술의 발전, 기타 중요한 환경변화 등으로 기 확정된 체계규격의 변경을 관리·통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28.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이하 “DB”라 한다)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29. “로그”란 컴퓨터 시스템의 운전기록으로 콘솔(Console)에서의 조작의 기록,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시간 정지 상태, 입출력 장치의 사용시간 등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가능한 것’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기록한 것을 말한다.

30. “연동통제문서(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란 인터페이스를 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물리적·기능적 특성, 성능과 이를 시험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한 도면이나 문서를 말한다.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제 2 장

예비군관계법령

CHAPTER 01 예비군법(법률)(제19082호)

CHAPTER 02 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518호)

CHAPTER 03 예비군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1071호)

CHAPTER 04 병역법(법률)(제19081호)

CHAPTER 05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84호)

CHAPTER 06 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제1088호)

CHAPTER 0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1094호)

CHAPTER 08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제1068호)

CHAPTER 09 예비군 조직 ·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2761호)

CHAPTER 10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765호)

CHAPTER 11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제2587호)

CHAPTER 1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2775호)

01 예비군법

[시행 2023. 6. 14.] [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6. 5. 29.>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관리·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이하 "비상근 예비군"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라 동원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예비군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 그 동원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⑥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1. 25.]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2. 12. 13.>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④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13.>

⑤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13.>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⑦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10. 1. 25.]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①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保留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게 될 사람은 그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3. 22.>

[전문개정 2010. 1. 25.]

제7조(무장)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②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거나 소집되어 훈련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의 소개(疏開) 또는 피난 명령
2. 교통, 조명(照明) 또는 출입의 제한 등의 명령
3.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② 예비군은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작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을 검문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 9. 15., 2014. 3. 11., 2015. 12. 15.>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2. 12. 13.>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동원된 사람에게는 동원된 기간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외의 소집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隷下)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군 편제(編制)에 의한 지휘 계통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동원
2. 제1호에 따라 동원된 예비군부대의 작전지휘 및 작전상 필요한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

⑤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 4.>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15조(벌칙)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0. 15.>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⑤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2. 12. 13.>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 12. 13.>

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2022.12.13. 법률 제19082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0항을 개정함.]

제15조의2(과태료) ①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제16조 삭제 <2010. 1. 25.>

부칙 〈제19082호, 2022. 1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2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18호, 2022. 3. 8., 일부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국방부(동원기획관실) 02-748-5217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자원"이란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말한다.
2. "수임군부대의 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3.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말한다.

제3조(예비군대원 지원)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1.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로 임용되어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한다.

제4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2.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때에는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15. 2. 10.>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대를 설치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1.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자치구 단위.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2. 중대: 동·읍·면 단위
3. 소대·분대: 통·리 단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0., 2016. 11. 29.>

1.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2.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3. 타격대: 동·읍·면 단위

⑤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개정 2013. 2. 20.>
1. 여단: 7천201명 이상
2. 연대: 1천601명 이상 7천200명 이하
3. 대대: 401명 이상 1천600명 이하
4.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5.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6.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3. 3. 23.>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 2. 20.>

⑧ 예비군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3. 2. 20.>

⑨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0.>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이 조에서 "비상근예비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2.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② 비상근예비군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동원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한다.

③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1. 단기 비상근예비군: 5,000명 이하
2. 장기 비상근예비군: 700명 이하

④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영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입영부대장"이라 한다)이 해당 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정한다.

⑦ 입영부대장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⑧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근예비군의 세부 소집 분야,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6조(관할구역) ① 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구역은 제5조제2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해당 직장의 구내로 하며,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 예비군부대에 예속(隷屬)된다.

②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한다.

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①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②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다.

제9조(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① 법 제3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20.>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0.>

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동원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작전 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따라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동원명령서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적힌 장소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지정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2015. 12. 22.>

⑥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 2. 20.>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제13조(동원의 보류)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5.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7.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8.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동원 보류원서(保留願書)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동원의 연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제11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4항의 지정된 일시) 안에 동원 연기원서(延期願書)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훈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2.>

1. 차관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
4.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2.>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훈련의 보류 및 연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2.>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대원이 제4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전국 단위 훈련) ① 수임군부대의 장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훈련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훈련의 종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제18조의2(예비군복의 종류) 법 제7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착용할 복장 및 표지장(이

하 “예비군복”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예비군모
2. 예비군제복
3. 예비군화
4. 예비군표지장: 모표・이름표・흉장・휘장・견장(휘장 및 견장은 지휘관만 해당한다)
5. 예비군특수복: 야전상의・점퍼・근무복[점퍼・근무복은 지휘관만 해당하고, 근무복은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구분한다]
6. 부속품: 요대

[본조신설 2012. 6. 27.]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예비군제복・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전투복・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본조신설 2012. 6. 27.]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예비군특수복의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야전상의・점퍼: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착용
2. 근무복: 다음 각 목에 따른 하기(夏期)와 동기(冬期)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 다만, 국방부장관은 기후, 장소,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하기: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동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본조신설 2012. 6. 27.]

제18조의5(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지역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표지장의 제식과 그 착용방법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2. 6. 27.]

제19조(긴급조치)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경우 그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소멸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침투하였거나 은신하고 있는 지역 또는 도주로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적·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긴급조치의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 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0.>

제20조(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긴급조치로 인하여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그 형상, 가격(시가를 말한다),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0. 27.>

②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휴업 사실과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라 휴업 보상금의 지급 요청을 받은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공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1. 29.>

제23조(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0. 22.>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4.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3.]

제25조(치료비의 지급)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8. 3.>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부상 사실 및 치료기간 등을 확인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치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비를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이미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 치료비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본다. <신설 2016. 11.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1. 29.>

제26조(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대한 보고에는 제2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치료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3.]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예비군대원을 동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을 동원한 후 수임군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9조(예비군부대기)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

하기 위하여 중대 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豫備軍部隊旗)를 수여한다.

② 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制式)·수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표창)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의 장 및 수탁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감사)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監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제33조(방위협의회의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

② 지역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읍·면·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하고, 직장방위협의회는 직장(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 2. 20.>

제3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5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2. 20., 2015. 12. 22.>

1. 지역방위협의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의 장.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방위협의회: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직장방위협의회: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만,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32518호, 2022. 3. 8.〉

이 영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03 예비군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0.] [국방부령 제1071호, 2021. 12. 10., 일부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0.>

제2조(지원자의 예비군 편입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의 장[「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의 장(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 한다)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영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예비군으로서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이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1. 지역예비군: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2.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에게 제출

④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3조(예비군 편성기준) ①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의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兵)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3.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4.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②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예비군의 편성)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임명 대상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탄약고 등의 시설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 및 피복(被服)과 그 밖의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하며, 영 제5조제6항제4호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소대급 또는 분대급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그 직장에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제5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2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편성대상자 연명부 2부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보내고,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의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예비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 ① 어선단(漁船團)을 이루어 출어(出漁)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해(沿海)를 항해하는 여객선·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歸航)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約定)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3.>

제7조(예비군 편성 확인서의 발급)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편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 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별지 제7호서식의 예비군 편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8조(예비군 편성카드 등의 송부)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별지 제8호서식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해당하는 사람의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11. 30.>

1.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소속 직장예비군대원이 역종(役種) 변경으로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3. 해당 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8. 1.>

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정보화자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카드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게 하여야 한다.

제9조(편성 현황 보고) ①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하여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

2. 분기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일까지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예비군 편성 현황을 종합·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비군자원 현황을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 편성 현황은 그 달 말일까지, 예비군자원 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매 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복무선서) 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부대명칭)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는 해당 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소속 예비군대원 전부가 법 제6조제3항,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아래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④ 제1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 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1)[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 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2)]에 따라 소속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휘관의 해임) ①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

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 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3.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예하(隷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제15조(동원명령 방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口頭) 전달
2. 마이크나 확성기를 통한 가두방송

3. 공고문의 게시
4. 전산망을 통한 공고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에 따라 동원이 지정된 사람으로 하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원을 명한 경우에 동원된 사람(집결한 사람)의 명부를, 수임군부대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에 그 교부된 사람의 명부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예비군 교육훈련 실시결과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다음 해의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3. 주한 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주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8호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8., 2020. 2. 3.>

1. 삭제 <2015. 12. 28.>
2. 삭제 <2015. 12. 28.>
3. 삭제 <2015. 12. 28.>
4.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5.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6.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7.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사람 외에 국가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

해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의 제출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15조제3항, 이 규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주한 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 또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연기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1.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1부
2.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인 경우: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1부
3.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 해소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4. 11.>

제20조(장비 등의 관리)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경찰서장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역예비군의 경우: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나. 직장예비군의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해당 직장 내의 장소

2.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해당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무기 및 탄약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관리 상황을 예비군업무 통합관리용 전산시스템 양식에 입력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탄약·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亡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탄약·장비 등에 관한 유지·관리 상황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유지·관리 상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기·탄약·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탄약·장비 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관리 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무기·탄약·장비 등의 소모·망실 상황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군수품관리 사무위탁)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제22조(군수지원)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장비·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3조(보상금 지급 신청) ①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하고 그 부본(副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 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3. 구조: 재산의 내용·조성·건립 또는 제조 연월일·증축·개축 사실 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4. 부수(附隨)되는 피해재산의 목록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이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발법」에 따른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부대기의 종류와 제식) ① 영 제29조에 따른 예비군부대기(이하 "부대기"라 한다)는 예비군기·예비군여단기·예비군연대기·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로 나눈다.

② 부대기의 제식은 별도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6. 20.]

[종전 제24조는 제39조로 이동 〈2012. 6. 20.〉]

제25조(부대기의 수여) 부대기는 예비군부대가 창설될 때에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비군대대기 및 예비군중대기를 수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26조(부대기의 사용) ①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3. 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27조(부대기의 관리) ① 부대기는 받침다리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받침다리 및 보관상자의 제식은 별도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28조(부대기의 반납 및 처리) ① 예비군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부대기 수여자(이하 "부대기수여자"라 한다)에게 해당 부대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예비군부대가 해체된 경우
2. 예비군부대가 개편되어 부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부대기의 제식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그 부대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

하거나 기념관 등에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대기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반납받은 부대기수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대기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의 장이 부대기를 폐기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29조(부대기의 손실·망실 보고) 예비군부대의 장은 부대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부대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대기수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부대기는 반납하고 새로운 부대기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30조(감사반의 편성) ① 국방부장관이 영 제31조에 따른 특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각 군 본부 소속 장교 및 군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무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국방부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국방부 소속 서기관 또는 대령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편성하는 감사반(이하 "각 군 감사반"이라 한다)의 감사반장은 각 군 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무청 소속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31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이 되는 부대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2.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 부대
3.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
4.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본조신설 2012. 6. 20.]

제32조(감사지침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건전한 육성과 전력증강에 역행하는 각종 저해요소 파악 및 개선
2.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경제적·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3. 각종 법규 등의 준수상태 확인
4. 예비군업무의 현지 지도 및 시정

②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관리

2. 예비군의 동원
3. 예비군의 교육훈련
4. 예비군의 무기·탄약 및 장비의 관리
5. 그 밖에 예비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20.]

제33조(감사관 준수사항)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감사관증을 제시할 것
2.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
3.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
4.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아니할 것
5. 감사와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본조신설 2012. 6. 20.]

제34조(감사방법 등) ① 감사는 계획감사와 불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계획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시기 및 기간
4.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계획감사는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 수감(受監) 준비를 하게 한 후에 실시하며, 이미 통보한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시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내용을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실시한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에게 감사 결과를 강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35조(감사자료 제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관이 효율적인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관이 감사자료 제시 등을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진술서·경위서·확인서 또는 질문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36조(감사 결과 보고) ①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그 결과를 감사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감사반의 감사반장 및 각 군 감사반의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37조(결과 처리) ① 감사반장은 감사 결과 시급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현지에서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통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문책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른 지시·통보 또는 명령·요구를 받은 관계 부대나 관계 기관의 장은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본조신설 2012. 6. 20.]

제38조(표창)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감사 결과 우수한 부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20.]

제39조(서식)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예비군대원 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3.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망·부상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4.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망·부상 확인 보고(통보): 별지 제28호서식
5. 영 제24조에 따른 치료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청구서: 별지 제30호서식
7.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8. 영 제26조에 따른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의 보고: 별지 제32호서식

[제24조에서 이동 〈2012. 6. 20.〉]

부칙 〈제1071호, 2021.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4 병역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81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2. 12. 11.,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 15., 2019. 12. 31., 2021. 4. 13., 2022. 1. 4.>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기업체나 공·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2016. 1. 19.>
10의3.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2016. 1. 19.>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2022. 12. 13.>

[전문개정 2009. 6. 9.]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1.>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9. 12. 31.]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 1. 19.>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 1. 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에 의하여 2018.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2017. 11. 28.>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7. 11.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와 반송된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7. 11. 28.>

⑦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송달한다. <신설 2010. 1. 25., 2017. 11. 28.>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2017. 11. 28.>

⑨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6. 9.]

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4.「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
5.「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 5. 29.>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 5. 29.〉

제10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3. 2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 5. 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군의관의 파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3조의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 5. 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查)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 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영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 대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4장 현역병 등의 복무 <개정 2009. 6. 9.>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 6. 9.>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징집순서 결정의 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3. 21.>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17조 삭제 <2020. 12. 22.>

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치

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⑦ 국방부장관은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역 보류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09. 6. 9.]

제20조(현역병의 모집)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22.>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2.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임기제부사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임기제부사관이 복무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는 질병·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20. 12. 22.]

제20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임기제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임기제부사관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운영성과 평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1. 4. 13.〉]

제20조의4(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요구 등) ① 병무청장은 제20조와 제20조의2에 따라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하여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자의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현역병 선발을 위한 전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6. 9.]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1. 4. 13.〉]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개정 2009. 6. 9.>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5. 24.>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1.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 1. 25.>

1. 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 1. 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0. 1. 25.]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1. 5. 24.>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전문개정 2009. 6. 9.]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 4. 13.>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제21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②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집, 승선근무기간의 계산, 소집해제, 서약, 그 밖에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20. 3. 31.>

[전문개정 2009. 6. 9.]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3.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4.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이하 "승선근무기간"이라 한다)을 마칠 수 없는 경우
6.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7.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16. 5. 29.]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4.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삭제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0. 1. 25.]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해외 근무 등으로 실태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병무청장은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그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에게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와 권리 침해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3절 전환복무(轉換服務) <개정 2009. 6. 9.>

제24조 삭제 <2016. 5. 29.>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 5. 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7. 7. 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5장 보충역의 복무 <개정 2009. 6. 9.>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 6. 4.>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3. 삭제 <2013. 6. 4.>
4. 삭제 <2013. 6. 4.>

② 삭제 <2013. 6. 4.>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4.>

⑤ 삭제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 6. 4.>

② 삭제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 결정한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정하여 따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절차 및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2. 22.>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범죄

2.「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범죄

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4.「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020. 12. 22.]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③ 삭제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⑥ 삭제 <2013. 6. 4.>

⑦ 삭제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21. 12. 7.>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7.>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

③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7.>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3.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되거나 이동한 경우
5.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2013. 6. 4.>

③ 삭제 <2013. 6. 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을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⑤ 삭제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2조의2(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등) ① 수사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제29조제4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임무부여 등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⑤ 삭제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단순위헌, 2019헌마534, 2021.11.25,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 1. 19.>

제33조의3 삭제 <2016. 1. 19.>

제33조의4 삭제 <2016. 1. 19.>

제33조의5 삭제 <2016. 1. 19.>

제33조의6 삭제 <2016. 1. 19.>

제33조의7(예술·체육요원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현역병으로 복무(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인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5. 보충역으로 복무(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중인 사람

②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4.]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①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로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②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예술·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④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예술·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⑥ 공익복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3.>

1. 공익복무 시간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 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21. 4. 13.>

[본조신설 2013. 6. 4.]
[제목개정 2016. 5. 29.]

제33조의9(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본조신설 2013. 6. 4.]
[제목개정 2016. 5. 29.]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②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른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예술·체육요원이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복무 시간을 2배 연장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④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7. 3. 21., 2021. 4. 13.>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2021. 4. 13.>

1. 제4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

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제4항제3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6. 4.]

제33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해당 분야에서의 복무 및 공익복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익복무 기관의 장은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개정 2009. 6. 9.>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④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2016. 5. 29.>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개월의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 5. 29.>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같은 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6. 5. 29.>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6으로 이동 〈2009. 6. 9.〉]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의사·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2로 이동 〈2009. 6. 9.〉]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③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7. 3. 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9. 6. 9.〉]

제34조의5(청문) 병무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3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5는 제34조의4로 이동 〈2009. 6. 9.〉]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3. 6. 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④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5로 이동 〈2009. 6. 9.〉]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0. 1. 25.]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1. 19., 2016. 5. 29.>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6. 1. 19.>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④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2011. 7. 5. 법률 제10814호에 의하여 2010. 7. 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2013. 6. 4.>

④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3. 23., 2016. 5. 29.>

1.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7. 5., 2013. 6. 4.>

③ 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④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개정 2009. 6. 9.>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 5. 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2020. 5. 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3. 6. 4., 2016. 5. 29.>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수료 전[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年限) 이상을 마치고 수학 중인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⑤ 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13.>

1.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2.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편입취소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9.]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2020. 3. 31.>

1.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제2호의 방위산

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병역지정업체(병역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병역지정업체에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①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전문연구요원: 3년
2.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 중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전직,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

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6. 4., 2016. 5. 29., 2021. 4. 13.>

1.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4.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5.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6.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7.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1. 4. 13.>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2.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4.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5.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1. 4. 13.>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20. 12. 22.>

④ 삭제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6. 9.]

[2013. 6. 4. 법률 제11849호에 의하여 2011.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③ 제33조의7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과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12. 15., 2016. 1. 19., 2016. 5. 29., 2021. 4. 13.>

③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2016. 1. 19., 2019. 12. 31.,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2021. 4. 13.]

제6장 병력동원소집 등 의무부과 <개정 2009. 6. 9.>

제1절 병력동원소집 <개정 2009. 6. 9.>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전문개정 2009. 6. 9.]

제4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6조(병력동원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

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보충역·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하거나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48조(병력동원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개정 2009. 6. 9.>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1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5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 진급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 절차를 점검하려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예고 없이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그

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22. 1. 4.>

[전문개정 2009. 6. 9.]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의 3분의 1 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2009. 6. 9.>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19. 12. 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 복무"는 "전시근로소집 복무"로 본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1.>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 5. 29.>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삭제 <2020. 12. 22.>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군사교육소집"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 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③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 6. 9.>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4.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또는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
4.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④ 제1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

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19.>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3. 6. 4.]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개정 2009. 6. 9.>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2.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제2항에 따라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제2항에 따른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3. 6. 4.>

③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서 제1호(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4. 5. 9., 2016. 1. 19., 2016. 5. 29., 2017. 12. 19.>

1.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3.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와 출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③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4., 2016. 5. 29.>

④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⑤ 예비역의 병 중 수형자(受刑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6. 5. 29.>

⑥ 제2항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⑦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면서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5. 29.>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

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4. 13.>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5. 29.>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29.>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66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취소) 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한다.

②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 편입사유가 소멸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1. 사상이 건전할 것
2. 품행이 단정할 것
3. 체력이 강건할 것(제4항에 따른 퇴역(退役) 또는 면역(免役) 대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 보충역 편입 당시 계급이 「군인사법」의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시킨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와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후순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1. 제21조의2,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3.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보충역 편입

4. 제63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5. 제63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

[전문개정 2009. 6. 9.]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개정 2009. 6. 9.>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

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장은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

제10장 병역의무의 종료 <개정 2009. 6. 9.>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2016. 5. 29., 2017. 3. 21., 2019. 12. 31., 2021. 4. 13.>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6.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11.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12.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③ 제33조의10제4항제1호·제2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4., 2014. 12. 30., 2016. 1. 19.>

[전문개정 2009. 6. 9.]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 6. 9.>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9. 6. 9.]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6. 9.]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1. 5. 24.,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본조신설 2015. 12. 15.]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1. 군복무(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1. 9. 1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1. 9. 15., 2013. 6. 4., 2016. 5. 29.>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 6. 4., 2019. 12. 31.>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5. 29.>

1.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
2.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3.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전문개정 2009. 6. 9.]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15.>

⑤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15.,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제75조의3(보험가입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은 제75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상근예비역
2. 현역병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4. 5. 9.]
[제목개정 2020. 12. 22.]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 2. 8.>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 2. 8.>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전문개정 2009. 6. 9.]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 6. 9.>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① 징집·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9. 12. 31.>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9. 12. 31.>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2. 8.>

[본조신설 2013. 6. 4.]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7. 3. 21., 2019. 4. 23., 2019. 12. 31., 2021. 4. 13.>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12. 8., 2021. 4. 1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21. 4. 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2. 15.]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및 확인·출력·증명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70조제3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과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2017. 3. 21., 2017. 11. 28., 2020. 12. 22.>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13. 6. 4.]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9.]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 사항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제82조의2 삭제 <2002. 12. 5.>

제13장 전시특례 <개정 2009. 6. 9.>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2021. 12. 7.>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

・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⑤ 시·도지사(제3항제4호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두되, 평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4. 5. 9.>

[전문개정 2009. 6. 9.]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84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및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5. 29.>

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免脫行爲)의 예방과 단속
2.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병무사범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14장 벌칙 <개정 2009. 6. 9.>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

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② 삭제 <2017. 3. 21.>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1. 19., 2016. 5. 29., 2019. 12. 31., 2021. 4. 13.>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3. 6. 4., 2016. 1. 19., 2019. 4. 23., 2019. 12. 31., 2020. 12. 22., 2021. 4. 13.>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3. 6. 4.]

제89조의4(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전문개정 2019. 12. 31.]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3.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7.]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4. 5. 28., 2016. 5. 2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본조신설 2009. 6. 9.]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 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제95조(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고용주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 5. 28., 2016. 5. 29.>

1.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77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21. 4. 13.>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전문개정 2009. 6. 9.]

제96조(양벌규정)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5. 29.>

1.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6. 9.]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

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09. 6. 9.]

부칙 <제19081호, 2022.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5 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4호, 2022. 12. 30., 일부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2641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7.>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2조(병적 관리) ①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2. 20.,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2020. 6. 30.>

1.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②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전역(轉役)·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2. 12. 20.]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 통지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2019. 7. 2.>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1.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송달

[전문개정 2010. 7. 21.]

제3조의3(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9조제5항 단서, 제53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제3항, 제66조제2항·제4항, 제101조제1항(제10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제2항, 제121조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3항, 제53조제4항, 제101조제3항 및 제1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5. 28.]

제3조의4(전자송달)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제4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8. 5. 28.>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

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조의2(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의 오기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발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2. 병역의무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5. 28.]

제4조의3(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5.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6.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등
7. 법 제65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역준비역으로의 편입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4조의4(예비역 편입 등 통지) 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4.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의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우편송달이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통지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예비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으로 편성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1항제4호의 사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5호의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60일 이내

③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연기
2. 법 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의 종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30.]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서식 및 세부적인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 11. 29.>

제6조 삭제 <1999. 3. 3.>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자료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 11. 29.>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9조(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상자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1.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6.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0조(군 필요인원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 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의 적성별 필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 입영 및 보충역 편입의 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 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편입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조(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①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병역판정검사장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 및 병역판정검사장의 설치·운영 및 병역판정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① 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조의2

[제12조의2는 제13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정된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2021. 10. 14.>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9. 12. 7.〉]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성은 건축·토목, 전기,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결정하되, 분류·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①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5조(병과 부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1. 11. 23.]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17조(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병역판정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8조(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편입자 명부의 작성 등 병역판정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병역판정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12. 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 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

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 6. 22.>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 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3.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6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

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③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 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4.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이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영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 없이 귀가시키고,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 정밀신체검사 판정서, 병역증 및 귀가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입영부대의 장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주소(시·군·구·읍·면·동까지를 기재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영통지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18조의9(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되어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이후 최초의 입영신체검사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이 경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는다.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해서는 귀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경우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르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1. 10. 14.>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본조신설 2021. 6. 22.]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 12. 7.>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별·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5.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6.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7. 현역병입영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8.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

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24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

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25조 삭제 <2021. 6. 22.>

제26조 삭제 <2021. 6. 22.>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6. 11. 29.>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본형(本刑)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는 포함하되, 가석방 중이거나 형의 집행정지 중인 일수는 제외한다]
2.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에 의하여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일수
3.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④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법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현역병이 입원치료 중인 군병원의 장이 해당 대상자 명단을 그 대상자의 의무복무만료일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면,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역의 보류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28조(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

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⑤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⑤ 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1. 6. 22.>

⑥ 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8.>

⑦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⑧ 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28., 2021. 6. 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 6. 22.>
1.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6. 22.>

⑫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29조의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이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 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제18조의9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③ 제1항에 따라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가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6. 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을 해당 군의 병적에 편입한 경우에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29조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법 제20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평균이 2년 연속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이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30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

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 또는 수의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제7항에 따른 퇴교 전 교육기간을 포함한다)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9. 22.>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한다. <개정 2013. 12. 4.>

⑦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17. 9. 22.>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나.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⑧ 제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2.>

⑨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17. 9. 22.>

1. 제7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기간 이상인 사람
2.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

무하게 되는 사람

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개정 2009. 12. 7.>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구·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구·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5조(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에 대한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지연입영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와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 6. 22.]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1. 23.>

$$\frac{\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text{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상근예비역의 의무복무기간}$$

[전문개정 2009. 12. 7.]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원양어선,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는 병력이나 전략물자 등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3. 3. 23.>

1.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2.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필요인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복무관리 실태 및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배정 기준 및 방법,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한 인원 배정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승선근무예비역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4., 2020. 9. 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1.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④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⑤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0. 7. 2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업체의 선박(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 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②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6. 6. 14., 2016. 11. 29.>

1.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

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5.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의 승선근무기간은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下船日)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2. 2. 3.>

⑤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2. 2. 3., 2012. 12. 20.>

⑥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10. 7. 21., 2012. 2. 3.>

⑦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2018. 5. 28.>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

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3., 2018. 5. 28.>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 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6.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제목개정 2016. 11. 29.]

제40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1. 6. 22.>

④ 삭제 <2010. 7. 21.>

⑤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⑥ 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0. 7. 21.]

제40조의8(복무기간의 만료 등) ① 해운업체등의 장은 소속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前)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과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중인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한 병역증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만료 처분의 대상인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③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2021. 10. 14.>

1.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2. 제40조의5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3. 법 제23조의3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9. 29., 2021. 10. 14.>

1. 정기조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⑧ 제7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0. 7. 21.]

제40조의10(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해운업체등의 장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해야 할 업무, 근로시간, 휴가, 임금 지급방법 등의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 3. 3., 2001. 9. 15.>

제41조(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의 추천인원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7. 9. 22.]

제42조 삭제 <2016. 11. 29.>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7. 7. 26., 2017. 9. 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의무소방원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50일 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후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 4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 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입영 대상자 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입영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를 시키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경우에는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29조에 따라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 진급, 상벌 및 신상변동 등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2017. 9. 22.>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①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1. 20., 2016. 11. 29., 2017. 7. 2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17. 9. 22.>

1. 이방 및 이경: 이등병
2. 일방 및 일경: 일등병
3. 상방 및 상경: 상등병
4. 수방·수경 및 경찰대학 졸업자: 병장
5. 특방 및 특경: 하사

④ 국방부장관은 제43조, 제4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전환복무, 전환복무 해제, 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예비역 편입 등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 12. 4.>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2020. 11. 24., 2020. 12.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어업정보통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비영리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12. 7.]

[제4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 〈2009. 12. 7.〉]

제47조의2 삭제 <2013. 12. 4.>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8. 5. 28., 2022. 6. 30.>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보건·의료업무: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3. 교육·문화업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장애학생 활동 지원, 궁(宮)·능(陵) 등 문화재 관리 지원 등
4. 환경·안전업무: 환경 보호·감시 지원, 재난 안전관리 지원, 행정기관 경비 지원 등
5. 행정업무: 일반행정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지별 필요인원,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 12. 7.〉]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4월 20일까지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까지의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결정된 배정인원이 복무하기 전까지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인원배정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④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47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50조(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①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 해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인원의 시·군·구별,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회복무요원의 필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1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군·구별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선발한 사회복무요원과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 보충역에 대해서는 복무기관·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그 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에 따른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홀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부모나 그 밖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7. 14.,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17. 9. 22., 2020. 6. 30., 2021. 10. 14.>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3조(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② 삭제 <2013. 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③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5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도착 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9. 7. 2.>

④ 복무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신고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9. 7. 2.]

제56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 12. 4.>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7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②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8조에서 이동 〈2009. 12. 7.〉]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12. 4.,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2022. 6. 30.>

1. 연가: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다. 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라.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마.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나.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4.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기간이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65조의4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2020. 1. 7., 2021. 10. 14.>

1. 병가를 받지 않은 경우: 5일
2. 병가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0조 삭제 <2013. 12. 4.>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09. 12. 7.]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09. 12. 7.〉]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 7., 2021. 10. 14.>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1항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 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2.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68조의19제4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3.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70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4.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6.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7.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

③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④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름표·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상 별도의 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 5., 2021. 10. 14.>

⑤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4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이름표·모자 등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9. 7. 2., 2021. 1. 5., 2021. 10. 14.>

⑥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1조에서 이동 〈2009. 12. 7.〉]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7조로 이동 〈2009. 12. 7.〉]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의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 12. 7.〉]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삭제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본인 외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가 유실되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나.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2. 6. 30.>

④ 제3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은 그 종료일의 다음날에 복무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12. 4.>

⑥ 제3항에 따라 복무중단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는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9. 12. 7.〉]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에 필요한 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 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지체 없이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⑥ 법 제32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⑦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출퇴근 근무 가능지역 범위, 재지정 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2는 제65조의3으로 이동 〈2009. 12. 7.〉]

제65조의3(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복무이탈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2.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그에 대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소집해제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자살·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65조의3은 제65조의4로 이동 〈2020. 12. 29.〉]

제65조의4(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1. 6. 2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 삭제 <2021. 6. 22.>
4.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65조의3에서 이동 〈2020. 12. 29.〉]

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20. 12. 29.>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12. 4., 2020. 12. 29.>

③ 삭제 <2013. 12. 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 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20. 12. 29.>

⑤ 삭제 <2013. 12. 4.>

⑥ 삭제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3. 12. 4., 2016. 11. 29.>

② 법 제33조의2제3항제3호에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1. 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2.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③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무지도교육의 교육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9. 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⑤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09. 12. 7.〉]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직접 교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을 통한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③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통지서 교부, 교육일 연기 및 교육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6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57조로 이동 〈2009. 12. 7.〉]

제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 6. 14.>

제68조의2 삭제 <2016. 6. 14.>

제68조의3 삭제 <2016. 6. 14.>

제68조의4 삭제 <2016. 6. 14.>

제68조의5 삭제 <2016. 6. 14.>

제68조의6 삭제 <2016. 6. 14.>

제68조의7 삭제 <2016. 6. 14.>

제68조의8 삭제 <2016. 6. 14.>

제68조의9 삭제 <2016. 6. 14.>

제68조의10 삭제 <2016. 6. 14.>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020. 6. 30., 2020. 12. 29., 2021. 10. 14.>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12(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하는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544시간[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4.>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2.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의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
2.「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소년원
4.「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의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은 최소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개인별 공익복무 실적을 공익복무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⑦ 공익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공익복무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5. 6. 30.]

[제목개정 2021. 10. 14.]

[종전 제68조의12는 제68조의13으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3(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3조의7제1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33조의8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6. 11. 29.]

[제6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3은 제68조의14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4(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공익복무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예술·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4.,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6. 11. 29.]

[제6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4는 제68조의15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5(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5는 제68조의16으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6(예술·체육요원의 고충처리) ① 예술·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6은 제68조의17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7(예술·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 30., 2016. 11. 29., 2021. 10. 14.>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

태·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9.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30., 2017. 9. 22.>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7은 제68조의18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21. 10. 14.>

1. 삭제 <2015. 6. 30.>
2. 삭제 <2015. 6. 30.>
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교육을 게을리한 경우

②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17에서 이동, 종전 제68조의18은 제68조의19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예술·체육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예술·체육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예술·체육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예술·체육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예술·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뺀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0. 12. 29.>

④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⑥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

[제68조의18에서 이동 〈2015. 6. 30.〉]

제68조의20(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①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은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③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수급계획 중 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2016. 11.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8조제2항 또는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6. 11. 29., 2021. 2. 17., 2021. 10. 14.>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전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3. 법 제3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4. 법 제3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③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34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2010. 7. 21.>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삭제 <2016. 6. 14.>

⑥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6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⑦ 제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⑧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69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역판정전담의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명령은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으로 본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 상황,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 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⑥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의4(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4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70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7. 21., 2016. 6. 14., 2016. 11. 29.>

②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6. 11. 29.>

1. 전공의 수련기간
2.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 삭제 <2016. 6. 14.>

④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3.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0조의2(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6. 30.>

④ 삭제 <2015. 6. 30.>

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7. 14., 2013. 12. 4.,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2020. 12. 29.>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⑥ 법 제35조제3항 후단, 제35조의2제3항 후단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각각 제5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1. 7. 14.]

제71조(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① 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6. 6. 14.>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6. 24., 2013. 3. 23., 2013. 5. 31., 2015. 9. 25., 2016. 11. 29., 2022. 12. 30.>

1.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

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가목 외의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 박사학위과정과 부설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②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공업 분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 분야: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3. 광업 분야: 광물(석탄은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 분야: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5. 수산업 분야: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6. 해운업 분야: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방위산업 연구기관: 「방위사업법」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①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 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6. 11. 29., 2017. 7. 26.>

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교육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조정실장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방위산업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7. 기간산업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8.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방위산업진흥회장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6. 11. 29.>

④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4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① 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5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1.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2.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7조로 이동 〈2009. 12. 7.〉]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2. 6.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3.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5.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8.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5조로 이동 〈2009. 12. 7.〉]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
2.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4.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구별 필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 또는 시·군·구별로 배정하되, 연구기관의 경우 1개 법인에 여러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별 배정인원을 정한 후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그 밖의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법인별 배정인원은 법인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6조로 이동 〈2009. 12. 7.〉]

제77조의2(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등 같은 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5. 9. 25.>

② 삭제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78조의2(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③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⑦ 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⑧ 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와 유예기간을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별 및 업종별 편입 대상과 부족한 군 필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

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통보받은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12. 7.]

제81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5. 22.,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 다만, 가족 중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복무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2.,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

계수리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를 작성·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 업체에 복무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제85조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업체 또는 관할 지역 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 지역에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지사나 지점 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

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 휴직, 정직, 파견, 보직변경, 교육훈련, 승선·하선, 병가, 국외여행, 박사과정 수학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1조에 따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 명부를 관리하고,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나.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라.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사항
   가.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해고나 퇴직 여부
   나.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다. 기술자격·면허의 취소·정지
   라. 병역지정업체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마.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사. 그 밖에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해당 직무 분야(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편입 당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말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직무 분야 외의 생산·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3. 건설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4.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원양·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 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의 면허 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해당 국가기술자격 분야(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 분야). 이 경우 승선복무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선원법」에 따른 유급 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복무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기능 분야

6. 농어업 분야에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농어업 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1. 29.>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성실복무 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84조 삭제 <1997. 5. 27.>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란 제7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역지정업체로서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병역지정업체는 제외한다. <신설 2021. 10. 14.>

1. 제72조제1항제3호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2. 제72조제1항제5호의 자연계대학원
3.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

③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31., 2013. 12. 4., 2014. 11. 4., 2016. 11. 29., 2019. 12. 24., 2020. 12. 29., 2021. 10. 14.>

1. 전문연구요원(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6개월
2.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⑤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제3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⑦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제3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4. 11. 4., 2016. 11. 29., 2018. 5. 28., 2021. 10. 14.>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7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⑨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11. 29., 2021. 10. 14.>

⑩ 제3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6. 6. 1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① 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능 분야에서 개별복무(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복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복무하는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복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 운전 외에 해당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복무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복무 중에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승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국내교육훈련: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2.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틀어 1년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나.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만 해당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법 제39조제3항제2호 또는 이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③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제2항제9호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90조(의무복무기간의 만료)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나 승선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그 병역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업기계운전요원 또는 농업기계수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이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2.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3.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4. 박사과정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5.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로서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업종 또는 규모의 변경,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8.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9. 무단결근한 경우
10.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11.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도 불구하고 국내교육훈련기간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 신상변동 통보를 갈음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를 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취소의 유보(留保)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편입취소의 유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1. 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에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명시하여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③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2.>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 의무복무기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10. 14.>

⑤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3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29.>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예술·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frac{\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text{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전문개정 2016. 6. 14.]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개정 2013. 12. 4.>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1.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의 작성 기준
2.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의 산정 기준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4.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와 제77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③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변동 통보 등 자원관리 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계 서류의 비치상태 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병역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 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복무기관이나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⑥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⑦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⑧ 병무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1.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가. 근무시간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여부

나. 근무시간 외에 가목에 따른 해당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⑨ 제8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 6. 1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병력동원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계급별·병과별·군사특기별 필요인원 및 동원시기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 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인도·인접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8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로 본다. <개정 2021. 6.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급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2.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3.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00조의2(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 여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모든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 편입자 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

부"로 본다. <개정 2021. 6.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을 해당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 5. 27.>

제105조(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 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 및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는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 해제"로 본다.

② 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운영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집행 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 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해제"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 11. 29.>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1.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의2. 삭제 <2016. 6. 14.>

1의3.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2.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28., 2022. 6. 30.>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②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

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7. 2., 2021. 6. 22.>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1. 11. 2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2조(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3조(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1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된 후 최초로 승선근무를 하기 전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서 승선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대해서는 제106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6조,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2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③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군사교육소집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4항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④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⑤ 삭제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4조(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 제10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8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5조(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6. 29.,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대령	중령으로서 7년
중령	소령으로서 7년
소령	대위로서 7년
대위	중위로서 6년
중위	소위로서 2년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115조의3(예비역장교의 임용)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2년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2년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2. 6. 29.]

제115조의4(예비역의 진급권자 · 임용권자) ① 예비역장교의 진급과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예비역장교 임용은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②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은 각 군 참모총장이 행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본조신설 2012. 6. 29.]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 12. 7.>

제116조(학생군사교육)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 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7조(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라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학군군간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적자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부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군사교육 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정해진 군사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이나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편입 지원서에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18조의2(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의 승인·취소 및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및 종교의식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 및 준법성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09. 12. 7.]

제118조의3(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6. 11. 29.>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목사·신부·승려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일 전에 제1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8조의4(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8. 5. 28.>

1. 국방부장관: 다음 각 목의 필요인원
   가. 의무 분야의 현역장교 5년 후 필요인원
   나.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다. 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2년 후 필요인원
2. 보건복지부장관: 공중보건의사 5년 후 필요인원
3. 삭제 <2016. 6. 14.>
4.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 2년 후 필요인원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 2년 후 필요인원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충원율 등을 고려하여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1. 의무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2. 법무 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군종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1. 2. 17.>

③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4.>

④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자 중에서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신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100점, 신체등급 4급은 90점으로 한다. <신설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1. 10. 14.>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해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법

무・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1. 10. 14.>

⑥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1. 10. 14.>

⑦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종교의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 인사기획관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육군・해군・공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 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제4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9조의3(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 12. 4.>

1. 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 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7. 9. 22., 2021. 10. 14.>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의2.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7. 군종사관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8.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9.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10.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7. 9. 22.>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4.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 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1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 계획서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 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수의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22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되,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6. 22.>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1. 29.>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

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12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①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조·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12. 7.]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4. 11. 4., 2015. 6. 30.>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

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5. 6. 30., 2015. 9. 25., 2021. 10. 14.>

1. 고등학교: 다음 각 목의 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만 해당한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나.「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다.「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라.「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원을 포함한다)
4. 연수기관: 사법연수원

[전문개정 2009. 12. 7.]

제124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때까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연기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124조의3(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6. 22.>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 6. 22.>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21. 6. 22.]
[제124조의2에서 이동 〈2013. 12. 4.〉]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학적보유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26조(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①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3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2.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영등

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0. 6. 30.>

1.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②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③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2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⑤ 제4항에서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4., 2017. 12. 19., 2019. 7. 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확인된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

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2018. 5. 28.>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6. 11. 29.>

③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7. 21., 2010. 12. 29., 2021. 6. 22.>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⑦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21.,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12. 28., 2012. 9. 14.,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본조신설 2009. 1.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

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1. 7., 2020. 6. 30., 2021. 10. 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⑤ 삭제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20. 6. 30.]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30.>

②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병역판정관, 징집·소집 관련 업무 또는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1. 29., 2022. 6. 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31조(가족의 범위 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가.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나.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전문개정 2009. 12. 7.]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공단의 장에게 각각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다. <개정 2020. 6. 30.>
1.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2.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3.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③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감면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6. 30.>
1.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할 것을 의뢰하고,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 복무기간을 마치면 보충역으로 편입을 의뢰

2.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소집을 해제

③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2. 12. 20.,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0. 1. 7., 2021. 10. 14.>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0. 1. 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⑥ 삭제 <2014. 11. 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6. 11. 29.]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10. 14.>

②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

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4., 2020. 6. 30., 2021. 10. 14.>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3. 12. 4., 2016. 11. 29., 2020. 1. 7., 2020. 6. 30., 2021. 10. 14.>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급이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 7., 2021. 10. 14., 2022. 6. 30.>

1.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2년의 연기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0. 10. 1., 2012. 8. 31., 2013. 12. 4., 2016. 11. 29., 2019. 7. 2., 2020. 6. 30., 2021. 10. 14.>

⑧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20. 6. 30., 2021. 10. 14.>

⑨ 제8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20. 6. 30., 2021. 10. 14.>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18. 5. 28., 2020. 1. 7., 2021. 10. 14.>

⑪ 지방병무청장이 제5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21. 10. 14.>

⑫ 법 제6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4세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1. 10. 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17. 9. 22., 2021. 10. 14.>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

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제5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 7., 2021. 6. 22., 2021. 10. 14.>

⑤ 법 제65조제8항제1호의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9. 22., 2021. 10. 14., 2022. 6. 30.>

$$\frac{\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text{복무한 일수}}{\text{종전의 의무복무기간}} \times \text{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전문개정 2009. 12. 7.]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5.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복무관리·감독이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6. 30.>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다.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
   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3.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 처분 대상: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0. 1., 2016. 11. 29., 2020. 1. 7., 2021. 10. 14.>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11. 23., 2016. 11.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35조의2를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11. 29.>

⑦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13. 12. 4., 2014. 6. 30., 2016. 11. 29., 2017. 9. 22., 2020. 6. 30.>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삭제 <2016. 11. 29.>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5.「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5의2. 현역병(법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예비역으로의 병역처분변경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제6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술·체육요원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병력동원소집이나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를 준용한다. 다만, 대체역은 신체등급이 6급인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2020. 6. 30.>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6. 11. 29.>

④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1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9.>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현역병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⑥ 제5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1. 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38조(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① 법 제6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출국일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②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 후 6개월 이내에 재승선한 경우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③ 제2항 후단에 위반하여 하선기간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선원의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40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

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에 따른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 부여 처분은 그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기관이나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날짜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변동자 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 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 순위 후순위 조정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①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재외국민, 국적편입자·상실자, 사망자·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14., 2017. 7. 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2014. 11. 19., 2016. 6. 14., 2016. 11. 29., 2017. 7. 26., 2020. 6. 30.>

1. 병역판정검사: 처분일, 신체등급,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4의2. 대체복무요원: 대체역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및 대체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7.]

제144조 삭제 <1999. 12. 31.>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19.>

④ 법 제7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

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 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6. 30.>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전문개정 2009. 12. 7.]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6. 6. 14.>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1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7조(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21., 2010. 10. 1., 2012. 12. 20., 2013. 12. 4., 2014. 11. 4., 2016. 6. 14., 2016. 11. 29., 2018. 5. 28., 2019. 7. 2., 2020. 6. 30., 2021. 10. 14.>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 11. 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한 상

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라. 삭제 <2016. 6. 14.>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8.>

[전문개정 2009. 12. 7.]

제147조의3 삭제 <2008. 10. 20.>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

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22.>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9.>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1. 20.]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 12. 7.>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7.]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20. 6. 30.,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0. 7. 21.]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20. 6. 30.>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전문개정 2009. 12. 7.]

제15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11. 11. 23.]

[제목개정 2020. 6. 30.]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2호에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16. 6. 14., 2022. 12. 13.>

1. 법 제7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
2. 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징집·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1. 23.,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3. 12. 4.]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7.]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9., 2020. 6. 30.>

② 삭제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의 장,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개정 2010. 5. 4., 2013. 12. 4., 2020. 6. 30.>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제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또는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 대한 병적조회 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의 제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안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등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5. 28.>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2항의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1. 10. 14.>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가.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나.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경우
   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경우

2.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17. 9. 22.]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③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2.>

[본조신설 2016. 6. 14.]

제155조의5(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1.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선정
2.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 검증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공정한병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30., 2022. 10. 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병무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6. 30., 2022. 10. 4.>

1. 삭제 <2022. 10. 4.>
2. 삭제 <2022. 10. 4.>

④ 병무청장은 제1항의 심의를 할 때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17. 9. 22.]

[종전 제155조의5는 제155조의6으로 이동 〈2017. 9. 22.〉]

제155조의6(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의7에서 같다)은 법 제7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병역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복무 및 교육·수련 기록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병역 정보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

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1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5조의6은 제155조의7로 이동 〈2017. 9. 22.〉]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출력·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출력·증명을 요구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본조신설 2016. 6. 14.]

[제155조의6에서 이동 〈2017. 9. 22.〉]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2. 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1. 20., 2016. 6. 14., 2016. 11. 29., 2020. 6. 30., 2021. 6. 22., 2021. 10. 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전역증의 교부·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2021. 6. 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0., 2016. 11. 29., 2021. 10. 14.>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2020. 12. 29., 2021. 6. 22.>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검사
5. 법 제5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6. 법 제65조제1항, 제4항, 제8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신체검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②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의 규모 및 전형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의 지급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4. 11. 4., 2016. 11. 29., 2017. 9. 22., 2019. 7. 2.>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서 재학 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 범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급식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19., 2013. 12. 4.>

⑤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가 위탁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검사비 등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7.]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0.>

1.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이자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14.]

[종전 제158조의2는 제158조의3으로 이동 〈2021. 10. 14.〉]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11. 29.>

1.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 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 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 제119조에 따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 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 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 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 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 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 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본조신설 2014. 11. 4.]
[제15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8조의3은 제158조의4로 이동 〈2021. 10. 14.〉]

제158조의4(여비 등의 환수)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환수할 비용이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158조의3에서 이동 〈2021. 10. 14.〉]

제159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21. 10. 14.>

1. 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0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회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기피자"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청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은 법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

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2.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3. 법 위반 조항

④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1조에서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6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관 또는 징집·소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1. 29.>

1. 관할 지방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병역의무 기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4명
2. 병무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62조 삭제 <1999. 12. 31.>

제163조 삭제 <2004. 2. 9.>

제163조의2 삭제 <2004. 2. 9.>

제163조의3 삭제 <2004. 2. 9.>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1. 6. 22.>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7. 21., 2013. 3.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12. 4., 2016. 6. 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 6. 30., 2021. 10. 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 6. 30., 2021. 10. 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7.]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30., 2021. 10. 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7조 삭제 <2005. 6. 30.>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시특례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두 차례 이상의 공고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⑤ 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⑥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전역증 등 병역관계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1. 6.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외교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찰청·국세청 및 병무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명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및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12. 31.>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서울특별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찰청 2차장)
4. 위원장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

는 사람 2명

[전문개정 2009. 12. 7.]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③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7.]

제13장 벌칙 <개정 2009. 12. 7.>

제170조 삭제 <2005. 6. 30.>

제17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1. 4.,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7.]

제172조 삭제 <2008. 10. 8.>

부칙 <제33184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금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입금액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제1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6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5.] [국방부령 제1088호, 2022. 7. 5., 일부개정]

국방부(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2조 삭제 <2002. 10. 23.>

제3조(병적기록표)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4조(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 제적)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5조 삭제 <1999. 4. 1.>

제6조(통지서 수령인의 선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병역의무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할 사람(이하 "통지서 수령인"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나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사망, 거주지이동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하기 곤란하여 통지서 수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수령인 선정(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2009. 12. 10.]

제7조(병적조회) ① 지방병무청장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그가 군복무를 한 부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병적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조회를 받으면 병적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적증명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영문표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4., 2014. 11. 7.>

1. 신청인의 신분증
2. 병적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문표기 병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여권정보를 확인. 다만, 여권정보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확인

③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면제자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8조의2(병적기록표의 발급) ①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병적기록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적고,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기록표를 발급해야 한다.

1.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

2. 병적기록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병적기록표

③ 제1항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기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7. 5.]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역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2. 1., 2021. 8. 6.>

1. 전역하는 사람이 군 경력을 포함하여 교부받기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3서식
2. 그 밖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사람이 전역·제적·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역증을 작성하여 전환복무되어 복무하는 기관의 장(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14., 2017. 8. 1., 2017. 9. 22.>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8. 2. 1., 2022. 2. 9.>

1.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발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 또는 제7조에 따른 병적조회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 대장에 접수 및 발급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8. 2. 1.>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등을 위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제시하면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와 대조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각 난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함에 있어서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에 의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또는 전역증 사본을 병역관계 서류로 비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10.]

제9조의2(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의 재발급)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은 가로 1, 세로 0.67의 비율로 발급한다.

③ 모바일 병역증 및 모바일 전역증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재사항과 같다.

1. 모바일 병역증: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2. 모바일 전역증: 별지 제7호서식의 기재사항

[본조신설 2022. 7. 5.]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 11. 29.>

제10조 삭제 <2004. 5. 29.>

제11조(국외출생자 등의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으로부터 영 제145조 또는 제147조에 따라 이 규칙 제108조제1항 또는 제111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병역준비역 편입자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병무청장은 영 제1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적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로서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면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등 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성명, 주소 및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 11. 29.>

제12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13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명부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14조(군병원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통보) 영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한 군병원의 장은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병역판정검사를 요청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15조(우선 병역판정검사)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6. 23.]

제16조(병역처분사항의 정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 연기,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그 밖의 각종 병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6조의2(입영판정검사)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등록 정보

④ 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16조의3(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를 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8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부대, 입영일 또는 집결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역병입영부대 등 변경 통지서를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20조(현역병입영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引導)·인접(引接)이 완료되면 입영 당일의 입영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현황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연입영 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21조 삭제 <2021. 6. 23.>

제22조 삭제 <2004. 5. 29.>

제23조(현역병 지원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1.>

② 각 군 현역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1. 삭제 <2014. 11. 7.>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수료·휴학·퇴학증명서 1부
4.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경력증명서, 입상증명서 등 전형에 필요한 서류 또는 그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11. 7.>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확인원
3. 약사면허증
4. 방사선사면허증
5. 안경사면허증
6. 영양사면허증
7. 자동차운전면허증
8.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는 현역병 지원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해당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 6. 11.>

⑤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송달하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⑥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1.>

[전문개정 2010. 8. 13.]

제24조(현역 편입자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 또는 인사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적 데이터베이스 등 병역관계 서류의 병적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09. 12. 10.]

제25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퇴교자 처리)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30조제6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무·법무·군종·수의 또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하고, 병적기록표와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를 정리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26조(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선발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2.>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발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나 입영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 22.>

③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2.>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2.>

⑤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현역선발 통지서를 교부한 후 입영하게 하여 소속 군의 병적에 편입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역 편입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2.>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현역 편입자 명부를 받으면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8. 1. 22.]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복무 <개정 2009. 12. 10.>

제27조 삭제 <1999. 4. 1.>

제2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순서를 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2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등의 변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 입영일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1조(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상근예비역입영 현황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현황서"는 "상근예비역입영 현황서"로 본다. <개정 2021. 6. 23.>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21. 6. 23.]

제32조(상근예비역의 파견 요청 절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파견받으려는 군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파견목적과 출퇴근 권역별 필요인원 등을 명시한 상근예비역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거주지별로 상근예비역의 소집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소집부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2조의2(상근예비역의 소집부대 변경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 중에 거주지를 이동하여 최초 선발된 지역에서 계속 복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3조(상근예비역 운영 현황 보고) ① 영 제39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을 지휘·감독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작성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운영 현황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4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영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대한 소집해제권이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소집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근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을 받은 사람이 복무기간 만료 전에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해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에게 해제 사실을 기재·정리한 전역증을 교부하고,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10.]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이 절에서 "해운업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1., 2020. 9. 29.>

1.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2. 학력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3.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34조의4(승선근무예비역 명부의 작성 등) ① 영 제4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해운업체등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새로 편입하거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록표를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4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34조의6(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영 제40조의8제2항 전단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만료처분 통보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만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4조의7(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영 제40조의9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내용, 시기, 보고사항과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1.]

제34조의8(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영 제40조의10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 12. 4.>

제35조 삭제 <2020. 12. 30.>

제35조의2 삭제 <2013. 12. 4.>

제36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2009. 12. 10.>]

제37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3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36호서식,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3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인도·인접 당일의 소집 현황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38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도·인접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①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 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학·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22. 2. 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09. 12. 10.〉]

제40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09. 12. 10.〉]

제41조(사회복무요원의 명부 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일일 복무 상황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09. 12. 10.〉]

제41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1. 10. 14.>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4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2는 제45조로 이동 〈2009. 12. 10.〉]

제4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09. 12. 10.〉]

제42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복무기관 등 재지정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1조의2로 이동 〈2009. 12. 10.〉]

제42조의3(복무기관 등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이 영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원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인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인의 신상명세서 및 관찰·면담기록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신

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30.]

제43조(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09. 12. 10.〉]

제44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21. 10. 14.]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1조로 이동 〈2009. 12. 10.〉]

제45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의 날짜를 연기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21. 10. 14.]

[제4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2조로 이동 〈2009. 12. 10.〉]

제46조(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개정 2016. 6. 14.>

제46조의2(예술·체육요원의 추천원서 등) 영 제68조의11제2항(영 제137조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1. 입상 확인서 사본 및 입상 성적확인서 등 입상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68조의11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사본(영 제68조의11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46조의3(예술·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68조의16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예술·체육요원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6. 6. 14.>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6. 6. 14.]

제46조의4(예술·체육요원의 명부 등) 영 제68조의17제1항·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명부는 별지 제39호서식, 보충역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40호서식, 공익복무 실적부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30., 2016. 6. 14., 2017. 9. 22., 2021. 10. 14.>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6. 6. 14.]

제46조의5(예술·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② 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 6. 30., 2016. 6. 14., 2016. 11. 29.>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6. 11. 29.]

제46조의6(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통지서) 영 제68조의20제3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14.]
[종전 제46조의6은 제46조의8로 이동 〈2021. 10. 14.〉]

제46조의7(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의 교육일 연기신청) 영 제68조의20제4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교육일을 연기하려는 예술·체육요원은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교육일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46조의8(예술·체육요원의 실태조사) 영 제93조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의 점검시기, 보고사항 등 예술·체육요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14.>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6. 6. 14.]
[제46조의6에서 이동 〈2021. 10. 14.〉]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47조(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서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0. 8., 2016. 11. 29.>

② 영 제69조제6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0. 8., 2016. 6. 14.>

[전문개정 2009. 12. 10.]

제47조의2(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한 의무복무명령 등) ① 영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명령은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영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③ 영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 근무 상황 평가서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47조의3(직무교육소집 통지 등) ①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소집 통지는 별지 제52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영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 등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9조의5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는 별지 제52호의9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47조의4(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 영 제70조의2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전문개정 2009. 12. 10.]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8조(병역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① 영 제7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자연계대학원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7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권자(이하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0. 10. 8., 2011. 11. 25., 2016. 6. 14., 2016. 11. 29., 2022. 7. 5.>

1.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2.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한다)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3.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2. 7. 5.>

② 영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되어 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업체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광업원부 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 8. 13.>
3. 해당 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4.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7. 5.>
1.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는 제외한다)
   나. 사업자등록증(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공업분야 제조업체만 해당한다)

④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6호서식,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선정 추천 명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49조 삭제 <2000. 2. 3.>

제50조(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영 제75조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 11. 25.>

1. 연구기관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2. 기간산업체 등의 경우
   가.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다.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업 분야만 해당한다)
   라.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마. 방위산업 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만 해당한다)
   바. 선박보유 현황서(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만 해당한다)
   사. 낙찰허가결정서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에 의한 경매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고용승계 확인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5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0조의2로 이동 <2009. 12. 10.>]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59호서식,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0호서식,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로 이동 <2009. 12. 10.>]

제50조의3(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영 제77조의2에 따른 서약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영 제78조제3항 및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위수여증명서(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학위증 사본
2.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 수료관계증명서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51조의2(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의 필요인원 통보 및 명부 작성) ① 영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52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7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해기사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의 서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 분야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53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영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54조(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 영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와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영 제8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는 업체 현황 조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2012. 12. 31.>

1. 농업기계운전요원: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농업기계수리요원: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5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작성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또는 그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병적기록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킨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작성하고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0조에 따른 기능특기자로서 병역지정업체 외의 업체에 복무하는 등 개별복무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의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⑤ 영 제8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를 새로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4., 2016. 11. 29.,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10.]

제5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및 보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현황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57조(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영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표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58조 삭제 <1997. 6. 21.>

제59조 삭제 <1997. 6. 21.>

제60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전직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10.]

제61조(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능특기자 신상변동 신고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62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승인 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63조 삭제 <2007. 12. 31.>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65조(신상변동 사항의 정리 등) ①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의 장 등으로부터 신상변동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65조의2(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 영 제91조의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유보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66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실태조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및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6. 11. 29.>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해고·퇴직 또는 휴학·제적 여부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 분야 복무 여부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장과의 4촌 이내 혈족관계 여부

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이 목적에 맞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5. 기술자격·면허의 취소나 정지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6.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7. 병역지정업체의 휴업·폐업·영업정지 또는 부도 발생으로 인한 조업의 중단 여부
8.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여부
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등 관계 서류의 비치 및 정리 실태
10.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11.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파견근무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의 관할 지역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태조사 계획서를 별지 제7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67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동원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5조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입영부대별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전문개정 2009. 12. 10.]

제68조(대체지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체하여 계급·

병과·군사특기 등 병적사항이 같거나 유사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의 장 및 예비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별지 제80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지정 현황서를 10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69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 영 제9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70조(전시·사변 등의 경우 병력동원소집의 공고) ① 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 이상의 일간신문,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두 차례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원령 선포일시
2. 입영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 내용을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또는 그 출장소의 장과 협조하여 관할 지역의 리·동 단위별로 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71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입영 현황의 보고) 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은 전역증, 주민등록증 및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입영사무소의 인도관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3호서식의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72조(우선 병력동원소집) ①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4호서식의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병력동원소집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입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73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법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제67조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과별 훈련 또는 대단위 훈련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자 명부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따로 작성한 별지 제79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작성한 별지 제85호서식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원령 선포일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발령일시"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 6. 21.>

제74조(전시근로소집) ①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 대체지정, 소집 통지서 송달의 보고, 공고 및 입영 현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자 명부"는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 입영 현황서"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는 별지 제88호서식,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74조의2(전시근로소집점검)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한 점검은 제74조제2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자 명부에 따라 한다.

② 전시근로소집점검자의 인도·인접 및 입영현황 보고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근로소집점검"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현황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입영 현황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 11. 29.>

제75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으면 별지 제90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영 제107

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0호의2서식의 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1호서식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④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退營)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군사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①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해제 현황 보고(통보)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영 제11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 본문, 제76조 및 제77조 중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6. 11. 29.>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93호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현황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의3(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선발)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영 제115조제1항에 따

라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영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에 따른 진급 및 임용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6. 11. 29.>

1. 경력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험한 직책
   나. 군사교육
   다. 군사적 전문기능
   라. 진급기록
2. 복무성과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병력동원훈련소집평가
   나. 근무평정기록
   다. 군사교육성적
   라. 상벌사항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품격
   나. 신체조건
   다. 연령
   라. 군 외의 학력 및 경력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호의 선발인원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선발인원
2. 군사교육소집 대상자격 및 선발기준
3. 제출서류
4.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접수기간
5. 선발예정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군경력증명서
2. 장교임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서
   나. 최종학력증명서

④ 제3항제2호의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의4(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명부를 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부를 받으면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2. 6. 29.]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의5(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군사학과목별 성적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신체적 결함으로 소집교육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3.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그 밖에 진급 또는 장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9.]
[제목개정 2016. 11. 29.]

제77조의6(예비역의 진급발령자 명부의 송부)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장교를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77조의7(예비역의 진급발령 보류) ① 영 제115조의2에 따른 진급대상자가 그 진급발령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급발령을 보류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이 보류된 사람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항고심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견책 이하로 경감된 경우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경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발령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77조의8(예비역장교의 검정 등) ① 영 제115조의3에 따른 검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론 및 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장교로 임용한 경우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77조의9(예비역 진급자·임용자의 병적관리) ①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8제2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진급발령자 명부 또는 장교임용자 명부를 받으면 진급발령자 및 장교임용자의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7장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제7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의 지원서)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4호서식의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 현역장교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4. 지원분야별 해당 자격사항 증명서(자격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7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등) ①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법무사관후보생 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신원진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8. 6. 11.>

1.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시험 성적증명서
2.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사법시험 성적증명서
   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경우: 법학적성시험 성적증명서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증명서
3. 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성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3.>

③ 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④ 영 제119조제5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96호서식의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그 선발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2013. 12. 4., 2021. 10.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09. 12. 10.]

제80조(학군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편입 이전에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병역판정검사에 의한 병역처분에도 불구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그 병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81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영 제1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는 영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 제120조제1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82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입영) ①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현역입영 통지서는 별지 제9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0.>

② 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 중 입영일에 입영한 사람의 명부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 현황과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83조(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지원자 관리 등) ① 영 제123조제1항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를 지원한 사람의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9.>

② 영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0호서식의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그 편입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84조(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① 영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2서식의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에 따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한국신기록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훈 수여 확인서(영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2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24조의3제5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의4서식의 연기 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3.]

[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2로 이동 〈2021. 6. 23.〉]

제84조의2(재학생의 입영등 연기)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는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1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2.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한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제85조(재학생의 별도 입영등)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부터 영 제126조에 따라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별도 입영등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재하고, 별도 입영등의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86조(국외출국자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입영등을 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또는 입영등 연기자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86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등 신청) 영 제128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87조(입영일 등의 연기) ① 영 제129조제1항 및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6. 11. 29., 2017. 9. 22.>

1. 영 제1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2. 영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4. 영 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이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여권발급 여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제5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원 처리부에 처리결과를 기재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0. 8. 13.,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8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6. 11. 29., 2020. 6. 30.>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2. 가사상황 신고서 1부
3.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3의2. 삭제 <2014. 11. 7.>

4.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5.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②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거나 소집해제 또는 연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2014. 11. 7., 2019. 2. 27.>

1. 삭제 <2010. 8. 13.>
2. 주민등록표 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5.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
7.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8.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9. 건물등기부 등본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토지등기부 등본
12. 휴업사실 증명 서류
13. 사업자등록증
14. 폐업사실 증명 서류
15. 소득금액증명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7. 장애인증명서
18. 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 서류
1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1.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20. 6. 30.]

제89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4. 11. 7.>

② 법 제63조제2항 및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복무기간의 단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2014. 11. 7.>

1. 삭제 <2010. 8. 13.>
2. 삭제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20. 6. 30.]

제90조(생계유지곤란 사유의 조사 등) 지방병무청장은 제88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또는 전사·순직 및 전상·공상의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 또는 전사·순직·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91조(병역의무 감면 제한의 통보)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 편입 의뢰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복무를 이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92조(전시근로역 편입자 등의 병역관계 서류의 정리) 각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은 영 제133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한 사람의 인사명령서와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4. 11. 7., 2020. 1. 7.>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영 제13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면제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4. 11. 7., 2020. 1. 7.>

1. 영 제13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 영 제134조제1항제8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6. 11. 29., 2020. 1. 7.>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94조(병역면제처분 등의 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본조신설 2012. 12. 31.]

제94조의2(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 ① 영 제134조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6. 11. 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전시근로역 편입원 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6. 11. 29.]

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1.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 진단서(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별지 제109호서식의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으면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2014. 11. 7.>

1.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전문개정 2009. 12. 10.]

제95조의2(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희망자의 처리) ① 영 제135조의2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별지 제108호서식에 따르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95조의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은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11. 29.]

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영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1. 11. 25., 2012. 12. 31., 2013. 12. 4., 2014. 11. 7., 2016. 11. 29., 2018. 6. 11., 2020. 6. 30.>

1. 영 제1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115호의2서식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5.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6. 영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여부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07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4. 11. 7., 2018. 6. 11., 2020. 6. 30.>

1. 영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영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전문개정 2009. 12. 10.]

제96조의2(소집해제심사위원회) ① 영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소집해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12. 4.,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0. 8.]

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① 영 제27조제5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의무장교 1명 이상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98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서식의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3. 3. 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역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14., 2017. 8. 1., 2017. 9. 22.>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8. 1., 2017. 9. 22.>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전

환복무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하는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후 그 명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역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명령서와 병적기록표 및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른 명부와 서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자 명부에 기재하고, 전(全) 가족의 출국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2013. 3. 23.>

1. 삭제 <2010. 8. 13.>
2. 삭제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98조의2(상근예비역 복무희망자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6. 14., 2017. 8. 1., 2017. 9. 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았으면 지체 없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한 사람의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8. 1., 2017. 9. 22.>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확인한 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가능지역을 고려하여 소집부대를 지정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99조(국외이주자의 병역처분변경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제98조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서를 송부한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해외이주가 취소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전환복무된 사람의 경우 의무소방원은 소방청장, 의무경찰대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14., 2017. 8. 1., 2017. 9. 22.>

②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8. 1., 2017. 9. 22.>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명단을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98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6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복무할 부대를 지정한 별지 제120호서식의 재복무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고, 그 결과(보충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취소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0조(예비역장교 등의 병역처분변경 등) 영 제139조에 따른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퇴역처분에 관하여는 제9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1조(전상 또는 공상자의 병적정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장이 전상 또는 공상의 구분, 치료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병적기록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전역증에 전상·공상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2조(장교 등에 대한 보충역 처분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 영 제1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예비역 편입·퇴역처분에 관한 권한(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대령

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0. 18.>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3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신청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1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1. 보충역 편입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충역 편입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10. 8. 13.>
4.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부(「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4조(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장교 등의 병적정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 심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병적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5조 삭제 <1999. 4. 1.>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

제106조 삭제 <1999. 4. 1.>

제107조 삭제 <1997. 6. 21.>

제108조(국외여행허가 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영 제16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7.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8. 국외이주의 경우: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자 명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국외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0조로 이동 〈2009. 12. 10.〉]

제109조(출국 전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 신청 등) 영 제145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10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9조는 제108조로 이동 〈2009. 12. 10.〉]

제110조(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영 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0. 10. 8.,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0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준비역으로서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3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가. 병역준비역
   나.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3. 보충역으로서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
4. 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37세 이하인 사람

[전문개정 2009. 12. 10.]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09조로 이동 〈2009. 12. 10.〉]

제111조(출국 후의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① 영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영 제1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147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자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그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11조의2(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의 제출) 영 제1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12조 삭제 <2010. 7. 21.>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 12. 10.〉

제11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질병확인서 등) 영 제15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상(질병)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서식, 치료 신청서는 별지 제13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목개정 2013. 12. 4.]

제113조의2(사망보상금 청구서 등) ① 영 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② 영 제153조의4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장애보상금 청구서

및 진단서에 별지 제139호의4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3.>

1. 삭제 <2010. 8. 13.>
2. 삭제 <2010. 8. 13.>

[전문개정 2009. 12. 10.]

제11장 병무행정

제114조(지방병무청장 등이 한 처분의 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14조의2(병역 정보의 보존 등) 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해제와 병역면제, 의무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복무와 교육·수련 기록 등의 병역 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② 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의 보존 및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14.]

제115조(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영 제155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6.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1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군 참모총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병무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20. 6. 30.>

1. 제3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에 관한 사무
2. 제79조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제87조, 제88조, 제95조, 제96조 및 제108조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제출에 관한 사무

4. 제117조에 따른 병역기피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6. 14.]

제116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관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방불명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방불명자가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1.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 등(초)본(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반송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및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 사본
2. 행방불명 처리 경위서

②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를 갖춰 두고 소재조사 의뢰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 현황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로서 영 제1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⑤ 영 제164조제2항에 따른 소재조사 의뢰서는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17조(병역기피자 등의 고발)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1항에 따라 병역기피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5조제2항에 따른 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0. 10. 8., 2013. 3. 23., 2013. 12. 4., 2016. 6. 14., 2016. 11. 29.>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7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30.>

④ 각 군 참모총장, 지방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30.>

⑤ 각 군 참모총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및 복무이탈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8호서식의 병역기피자·복무이탈자 고발(처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20. 6. 30.>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매 분기별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제116조제3항에 따른 서식, 복무이탈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8호의2서식에 따른 현황보고서를 종합·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전문개정 2009. 12. 10.]

제118조(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사전통지) 영 제160조제2항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119조(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9호서식의 지정의료시설 직인인영 등록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영 제168조제3항에 따른 위촉장은 별지 제15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2장 전시특례

제120조(전시의무분야 등 예비역장교 등의 편입)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역장교(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부를 받으면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21조(전시 거주지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법 제8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 이내에 법 제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증 또는 전역증, 그 밖의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거주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10.]

제13장 벌칙 <개정 2009. 12. 10.>

제122조 삭제 <2005. 7. 1.>

제123조(과태료 징수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대장에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② 병무청장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제40조 또는 제81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관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전문개정 2009. 12. 10.]

부칙 <제1088호, 2022. 7. 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07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23. 1. 1.] [국방부령 제1094호, 2022. 8. 9., 일부개정]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16. 11. 30.>

[전문개정 2009. 11. 12.]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② 국방부장관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석판단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로연수·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2017. 11. 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직장예비군 지휘관 공석은 제외한다) 중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1. 3. 8., 2015. 2. 27.>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다만,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라 명예진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진급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또는 퇴역(「군인사법」 제41조제2호의 사유로 현역에서 바로 퇴역한 경우만 해당한다)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③ 현역군인으로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2018. 8. 24., 2021. 12. 31., 2022. 8. 9.>

1.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사람(장교 또는 부사관이었던 사람이 전역 후 다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현역 복무기간은 다시 임용되기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2.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⑤ 현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반기 응시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후반기 응시자는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현재 직위에서 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 6개월 전까지 관할 부대장에게 퇴직 예정임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6.>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7. 11. 1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0. 3. 10., 2010. 8. 13., 2015. 2. 27., 2017. 11. 16.>

1. 삭제 <2009. 8. 31.>
2. 삭제 <2009. 8. 31.>
3. 삭제 <2009. 8. 31.>
4. 삭제 <2009. 8. 31.>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5. 2. 27.>

③ 삭제 <2015. 2. 27.>

④ 삭제 <2009. 11. 12.>

제8조(응시수수료) ①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3. 10., 2011. 3. 8., 2015. 2. 27., 2017. 11. 16.>

1. 일반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3. 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 3. 8.>

[전문개정 2009. 11. 12.]

제9조(시험의 구분) ①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 3. 10., 2017. 11. 16., 2021. 12. 31.>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②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시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11. 12.]

제10조(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 삭제 <2009. 8. 31.>

제12조(체력검정) ① 체력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체력 인증(이하 "국민체력인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21. 12. 31.>

1. 삭제 <2010. 3. 10.>
2. 삭제 <2010. 3. 10.>
3. 삭제 <201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은 국민체력인증의 체력검사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모두 3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제9조제1항제3호의 면접시험일부터 6개월 이내의 인증 결과만 인정한다) 합격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1.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재난·재해 등으로 국민체력인증의 시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신설 2021. 12. 31.>

제13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9. 11. 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2011. 9. 8.>

④ 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09. 11. 12., 2010. 3. 10.>

② 필기시험은 총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1. 9. 8., 2015. 2. 27.>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2(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5. 2. 27., 2021. 12. 31.>

②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2. 8. 9.>

③ 서류심사·체력검정·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2. 8. 9.>

[본조신설 2009. 8. 31.]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9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평정표의 종합판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 중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 8. 31.,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0. 7. 15., 2022. 8. 9.>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5. 2. 27.>

④ 삭제 <2009. 11. 12.>

⑤ 삭제 <2017. 11. 16.>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 9. 8.>
⑦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8.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0. 7. 15., 2021. 12. 31., 2022. 8. 9.>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⑧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2. 27.>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표 9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11. 9. 8.]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근무병과 0.5점, 심의평가 10점, 상훈 2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0.5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1. 12. 31.>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또는 퇴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평정표의 종합판정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하며, 휴직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의 근무평정 점수 중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의 근무평정 환산점수의 평균점수를 근무평정 점수가 없는 기간의 근무평정 점수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 8. 31.,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0. 7. 15., 2022. 8. 9.>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5. 2. 27.>
④ 삭제 <2009. 11. 12.>
⑤ 삭제 <2017. 11. 16.>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 9. 8.>

⑦ 심의평가는 각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9.8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별표 7의2의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0.2점 범위 내의 점수를 더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8. 31., 2011. 9. 8., 2015. 2. 27., 2017. 11. 16., 2020. 7. 15., 2021. 12. 31., 2022. 8. 9.>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말소된 징계·형사처벌 기록은 제외한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또는 퇴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⑧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 2. 27.>

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표 9의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11. 9. 8.]

[시행일: 2024. 1. 1.] 제15조제1항,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1.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다만, 대대장 이하 직위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속 대령급 장교 및 3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중령급 장교 및 4급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명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2., 2017. 10. 18., 2021. 12. 31.>

[제목개정 2009. 11. 12., 2010. 3. 10.]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체력검정·필기시험·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 8. 31., 2009. 11. 12.,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7.>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0., 2015. 2. 27., 2017. 11. 16., 2018. 8. 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승격, 통·폐합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4.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격하,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다른 직장예비군 지휘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12.]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 또는 교육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 11. 16.]

부칙 〈제1094호, 2022.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8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5.]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타법개정]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0.>
[전문개정 2014. 1.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30.>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1.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지원과 산하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
4.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전문개정 2014. 1. 16.]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 · 지원

제6조(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평가
4. 그 밖에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7조(중기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중기계획의 수정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8조(연도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군·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서를 검토·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영 제3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9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 9. 2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전문개정 2014. 1. 16.]

제10조(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물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 재산·물품(비소모품·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3조(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을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 · 지원

제16조(중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기계획은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7조(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복

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8조(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지원회칙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4장 보칙

제19조(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

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부칙 〈제1068호, 2021. 10. 2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9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국방부 훈령 제2112호(2017. 12. 29.)
개정 국방부 훈령 제2231호(2018. 12. 17.)
개정 국방부 훈령 제2290호(2019. 06. 25.)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77호(2020. 11. 18.)
개정 국방부 훈령 제2605호(2021. 12. 17.)
개정 국방부 훈령 제2761호(2023. 01. 10.)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豫備軍)"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한다.
2. "조직(組織)"이란 구성요원의 대상과 복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성(編成)"이란 예비군으로 조직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로 부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5.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을 말한다.
6.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와 예비군중대의 중간 지휘제대로서통상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7.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 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8. "예비군중대"란 지역예비군의 경우는 읍·면·동 단위로, 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예

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편성되며, 본부와 수 개의 예비군소대로 편성된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9.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에 조직되는 대상이 아닌 사람 중 지원에 의해 선발된 예비군을 말한다. 다만,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대상 예비군 7년차 부터 8년차까지 중 희망하여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한다.
10.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하며, 수임군부대장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11. “예비군 자원관리대대장”(이하 “관리대대장”이라 한다.)이란 예비군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단위 부대의 장으로서 통상 1개 이상의 시·군·구 책임지역을 담당하는 대대장을 말한다. 다만, 해군(해병대)의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포함한다.
12. “국방동원정보체계”란 동원 및 예비군 관련된 정보자료(DB)를 국방부로부터 정부부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체계를 말한다.
13.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지역예비군 소대장(기동대 포함), 부중대장 (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등을 말한다.
14. “전역권부대”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인사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예비군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지휘체계

제4조(예비군 지휘관리체계)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 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예비군 조직 및 편성에 관해서는 병무청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및 통합방위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한다.

③ 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는 예속관계로 설정되고, 수임군부대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 작전수행 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세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장관
   가. 예비군 업무 총괄
   나. 예비군의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
   다. 예비군 지휘관리에 관한 권한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위임
   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임용, 임명, 해임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업무

마. 예비군의 포상,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과 조정
바. 예비군 추가 편성 승인
사. 특별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각 군 위임)
아. 예비군부대기 및 현판 수여(각 수임군부대 위임)
자. 예비군 육성, 운영을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
차.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
카. 수임군부대의 지정 및 해제

2. 각 군 참모총장
가. 국방부 지침에 대한 각 군의 시행방침 수립과 집행의 감독
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예비군 교육훈련의 조정 및 통제
라.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감독 및 통제
마. 예비군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바. 예비군 육성, 지휘관리를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
사. 위임된 사항 임무수행

3. 수임군부대장
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해 위임된 사항 수행
나.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
다. 위임된 예비군중대장의 임명 및 해임
라.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검토, 자격조건 미달 예비군부대 및 소대급 이하의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요구
마. 2개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통합 운영
바. 예비군의 동원 및 운용과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사. 예비군 훈련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감독
아. 예비군의 포상에 관한 조치
자. 예비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심의
차. 동원 및 예비군 업무 관련 정기감사
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과 예비군 관련 업무협조 유지

4. 예비군부대 지휘관(예비군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을 말하고, 권한 및 임무수행 측면에서 독립 직장예비군소대장을 포함한다.)
가.「예비군법」 제14조의2,「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명시된 임무
나. 위임 시 무기·탄약의 관리책임, 훈련 및 작전을 위한 무기·탄약 수령 시 관리·유지
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과 업무 협조
라. 국방동원자원조사 참여(지역예비군부대)
마. 그 밖에 예비군부대 운영과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예비군소대장

가.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통솔
나. 소대자원 현황 파악 유지
다. 교육훈련 참석 독려 및 확인, 인솔 및 군기유지, 부교관 임무수행
라. 소대 편성 및 임무 확인
마. 응소병력 확인, 소대 무기, 탄약 수령 및 분배
바. 전투장비 및 물자 수령, 작전지속지원 사항 확인 및 지원 건의
사. 진지투입계획 확인 및 정찰, 전투준비 통제
아. 전시교육계획 시행, 기타 예비군지휘관 지시사항 수행

6.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가. 예비군 조직 및 편성
나.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해체
다. 예비군 자원관리
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마. 예비군 조직·편성 대상자의 전산명부 관리
바. 예비군 편성정보(주소지 이동, 국외 출·입국사항 등)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
사. 지역 지원예비군의 편입 결정 및 통지
아. 수임군부대장과 예비군 관련 업무협조 유지

7. 수탁 경찰서장
가. 중대 이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지휘
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
다.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 및 관리
라. 무기고·탄약고 관리책임자 임명 및 통제
마.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바. 동원된 예비군에 관한 표창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사. 기타 위탁받은 업무

제3장 예비군의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제1절 개요

제6조(예비군 조직)

예비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
4. 「예비군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하며, 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비군부대 편성체계)

예비군부대 편성은 「예비군법」 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
   가.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
   나.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 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2. 직장예비군
   가.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 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
   나. 직장의 장(대학 총·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 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
   다.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직장운영과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제2절 지역예비군 편성

제8조(편성원칙)

① 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를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에 소대(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인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정찰반 등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제9조(편성방법)

① 예비군지역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지역대는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 하되,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편성한다.
2.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3과 같다.
3.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은 별표 4와 같다.
   가. 부지역대장,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계급 및 병과인원으로 편성하며, 지방병무청장의 병력동원 후순위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
   나. 본부 행정병(통신병, 운전병 포함)은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편성한다.
4.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예비군중대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는 읍·면·동 단위로 편성하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을 분리 또는 통합 편성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은 예비군자원과 선박운항, 연륙(도)교 설치, 기타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륙 또는 인접도서 예비군중대와 통합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접적지역의 도서(백령도, 연평도 등)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 분·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
3. 예비군중대는 본부, 동원예비군소대, 지역예비군소대, 보류자소대, 기타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가. 본부는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각 직책에 맞는 특기 소지자로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나. 동원예비군소대는 동원지정 소대와 동원미지정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1) 동원지정 소대는 동원일시, 소집부대별로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소대의 분・소대에 준하며, 전시 근로소집 지정자는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2) 동원미지정 소대는 군별·신분별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소대의 분・소대 편성을 준용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
   다. 지역예비군소대는 5년차부터 8년차까지 자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편성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자원도 지역예비군소대에 편성할 수 있다.
      1) 소대는 소대본부 및 4개의 분대로 편성한다.
      2) 소대(분대)는 연차별로 편성하며, 2개 년차 이상 통합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에 연차를 통합 편성할 수 있다.
      3) 지역예비군소대 편성기구도(예)는 별표 6과 같다.
   라. 보류자소대는 보류자 유형(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

며, 보류자 중 동원지정인원은 동원지정소대에 편성한다.

마. 기타소대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와 거주불명 등록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편성한다.

4.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7과 같다.

③ 예비군기동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기동대는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시·군과 대등한 출장소) · 자치구 소재지에 1개를 편성하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편성하지 않거나 감소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감소편성할때는 최소한 2개 소대 이상 편성한다.
2. 예비군기동대는 기동대본부, 박격포반, 4개 기동소대로 편성하고, 기동소대는 소대본부와 3개 기동분대로 편성한다. 다만, 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정찰반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장비 편성 및 운용능력 구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시·군·구청이 위치한 읍·동 자원 중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예비군소대에우선하여 편성하되, 자원 부족 시는 인접 읍·면·동 지역으로 확산하여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의 경우 자원 부족시 1년차부터 6년차까지를 통합 편성할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4.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8과 같다.

④ 예비군부대 명칭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1조(부대명칭)에 따른다.
다만, 예비군부대 자원 등 고려 분리·창설 및 통·폐합 시 부대명칭 부여는 국방부 지침에 따른다.

제10조(편성 및 해체절차)

①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 장관이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하면,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시행 및 감독한다.

제11조(예비군 주요 직위자 임명 및 면직)

①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지역대장과 부중대장(부기동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예비군소대장과 예비군지역대 참모는 예비역 위관급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2. 예비군 주요 직위자는 가급적 해당지역 내 자원으로 편성하며, 자원 부족 시 예비역 병을 제외하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3. 임명 직위의 우선순위는 예비군소대장,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순으로,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임명한다.

가.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

나.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
다.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
라.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
마.「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또는 예비역 병

②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부기동대장), 소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공석 및 신규 소요 발생시 예비군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공고는 선발직책, 자격기준, 의무 및 혜택, 접수기간, 구비서류, 결과 발표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예비군중대장은 지원자 중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고,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 후 순위 조정 승인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비군중대장이 소속 예비군대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3. 관리대대장은 추천된 인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구비서류(별지제7호서식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및 예비군 편성카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추천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추천, 인사명령, 임명장 생성·발송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리대대장(지역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할 수 있다.
4. 예비군중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최종 임명결과를 확인하고, 임명된 대상자에게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다른 시·군·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나.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면직을 희망한 경우
   다.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작계훈련 2차훈련을 무단 불참한 경우
2. 예비군중대장은 1호 나·다목의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고, 임명권자는 면직처리 후 인사명령을 하달한다.
3. 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면직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면직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예비군부대계획)

국방부 장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 연도, 수시 지역예비군부대계획(이하 “예비군부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1.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후 5년간(F+2~F+6)의 예비군부대 창설 및 해체 등의 소요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검토·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및 정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 각 군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7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12월말까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으로 하달한다.

2.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작성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의 기준연도 계획과 각 군에서 제기한 연도 예비군 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연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F+1년 예비군부대계획의 시행과 정원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나. 각 군은 F+1년도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6월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9월말까지연도 예비군 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으로 하달한다.

3.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1) 예비군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경우

2) 조직진단 등을 통해 예비군부대계획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다만,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승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및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각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시행 7개월 전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다만, 명예퇴직, 의원면직, 징계, 사망 등으로 사전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는 시행 3개월 전까지 건의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예비군 부대 요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 장관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시행 5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한다. 다만, 1)호 단서의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할 수 있다.

4. 세부적인 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제3절 직장예비군 편성

제13조(편성원칙)

①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2.「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분대규모 이상인 직장. 다만,「예비군법」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⑤「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운영한다.

⑥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⑦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예비군 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들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군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⑨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1. 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 지원계획, 지휘·통제 및 통신대책 등
2.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 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 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⑩ 1만 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하 대대 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예비군자원이 1만 명 이상으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 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⑪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성 및 운영한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군 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2와 같은 참모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과 급여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2.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편성방법)

① 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별표 11과 같다.
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3.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4.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중요시설은 직장 내 1개 분대(9명)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자원수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2. 국가중요시설 직장의 장은 예비군 자원이 부족(9명 미만)할 경우 지원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다.

③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
2. 편성대상자
   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라. 고용원 중 예비군
   마. 지원예비군
   바.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3.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
4.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13과 같다.

④ 분·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 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제15조(편성 및 해체절차)

① 직장예비군의 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 하는 자 포함)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 1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대상자 연명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2부를 관할 지

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 다만, 국가중요시설 직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편성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회신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회신서에 따라 편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편성승인 결과를 접수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들에 대한 직장예비군부대 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직장예비군부대의 창설, 부대규모 조정, 해체 등은 수임군부대장의 검토 의견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한다.
2.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 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가. 수임군부대장은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사유와 실태를 확인 후 의견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의 장에게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한다.
   다.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 받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체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라. 직장의 장은 해체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예비군 장비 및 물자를 동일 계열 내 타 예비군부대로 관리전환하거나 수임군부대로 반납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3.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다. 다만, 해체 이후 직장의 장 또는 예비군지휘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편성할 수 있다.

제4절 지원예비군 편성

제16조(지원 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

1.「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민방위대 대장

2. 예비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

제17조(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서를 받은 예비군지휘관(지역 및 직장)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3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조직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예비군 편성정보를 소속 예비군 부대로 전송한다.
3.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한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입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지원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편입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고, 연장을 원할 시 해제 1개월 전에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2. 지원예비군이 해당 읍·면·동 지역 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
3. 지원예비군 탈퇴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다.
4. 지원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여성예비군 편성)

① 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군·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
2. 부대 명칭은 여성예비군소대로 한다.
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여성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한다.
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5. 여성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군·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6.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여성예비군부대의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 여부를 결정

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
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한다.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직장의 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부대해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물의 야기 시, 훈련군기 문란 및 훈련참석률 저조 시,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시, 기타 해체 필요시 수임군부대장이 판단하여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체여부를 보고한다.
2. 해당 각 군 참모총장의 해체승인을 득한 수임군부대장은 부대를 해체하고해체결과를 지방병무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장의 장)에 통보한다.

제19조(특전예비군 편성)

① 특전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특전예비군부대 편성은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특전 예비군중대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한다. 다만,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수임군부대가 있는 경우 부대별로 각 각의 특전예비군지역대를 편성할 수 있다.
2.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병) 중, '예비군 7년차 이상 희망자'와 예비군편성 제외자 및「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 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
3. 부대 명칭은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로 한다.
4.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15와 같다.
5.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기준,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6. 특전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 ·군·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서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예비군중대에서 관리한다.

② 특전예비군 부대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
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 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

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 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
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해체 절차는 여성예비군부대의 해체 절차와 동일하다.

제5절 예비군 추가 편성

제20조(추가 편성 대상)

①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 제72조와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 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제21조(추가 편성 절차)

①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와 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 대상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 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 병무청장은 예비군 추가 편성 완료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 등 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 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 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⑥ 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 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제6절 예비군 자원관리

제22조(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① 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은 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조직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 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
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 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 예비군 편성정보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제23조(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① 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지 이동 등 예비군 신상변동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예비군 편성정보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예비군의 모든 신상변동사유(전입, 전출, 퇴직, 보류 조치 및 해소 등) 발생 시 3일 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전송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 후 해당 예비군 부대로 통보한다.

제24조(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

① 지역예비군이 주소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예비군에 대한 편성정보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新)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전송된다.
2. 신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지침에 의해 개인별 보직 부여, 예비군 편성정보 수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신 주소지 지역 예비군지휘관이 전(前) 주소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요구 시, 전 주소지 예비군 지휘관은 관련 자료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지역 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직장예비군부대 사이 전출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이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 직장의 장은 입사일자(대학생은 입·복학일자)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직장 관할 지

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의 직장예비군부대 편입을 국방동원정보 체계로 요청한다.

2.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정하여(해당 예비군이 관할 지역 외 거주 시 예비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과 협조)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직장의 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 편성정보를 수신하게 되면, 보직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예비군 자원을 관리한다.

③ 직장예비군이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주소지를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의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전산망에 의한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편성정보상 주소지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직장의 장에게 전송한다.

④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한다.
2.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서 제외된 사실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자의 편성정보를 정리하고, 국방동원 정보체계를 통해 주소지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정보를 통보한다.
3.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은 편성정보를 확인한 경우 편성 처리하고, 필요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 관련서류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한다.

⑤ 직장예비군이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직장을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출을 통보한다.
2. 신(新)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의 전입을 요청한다.
3. 직장 전입 또는 전출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출입 직장의 장에게 전·출입 관련사항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하여 통보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주소지를 동시에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직장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출 통보한다.
2. 지방병무청장의 업무처리는 제5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다

⑦ 예비군 복무의무가 만료 또는 소멸될 때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복무가 만료된 자를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하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예비군 복무만료자 명단을 국방동원정보체계로 통보한다.
2.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매년 말 판단한 예비군 복무 만료 대상 명단과 지방병무청장이 통보한 복무만료자 명단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지역 및 직장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이 연령 및 역종변경에 의한 예비군 복무만

료 외의 사유로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해당 예비군으로 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확인을 요청한다.

4.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를 예비군 편성 제외 후 3년간 보관한다.

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부대 목록을 통보 받으면 부대 현황 등을 수정하고 예하부대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⑨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에서 직장예비군부대 소재지 이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 부대목록을 정리하여 신속히 이동 전·후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하는 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 부대 사항을 확인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4.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은 신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 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지방병무청 관할 이외의 타도로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현 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방 병무청장, 현 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 소재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의 이동사항을 통보 받은 신소재지 지방병무청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소재지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이를 접수한 예하부대장들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이전해 온 사실을 확인하며, 지휘계통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를 관리한다.
5. 직장 이전이 완료되면 직장의 장은 신소재지 수임군부대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완료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재복무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현역복무 후 재복무하여 전역한 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26조(예비역 간부 진급)

①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② 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은 각 호와 같으며, 계급 및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당해 연도「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

1. 「병역법」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가 예비역인 자
2. 진급 최저 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훈련) 가능한 자

③ 선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역 복무실적 평가와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절차는 당해 연도 선발지침에 의한다.

1. 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보직경력, 교육실적, 근무평정, 상훈 등
2.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예비군훈련 이수실적, 상훈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역 간부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급대상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진급명령 발령 및 병적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진급대상자는 제4항의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 해야 하고, 당해 연도 선발 공고에서 명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해 서만 진급명령을 발령한다.
2. 진급명령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고,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3.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부사관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하며,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교 진급발령자 명부를 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
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을 정리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에 송부한다.

제4장 예비군 운용

제27조(예비군 보류자 관리)

예비군 보류와 관련하여 보류제도, 보류승인 및 해소절차, 보류자 편성 등의 내용은「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6장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를 따른다.

제28조(무장)

① 합참의장은 전투수행을 위한 작전소요를 적 위협, 지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평시 확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은 개인장구류와 개인화기 및 탄약, 수류탄 등을 휴대한다.

③ 지역예비군소대는 공용화기로 유탄발사기를 운용하고, 예비군기동대는 기관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등을 운용한다.
④ 지역예비군소대(예비군기동대 소대 포함)는 저격조(저격수, 관측수)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⑤ 세부 예비군 무기 및 탄약 휴대기준, 예비군 저격조 조준경 보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29조(지휘통신)

① 예비군 작전 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유·무선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대책(시호통신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② 지휘통신체계는 유선, 무선망(전투무선망, 상용무선망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특히 무선망의 경우 통신전자운용지시를 운용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또는 전시증원연습),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비전투원후송작전) 등 지원 시에는 작전통제부대(현역부대)의 전투무선망을 이용하여 경계담당 부대, 이동 및 호송부대 간 통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군·경 합동상황실에는 유·무선 통신대책을 강구하고, 전장정보 공유를 위해 전술 C4I체계를 관리대대장 책임 하에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동원체계)

① 지역예비군 동원령은 국방부 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 및 수탁경찰서장이 발령한다.
② 지역예비군 동원령의 전파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지방 매스컴 등 공공 전파수단, 경찰 ·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단위 연락체계 등 다중연락체계를 활용한다.
2.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예비군소대별 비상소집망을 유지하고,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출타 시 명령 대리 수령인을 선정하게 조치하며, 명령 대리 수령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확보하는 등 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해야 한다.

③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동원명령을 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 동원발령일시부터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시간 내에 집결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무기 및 탄약분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관리대대 및 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최단시간 내 분배 및 지급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 및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무기 및 탄약 수송 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분배 후 잔여 총기 및 탄약은 회수하여 경계병 등 경계대책이 강구된 무기고 및 탄약고 등 안전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⑤ 작전투입 및 근무교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지휘관은 작전투입 전에 임무를 확인하고, 전투태세 점검 및 정신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한다.
2. 근무교대는 근무, 휴식 및 생업이 조화되도록 24시간 단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임군부대장은 작전상황을 고려하여 교대주기 등을 조정할수 있다.

⑥ 긴급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명령,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긴급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의한다.

⑦ 지역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발령권자와 동일하고, 동원 해제는 지역단위 동원 해제와 전국 단위 동원 해제로 구분한다.
1. 수임군부대장은 책임지역 내 작전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역안정도 평가, 지방 자치단체장 요구, 주민 및 언론동향, 경제활동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동원을 해제한다.
2. 국방부 장관은 작전 종결 여부, 정치, 경제, 국민 여론, 동원지역 수임군 부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

⑧ 지역예비군 동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80조를 적용한다.

제31조(운용방법)

① 예비군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대대장 또는 위탁받은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운용한다.

② 지역예비군은 책임지역내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격멸하기 위해 임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한다.
1.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핵심노드를 방호하고, 취약지역 통제를 위해 "목"진지, 검문소 등 일정지역에 배치한다.
2. 행정구역 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작전 우선순위가 높은 대대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다.

③ 직장예비군은 해당 시설 자체방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역예비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예비군부대의 공용화기는 방호목표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며, 필요시 지역책임부대장에게 화력지원을 건의한다.

⑤ 작전지속지원은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지원 본부 및 직장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이 제한될 경우 군 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난 시 동원 등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제5장 예비군 근무운영

제1절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2절 예비군 감사 및 법규 위규자 처리

제43조(예비군 감사)

예비군 감사는「예비군법 시행령」제31조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0부터 제37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사방법 및 절차는 각 군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감사대상은 수임군부대 예하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이다.
   나. 감사주기는 감사대상별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 및 자원수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감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감사지침 등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수임군부대로 하달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중점, 대상, 시기,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감사대상에 통보 및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라. 감사진행 및 결과조치는 아래와 같다.
      1) 감사진행은 대대단위로 원격감사, 본 감사, 확인감사 순으로 실시한다.
      2) 감사종료 후 수임군부대장(부지휘관) 주관하 강평을 실시하고, 반기 단위로 수임군부대장 주관 후속조치 추진평가회를 실시한다.

3) 수임군부대장은 당해 연도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12월 말까지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2.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4조(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예비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예비군법」 제15조(벌칙)를 따른다.

2. 「예비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군부대

1) 거주불명 등록자

가) 지역예비군

(1)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게 거주불명 등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나) 직장예비군

(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 내에서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 증명)으로 송부한다.

(2)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 대원의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주민등록지에 거주사실 확인을 의뢰하고, 거주불명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다) 고발 시기

(1) 예비군지휘관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거주불명 등록결과 접수 시

2)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예비군법 위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비군 지휘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3) 고발대상자가 고발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관련 서류를 현 소속 예비군부대로 이송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나. 관리대대

1) 관리대대장은 예비군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자를 종합하여 위원장(관리대대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심의 후 14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

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지역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2) 경찰서로부터 결과 접수 시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에 결과를 기록한다.

제6장 예비군 군수관리

제45조(보급지원계통)

① 육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군부대 보급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임군부대 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로 분배한다.

② 해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대대를 경유하여 예비군부대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 세부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은 별표 22과 같다.

제46조(무기 및 탄약)

① 무기 및 탄약의 획득, 분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평시 작전으로 인한 탄약 기본휴대량의 소모보충은 수임군부대의 군수 참모가 작전참모의 협조를 받아 보급하고, 재고부족 시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
2. 수임군부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작전하는 예비군은 가장 가까운 여단 (연대)급 이상 부대장에게 통제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무기 및 탄약의 보관,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표기한다.
2. 탄약은 탄약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통기, 방습 대책을 강구한다.
3. 작전소요 또는 작전가용 예비군 수보다 초과하여 무기를 보유 시 초과 보유 무기를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하여 보관한다.
4. 예비군 감사 시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을 해체하여 무기를 확인할 수 있고, 군 예산으로 재 도포 또는 재 진공포장한다.

③ 무기의 출고 및 회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의 출고는 무기고 관리 책임자가 관리대대장(위탁 시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출고한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출고 후 대여할 수 있다.
2. 무기를 출고한 후 그 목적사항이 종료되었을 때 즉시 회수하여 고장, 파손 여부, 망실품의 유무 및 손질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하고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
3. 일상경비근무용 무기와 정기적인 손질을 위한 무기의 출고는 위 조항에 불구 하고 해당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행한다.

④ 무기 및 탄약의 개인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예비군동원 시 무기 및 탄약은 예비군지휘관에게 일괄 지급 후 예비군대원에 대해 개인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비군 부지휘관 등 관리대대장이 지정한 인원에게 일괄 지급 후 예비군대원에게 개인 지급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시는 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에게 일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 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의 입회하에 예비군대원에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무기 및 탄약의 분배계획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및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수탁 경찰서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무기 및 탄약분배 계획을 작성 유지한다.
2. 분배훈련은 감사, 훈련 시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통신장비)

① 통신장비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장비 보급은 각 군의 보급방침에 따라 보급한다.
2. 통신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따라 재산에 등록해야 한다.

② 통신장비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전기는 인가된 부대에 지급하고 해당 예비군지휘관에 의해 주기적인 장비점검 및 조작능력을 배양한다.
2. 군용전화기는 가용범위 내에서 체신전화 가설 불가지역 및 필요지역 (무기고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통신장비의 정비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부대정비 계단을 초과한 고장장비는 지원시설에 반납한다.

제48조(기동장비)

① 기동장비의 보급 및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평시 예비군부대에 소요되는 차량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전시에는 동원지정차량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시·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원계획을 협의하여 유사시 차량 활용이 가능토록 협조하며, 전시에는 동원지정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49조(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① 기본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피복은 전역 시 개인 지참 품목으로 하고, 개인장구류는 부대에서 지급한다.
2. 개인장구류는 예비군부대별 작전소요량을 보유한다.

② 개인장구류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기동대, 전방군단 주민이동지역 예비군부대, 특전예비군부대의 완전군장 지급대상 품목은 연차적으로 보급하며 특별소요에 의한 물자보급은 별도 방침에 의한다.
2. 기부를 받거나 또는 자체 구입한 개인장구류 등 물자는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 후 예비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장구류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은 개인장구류에 대한 관리유지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개인장구류는 해당 예비군부대 단위로 저장,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방습(防濕), 방화, 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한다.
3.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은 장비고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감독해야 한다.
4. 관리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장비 분배 계획,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시에 대비해야 한다.
5.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비상 시 지역예비군 동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평시 훈련 등 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다만, 방탄헬멧(위장포), 개인장구요대, 소화기탄입대, 수통(피), 우의는 훈련 시 사용할 수 있다.
6. 지역예비군 장비 및 물자 중 초과보유 품목에 대한 처리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50조(시설)

① 장비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고는 해당 예비군부대 내 또는 예비군부대 최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비고에는 화재예방, 도난방지를 포함한 일련의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무기 및 탄약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
   가.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방예산으로 건축하며,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한다. 다만 직장 무기(탄약)고는 해당 직장 자체 예산으로 건축한다.
   나. 예비군 무기고는 이동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시설 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2. 예비군 무기고 관리책임자
   가. 관리대대장 이상 지휘관(수탁 경찰서장)은 절차에 의하여 무기고 관리 책임자(정·부)를 임명한다.
   나. 임명권자는 관리책임자(정・부)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1조(관리전환)

관리전환은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8장을 따른다. 다만,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의 목적과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과 및 잉여품에 대한 관리전환은 작전소요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방위 작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2. 수임군부대내의 관리전환은 수임군부대장이 승인하고, 수임군부대간의 관리전환은 육·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하며, 육·해군 및 해병대간 관리전환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초과 및 잉여품

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관리전환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감시장비 등)

① 감시장비 등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장비 보급은 각 군의 보급방침에 따라 보급한다.
2. 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따라 재산에 등록해야 한다.

② 감시장비 등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지원 시설 정비가 제한되는 품목은 육성지원예산으로 정비한다.

제7장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2호, 2017. 12. 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1호, 2018. 12.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0호, 2019. 06.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7호, 2020. 11.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5호, 2021. 12.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 2023. 01. 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수임군부대장 현황	제2조	579
2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제4조	579
3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제9조	580
4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	제9조	580
5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	제9조	580
6	지역예비군소대(분대) 편성기구도(예)	제9조	581
7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	제9조	581
8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	제9조	581
9	지역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	제12조	582
10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	제13조	582
1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	제14조	583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	제14조	586
13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	제14조	587
1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기준	제18조	588
15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	제19조	588
16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 본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 인원 및 장비 기준	제19조	589
17	특전예비군 지원자 심사기준	제19조	590
18	재복무 전역 예비군의 복무연차 적용기준	제25조	590
19	계급별 /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	제26조	591
20	예비군 무기 및 탄약 휴대기준, 예비군 저격조 조준경 보유기준	제27조	591
21	〈삭제〉		591
22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	제45조	592
2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	제27조	593
24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제27조	594

❑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599
2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601
3	특전예비군부대 편성(편성연장) 지원서		602
4	직장예비군 부대의 명칭 변경 통보서		603
5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재지 변경 통보서		604
6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		605
7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606

【별표 1】

수임군부대장 현황(제2조 관련)

구 분	수임군부대장
육 군	· 1, 2, 3, 5, 8군단장 · 17, 31, 32, 35, 36, 37, 39, 50, 51, 52, 53, 55, 56사단장
해 군 (해병대)	· 1함대사령관, 3함대사령관,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진해기지사령관 · 해병1사단장, 해병2사단장, 해병6여단장, 해병9여단장, 연평부대장

【별표 2】

예비군 지휘관리체계(제4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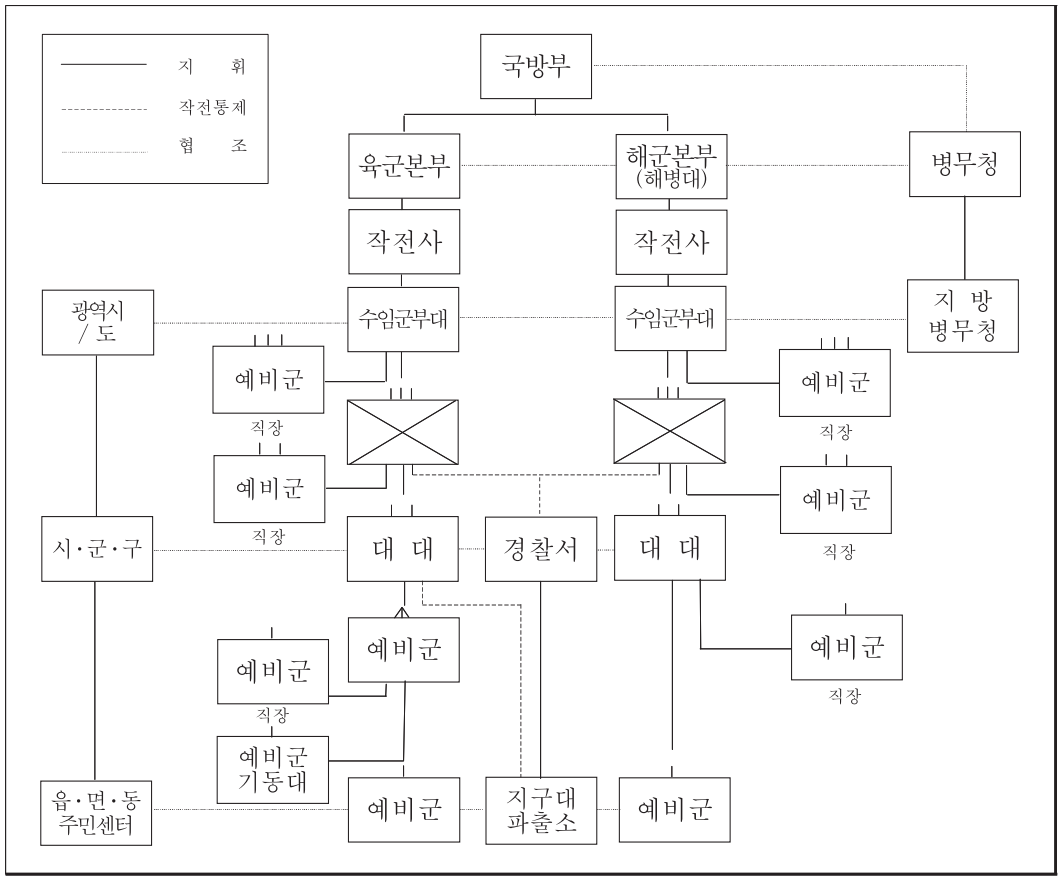

* 연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대대급 직장 예비군부대는 여단(연대)장급 지휘관이, 중대급 이하 직장예비군부대는 대대장급 지휘관(지역대장)이 지휘관리한다. 다만, 대학 직장예비군부대는 차 하위 부대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별표 3】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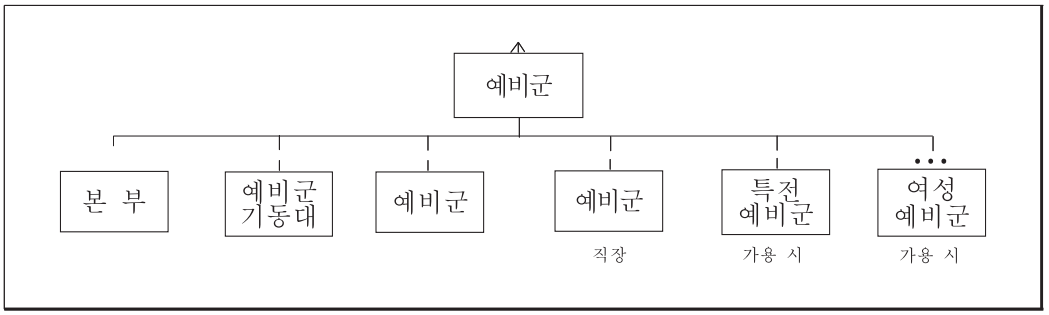

【별표 4】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제9조 관련)

구 분	대 상
평시(2/3)	· 지휘부 : 지역대장(군무원) · 정보/작전과 : 정보작전과장(군무원), 행정병(상근병) 2명 · 지원과 : 행정병(상근병)
지역예비군 동원 시 추가(4/8)	· 지휘부 : 부지역대장(예 대위) · 정보/작전과 : 통신담당관(예 중·상사), 통신병 2명 · 지원과 : 지원과장(예 중·대위), 동원장교(예 중·대위), 행정병 2명, 운전병 4명

【별표 5】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제9조 관련)

구 분		임 무
지역대장		· 위임된 사항에 대한 예비군부대 지휘 / 통제 · 예비군 자원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통제 등 · 유사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예비군 작전지휘 · 유사시 시·군·구 단위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지원
부지역대장		· 지역대장 보좌, 유고 및 부재 시 대리임무
지역대 참모	정보작전과장	· 주민신고망 운영 · 군사보안업무 · 예비군 교육훈련 · 지휘통신 운용 · 유사시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
	지원과장	· 인사관리, 군기 및 사기 유지 ·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 예비군 장비, 물자, 시설 관리 · 예비군 육성·지원업무 · 의명 동원운영계획 시행 지원

【별표 6】

지역예비군소대(분대) 편성기구도(예)(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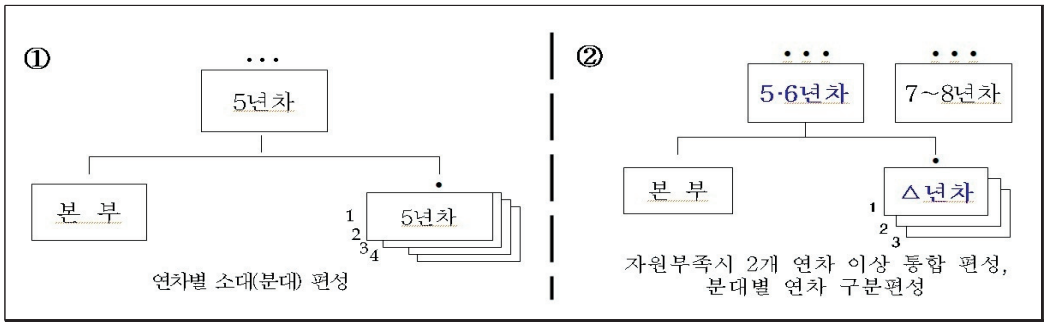

* 5년차부터 8년차까지 4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향상하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연차를 통합 편성할 수 있다.

【별표 7】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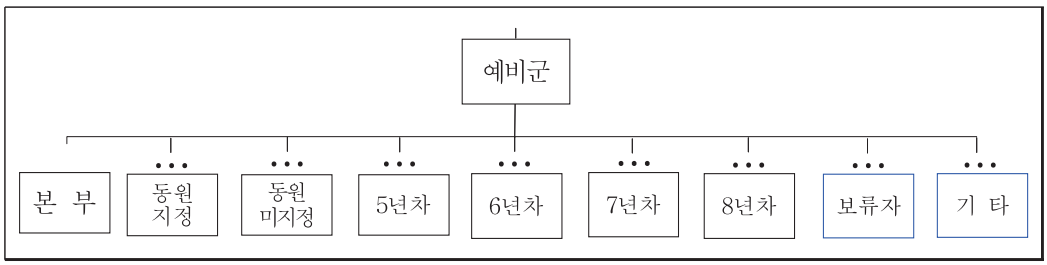

【별표 8】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제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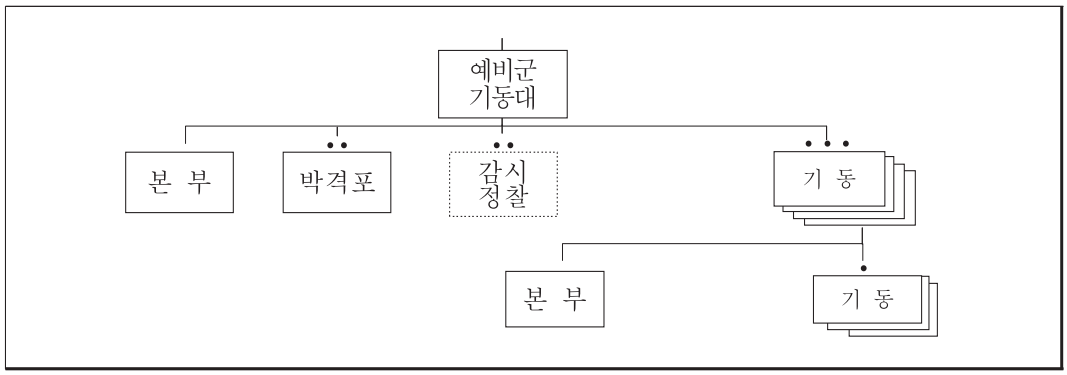

【별표 9】

지역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제12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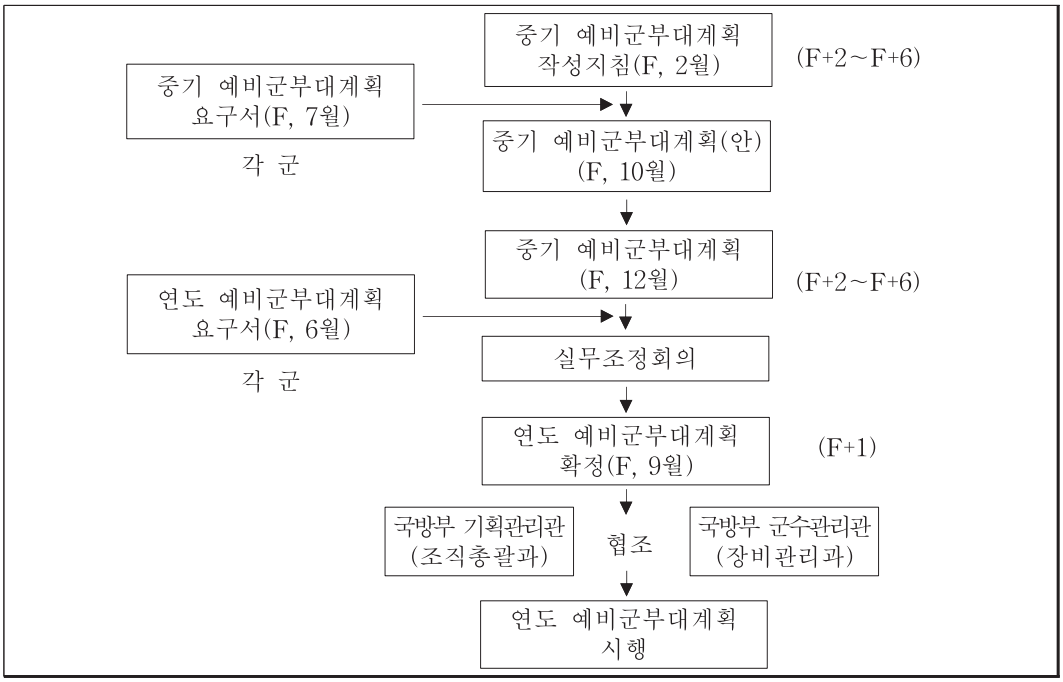

【별표 10】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제13조 관련)

제 대	분 대	소 대	중 대	대 대	연 대	여 단
자 원 규 모	9명 이상 40명 이하	41명 이상 80명 이하	81명 이상 400명 이하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7,201명 이상

* 통합예비군부대 제대(규모) 결정은 자원 수 또는 통합하는 직장의 제대(규모) 수를 병행하여 고려한다.

【별표 1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제14조 관련)

1. 여 단

가. 단일직장 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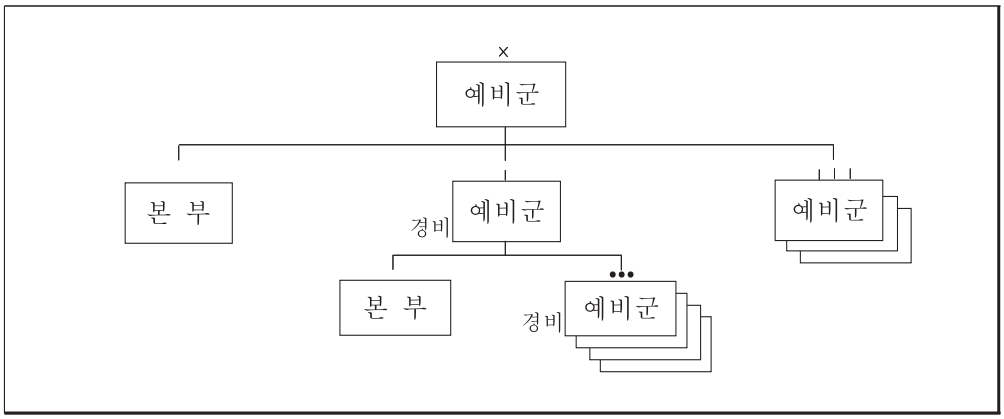

나. 복수직장 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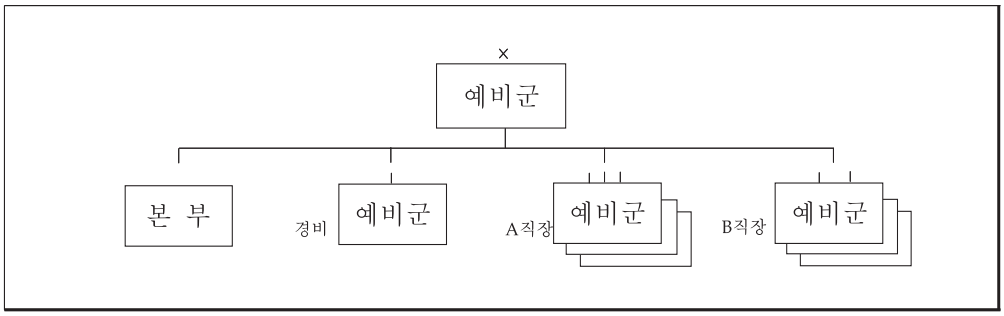

2. 연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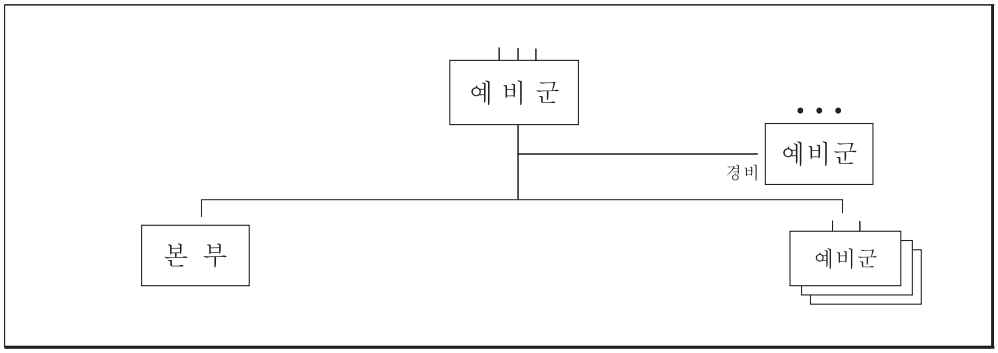

* 직장의 자원관리, 자체방어 또는 교육훈련 등 직장 실정에 따라 제1대대(제1중대, 제2중대), 제2대대(제1중대, 제2중대)로 편성

3. 대대 편성

가. 기본 편성

1) 1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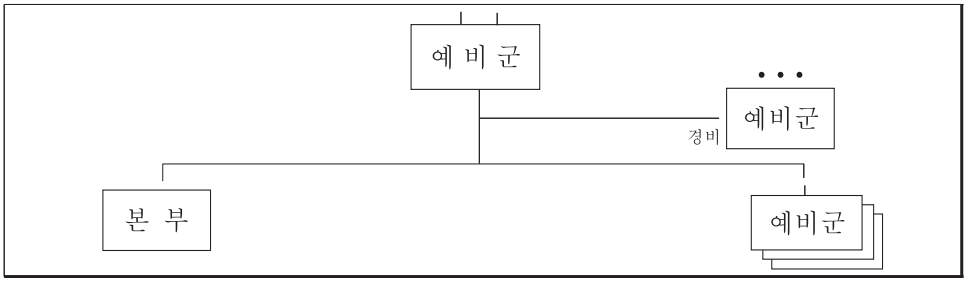

2) 2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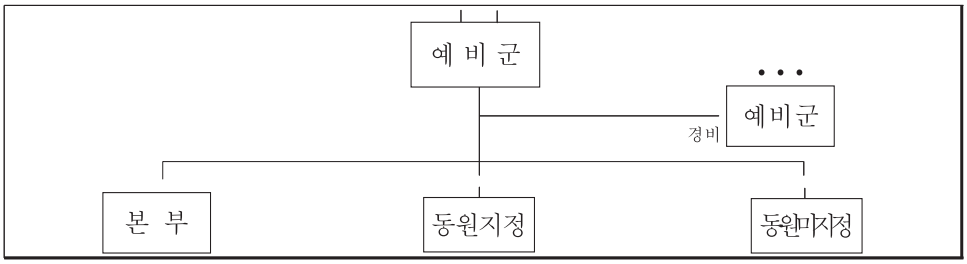

* 직장여건을 고려 직장의 장이 2개 안 중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동일계열 직장에 여러 개 중대를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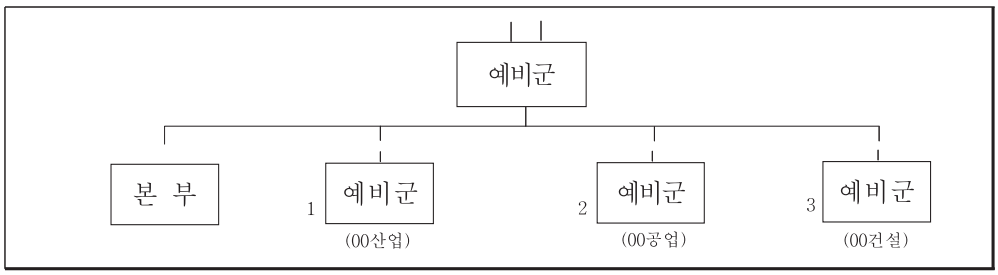

다. 동일 구역 또는 동일 건물 내에 2개 이상 직장예비군중대를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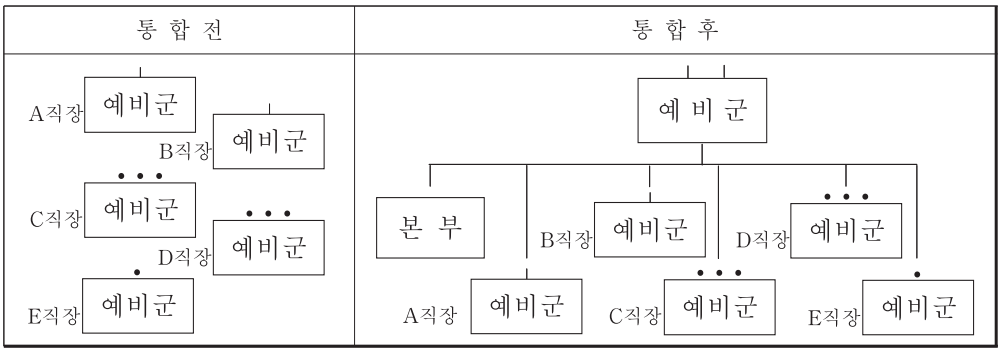

* 각 직장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할 때 C, D 직장소대와 E 직장분대를 혼합하여 혼합중대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직장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한다.

라. 동일규모의 제대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2개 제대를 지휘할 수 있는 상급제대를 편성할 수 있다.

4. 중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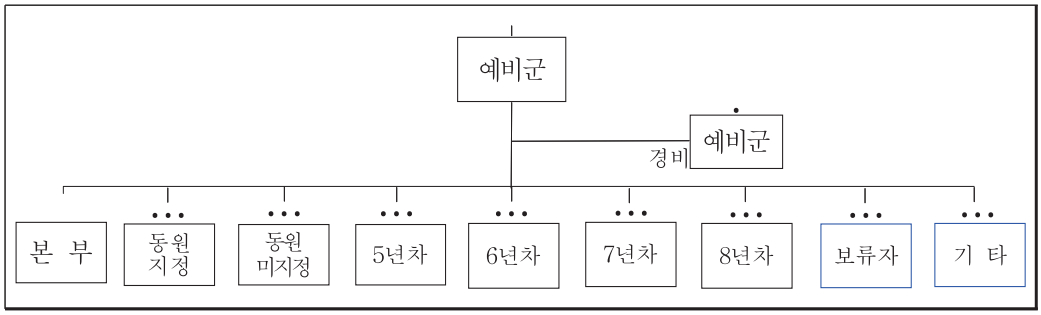

* 직장예비군 중대 편성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 기준을 준용하되, 직장별 특성을 고려 감소 편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각 군 지침에 따른다.

5. 소대(독립)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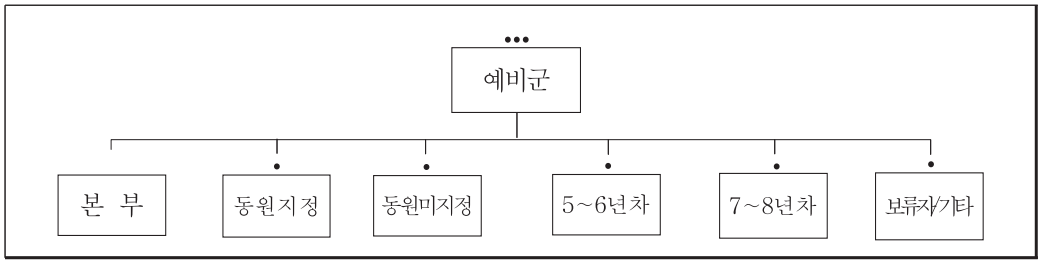

6.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부대는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제14조 관련)

1. 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

제 대		직 책	자 격	인원	직급	임명권자	임 무
여단	여단장실	보조원	병	1	사원	직장의 장	• 여단장 보좌
	자 원 관리과	과 장 사무원	중·소령 병	1 1	과장 사원		• 편성 및 자원관리 • 행정 및 운영 • 무기 및 장비관리
	방호과	과 장 사무원	중·소령 병	1 1	과장 사원		• 전시 임무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동 원 훈련과	과 장 사무원	중·소령 병	1 1	과장 사원		• 동원훈련 및 일반교육훈련
	장비과 (유사시 편성) ※평시 미편성	과 장 통신장교 사무원	중·소령 통신 소령~중사 병	1 1 6	과장 계장 사원		• 수송, 병기 및 탄약, 보급, 통신, 장비관리
연대	독 립	참 모 사무원	소령 소령~중사 병	1 1 2	과장 계장 사원		• 편성 및 자원관리 • 교육훈련 • 전시 임무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무기 및 장비관리
	예 속 통합직장	참 모 사무원	소령~중사 병	1 1	계장 사원		
대대	독 립	참 모 사무원	소령~중사 병	1 1	과장 사원		
	예 속 통합직장	참 모 사무원	소령~중사 병	1 1	계장 사원		
중대	독 립	사무원	병	1	사원		
	예 속 통합직장	사무원	병	1	사원		

2. 대학직장

제 대	직 책	자격기준	인 원	직 급	임명권자	임 무
연 대	참 모	소령~중사	1	과장/계장	직장의 장	• 편성 및 자원관리 • 교육훈련 • 전시 임무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무기 및 장비관리
	사무원	병	2	사 원		
독립대대	참 모	소령~중사	1	계 장		
	사무원	병	1	사 원		
독립중대		병	1	사 원		

3. 기 타

가. 과장, 참모요원을 전투병과로 한정했던 것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별표 1]의 예비군지휘관 선발병과와 동일한 병과로 확대한다.

나. 단일 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참모는 예속제대 전담지휘관이 겸임(여단참모 : 예속제대 대대장, 중대장, 대대참모 : 예속제대 전담중대장)

다. '94. 1. 1이후 신규 통합편성 직장제대의 본부요원 편성기준임.('93년 말 기준 근무인원은 편성기준 조정으로 인하여 인사 관리상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별표 13】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제14조 관련)

1. 종합대학교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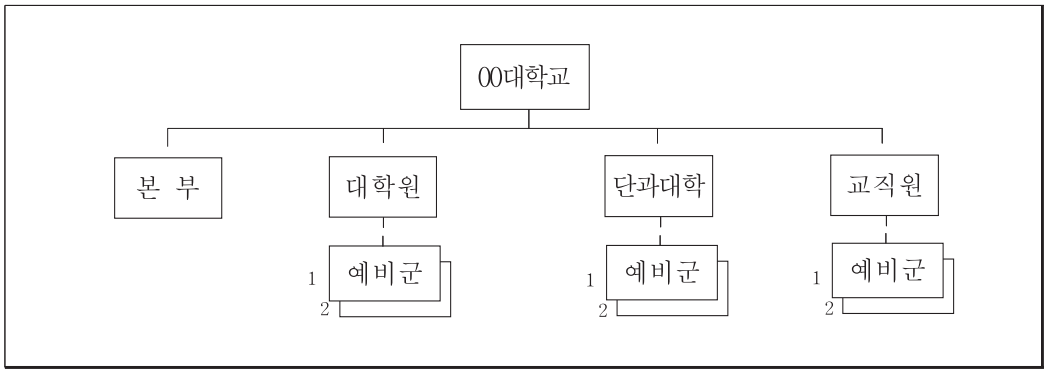

2. 인접대학 통합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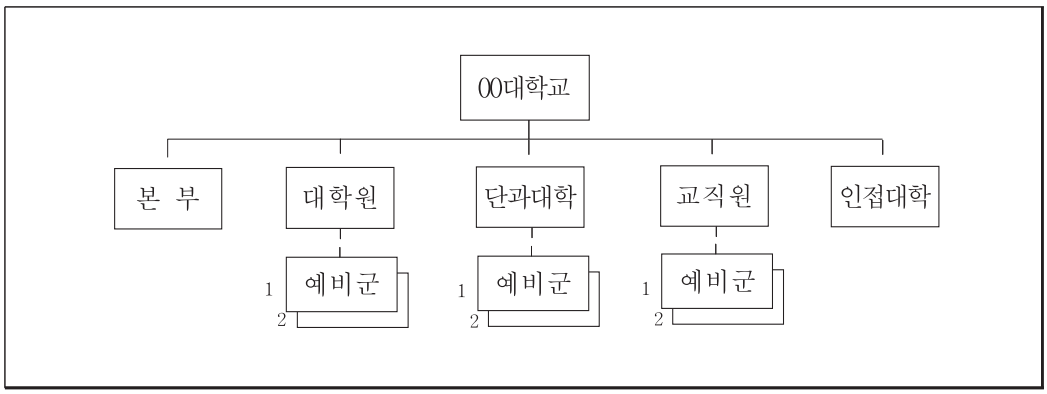

* 인접대학에 통합 편성 시는 별도의 제대로 편성한다

3. 2·3년제 대학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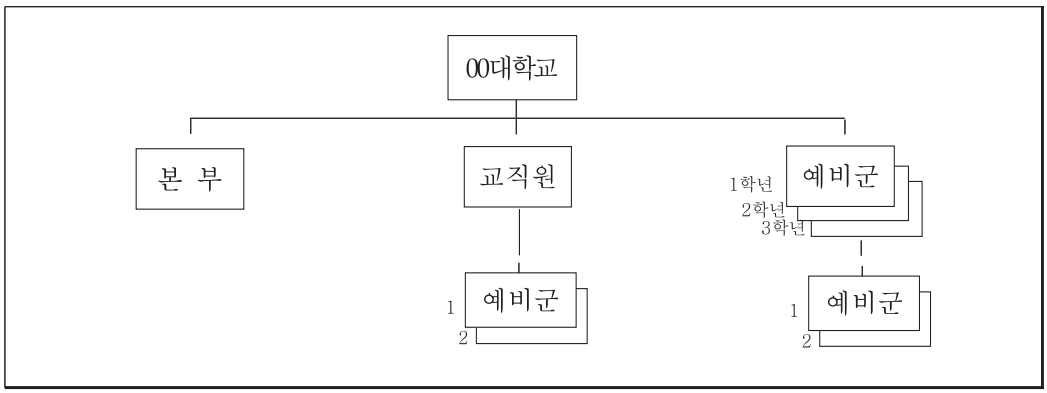

【별표 1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및 물자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내 용
편성 인원	본부	· 소대장, 부소대장, 전령(2명), 보급병 (소대장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인원 부족 시 3~4명 편성 가능 * 3명시 : 소대장, 전령, 보급병, * 4명시 : 소대장, 부소대장, 전령, 보급병
	분대	· 각 분대원은 5~10명으로 편성한다. - 의료구호분대(1~3개) - 급식지원분대(1~3개) - 기동홍보분대(1~2개) · 통제의 용이성과 임무수행을 고려하여 개인별 활동 단체 및 마을 단위로 편성한다.
장 비		· 지역예비군 동원 시 소요차량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통합방위지원 본부(직장방위협의회) 예규 등에 반영하여 운용한다.
물 자		· 여성예비군 복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을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직장)에서 지원한다. · 전투복에 비무장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직장)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장구류(탄띠, 수통, 방독면 등)는 추가 지급가능하다.

【별표 15】

특전예비군부대 지휘체계(제1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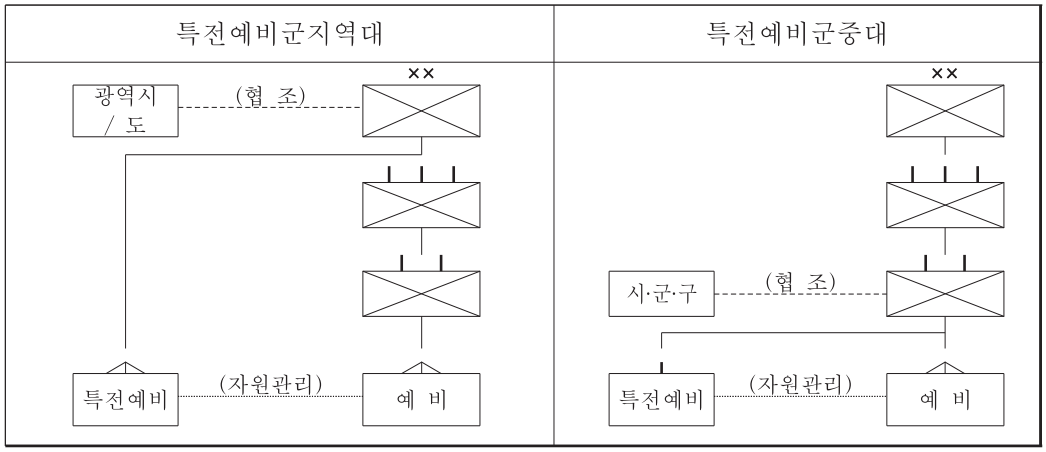

【별표 16】

특전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제19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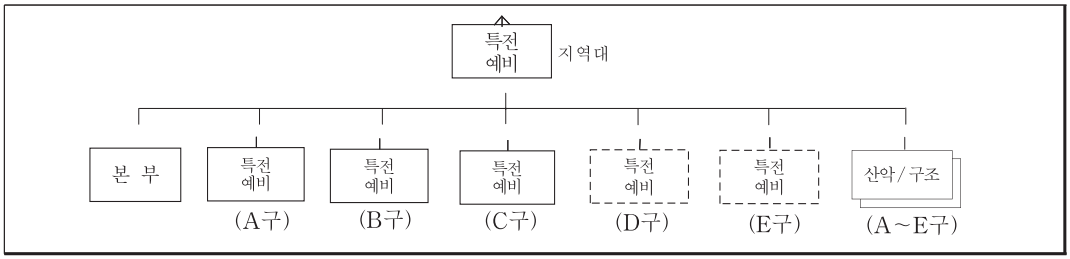

특전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

지휘부(2명)	지원반(3명)	통신반(2명)
지역대장(소령, 대위) 부지역대장(중·대위)	지원담당관(원·상사) 특전부사관 2명(중·상사)	특전부사관 2명(중·상사)

* 해당 계급 자원 부족 시에는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 가능하며, 인원 부족 시에는 3~7명으로 편성하고 3명시 지역대장, 지원담당관, 특전(통신)부사관 편성

특전예비군지역대 본부 장비 및 물자

M16A1	소형승합차	쌍안경	GPS	핸드토키	완전군장셋	방탄조끼
7정	1대(합의각서, 동원)	1개	1대	3대	7 Set	7착

* 피복은 육성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전예비군중대 인원 및 장비 기준

구 분	인 원		무기/장비	
	직 책	계 급	직책별	개인별
본 부 (2)	중 대 장	대위·중위, 원·상사	쌍안경, 핸드토키 또는 TRS	M16A1 방탄 조끼 완전 군장셋
	부중대장	상·중사		
특전반 (6)	정작담당관	상·중사	GPS	
	지원담당관(2)	중 사	·	
	특전화기부사관	중 사	M203유탄발사기	
	특전저격부사관(2)	중 사	저격수조준경(2)	
의무반 (2)	특전의무부사관(2)	중 사	구급낭(2)	
통신반 (2)	특전통신부사관(2)	중 사	핸드토키 또는 TRS(2)	

* 해당 계급 자원 부족 시에는 2단계 하위 계급까지 편성 가능하며, 인원 부족 시에는 8~12명으로 편성하고 팀장·부팀장 외 6~10명으로 편성하되 지원자 주특기 고려 특전반(2~6명), 의무반(1~2명), 통신반(1~2명)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

【별표 17】

특전예비군 지원자 심사기준(제19조 관련)

1.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부대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자
   가.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가 30 미만인자
      1) 체질량 지수 / 산출방법

구 분	표 준	과체중	비 만	중증비만
체질량지수	18.5~24.9	25~29.9	30이상	35이상

      * 체질량 지수(BMI) = 몸무게(kg) ÷ 키(m)의 제곱
        예) 몸무게 75kg이고 키가 173㎝인 지원자의 체질량 지수는 ?
        산출결과 : 75 ÷ (1.73 × 1.73) = **25.06**(과체중)

   나. 지원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원은 편성에서 제외
      1) 고지혈증 또는 심근경색 등 혈관질환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자
      2) 고/저혈압 및 심장 이상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자
      3) 기타 질병으로 인해 현재 치료중이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자
   다. 부대 임무에 적합한 주특기·자격 또는 복무 경력이 있는 자
      * 필요시 예비군 편성카드 또는 군 경력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별표 18】

재복무 전역 예비군의 복무연차 적용기준(제25조 관련)

구 분		적 용 기 준						
최초복무 신분		장 교		부 사 관		병 사		
재복무 신분		장 교	부사관	장 교	부사관	장 교	부사관	병 사
동일한 신분 재복무자		합 산	-	-	합 산	-	-	합 산
상이한 신분으로 재복무자	'11.12.31 이전입대	-	합 산		-	합 산		-
	'12.1.1. 이후입대	-	재복무 전역 후 다음해에 1년차부터 부과		-	재복무 전역 후 다음해에 1년차부터 부과		-

【별표 19】

계급별 /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제26조 관련)

구 분	하사→중사	중사→상사	소위→중위	중위→대위	대위→소령	소령→중령
최저복무기간 (현역+예비역)	하사로서 7년	중사로서 12년	소위로서 2년	중위로서 6년	대위로서 7년	소령으로서 7년
연 령	만40세 이하	만45세 이하	만40세 이하	만40세 이하	만42세 이하	만45세 이하

【별표 20】

예비군 무기 및 탄약 휴대기준(제27조 관련)

구 분	개인화기 (M16)	공 용 화 기		
		유탄발사기	M60기관총 / M16(양각대) 자동화기	60㎜박격포
지급기준	작전운용 규모 (1인 1정)	예비군기동대 : 12 예비군소대 : 1	예비군기동대 : 4	기동대 : 2
탄 약 기본 휴대량	140발	24발	800발 / 560발	20발
수류탄	개인 1발			

* 지역대장·예비군중대장(기동대장 포함), 직장예비군 중대장급이상 지휘관(대대급이상 참모 포함) : 권총, 21발
* 예비군기동대 M60기관총 부족시 M16(양각대) 자동화기로 대체한다.

예비군 저격조 조준경 보유기준

구 분	예비군기동대	예비군소대	특전예비군중대
보유기준	4	1	2
비 고	소대 1		저격부사관(2)

【별표 21】〈삭제〉

【별표 22】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제45조 관련)

1. 육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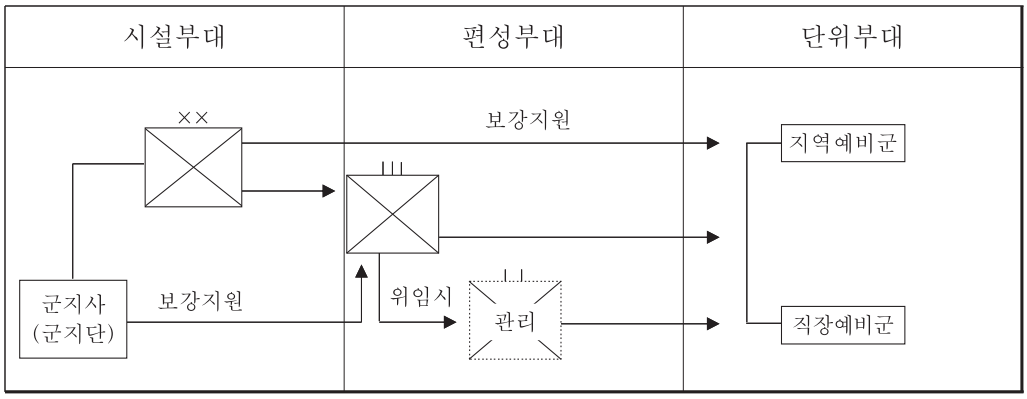

2.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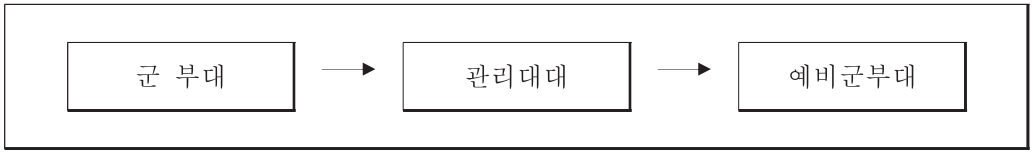

【별표 2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제27조 관련)

근 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 책임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15.12.31부 훈련대상에 포함)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국회사무처 병무청 소 속 장 소 속 장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교정직 및 기술·보건 위생 관리운영 전문 경력직 교도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 표지소 근무 요원 * 국내 및 국외 노선 왕래 국내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업체 포함)의 정비사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소속장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고용원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소속장
예비군법시행규칙 제 17조제2항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지하철 :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의미함. • 외교부 외신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소속장

【별표 24】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제27조 관련)

×: 보류, ○: 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일반 및 상시 계약 집배원)	×	×	×	×	×	우체국장
41세 이상 간 부	만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직권 처리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	×	×	×	×	비서/경호실장
국군 정보사	특수기록과 담당 (군 : 963-5526, 일반 : 02-2153-5526)	×	×	×	×	×	정보 사령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	×	×	×	소속장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인 예비군(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의 사유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	×	×	×	×	지방 보훈 (지) 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 또는 심의 의결자)	×	×	×	×	×	수임군 부대장
세관의 조사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	×	×	×	관세 청장
경찰 학교	재학 중인 자	×	×	×	×	×	학교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청원 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받는 자	×	×	×	×	×	소속장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	×	×	×	×	소속장
질병 및 심신 장애인	180일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진단서
구속 수감자	수감기간(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기간 및 가석방 기간 포함)	×	×	×	×	×	교도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자	×	×	×	×	×	지자체장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 가족 증명서 제출자	×	×	×	×	×	읍·면·동·장
여군 출신 예비군	- 임신시 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시 : 3개월 · 임신기간이 16~27주시 : 6개월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시 :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 군인, 군무원, 예비군일 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	×	×	×	×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자	- 현역에서 전환되어 보충역으로 근무 후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심신장애 1급~9급으로 전역한 간부 * 예비전력과-156(16.1.13) 공문 참고	×	×	×	×	×	직권처리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의 직원	×	×	×	×	×	소속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국정원	정보수사 요원	×	×	○ (2회)	×	×	국정 원장
민방공 경보요원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	○	×	×	×	소속장
법관 및 검사	현직판사 및 검사	×	○	×	×	×	소속장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항공사 소속(하청, 계약 포함)의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급유, 지원장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 근무자	×	×	○ (1회)	×	×	소속장
특수경비원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1회)	×	×	관할 경찰서장
각급 학교 교사	- 유치원・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기술,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 4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 교육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포함 * 교육청 소속의 6개월이상 전문상담 및 특수교육 순회 교사 * 평생 교육법 제31, 32, 33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 제외	×	○	×	×	×	소속장
대학 교수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 * 그외에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 제외 * 학문연구 전담교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소속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각급 학교 학생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학생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 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고등교육법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국방대학교 포함 (예비전력과-4559)참고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 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	×	○	×	×	×	소속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국립해양 조사원 및 해양조사 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 제작을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해상 근무자	○	○	×	×	×	소속장
전파 감시직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요원	○	○	×	×	×	소속장
국가안보 통신요원	중앙 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	○ (2회)	×	×	소속장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	○ (2회)	×	×	소속장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	○ (1회)	×	×	
철도 특별 사법경찰관	철도 특별사법 경찰관	×	×	○ (2회)	×	×	소속장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중인자	×	○	×	×	×	소속장
광 부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 종사자 (간접부요원 제외)	○	○	×	×	×	소속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재난) 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기본 훈련	작계 훈련	동미참 훈련	예비 시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사령원) : 운전, 신호, 전기	×	×	○ (2회)	×	×	소속장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	○ (2회)	×	×	
	차장, 검수원	×	×	○ (1회)	×	×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재직중인 교수(부/조교수 전임강사 포함) 및 교사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	소속장
직업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과정 훈련생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	○	×	×	×	소속장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직 및 기술직,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직 및 기술직, 국방기술 품질원의 연구직 및 기술직	○	○	×	×	×	소속장
선박, 어선 승선자	선박 및 어선 승선요원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발행 - 25톤이상 : 승무경력증명서 - 25톤이하 :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	○	×	×	×	지방해양 수산청장, 지방해양 경찰청장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승무원 및 정비사	○	○	×	×	×	소속장
	산림청 예하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사	×	○	×	×	×	
도로공사 근무요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종합상황실) 근무요원	○	○	×	×	×	소속장

【별지 제1호 서식】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

<table>
<tr><td>문서번호</td><td colspan="2">접수일</td><td>처리기간 7일</td></tr>
<tr><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생년월일</td></tr>
<tr><td colspan="4">주 소</td></tr>
<tr><td colspan="4">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 / 본인</td></tr>
<tr><td>성 별
남 / 여</td><td colspan="2">직업</td><td>직장명</td></tr>
<tr><td rowspan="3">연락처</td><td colspan="3">집전화</td></tr>
<tr><td colspan="3">휴대전화</td></tr>
<tr><td colspan="3">전자우편주소</td></tr>
<tr><td rowspan="2">병역사항</td><td>역 종</td><td>병 과</td><td>계 급</td></tr>
<tr><td>군 번</td><td>입영 년월일</td><td>전역 년월일</td></tr>
</table>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군으로 편입(복무연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니 편입(복무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지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재〉

위 사람의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선 서 문

나는 예비군에 편입하면서 다음 사항을 엄수할 것을 선서한다.

1. 나는 지역(또는 직장)의 번영과 안전을 생각하고, 조국과 민족에 충성을 다한다.
2. 나는 영예로운 지역(또는 직장)의 방위임무를 지닌 예비군의 일원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교육훈련을 받는다.
3. 나는 「예비군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예비군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
4. 나는 지급된 무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며 보존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
5. 나는 적·반국가단체·무장공비 또는 간첩 등에 의하여 지역(또는 직장)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지역(또는 직장)이 공습을 받았음을 알게 된 때 또는 이를 전달받은 때에는 즉각 출동하고 예비군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소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읍/면/동)	중대	소대(분대)
계급		군번		
성명		(외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앞쪽)

문서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의( ) / 본인

성 별 남 / 여	직 업	직장명

연락처	집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탈퇴사유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예비군의 탈퇴를 희망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지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재>

위 사람의 지원예비군 탈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특전예비군부대 편성(편성연장) 지원서

<table>
<tr><td colspan="7">특전예비군부대 편성(편성연장) 지원서</td><td>처 리 기 간
7일</td></tr>
<tr><td rowspan="5">지원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5">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td></tr>
<tr><td>BMI
(체질량 지수)</td><td colspan="5"></td></tr>
<tr><td>신 장</td><td>cm</td><td>체 중</td><td>kg</td><td>건강상태</td><td></td></tr>
<tr><td rowspan="3">병역사항</td><td>역 종</td><td></td><td>병과 / 특기</td><td></td><td>계 급</td><td></td></tr>
<tr><td>군 번</td><td></td><td>입 영
년월일</td><td></td><td>전 역
년월일</td><td></td></tr>
<tr><td>현역시
근무제대</td><td colspan="2">□ 707대대 □ 정찰대 □ 기 타</td><td colspan="2">특전사
자격증 과정</td><td></td></tr>
<tr><td colspan="2">성 별</td><td>남 / 여</td><td>세대주 성명 및 관계</td><td colspan="2">의(　　)</td></tr>
<tr><td colspan="2">직 업</td><td></td><td>직장명</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추 가 훈 련
동 의 여 부</td><td colspan="5">□ 동의(6H + 1박2일)　　□ 부 동 의</td></tr>
<tr><td colspan="7">예비군법 제4조(지원) 및 제5조(편성)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전예비군에 지원하오니 편성(편성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직장예비군 부대의 명칭 변경 통보서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 . .

수 신 : 발신 ○○ 직장의 장 ㊞

참 조 :

제 목 : 직장예비군 부대의 명칭 변경 통보

1. 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 부대명칭 변경

변경전 직장명	변경후 직장명	소재지	부대 규모	변경 일자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재지 변경 통보서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 . .

수 신 : 발신 ○○ 직장의 장 ㊞

참 조 :

제 목 :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재지변경 통보

1. 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소재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 부대소재지 변경

직장명	변경전 소재지	변경후 소재지	부대 규모	변경 일자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

〔0000-00호〕

1. 고발인

대표자	부대장	주 소	
전 화	(사무실)	(휴대폰)	

2. 피고발인

성 명		주민번호(앞자리)			
주 소	(현거주지)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예비군 소속부대		예비역 계급		군 번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예비군법 제15조 위반죄로 고발하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범 죄 명		적용법조			
훈련기간		훈련장소			
소집통지서 전달일시		전 달 자		수 령 자	
범죄사실요약					

5. 고발이유

6. 증거자료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 예비군편성카드 사본, 기타 증거자료

7. 관련 사건의 초범 또는 재범 여부 초범 □ 재범 □

년 월 일

고발인 부대장 (관인)

○○경찰서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제0000부대장 귀하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예비군 00소대장·부중대장 등으로 복무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역 종</td><td>계 급</td><td colspan="2"></td><td>군 별</td><td></td></tr>
<tr><td>군 번</td><td colspan="2"></td><td>병과(주특기)</td><td></td></tr>
<tr><td rowspan="3">연락처</td><td>자 택</td><td></td><td>직 업</td><td colspan="2"></td></tr>
<tr><td>직 장</td><td></td><td rowspan="2">직장명</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H P</td><td></td></tr>
<tr><td>E-mail</td><td colspan="2"></td><td>후 순 위
승 인 일</td><td colspan="2"></td></tr>
</table>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추천자 성명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개정 국방부 훈령 제2139호(2018. 03. 05.)
개정 국방부 훈령 제2240호(2018. 12. 28.)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21호(2019. 09. 24.)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96호(2020.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641호(2022. 03.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2684호(2022. 07. 07.)
개정 국방부 훈령 제2765호(2023. 01. 20.)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6장 제2절과 「예비군법」 제6조에 명시된 예비군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군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 교육훈련”이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한다.
2. “동원예비군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 3일 실시하는 동원훈련과 연차이내 자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말한다. 이 중 동미참훈련은 2박 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된다.
3. “지역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한다.
4. “간부교육”이란 예비군지휘관(자)과 동원실무자 등 예비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부대교육 및 학교교육을 말한다.
5.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기”란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일정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7.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 부대장을 말한다.

8. “훈련일정 자율선택”이란 예비군이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앱)’에 공시된 훈련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9. “휴일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10. “전국단위훈련”이란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11. “보충훈련”이란 예비군에게 최초 부과되는 훈련인 1차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2차 및 3차 훈련이다.
12. “위임훈련”이란 훈련시행의 권한을 예하부대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13. “연도 이월훈련”이란 해당 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훈련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부과되는 훈련을 말한다. (이하 “이월훈련”이라고 한다.)
14. “예비군자원관리부대”(이하 “자원관리부대”라 한다.)란 통상 수임군부대의 예하부대로서 예비군을 관리하는 대대급 부대이다.
15. “소집부대”란 병력동원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
16. “소집훈련”이란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군(軍) 부대, 훈련장, 작계지역 등)에 소집되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7. “원격교육”이란 예비군이 훈련장소에 입영 및 소집되지 않고, 인터넷 등 여러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원격성을 전제로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18. “비상근예비군”이란 예비군법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의거,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소집하는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 소집하는 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예비군 교육훈련(이하 “예비군훈련”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련 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예비군훈련 목적 및 중점

제4조(예비군훈련의 목적)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 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제5조(예비군훈련의 중점) 예비군훈련은 신분과 임무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1. 신분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2. 임무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중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동원예비군훈련은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를 숙달시키고, 병과 및 주특기별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나.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전투기술 숙달 및 동원태세 확립과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3. 간부교육은 예비군에 대한 전투지휘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 그리고 직책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예비군훈련 체계 및 임무

제6조(예비군훈련 체계) 예비군훈련의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훈련은 별표 1의 체계도에 의하여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시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중간제대 지휘관은 시행에 대한 지휘·감독, 조정·통제, 평가 등을 실시하며, 간부교육 중 학교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통제하여 실시한다.
2. 예비군훈련의 관련 문서는 국방정책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각급 제대별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규칙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각 관의 임무) 각급 제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은 예비군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작성·하달하며, 그 시행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등을 실시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기초로 각 군 규정 또는 지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그 시행에 대한 조정, 통제, 평가 등을 실시한다.
3. 작전사령관은 중간 지휘관리 제대의 장으로서 수임군부대의 예비군훈련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 평가 한다.
4.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예비군훈련 규정 또는 지시에 기초하여 예비군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담당부대에 대한 훈련지원과 예비군훈련에 관한 업무를 조정, 통제, 감독, 평가 등을 실시한다.
5.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기초로 부대별 임무와 여건을 고려 예하부대 훈련의 조정·통제·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부대훈련지시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제4장 예비군훈련 지침

제1절 기본지침

제8조(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대상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2.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6조 및 「병역법」 제49조에 따른 훈련 기간에 실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 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 시간					160 시간
병	1~4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 시간 (132 시간)
	5~6 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 시간
	7 ~ 8 년차			미이수 훈련				160 시간
간부	1-6 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 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 시간
	7년차 ~ 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 시간

3.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한다.
   가.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
   나. '11. 12. 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
4.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한다.

제9조(훈련시기) 예비군훈련은 부대여건과 훈련 대상을 고려하여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공직 선거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10조(소집방법)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지정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른 전자송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을 제외한 훈련소집은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2. 동미참훈련, 예비역간부 비상근 예비군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모바일 송달,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 제6조의 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한다.
3. 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 「예비군법」 제6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통보하여 소집한다.

4. 동원예비군의 불시동원훈련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병무청 및 각 군에서 구체화하여 시행한다.
5.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미참훈련(4일)과 기본훈련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의 일정은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가. 자원관리부대장은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한다.
   나.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공시하여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 전부터(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라.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무단 불참한 예비군은 제18조 제3호에 의해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마. 예비군이 훈련 부과이전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6. 모바일 송달
   가. 예비군지휘관(자)은 훈련소집일 16일전까지(송달일 포함) 모바일 송달을 실시한다.
   나. 예비군지휘관(자)은 예비군의 모바일 훈련소집통지서 수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7일간의 송달 기간을 준수한다.
   다. 모바일 송달 이후 훈련소집통지서를 미수신한 인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등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발송한다.
   라. 모바일 송달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7. 훈련 소집통지 방법
   가. 훈련 차수별 소집통지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1차 및 2차 훈련 소집통지 시 방문 통보가 용이하거나 우편 소집통지 시 수취불능인 경우에는 방문 통보가 가능하며, 고발과 연계된 3차 훈련의 소집통지서는 모바일 송달, 등기, 방문 통보 등 고발의 입증이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전달한다.

1차 및 2차 훈련	3차 훈련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FAX, 모바일 송달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모바일 송달

   나. 훈련소집일 기준 소집통지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신청 : (신청일 포함)훈련소집 23일 전까지
      2) 모바일 송달 : (송달일 포함)훈련소집 16일 전까지

3)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 (전달일 미포함)훈련소집 7일 전까지

가) FAX에 의한 통지는 예비군이 소집통지서를 수령 후 수령증을 FAX로 송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적용 예시는 별표 3을 참고한다.

다. 예비군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한 경우 예비군부대는 추가 홍보활동(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병행한다.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수신동의 결과를 유지한다.

라. 통지서 전달수단 및 훈련 행정정리는 개인의 훈련차수에 맞게 적용한다.

마. 예비군 지휘관(자)은 소집일 7일 전까지(전달일 미포함) 수령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바. 모바일 송달로 소집통지하였을 경우 소집일 16일 전(송달일 포함)까지 수령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송달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FAX 등의 수단으로 재통지한다.

제11조(훈련방법) 예비군훈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평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부합된 훈련을 실시하되, 세부과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정하여 시행한다.
2. 성과위주 훈련

가. 실전적인 예비군훈련과 훈련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 훈련 및 과학화 장비 등을 활용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부대별 여건을 고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평가방법 및 인센티브 부여는 각 군에 위임하며, 일일단위 훈련의 경우 16:00 이전 퇴소를 지양한다.

3. 예비군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

<table>
<tr><th>구 분</th><th>입소시간</th><th>퇴소시간</th></tr>
<tr><td>동원훈련(2박3일)</td><td rowspan="2">· 육군, 제주도지역 : 12:00
· 공군, 해군 : 13:00</td><td rowspan="2">17:00</td></tr>
<tr><td>동미참훈련(2박3일)</td></tr>
<tr><td>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1일)</td><td>09:00</td><td>18:00</td></tr>
<tr><td>작계훈련</td><td colspan="2">시행부대 통제(6H 기준)</td></tr>
</table>

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이상은 1~2H 조기에 퇴소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한다.

나.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09:00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의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영훈련을 제외한 훈련에 대해 해당 부대의 예비군지휘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훈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직장 예비군부대가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임받고자 할 때는 위임심사 기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연도 훈련 개시 전 수임군부대장에 의해 훈련준비사열을 실시하여 훈련 위임여부를 결정한다.
   나. 직장 예비군부대 위임교육 심사기준은 우수한 교관 및 조교 확보 여부, 교육장비 및 교보재 구비여부, 해 직장부대 훈련대상 인원을 수용 가능한 훈련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수임군부대장이 결정한다.
   다. 위임직장부대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임군부대장의 승인 후에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1) 위임직장부대 훈련은 직장예비군 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 을 실시하며, 과제별 교관을 자체 양성하여 활용한다.
      2) 사격훈련은 위임직장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실시하되, 사 격장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하며 수임군부대는 훈련지도및 통제를 강화한다.
      3) 동미참훈련의 주특기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 통합 실시하되, 훈련여건상 자원관리부대에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병 특기에 통합하여 직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예비군훈련은 소집훈련을 기본으로 하며,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격교육 시행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원격교육을 시행할 경우, 훈련 과목 및 시간은 해당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절 유형별 훈련 지침

제12조(공통과목) 안보교육과 개인화기 사격은 공통과목으로 전 부대가 실시하되, 세부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안보교육은 투철한 국가 안보관과 대적관을 확립하고, 예비군의역할과 사명감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 강사 교육과 지휘관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과학화예비군훈련장의 안보교육은 각 군 참모총장이 세부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가. 전문 강사 교육은 국방부에서 선정한 단체의 강사를 활용하며,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에 의해 지원하고, 전문 강사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지휘관이 교육한다. 국방부 표준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하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 또한 전문 강사 안보교육 시 훈련부대 관계관이 전문 강사의 강의 내용이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지 않는지 교육장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나. 지휘관 교육은 국방부 통제 하 각 군 지침에 따라 부대 및 지 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1) 교관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영관장교)의 직접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교관을 운용하며 사전 연구 강의를 실시한다.
2) 교육내용 : 부대소개, 작전계획 및 예비군임무, 부대별지 역전사, 훈련 간 유의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각 군 지침에 따른다.

다. 교육 자료는 군에서 제작, 배포한 교재를 활용하되,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시사자료 등을 활용하며 내용의 적합성은 각 군 및 국직부대장 책임 하에 검토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라. 안보강사 단체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마. 단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50%이상 편성하여 공정성을 유지한다.

바. 안보전문강사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화기 사격은 연 1회 사격함을 고려하여 수준유지를 위한 기초사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사격발수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동원훈련(동미참입영훈련 포함) : 연습사격 5발, 기록사격 5발 등 2회 10발을 사격한다.
2)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 5발 1회 사격한다.
3) 권총은 5발 1회 사격하며, 소총사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격을 실시한다.
4) 저격수요원 사격은 실거리사격 원칙 하 40발을 사격하되, 영점 10발(3발 2회, 4발 1회), 연습 10발(1회), 측정 20발 (10발 2회)로 구분하여 사격한다. 다만, 실거리사격장 제한 시 예비군사격장에서 축소 사격을 실시한다.
5) 개인화기 사격의 합격판단기준은 5㎝ 원안에 3발 이상 탄착군 형성 시, 권총 및 저격수사격은 60% 이상이 표적에 명중 시 합격처리 한다.
6) 사격자세는 엎드려쏴 또는 입사호 자세로 하되, 사격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또는 훈련담당부대장이 결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권총사격은 서서쏴 사격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나. 사격 간 총기운용 및 탄약불출은 다음과 같다.
1) 동원훈련(동미참입영훈련 포함) 시는 개인에게 지급된 총기를 이용하여 사격하고, 동미참훈련과 기본훈련 시는 별도의 사격용 총기를 운용하되, 총기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10회 이내로 이용한 후 교체하여 사격한다.
2) 탄약불출은 중앙통제관 통제하에 좌·우선통제관 (탄약불출전담관)이 탄약분배대에서 탄알(집) 수령 후 사수통제원에게 전달하며, 사수통제원은 중앙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사수에게 탄알(집)을 인계하는 절차로 한다.

다. 통제관 및 사수통제원 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사격훈련 간 사격통제관은 중앙통제관 1명과 좌·우선 통제관 각 1

명씩 운용한다.

2) 사수통제원은 사로별 1:1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사수통제원은 현역간부 또는 현역병으로 편성하되, 동원훈련 시에는 동원된 간부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현역간부 또는 현역병 편성이 제한되는 부대는 훈련부대장 판단 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편성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사격장은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2) 사격 간 청각보호장비(귀마개 등)를 착용시켜 예비군의 청각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사격장에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제한 시 응급환자 수송용차량을 대기시킨다.

4) 사격 전·후에는 반드시 약실검사를 통해, 잔탄 및 이물질유무를 확인한다.

5) 사격 시 군의관, 응급구조사(의무부대 부사관), 예비역군의장교,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 중에서 활용 가능한 자를 배치하여 운용한다. 다만, 상기 인원 활용이 제한될 시 응급처치능력이 있는 인원(안전관리과정 등의 교육을 받은 예비군지휘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6) 그 밖의 예비군사격장 관련 안전대책은 부대별 훈련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또는 훈련담당 부대장 책임 하세부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제13조(동원예비군훈련) 동원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동원훈련

가. 동원훈련은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의 증·창설부대 동원지 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전시 완편 하 건제 유지훈련을 실시한다.(다만, 해병 6여단 및 연평부대는 부대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1) 장교 및 부사관 : 예비군 복무 1~6년차 중 동원지정자

2) 병 : 예비군 복무 1~4년차 중 동원지정자

3) 위 1), 2)의 대상자 중 방침일부보류 대상자는 방침보류 직종에 따른 훈련유형 및 시간을 적용한다.

나.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다. 개인훈련과 직책수행훈련은 특기 또는 직책별로 학급을 편 성하여 실시하고, 작계시행훈련 등은 기간편성요원과 전시전 환요원, 동원예비군을 통합하여 부대단위 건제유지 훈련을실시한다.

1) 대대~전방군단, 함대사·비행단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해·공군은 해작사·공작사에서 전비태세검열 또는 이와 준하는 방법으로 훈련통제 및 평가를 실시토록 각 군에서 세부지침을 정립하여 시행한다.

2) 기간편성부대 및 작전지속지원부대는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중대단위로 훈련규모를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동원훈련은 전시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 동원훈련과 불시동원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불시 동원훈련은 장성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마. 훈련은 통제 위주에서 자율 참여형 동원훈련으로 분·소대 단위 건제 유지 과업을 부여한 훈련을 실시하며,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한 훈련기강 확립 방안 및 현장지도, 평가, 준비사열 등은 각 군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

1) 동원보충대대 전방전개 훈련은 전시 부대창설절차 숙달 및 작계실효성 검증과 상급부대 주관 하 사단급 전투력 복원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2) 훈련시기와 대상은 각 군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사. 전시전환요원 훈련

1) 증·창설부대에 전시전환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에 참가한다.
2) 전시전환요원 소속부대장은 소집부대장의 요청 시 전환요원을훈련에 참가 시킬 책임이 있으며, 전환요원이 변경될 시 소집부대에 즉시 명단을 통보한다.
3) 소집부대장은 훈련 2개월 전에 전시전환요원 소속부대장에게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전시전환요원 명령 발행부대에 파견 명령을 의뢰한다.
4) 전시전환 되는 요원은 전환되는 부대의 동원훈련 시 전시직책에 따라 훈련 1일 전 12:00까지 도착하여 훈련을 준비한다.
5) 훈련 대상자는 불참 시 징계처리토록 각 군 규정에 반영하여 통제를 강화한다.

아. 동원훈련 미 참가자 입영훈련

1) 동원훈련 미 참가자는 입영훈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군은 입영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병무청과 협조하여 시행한다.
3) 병무청은 입영훈련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

자. 국직부대 동원훈련

1) 국직부대장은 훈련장을 관리하는 부대가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훈련일정을 협조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한다.
2) 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국직부대장에게 있으며, 훈련장을지원하는 군은 급식, 예산, 교보재, 교관지원 등의 훈련지원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국직부대 동원훈련은 매년 지정부대에서 시범식 교육을 실시한다.
4) 국직부대는 동원훈련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동원기획관실)로보고한다.

차. 불시 동원훈련

1) 상급부대 통제 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불시에 실시한다.
2) 훈련단위별 소집권자 : 군단급 이상 단위(국방부 장관), 사단단위(참모총장), 연대단위(군단장급 지휘관), 대대단위(사·여단장급 지휘관)
3) 훈련종류 : 국방부 통제훈련(연합연습, 충무훈련), 합참 및 각 군 통제훈

련 시 불시 동원훈련

카. 쌍룡훈련은 육군에 위임하여 실시한다.

타. 병력동원지원부대 훈련

1)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지방병무청의 지원을 받아 2박 3일 입영훈련을 실시한다.

2) 훈련에 대한 세부 계획은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한다.

파. 지휘서신 발송

1) 동원예비군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자에 대한 지휘서신은 군사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수신율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메일(E-mail)주소가 확보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 우편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

2) 대상별 지휘서신을 아래와 같이 발송한다.

구 분	1차	2차	3차	수 시
시 기	연초 동원지정자 소집명부 수령 후(1월중)	동원훈련실시 1개월 전	동원훈련 종료 후	대체지정 시
대 상	동원 지정된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	동원훈련 이수자	대체지정 자

3) 2차 지휘서신 발송 시 소집부대장은 동원훈련 비 대상자에 대한 발송 방지를 위해 지방 병무청에서 통보하는 동원훈련 소집통지자 명부를 확인, 지휘서신을 발송해야 한다.

하. 학생예비군 동원보충대대훈련

1) 통합수송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입소는 각 군에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통합수송(입·퇴소)은 각 군 책임 하 시행하며, 개별 입소자는교통비를 지급한다.

3) 중식은 부대여건에 따라 도시락, 부대급식 등으로 지원한다.

2. 동미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1~4년차 동원 미지정 병(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1~6년차 동원 미지정 간부(하사 이상),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군 현역병으로 근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후 소집해제된 자와 동일하게 훈련을 부과한다.

나. 훈련시기는 대체지정자의 동원훈련 보장을 위하여 지역 내 자원의 주 배정부대 동원훈련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되 자원 과다지역은 훈련주기를 고려하

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

다. 훈련시간은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 실시하되, 각 군은 대상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동원미지정자는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하여 전시 기본임무 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히 실시하고 기타과목 및 과제는 수임군부대장이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시행한다. 다만, 군종장교의 경우 사격훈련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책수행훈련으로 대체한다.

마. 신분별 훈련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

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 및 특기별 전투지휘 능력과 전술적 운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정하여 실습위주훈련을 실시한다.

나)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 단위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해군 및 해병대 간부 동미참훈련은 수임군부대에서 2개월 전 훈련부대로 최초 훈련대상을 통보하고 2주 전 최종 훈련대상을 상호 확인하며 훈련담당부대는 훈련 후 1주일 이내 수임군부대로 훈련결과를 통보한다.

다) 수임군부대장은 공군 동미참훈련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여 매년 1월 초까지 공군 훈련담당부대(공군 교육사령부 제27예비단)로 통보한다.

2) 육군 및 해군 병

가) 훈련장 수용능력, 가용 교관 및 조교, 통제 능력 등을 고려 하여 학급을 편성하되, 소수인원 병과는 보병에 통합훈련이 가능하다.

나) 병과 훈련은 병과부대로 입소시켜 훈련하거나 훈련시설 및소집여건 제한 시는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고, 병과부대에서 교관조를 지원한다.

제14조(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기본훈련은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및 사격과 기타과제(수임군부대장 판단)를 실시하되, 학생 보류자(대학생)는 전시임무에 부합된 안보교육, 사격, 전술훈련과제 위주로 실시한다.
2. 작계훈련은 지역방위작전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한다.

가. 수임군부대장(작전통제부대장) 책임 하에 5~6년차를 대상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각 6시간씩 작계지역에서 실시한다.

나. 작전통제부대장 통제 하 실시하는 훈련은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의 배양을 위해 주요 부대훈련(동맹연습, 지상협동훈련, 호국·충무·화랑훈련, 연합연습, 전술훈련 평가, 지휘검열등)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포함한 전 작전요소(민·군·경·예비군)를 통합하여 작전 계획에 기초한 훈련을 작 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실시하며 대항군 운용, 상황 부 여 등 실전적 훈련을 실시한다.

1) 자원관리부대가 아닌 타부대로부터 작전통제를 받는 예비군부대의 훈련은 최소 훈련 1개월 전까지 훈련 시기 및 참가규모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작전통제부대장 또는 상급부대 통제훈련 시 지휘통제 가능 범위 내에서 훈련규모를 편성한다.

다. 예비군중대장 위임훈련은 훈련성과와 통제능력을 고려하여 작전통제부대장 통제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예비군소대는 1일 1~2개 소대규모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과다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역단위로 행정관서와 협조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극복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작계훈련은 작계지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계지역 훈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군 통제 하 훈련장소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마. 무기수송을 위한 차량계약 및 수송은 각 수임군부대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도난 및 피탈방지를 위해 호송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바. 수임군부대장은 무기가 불필요한 진지공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별 무기를 지급하여 훈련한다.

사.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수임군부대장은 불시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을 소집한다.

아. 평시 작전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군총장 및 작전사령관 책임 하에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해안경계, 내륙 취약지 수색정찰 등으로 작계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3. 감시정찰반이 편성된 예비군부대는 각 군 통제 하에 훈련과제를 편성하여 숙달한다.

제15조(간부교육) 간부교육은 대상 및 방법에 따라 부대교육과 학교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부대교육은 동원실무자, 예비군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 소대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교육, 수시교육, 기회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소집교육은 직책에 따라 직무교육반, 소대장반, 중대장반, 대대장반 등으로 학급을 편성하여 군단장급 이하 부대장의 통제 하에 훈련개시 전에 실시한다.

나. 수시 및 기회교육은 각급제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학교교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실시한다.

가. 부임교육은 신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원 및 예비군업무, 예비군 훈련지도 및 지휘기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나. 보수교육은 예비군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3년,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4년 주기로 교육을 편성하고,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 진급자교육은 예비역 중 진급선발자를 대상으로 계급에 상응한 임무 수행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를 따른다.

1) 진급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해 연도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동일 연도에 훈련과 진급자교육을 모두 받은 경우와 해당 연도차(현역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 예비역 간부가 진급자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라. 직무교육은 현역간부 및 예비군 지휘관, 행정담당군무원을 대상으 로 동원 및 예비군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수행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 학교기관 및 타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16조(기타훈련) 기타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지휘요원훈련

가. 지휘요원 소집교육은 전·후반기 구분하여 작계훈련 전에 실시한다.

나. 지역대 참모, 부중대장 및 소대장은 임명시기와 상관없이 연간 20시간(전·후반기 소집교육 각 4시간과 전·후반기 작계훈련 각 6시간)을 부과하되, 임명 전 이수한 훈련시간은 연간 훈련시간에서 공제하고, 세부훈련 유형은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다. 소집교육 불참자는 작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을 부과하고, 작계훈련 또는 소집교육 중 일부 참석자의 잔여시간은 작계훈련으로 부과한다. 다만, 전·후반기 2회 소집교육 대상자 중 1회 불참자는 연간 22시간의 훈련을, 2회 불참자는 연간 24시간의 훈련을 이수토록 한다.

라. 지휘요원은 개인 불희망, 타지역 전출, 작계훈련 2차훈련 무단불참한 경우 해임되며, 이 경우에는 신분별, 연차별 훈련을 부과한다.

마. 부대 통·폐합 등 부대 사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타 지역에서 후반기에 재임용된 경우 훈련시간은 나목에 따른 지휘요원으로서 이수한 훈련시간을 공제하여 부과한다.

바. 7~8년차 예비군소대의 소대장이 6년차 이내인 경우에는 지휘요원 훈련을 부과한다.

2. 도서지역 예비군훈련

가. 도서지역 예비군훈련은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면대 소속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나. 1~6년차 동원 미지정자를 포함하여 기본훈련(8시간)과 작계훈련(12시간)을 실시한다.

다. 도서지역은 전·평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작계위주 훈련과제를 선정하고, 간이훈련장을 설치하여 예비군지휘관 책임 하에 훈련을 실시하되, 사격은 현역교

관 통제 하에 실시한다. 다만, 다수의 도서면대가 편성되어 있거나 도서지역 간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2~3개 단위의 훈련권역별로 통합하여 예비군 지휘관을 교관으로 운용할 수 있다.

라. 훈련대상 중에서 기본훈련 8시간 참석 후 내륙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작계훈련 12시간(전반기 작계훈련 이수 후 후반기 전입 시 6시간)을 부과하고, 미부과자 및 무단불참 후 전입자는 훈련차수 증가 없이 신분별·연차별 훈련을 적용한다.

마. 내륙지역에서 도서지역으로 전입한 자는 '나'목의 훈련시간을 적용하되, 기이수한 훈련시간은 공제한 후 부과한다. 다만, 내륙지역에서 2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한 훈련은 재부과한다.

3. 지원예비군 훈련

가. 지원예비군은 작계훈련(6시간) 연 1회를 실시한다. 다만, 부대창설시 창설교육, 재난 시 구호활동, 작계훈련 시 작전지속지원 활동, 군 주관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해당 연도 훈련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지원예비군 중 지휘요원은 반기 1회 선 소집교육(4시간) 및 작계훈련(6시간)을 실시한다.

다. 지원예비군 중 3차 훈련 무단 불참자도 타 예비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발 조치하되, 이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훈련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여성예비군 훈련

1)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은 연 1회 전·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6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다.

2) 소대장은 연 1회 선 소집교육(4시간)을 추가한다.

마. 특전예비군 훈련

1) 특전예비군부대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 작계훈련(6시간)을 실시하고, 최기 특전여단에 1박 2일 입영하여(16시간) 훈련을 실시한다.

2) 작계훈련 불참자는 제18조 제3항 나목에 의해 3차 훈련 무단불참자 고발 조치로 처리한다.

3) 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하고 2차 및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통제하며, 3차 훈련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4. 비상근 예비군훈련

가. 비상근 예비군훈련은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자에게 부과한다.

나. 훈련기간은 입영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단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하되,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 비상근예비군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입영부대 이상 제대에서 통제하여 실시하는 집체훈련의 경우에는 장관급 지휘관 승인하 1일 훈련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비상근예비군을 운용하는 국방부 직

할부대의 장(이하 '국방부 직할부대장'이라고 한다)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5장 예비군훈련 관리

제17조(훈련관리) 예비군훈련의 관리절차에는 계획, 준비, 실시 및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결과는 구체적으로 차후 훈련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1. 훈련계획과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장관은 국방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비군훈련 정책을 구체화하여 모든 예비군훈련 활동간 시행·적용될 수 있도록「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하달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다음해의 예비군 교육훈련계획과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 인원을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작전사 및 수임군부대에 하달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해의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그 다음 해의 비상근예비군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8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8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2. 훈련준비를 위하여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개시 전에 예비군훈련 계획수립 등 모든 훈련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훈련 준비 세미나 등을 통하여 훈련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훈련담당 부대의 교육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3. 훈련실시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는 훈련담당부대의 훈련장 여건을 고려 하여 학급을 편성,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일 입소인원은훈련장 수용능력과 순환식 훈련 가능여부를 고려 적정 입소 인원을 판단, 통제하며 자원과다로 훈련이 제한되는 부대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인접훈련장으로 조정하여 훈련할 수 있다.
   나. 예비군훈련은 전 인원 동시 실습위주 훈련을 실시하고, 과학화 교전훈련장비, 영상모의 사격장비, 서바이벌장비 등의 교보재를 활용하여 실전적인 훈련으로 통제하며, 성과달성을 보장할 수 있 도록 창의적인 훈련방법을 발전시킨다.
   다.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소집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병역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원훈련 60일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훈련평가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비군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훈련지침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성과측정을 위하여 각 부대 지휘관은 예비군훈련 내용, 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

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분석 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예비군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 후 행정처리) 예비군훈련 후 행정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원훈련

가. 동원훈련 인도인접 간 소집부대와 관할 지방병무청은 인도인접서에 의해 인도인접 결과(입영, 강제·정상 귀가 등)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한다.

나. 귀가자에 대한 증빙은 지방병무청 입영확인관 및 소집부대 인접관에 의해 작성된 인도인접서와 병력동원훈련소집명부에 기재된 사유와 예비군이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되, 예비군이 요구할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별표 6 서식)으로 발급한다.

다. 소집부대는 동원훈련 종료 즉시 소집해제 명령을 발령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 결과를 입력한다.

라. 자원관리부대는 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 소집 여부를 소집부대 훈련종료 후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결과로 확인한다.

마. 예비군이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수령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부대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집부대에 보관하고, 1부는 개인에게 준다.

바. 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에게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지 참하여 신고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 인터넷을 통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훈련소집 부대장이 발급한 것과 동일하다.

아. 정상이수자를 제외한 귀가 및 조기퇴소자에 대한 동원훈련 이수시간 입력 시 비고란에 세부사유를 작성하며, 훈련종료 후 추가 교육 부과 시 적용한다.

자. 동원훈련과 관련된 필수 행정서류인 인도인접서, 동원훈련소집명부, 조기퇴소심의의결서(첨부서류 포함, 각 군 양식준용),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필증은 훈련종료 후 3년간 보존한다.

차. 비상근 예비군훈련 후 행정처리는 병력동원훈련에 준하여 조치한다.

2.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가. 훈련부대는 훈련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훈련 당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결과를 입력한다. 다만, 2일 이상 훈련유형 참석결과는 훈련종료일에 입력한다.

나. 예비군부대는 다음날 국방동원정보체계에서 훈련결과를 확인한다.

다. 훈련입소 후 강제퇴소자는 차후 훈련 부과 시 훈련 차수를 증가하여 적용하며,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퇴소자는 동일 차수를 적용한다.

라. 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보존한다.

3. 원격교육 : 원격교육 후 행정처리에 대한 세부지침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4. 예비군대원이 부과된 훈련(1차)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훈련의무이행을 위해 2차훈련을 부과하고, 2차훈련에 불참한 자에게는 3차훈련을 부과한다. 3차훈련 무단 불참자는 고발 후 3차훈련을 재부과하며, 부과된 훈련을 이수할 때까지 반복 처리한다. 훈련유형별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동원훈련
      1) 무단불참자, 강제 귀가자의 경우
         가) 동원훈련 무단불참자는 지방병무청 고발 후 동미참훈련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하며 입영부대는 제외한다.
         나) 인도인접간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 불복종, 복장불량 등)로 인하여 강제귀가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 없이 동미참훈련 2차 훈련 대상자로 적용하며 입영부대는 제외한다.
      2) 동원훈련 취소(제외)부대에 지정된 자, 연기자, 소집통지서미 교부자와 정당한 사유(관・혼・상・제, 신검 불합격 등)에 의한 귀가자(4시간 공제)등은 동미참훈련 대상자로 적용한다. 다만, 입영훈련 실시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제외한다.
         가) 연기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 경우는 동미참훈련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을 부과한다.
         나) 인도인접 간 신검 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귀가한 경우는 동미참훈련에서 4시간 공제하며 동미참훈련 28시간(입영훈련 시 24시간)을 부과한다.
      3) 일부훈련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
         가) 질병 또는 관, 혼, 상, 제 등으로 연(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된 자는 동원훈련 28시간에서 이수시간(인도인접시간 포함)만큼 공제하고 잔여시간을 동미참훈련으로 부과한다.
         나)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는 이수시간을 제외한 동미참훈련 2차 훈련을 부과한다.
      4) 동원훈련 연기자, 귀가자 등이 재 부과된 훈련에 무단불참한 경우 지방병무청 고발 후 동미참훈련 2차 훈련을 부과한다.
      5) 동원훈련을 무단불참하여 지방병무청에서 고발된 자가 재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에는 동미참훈련 3차 훈련을 부과한다.
   나.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1) 훈련유형별 2차 훈련 무단불참 시는 3차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3차 훈련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 시 마다 매회 고발한다.
      2) 부과된 3차훈련 시간의 50% 미만 이수자는 고발 조치하고, 잔여훈련 시간은 3차훈련으로 다시 부과하며 이후 무단불참 시에는 매회 고발한다.

다만, 3차훈련으로 부과된 훈련시간에서 일부 연기 및 정당한 조기퇴소의 경우 잔여 훈련시간은 3차훈련으로 다시 부과한다.

3) 동미참훈련 중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 입영훈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동미참훈련 중 장교 및 부사관 입영훈련은 각 군별로 3차 훈련까지 입영훈련을 실시하며, 이후 훈련은 자원관리부대에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4일(32시간)간 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입영훈련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각 군 또는 수임군부대장 승인 하 3차 훈련 이전 4일(32시간) 훈련으로 전환할수 있다.
   나) 공군 간부 및 병 동미참훈련(입영)은 3차 훈련까지 실시하며, 고발조치는 예비군관리부대에서 실시한다.
   다) 입영훈련 대상자 중 인도인접간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 불복종, 복장불량 등)로 인하여 강제귀가한 자는 훈련시간 공제 없이 차수를 증가하여 차기 훈련을 부과하고, 인도인접간 신검불합격, 연기사유에 해당하여 귀가한 경우에는 4시간을 공제하고 차후에 동일차수를 적용한다.
   라) 질병 또는 관·혼·상·제 등으로 연(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조기 퇴소된 자는 28시간에서 이수시간(인도인접시간 포함)만큼 공제하고, 잔여시간은 훈련을 부과한다.
   마) 지시불이행 등 정당한 훈련통제에 불응하여 강제 퇴소된 자가 차기 훈련 시 입영훈련을 실시할 경우 28시간에서 잔여훈련시간을 부과하고, 4일(32시간)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가), 나)항의 해당 훈련시간에서 이수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에 대해 차기훈련을 부과한다.
4) 행정착오로 인한 해당 연도 훈련 미부과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추가하여 훈련을 부과할 수 없으며, 과부과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과 이수한 훈련시간 만큼 면제 처리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훈련 대상자에게 추가 훈련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미부과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5) 전년도에 부과하여 이수하지 않은 교육훈련은 해당 연도 신분, 연차, 유형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 시 계속 부과한다.
6) 후순위 지정자로 조정된 예비군 중에서 예비군부중대장, 예비군소대장, 예비군지역대 참모로 임명된 자가 후반기 훈련 이수 전 해당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작계훈련 전반기 또는 후반기 2차 훈련 무단 불참 시에는 연차별 신분에 따른 훈련시간을 적용하여 훈련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후반기 재임용된 경우는 예비군소대장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7) 입소 간 복장불량자, 음주, 통제/지침위반, 지연도착 등으로 귀가한 경우 무단불참 처리하며, 고발차수에 한해 연간 전 훈련유형을 통합하여 1회(8H 이내)만 신고불참 처리한다.

다. 원격교육

1) 의무로 시행하는 원격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보충훈련을 부과한다.
2) 원격교육 미수강자에게 소집훈련을 부과시에는 그 소집훈련을 1차 훈련으로 하며, 이후 행정처리는 제18조 제4호 나목을 준용한다.

라. 기타

1) 거주불명등록자는 신분 및 연차별 교육훈련을 유형별로 1차 및 2차 훈련 부과 후 불참처리하며, 3차 훈련 부과 후 미교부로 처리하고, 훈련종료 후 고발조치한다. 이후 해당훈련은 계속 부과하며 미교부 처리한다.
2) 예비군훈련의 미이수로 누적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편성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 훈련을 부과한다.
3) 동원지정(동원훈련 소집통지서 교부) 되기 전 부과한 예비군훈련은 훈련 3일전까지 취소 조치하고 예비군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취소된 사실을 미 인지한 예비군이 훈련을 참석한 경우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며, 귀가 조치 시는 4시간을 훈련이수로 처리한다.
4) 1차 및 2차 훈련 참석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은 참석과 동시에 폐기하고, 고발자의 소집통지서 수령증 및 관계서류는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5. 재난피해 및 재난동원관련 훈련이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그 밖의 훈련 이수처리에 관해서는 재난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나. 특별재난지역에 예비군이 동원된 경우 그 동원된 시간을 훈련시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잔여훈련시간, 다음 연도 훈련시간 순으로 이수처리하며, 이월훈련은 제외한다.

제19조(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동미참 입영훈련 포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전국단위훈련) ①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한다.

②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전국단위훈련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한다.

③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단위훈련의 신청 가능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한다.(별표 7)

⑤ 전국단위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를 허용한다.(미 신청자 입소 불가)

제21조(휴일예비군훈련) ①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기본훈련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작계훈련 3차 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하되, 동미참훈련 신청자는 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② 훈련담당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훈련에 참여한 현역교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한다.

제22조(훈련일정조정 등의 승인권한) 재난지역선포, 악천후, 감염병등 특별한 상황발생으로 예비군 훈련일정을 조정하거나 위임되지 않은 훈련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된 훈련의 일정을 조정할 경우, 동원훈련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시행하며, 그 밖의 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의 판단 하에 시행한다.
2. 악천후, 재난발생 등으로 인해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동원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 동미참훈련 및 지역예비군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을 종료하고, 잔여시간은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재난 발생 및 악천후 등으로 인한 훈련조정은 24시간 이후 훈련에 대해 적용하고 조정 시 훈련 대상자에게 훈련시작 24시간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24시간 이내의 훈련을 조정 시에는 계획된 훈련 대상자의 1일차 훈련(8시간)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며, 24시간이후 조정된 훈련을 인지하지 못하여 훈련을 입소할 경우 4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4. 예비군훈련시간 중 예비시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용한다.

제6장 예비군훈련 보류·연기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예비군법」 제5조, 제6조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3, 별표24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 자(이하 "법규 및 방침보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1. 보류 제도

가.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는 그 대상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동원이 보류된 자는 보류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동원 대상자로 관리한다.
2)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다만, 훈련의 일부를 보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이수해야할 훈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로 한다.
1)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다만,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 조치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된다.

다. 보류제도는「예비군법」에 의한 동원 및 재난 동원, 지역 및 동원 예비군훈련 소집에 한해 적용한다.

라.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보류가 해소된 때에는 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소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한다.

2. 보류 방침

가. 보류대상 직종과 자격 및 기준은 법령에 의하며, 방침보류 대상은 필요 기관의 소요제기와「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제7장 예비군 방침보류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의 보류대상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속 예비군지휘관이 판단 및 결정하여 보류 조치한다.

다. 보류 기간은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이며,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고 본인 또는 훈련소집통지서 대리수령 가능한 사람에게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한다.
1) 41세 이상인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국외 출국자로 통보받은 사람
3) 구속 수감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4) 기타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 신고가 없어도 예비군지휘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라. 보류 대상자의 동원 및 훈련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즉시 보류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 대상자의 훈련을 보류 조치한다.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에 체류근무자는 365일 이상 체류자에 한함
2)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

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다만, 피부병, 불안장애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준하여 훈련이 가능한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3) 동원 및 훈련이 일부보류 되는자(이하 “방침일부 보류자”라 한다.)는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기간은 해당 직종에 종사 또는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4) 각급학교 학생 및 기간제 교사는 재학기간이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180일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며,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자, 수료자, 유급자 등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재학기간 중 1학기는3. 1~8. 31, 2학기는 9. 1~2월말로 하며, 각 학교 학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한다. 다만, 각급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시 보류한다.

5) 1)~3)항의 각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 처리한다.

마.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의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로 처리한다.

바. 법규 및 방침 전면보류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서 훈련을 부과하고 부과된 훈련에 대해 보류 조치한다.

1) 부대훈련주기가 없어 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고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2) 보류대상자가 보류원서를 제출(또는 유선 등 기타 방법으로 신고)한 시점과 보류자 신분이 된 시점 사이에 예비군부대에서 부과한 훈련이 있을 경우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3. 보류절차

가.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류원서와 관련서류를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가)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에 한한다.

나) 각급학교 학생 중 학적조회를 통해 수업연한을 초과한 경우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2) 국외 출·귀국자는 병무청에서 전송된 출·귀국자 명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복수 국적을 소

지한 예비군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출·귀국할 경우 출·귀국 사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에 해당 예비군의 출·귀국 사항을 확인한 후 보류 처리한다.

3) 대학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예비군의 “각급학교 학생” 보류 조치는 학적 보유 자료에 의거 직권처리 한다. 다만, 관련자료 확보가 가능토록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하고 학적취급 부서와 협조 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개별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나. 보류원서를 접수한 예비군지휘관은 보류조치(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예비군에게 통보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한다.

다.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조치하는 경우 보류원서 작성 없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 입력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보류 사실을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유지한다.

라.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2) 질병 및 심신장애인(「병역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

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18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국방동원정보체계 보류항목에 입력하고 보류 조치한다.

나) 치료기간이 180일 미만인 자는 연기자로 처리한다.

다) 최초진단서의 병명과 같은 병명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연속하여 치료받고 이에 대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자의 보류기간은 최초진단서와 추가진단서의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최초의 치료기간 종료후 잔여 훈련부과시 추가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예” 최초 2개월, 추가 5개월 제출 시 7개월로 계산) 따라서 잔여훈련을 부과하였음에도 추가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라) 치료기간은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되 진단서의 해석은 별도의 시작기점을 미 명시 한 경우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향후 치료기간을 계산하고, 시작기점[발행, 입원, 수술, 수상일(사고일) 등]을 명시한 경우는 명시된 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중증질병으로 진단서 상 치료기간을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상 병명과 향후치료에 대한 의사소견을 참고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심의(군의관 포함 5인 이상)하여 처리한다.

마)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뇌전증 환자는 거주

지 주민 3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써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1년간 예비군 동원 및 훈련을 보류한다.

바) 예비군대원이 질병 등으로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시,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신청하여 지정된 신체검사기관 및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

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 후 소집해제된 사람의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 상의 전산코드가 ①(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의 경우 보류 처리할 수 있다.

4. 보류해소 절차

가.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일세대 내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인 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나. 동원 및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유선 등의 기타 방법으로 보류해소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예비군부대가 보류해소를 하고 보류해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소신고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귀국자는 명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14일 이내 보류조치를 해소하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조회 처리한다.

다.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각급 학교학생 보류해소는 학적변동자료에 따라 직권 처리한다.

라.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지휘관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근거 등을 기록(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고 보류해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마. 예비군지휘관은 보류해소 사유가 발생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바.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보류자로 관리한다. 다만, 휴학한 학생예비군은 보류자 신분에서 해제한다.

사. 외항선원 관리는 선원의 신분과 승선 여부에 따라 보류자로 관리하되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재승선하지 않는 경우 하선 일을 기준으로 보류해소 처리하며, 기간 중 부과된 훈련은 연기 처리 한다. 이때, 선원으로 보류받던 자는 재승선일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보류자 훈련시간 적용

가. 훈련 유형별 보류기간에 부과된 해당 연도 훈련의 1차 및 2차 훈련에 대해서만 보류 조치한다.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해소일까지로 산

정하며 보류 조치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보류자 신분 상실 시

1)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3, 별표24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이 보류되는자(이하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자"라 한다.)가 신분 상실 시는 신분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훈련을 부과한다. 다만, 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 훈련을 부과한다.

2) 방침일부 보류자

가) 일부보류 신분으로 180일 이상 종사자의 해당 연도 훈련시간은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나) 180일 미만 종사자 중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는 방침보류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을 적용한다.

다.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

1) 법규 및 방침보류자가 해당 연도 2차 훈련부터 무단 불참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이월 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훈련 부과 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가) 국외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귀국 후 부과한다.

나)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은 하선 후 부과한다.

다) 경찰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후 부과한다.

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선정되기 前 부과된 훈련은 이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2) 해당 연도 방침보류자 신분 이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 처리하며, 적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한다.

3) 해당 연도에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2차 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한 경우 보류자로 전환된 후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은 동일훈련 유형으로 훈련차수를 증가하여 부과한다. 다만, 무단불참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무단불참한 훈련시간을 부과하고, 잔여시간은 보류 직종별 이수해야 할 훈련유형으로 추가 부과한다.

4) 법규 및 방침 전면 보류자가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 시(외국 유학 복귀 후 학생복학 등)는 법규 및 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로 처리하고,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 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방침일부보류 훈련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하고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훈련을 종결 처리한다.

라. 예비군지휘관(자)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따라 유형별 1차훈련 대상으로 입력 후 훈련 결과를 보류로 처리한다.

6. 보류자 관리

가. 보류자는 별도 편성하여 관리한다.

1) 보류해소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분기 1회 이상 문자메시지, 유·무선 통신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한다.

2) 장기보류자는 보류 신분 유지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유지한다. 확인책임기관을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연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나. 보류자는 법규 및 방침보류자 순으로 보류자 소대를 편성 하되, 방침보류자 중 동원 가용자원은 해당부대 작전계획 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한다.

다. 보류자 전출시 보류원서 원본을 신 거주지 예비군부대로 송부(우편 또는 FAX)하고, 전 거주지 예비군부대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라. 전입자에 대하여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리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미접수 시 재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예비군훈련 연기) 예비군훈련의 연기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체적인 연기사유와 사유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4와 별표 4-1과 같다.

1. 예비군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토요일과 공휴일은 미포함)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기 대상자의 연기원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FAX,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출국 현황으로 갈음한다.
3. 병무청으로부터 연동된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동원훈련 연기정보를 근거로 해당기간 동안 연기 처리한다.
4. 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전화나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하여야 한다.
5. 훈련입소 이후 연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훈련부대장이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조기퇴소 조치하며 지시불이행 등 훈련통제 불응 시 강제퇴소 조치한다.
6.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훈련 연기 시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을 통해 질병으로 인해 계획된 예비군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훈련을 2회 이상 연속해서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예비군훈련 지원

제25조(활용 및 관리) 예비군훈련 지원요소에 대한 활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군훈련 지원요소는 각 군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은 각종 지원요소의 적극적인 활용여부와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제26조(교육훈련 교보재 및 탄약) 예비군훈련 교보재 및 탄약은 각 군 탄약규정, 교육훈련지원규정에 따른다.

제27조(훈련시설 및 예산) 예비군훈련 시설 관리 및 예산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시설
   가.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훈련 시설의 소요제기, 사업집행, 관리· 운영, 조정 및 통제를 한다.
   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적정 훈련장 확보 및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장 표준규격 및 보유기준을 준수한다.
   다. 각 수임군부대에서는 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군훈련장 및시설의 일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훈련장 개방 시는 각 군 지침에 따른다.
      1) 개방 시는 개방목적에 부합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안보 확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한다.
      2) 개방 전 훈련장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고예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군사시설 보안대책이 강구된 가운데 개방한다.
      3) 정기적으로 개방 시는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2. 훈련예산
   가.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예비군훈련 예산소요를 국방부장관(동원기획관, 계획예산관)에게 제기한다.
      1)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 훈련장 부지 등의 예비군훈련 예산소요를 제기한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한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다.
      3)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제기한 예비군훈련 소요에 대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한다.
   나. 예비군훈련의 훈련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예비군훈련비 [동미참훈련(32시간) 포함]는 1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중식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훈련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훈련 유형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동원훈련 : 병무청 지급(입소여비, 식비), 군부대(퇴소여비, 보상비)
나) 동미참훈련(32시간), 기본훈련 : 급식지원, 교통비 지급
다) 작계훈련 : 급식지원
라) 비상근 예비군훈련 : 보상비 지급

다. 동미참훈련(2박3일)은 동원훈련에 준해 지급한다.

라. 동원훈련 시 조기퇴소자는 정당한 사유 및 강제퇴소 등 퇴소유형 구분 없이 1일 단위로 계산하여 보상비를 지급한다. 단,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소여비만 지급한다.

마. 비상근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2)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동 훈령 제16조 4항 '다'목에 따라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보상·치료 및 안전 활동)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병무청장은 동원 및 예비군훈련에 따른 보상·치료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비군훈련 보상과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및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다.
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훈련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 세부대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에게 대군 신뢰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 수임군부대별 예비군훈련장의 시설물 안전진단과 훈련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위생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나. 예비군훈련 시 차량 및 장비 이동 간에는 훈련소집부대장 책임 하 차량 점검, 이동 간 교통 통제 및 훈련군기를 확립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가 강구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한다.

다. 훈련 입소 시부터 신검반을 운용하여 훈련 가능유무를 사전에 판단하고 훈련 간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며, 응급후송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한다.

라. 훈련 간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예비역 군의장교와 공중보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을 응급처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동미참훈련 군의장교 : 동미참훈련 4일(32시간)을 희망자에 한해 활용 가능
2) 공중보건의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 : 1~4년차는 동미참훈련 4일(32시간)을 5~6년차는 기본훈 련 1일(8시간) + 작계훈련 2회(12시간)를 적용한다.
3) 대대장급 지휘관 판단 하 응소가능 여부를 파악 후 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유형별 보충훈련(2차 및 3차 훈련)시 활용한다.

3. 민원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4. 예비군훈련 간 흡연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등에 대해 금연구역 및 흡연 장소를 지정·게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해당 연도 기타 예비군훈련을 일부 이수한 자가 동원훈련으로 소집되어 입영훈련을 원할 경우 잔여시간 교육을 한다.
6. 동원훈련 입영병력 차량수송 중 사고 발생 시, 해당 지방병무청과 사고지역 관할 수임군부대는 사고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지원한다.

제29조(훈련기강 확립) 예비군훈련 간 기강확립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소 지연 도착자 처리
   가.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입영)시 1시간 이내의 지연도착자에 한하여 입소를 허용하되, 지연도착시간을 고려하여 보충훈련을 실시한다. 다만, 차량으로 단체수송 시 도로여건, 교통체증 등의 사유로 지연 시 소집부대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간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나. 자원관리부대 예비군훈련장에 입소 훈련 시 지연 도착자는 무단불참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 도착한 경우,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가 가능하다.
2. 입소 및 훈련 간 복장
   가. 예비군훈련 입소 시는「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한다.
   나.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고발차수에 한해 신고불참 처리하며, 훈련 간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한다.
3. 환자, 음주자 통제
   가.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입소 간 확인된 환자는 연기처리(관련 증빙서류 유지)한다.
   나. 입소 간 확인된 음주자는 귀가조치하되 고발차수에 한해 1회 신고불참으로 처리한다.
   다. 훈련 중 음주자는 알콜 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한다.
4. 예비군훈련 간 개인소유정보통신(휴대폰 등) 장비는「국방보안 업무훈령」에 의거 무단반입이 불가하다. 다만, 훈련담당부대 통제 하에 반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통제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식사시간, 휴식 시간 등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 사용 편의를 보장한다.
   나. 무단반입, 훈련담당부대의 통제 불응 등 훈련기강을 저해시키는 자는 퇴소 처리한다.
   다. 기타 세부 통제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5. 비상근 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입영부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입영부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득하여 소집을 중단할 수 있다.
   가. 질병 및 심신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여된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평가결과 저조 등)
   다. 비상근예비군 소집 임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이 정한 소집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기타) 그 밖의 예비군훈련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원훈련 입·퇴소 이동 간 통제
   가. 지방병무청 및 수임군부대(소집부대)
      1) 개별입영 또는 차량수송부대 판단 시 수임군부대(소집부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수임군부대(소집부대)는 차량 입영 시 퇴소 차량을 조치한다.
      2) 차량수송계획 작성 시 차량집결시간, 출발시간, 주행속도, 차간거리, 탑승인원, 중간휴식처, 소요시간 등을 사전 답사하여 확인한다.
      3) 각 차량마다 선임자(예비역 간부 등)를 임명하고 안전통제관으로 운용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인토록 한다.
      4) 소집부대와 협조된 지점부터 호송 및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동원병력을 수송한다.
   나. 소집부대
      1) 차량 입·퇴소 간 호송 및 안내

차량 입소 간	소집부대 능력을 고려, 호송/안내 구간 선정·시행 (입소시간은 병무청과 협의 하 조정 가능)
차량 퇴소 간	군 부대에서 4차선 도로까지 군 부대 책임 하 호송하되, 4차선 도로까지 원거리부대(전방 군단 또는 지역 방위사단 지역)는 국도 2차선까지 호송

      2) 훈련부대는 동원병력 복귀차량이 목적지에 도착 시까지 차량별 연락대책을 강구하여 상황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하며 운전기사(예비역 간부 등)를 지정, 주요지점에서 연락토록 대책을 강구한다.
      3) 개별 입·퇴소 시 호송 및 안내
         가) 개별 입·퇴소 부대는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교통 혼잡지역 등에 안내 요원을 배치 운용한다.
         나) 부대능력 고려 소집부대에서 최기거리 터미널, 역까지 군 차량으로 수송하며, 차량운행 감독관 탑승 등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다. 호송단
      1) 소집부대 동원훈련 시 병력규모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입영확인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최초집결지에서 질서유지, 수송로를 교육한다.

2) 군・병무청 합동 동원병력 수송 및 호송 시범식 토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원병력 수송업무체계를 정립한다.

2. 악천후 시 교육훈련
   가. 악천후(우천 시 등)로 인해 야외훈련이 불가한 경우는 훈련부대장 판단 하 실내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수준에 따른 교육훈련지침은 각 군부대훈련규정을 적용한다.
3. 7년차 이상 비상소집망 점검
   가. 유사시 동원을 위한 전투편성 및 비상 연락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나.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지휘관 책임 하 반기 1회(1, 7월) SNS 또는 전화, 안내문 등 전파수단을 통해 예비군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 대책을 확인시키고 최신화하도록 통제한다. 다만, 대학직장예비군부대는 졸업・복학 등을 고려하여 3, 9월에 실시한다.
   다.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자 발생 시 예비군중대는 7일 이내 전파 수단을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킨다.
4. 소속변경 등의 사유로 원소속부대로 훈련을 응소한 경우 원소속 부대에서 훈련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현 소속부대로 통보한다.
5. 여군출신 간부가 입영훈련 시는 숙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준비하여 훈련참여 여건을 보장한다.
6. 훈련장 명칭
   가. 지역예비군훈련장 : 시・군・구 명칭 부여하되 명칭 사용이 중복되거나, 도서지역 등 별도의 명칭 사용 필요 시 별도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나. 동원예비군훈련장, 과학화예비군훈련장 : 별도 고유명칭을 부여한다.

제31조(재검토 기간) 국방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6호, 2016. 4.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호, 2017. 2.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호, 2018. 3.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호, 2018. 12.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호, 2019. 9.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2020. 12.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호, 2022. 3.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호, 2022. 7.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5호, 2023. 1.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예비군훈련 체계도	제6조	641
2	예비군훈련 관련 법령 및 규칙	제6조	642
3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수단별 적용 기간(예)	제10조	643
4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제24조	644
4-1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	제24조	646
5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양식)	제24조	648
6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양식)	제18조	650
7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서(양식)	제20조	651
8	개인 사유서(양식)	제24조	652

【별표 1】

예비군훈련 체계도(제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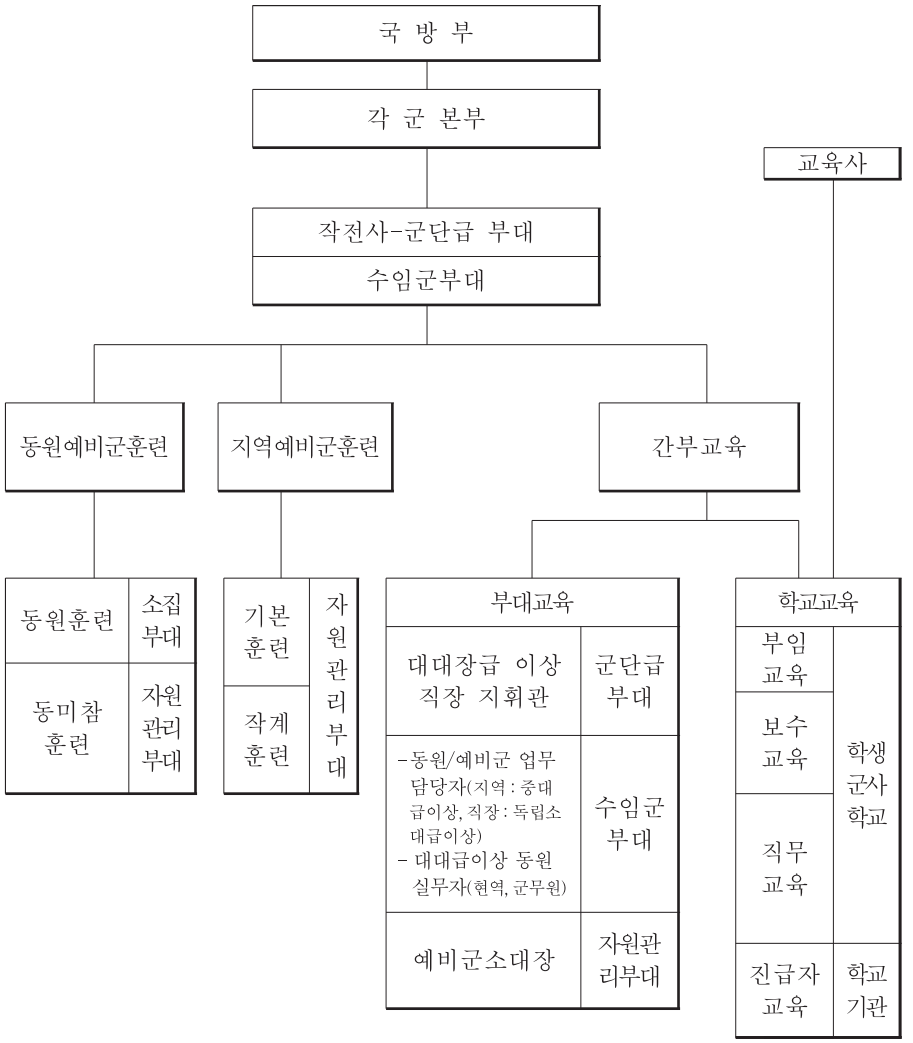

【별표 2】

예비군훈련 관련 법령 및 규칙(제6조 관련)

문 서	성 격	주 관	관련법령
국방기본 정책서	국방정책의 중장기 목표 제시	국방부	
예비전력 정책서	예비전력 발전의 중장기 목표 제시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 예비군법 • 병역법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예비군훈련 기본방침 제시	국방부 (동원기획관실)	• 예비군법 • 병역법
예비군 교육훈련 규정 또는 지시	예비군훈련 시행지침 제시	각 군 / 작전사령부 (동원부서)	• 예비군법 • 병역법
예비군교육훈련지시 (계획)	당해 연도 훈련 실시방법 제시	수임군부대 (동원부서)	• 예비군법 • 병역법

【별표 3】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수단별 적용 기간(예)



【별표 4】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제24조 관련)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응시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시는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6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 • 의학·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박사과정 편·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	•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 • 접수원서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7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	•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
8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 소집일과 직업 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	•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 확인서
9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11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12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3	주요업무 수행	• 공·사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 * 통산의 의미는 '10년 이후 예비군 훈련기간의 총 합산 개념임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	•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 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14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 후계자 • 농·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농·어민 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어업허가(면허)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표 4-1】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훈련일 현재 입원중이거나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 * 진단(진료) 확인서 : 발급일 기준 적용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입원확인서 사본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 사망확인서 및 기타 관계증명 자료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	• 행정관서의 사실 확인서
4	출국(예정)	• 국외체제기간(출·입국일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연기	•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
5	각종 시험응시	• 각종 시험(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5급 공개경쟁시험,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 시험응시 증빙서류상 시험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인터넷 또는 시험 시행기관에 확인하여 처리하고, 근거를 유지한다.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응시원서 접수증, 합격증, 수험표 등 시험 응시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구분	연기 사유	처리 기준	구비 서류
6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 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출석 수업통지 명단 또는 학사일정 등 출석 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 시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한 참가확인서, 합숙훈련 계획서
8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후인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부모,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육아휴직자(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	• 예식장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주요업무 수행	• 주요업무 수행 – 교육기간(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 전,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납품기일 임박, 계약 / 바이어 상담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교육확인서, •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 •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 개인사유서 (별지 확인)
10	농·어업 종사자	• 농·어민후계자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	• 농·어민후계자 증명원 •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표 5 서식】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 뒤쪽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E-mail		휴대폰번호	
② 회사 (기관)	회사(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FAX
	재직기간 년 월		직책	

③ 업무분장	근무부서	근무 인원별 담당 업무		
		성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내용

④ 해당업무	[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직장(기관)장 명의의 문서 첨부 [ ] 프로젝트 수행 등
⑤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업무내용 및 업무 미수행시 문제점 *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업무내용
	미수행(이행)시 문제점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⑦

업체(기관)의 장 직인(서명)

○○○예비군지휘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안내사항

○ 주요업무수행 연기는 공·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특별한 법적자격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또는 주요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등에 한하여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6회 까지만 연기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작성은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과 '프로젝트 수행'의 경우만 작성하고,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 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과 '주요회의 참석'의 경우는 연기원서에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① 인적사항 :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② 회사(기관) : 회사(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근무기간 및 직책 등을 기재

③ 업무분장

- "근무부서" 에 본인 근무 부서명 기재
- "근무인원별 담당업무내용" : 해당 근무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의 담당업무 및 인적사항 기재

※ 여백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④ 해당업무 :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⑤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 :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 또는 교육, 회의 기간

-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되어야 함.

⑥ 업무내용 및 업무 미수행시 문제점 : 예비군훈련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비군훈련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교육, 회의 내용과 예비군훈련에 입영하였을 경우 발생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 등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내용이 부실한 경우 연기가 제한될 수 있으니 상세하게 기재(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⑦ 회사(기관)직인 날인(또는 부서장의 서명)

※ 직인이 날인(인쇄)된 문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서장 서명 또는 날인

【별표 6 서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성 명		연 차	
군 번			
주 소			
소 속	* 동원훈련시 소집부대명, 기타 훈련시 예비군부대명을 기록		
훈 련 유 형	0000훈련		
위 상기인은 00.00.00~00.00.00일에 실시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여 00시간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0부대 00대장(인)**			

----------(인)----------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성 명		연 차	
군 번			
주 소			
소 속	* 동원훈련시 소집부대명, 기타 훈련시 예비군부대명을 기록		
소 집 훈 련	0000훈련		
소 집 일 자	00년 00월 00일		
위 상기인은 00.00.00~00.00.00일에 실시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여 00시간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0부대 0대대장(인)**			

【별표 7 서식】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서

제 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주민등록 주소지)	
	주소(현 거주지)	
훈련신청	부과된 훈련일자 ※ 부과된 훈련이 없으면 "공란" 처리	훈련유형
	훈련희망일자	희망훈련장
	훈련신청 예비군부대	

위의 사람은 . . . 자로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직인(서명)

자르는 선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확인증

성 명	생년월일
신청 훈련일자(유형)	신청 훈련장

위의 사람에게 전국단위(휴일) 예비군훈련 신청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기관의 장(소속 예비군부대장) 직인(서명)

【별표 8 서식】

개인 사유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E-mail	휴대폰번호
개인 사유 내용 기술 (6하원칙에 의거)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직인(서명)

○○○예비군지휘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1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제정 국방부 훈령 제2023호(2017. 03. 02.)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78호(2020. 01. 03.)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74호(2020. 11. 17.)
개정 국방부 훈령 제2587호(2021. 10. 05.)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력동원소집 등"이란 「병역법」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을 말한다.
2.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란 소속된 군부대의 장, 수임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수탁경찰서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군 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의무실 등 환자를 치료하는 군의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이란 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를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각 군 및 해병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관련부대(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휴업보상 및 치료비 보상

제4조(지급대상) ①「병역법」제75조와 제75조의2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의 해제 후 귀가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상을 입어 치료하거나 그 부상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병역법」제75조와 제75조의2 또는「예비군법」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라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별표 9 또는 별표 10의 사유에 준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 중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이하 "보상금지급대상자"라 한다)
2. 동원·소집에 응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동원·소집 해제 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자로서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한다.

제5조(지급책임) ①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수임군부대의 장(예비군대원이 소속된 부대와 훈련한 부대가 다를 경우에는 훈련부대를 관할하는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다. 다만, 각 군 총장(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각 군 총장이 지급하고「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에서 위탁 치료한 환자의 치료비와 각 군 예하부대에서 민간의료기관(군 보건의료기관 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포함)에 위탁 치료 중 치료 미종결 상태로 군병원으로 입원 처리한 경우에는 최초 응급치료부터 퇴원시까지의 치료비를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일괄 처리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상심사위원회 운영) ①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 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이며,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위원장 : 참모장
2. 필수위원 : 인사참모, 동원참모, 법무참모, 군사경찰대장(수사과장), 군의관
3. 선택위원 : 일반·특별참모, 기타 필요한 인원(민간인 포함)
4. 간사 : 동원부서 실무자

③ 필수위원의 중점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참모 : 예비군 환자발생 당시 지휘계통 보고사항, 지휘관 확인서, 목격자진술서, 발병경위서,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등 보고 문건 및 진위
2. 동원참모 : 예비군 훈련내용, 예비군대원 인적사항(예비군 편성카드), 부상당시상황적 관점에서 임무수행 또는 훈련과 부상 간의 인과관계, 보상금 산출방식, 휴업 및 치료사실 확인결과 사항
3. 법무참모 : 심사 및 보상금 지급 전반의 적법성, 기존 법령해석 및 훈령(지침)과의 부합성
4. 군사경찰대장(수사과장) : 자해 또는 타인(민간인에 의한 교통사고 포함)에 의한 부상발생여부, 장난·싸움 및 본인 고의·중대한 과실과 같은 보상금지급비대상 요건 해당여부, 민원발생 여부 및 민원처리 상황과의 연관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여부, 이동 중 사적행위 여부, 교통사고 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사본
5. 군의관 : 부상정도, 의학적 관점에서 부상의 직접적 원인, 응급환자 판단 및 환자처리의 적절성, 기저질환과 연관성, 과잉치료여부, 치료와 휴업 간의 인과관계, 진료기록부 등 치료 관련 문건

④ 간사는 위원회 개의(開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 및 관련 사실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 중에 예비군대원 인적 사항·발병경위·목격자 진술 및 지휘관 확인사항·위탁치료 승인여부 및 경과·휴업사실·보상금 청구액·관련 법령과 지침·보상금 검토(안) 등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
2. 제7조에 따른 휴업 보상금액
3. 제8조에 따른 치료비 보상금액

⑦ 심사위원회는 제6항 심사·의결에 따라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생산한다.

⑧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중점검토사항, 간사임무, 개의(開議)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휴업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예비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간은 훈련종료일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휴업보상 기준액과 적용기간은 매년 5월에 국방부장관이 각 군 총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휴업보상금은 치료와 휴업간의 인과관계, 부상정도, 입원·외래치료일수, 예비군대원의 직업 유무, 휴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구체적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기간은 휴일에 관계없이 전 기간을 보상한다.
2. 외래치료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일자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외래 치료일을 휴업 보상한다. 다만, 휴일에 치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래 치료일은 보상하지 않는다.
3. 제3항제2호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치료 기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등 부상치료와 휴직 간에 인과관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5.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부상치료로 인한 퇴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상정도와 진단서의 향후 치료기간, 마지막 치료일 및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일을 제외한 일자를 보상할 수 있다.
6. 입원일 또는 외래치료일이 예비군 훈련일 또는 임무수행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보상하지 않는다.
7. 부상정도에 비해 과도한 입원 또는 치료, 휴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일자만큼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8. 제4호와 제5호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교직원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재직증명서, 사기업 또는 업체의 직원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매출전표 등 실제 사업장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이 부상일 이전에 생업에 종사하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거나 사회통념상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보상심사위원회 의결로써 제4호와 제5호의 부상 당시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예비군대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 군 보건의료기관의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훈련 종료 후 임의로 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료비 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치료비는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② 치료비(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는 치료비 계산서나 영수증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비 증빙자료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경우. 다만, 응급환자의 응급치료비는 예외로 한다.
2. 보상금지급대상 부상부위 이외 치료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치료비(선택진료비 포함)·상급병실이용료, 임플란트·성형비용·한방치료비, 기타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의 이유로 제6조 보상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비용
3. 장기 이식 공여자에 대한 제반 비용
4.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등 치료비 지급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제9조(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등) 제4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보상관계 서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액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원본은 수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증빙자료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보상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제6조 제7항에 따른 생산 문건
3.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퇴소 보상시 제외 가능
6. 4대 보험 가입확인서
7.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진료기록부,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통장 사본, 계좌이력,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등 보상관계 서류(치료비 지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계되는 재직·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생략 가능)
8. 이동경로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내역서, 합의서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부상에 대한 보상관계 서류

제11조(보상금 청구 및 지급절차) ①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제10조 제1호, 제6호에서 제8호의 서류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부상·치료·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와 함께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부상·치료·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문건을 작성한 다음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1.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2.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3. 목격자 진술서(별지 제5호 서식) : 입·퇴소 보상시 제외 가능

③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6조 제7항의 문건과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접수한 문건 및 예비군대원이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전자문서(스캔)로 생산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에게 제출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다.

⑤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수임군부대 심사위원회 구성, 구비서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⑥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결정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송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총장이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각 군 총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각 군 총장은 관할 군(작전)사령관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보상금 지급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할 군(작전)사령관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추가서류 요청 또는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요청 금액 원안대로 또는 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각 군 총장은 제1호에 따른 검토결과와 보상결정 금액을 관할 군(작전) 사령관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지한다.
3.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통지를 접수하면 예비군대원에게 보상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송한다.

⑧「예비군법 시행령」제25조에따라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을 준용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치료비용 명세서는 예비군대원이 제출하는 제10조 제1호, 제7호의 서류를 대체한 것으로 보며,휴업사실 확인 및 보상결정 통지서 발송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의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 치료비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전투역량강화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민원 처리기한) ① 예비군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1조 제2항 : 보상민원 접수일로부터 5일(지방병무청의 경우 30일) 이내
2. 제11조 제3항과 제4항 :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제11조 제5항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4. 제11조 제6항과 제7항 제3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5. 제11조 제7항 제1호와 제2호 :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② 각 군 총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수임군부대의 장, 관할 군(작전)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상민원 처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민원을 처리해야할 실무 담당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경고장을 수여하게 하거나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치료

제13조(치료대상과 기간, 치료책임) ①「병역법」제75조 제6항 및「예비군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치료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지급대상자에게는 동원·소집기간에 관계없이 치료 종결시까지 치료를 제공한다.
2. 보상금지급비대상자에게는 동원·소집기간에 한하여 치료를 제공한다.

② 동원·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동원·소집 해제 후 귀가 중에 부상하였으나 보상금지급비대상자인 경우와 복장불량, 지연도착, 신검불합격 등으로 귀가 조치된 사람에게는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치료책임은 각 군 총장에게 있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책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있다.

제14조(환자처리절차) ①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부상정도와 환자상태 및 예비군대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며, 응급환자 판단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후송책임은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환자를 후송하는 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

1.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
2.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경우
3.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③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한 경우에는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상금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군부대장 등(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한다. 이 때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환자를 처리함 있어서 의무지원 또는 항공의무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야간 및 공휴일에 상관없이 다음의 각 호를 통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로 요청한다.

1. 화상통화 전화 010-5089-5119
2. 군 전화: 902-5119
3. 일반전화 : 1688-5119
4. 앱(Emergency Center) : 국군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 폰에설치 및 사용

제15조(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퇴원 절차)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환자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후송된 경우에는 군의관은 즉시 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의관은 치료결과,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14조 제2항의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부상(또는 질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상급 군 보건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다만, 군의관은 제14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부대의 장 등에게 제출한다.

② 사단급 이하 제대에 예속(배속, 작전통제, 지원관계 포함)된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 소속의 군의관의 소견서를 근거로 예비군대원 환자를 입실시킨다.

③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진단서를 발급하여 예비군대원 환자를 입원시킨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환자가 입실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입원 명령을 발령하고 제2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제3항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이하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이라 하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2.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하여 군 보건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한다.
3.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발급한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가 군 보건의료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접수된 경우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이 송부토록 조치한다.

⑤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입실 또는 입원환자 중 치료 종결되어 퇴원하거나 제6항의 사유로 퇴원하는 예비군대원에 대해서는 퇴원 조치하고 퇴원 명령지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단순 외래 경과관찰 또는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 종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원 조치 할 수 있다.

⑥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예비군대원 환자가 입실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에 입원하

여 치료하는 중에 본인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퇴원하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발병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와 진단서 1부를 발급하여 차후에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동 서류를 제출받은 군 보건의료기관장 등은 동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퇴원 시 신체등위가 5급 및 6급인 자는 입원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조사를시행 후 해당결과를 관련부대 및 본인에게 송부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이 되어 군에 복무하는 사람의 군 보건의료기관 외래 및 입·퇴원 절차는 현역과 같다.

제16조(기록유지) 소속 군부대의 장 등 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를 기록관리하는 예비군 부대장에게 발병경위서(별지 제4호 서식),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별지 제1호 서식), 입원명령, 퇴원명령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부대장은 예비군대원 편성카드의 특기사항 란에 부상경위,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입퇴원 및 치료사실을 기록하고 관련 문건은 예비군 편성카드가 폐기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17조(국방환자관리훈령 준용) ① 예비군 치료에 관한 사항은 본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 기타 예비군대원의 치료에 관한 사항은 「국방환자관리훈령」 제39조, 제40조, 제45조 제4항, 제47조, 제48조 제3항, 제51조,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전역자와 전역일은 각각 예비군 대원과 부상일로 본다.

② 국방환자관리훈령 제2장~제6장, 제8장, 제13장, 제14장, 제16장, 제17장 규정중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치료에 관한 규정 또는 군 보건의료기관장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예비군대원에게 적용함에 특별히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준용할 수 있다.

제4장 장례, 재해보상금 및 보훈 지원

제18조(장례지원) ①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각 군 총장은 사망구분(전사·순직·일반사망) 결정과 관계없이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여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와 유가족 여비는 각 군 총장이 정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각 군 총장이 지급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사망자 처리 절차)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망자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다만,「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하며 세부적인 처리절차와 담당부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재해보상금 지급) ①「병역법」제75조의2 및「예비군법」제8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며 그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장애보상금은「군인 재해보상법」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각각 지급한다.

② 사망보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치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각군 본부에 제출한다.
2.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의결된 경우에 사망보상금 수령권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청구한다.
3.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장애보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령권자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군 보건의료기관으로 청구한다.
2. 해당 군 보건의료기관은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각 군 총장에게 제출한다.
3. 각 군 총장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공상여부 및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국군재정단과 해당 군 보건의료기관에 통보한다. 각 군 총장 또는 제2호의 군 보건의료기관장은 전공상여부와 장애등급 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령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처리절차 및 담당부서는 현역과 같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따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관련 서류 또는 증빙 자료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안내) 소속 군부대의 장 등은 「병역법」제75조와 「예비군법」제8조의 2 에 따라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5장 전시운영 및 행정사항

제22조(전시운영) 국방부 장관은 본 훈령에 규정된 사항의 전시운영에 대해 별도로 시달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① 예비군 대원 환자처리 및 보상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군부대의 장 등 업무처리 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취소· 환수) 각 군 총장 또는 관할 군(작전)사령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현황 보고) 각 군 총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치료비 및 휴업 보상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6조(위임) 이 훈령에 따른 치료비 및 휴업보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각 군 총장 또는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호, 2017. 3. 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시폐지)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예비군 보상지침('16.3.11)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3호, 2017. 3.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8호, 2020. 1.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호, 2021. 10. 5.〉

이 훈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국가·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병원급)	제2조	665
2	응급환자 판단기준	제2조, 제14조	671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제9조	672

❑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		673
2	보상 청구서		674
3	발병경위서		675
4	지휘관(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		676
5	목격자 진술서		677
6	보상결정 통지서		678
7	00년 보상 현황		679

【별표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제2조)

병원명	종별	관계기관	대표전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02-870-211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02-2276-7000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02-920-9114
고양정신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031-969-0885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02-2036-020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02-6300-9000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02-3156-30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병원	서울특별시	02-3430-0200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02-570-8000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병원	서울특별시	02-300-8114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요양병원	서울특별시	02-6053-2114
서울시립 백암정신병원	요양병원	서울특별시	031-332-3194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요양병원	서울특별시	031-284-4010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요양병원	서울특별시	031-592-6661~4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치과병원	서울특별시	02-2282-0001
부산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부산광역시	051-507-3000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요양병원	부산광역시	051-202-1370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요양병원	부산광역시	051-342-7272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요양병원	부산광역시	051-607-2075
부산노인전문제3병원	요양병원	부산광역시	051-780-5555
부산시립정신병원	요양병원	부산광역시	051-312-2288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대구광역시	053)560-7575
대구정신병원	병원	대구광역시	053)630-3000
대구광역시 서부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대구광역시	053)570-7575
대구광역시 시지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대구광역시	053)812-1212
호남권역재활병원	병원	광주광역시	062-613-9000
광주시립정신병원	요양병원	광주광역시	062-949-5200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요양병원	광주광역시	062-949-5250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요양병원	광주광역시	062-612-9800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인천광역시	032-580-6000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병원	인천광역시	032-836-1731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요양병원	인천광역시	032)562-5101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요양병원	인천광역시	032-554-8300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병원	대전광역시	042-823-4401~5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대전광역시	042)280-5000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대전광역시	042-272-9633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요양병원	울산광역시	052-231-7900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경기도)	031-888-0114

병원명	종별	관계기관	대표전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경기도)	031-639-4800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경기도)	031-8046-500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경기도)	031-828-500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경기도)	031-539-911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경기도)	031-940-9100
경기도노인전문 용인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288-0400
경기도노인전문 평택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669-9988
경기도노인전문 시흥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500-7100
경기도노인전문여주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886-4100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590-5000
경기도노인전문 동두천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860-4114
경기도립정신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288-0114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1-8040-5114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기도	032-713-7300
강원도 강릉의료원	종합병원	강원도	033-610-1200
강원도 삼척의료원	종합병원	강원도	033-572-1141
강원도 속초의료원	종합병원	강원도	033-630-6000
강원도 영월의료원	종합병원	강원도	033-370-9117
강원도 원주의료원	종합병원	강원도	033-760-4500
강원도 재활병원	병원	강원도	033-248-7700
정선군립병원	병원	강원도	033-592-3121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요양병원	강원도	033-640-8800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강원도	033-240-750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충청남도	041-962-111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종합병원	충청남도	041-570-7200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충청남도	041-630-6114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종합병원	충청남도	041-689-7000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남도	041-734-9911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남도	041-935-116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충청남도	041-950-1001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남도	041-551-1114
충청남도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남도	041)630-6593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남도	041-689-700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충청북도	043-279-011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종합병원	충청북도	043-871-0114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043-423-8844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043-744-9633
청주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043-220-8000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043-646-0808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043-298-9011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충청북도	043-855-9393

병원명	종별	관계기관	대표전화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전라북도	063-472-500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전라북도	063-620-1114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병원	전라북도	063-240-2100
진안군의료원	병원	전라북도	063-430-7000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북도	063-581-9116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전라북도	063-717-3300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북도	063-560-6100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북도	063-630-7777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요양병원	전라북도	063-220-9700
정읍시립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북도	063-531-0075
목포시의료원	종합병원	전라남도	061)260-6500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전라남도	061)433-2167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병원	전라남도	061)759-9114
고흥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830-3400
곡성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360-9000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453-7007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798-8602
보성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859-9000
신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260-2700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653-9119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353-5050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395-1170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542-3004
함평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322-4119
화순군립요양병원	요양병원	전라남도	061-379-6114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한방병원	전라남도	061)860-7777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종합병원	경상북도	054)247-0551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종합병원	경상북도	054-429-8114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종합병원	경상북도	054-850-6000~5
울진군의료원	병원	경상북도	054)785-7000
경상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3-816-3322
경상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851-6000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420-7200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247-0551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743-6200
고령군립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956-8700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440-1000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370-5450
봉화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674-0011
상주시립 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530-5300
시립문경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550-7000

병원명	종별	관계기관	대표전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631-1500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790-6923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785-7000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834-7400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북도	054)976-7777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종합병원	경상남도	055-249-1000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943-3333
경상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794-2900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375-7275
경상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640-1900
경상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330-2000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864-2201
시립마산 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221-2700
시립창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298-2442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	경상남도	055-574-0009
경상남도립정신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경상남도	055-854-6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종합병원	제주특별자치도	064)730-3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병원	제주특별자치도	064)720-2222
제주권역재활병원	병원	제주특별자치도	064)730-9000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064)720-2222
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53-200-5114
경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55-750-8000
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51-240-70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31-787-1009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1588-57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55-360-1000
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62-220-5011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1577-7877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1599-7123
충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43-269-660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61-379-7541
강원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교육부	033-258-2000
제주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교육부	064-717-1114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교육부	055-214-100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교육부	053-200-2114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병원	교육부	062-670-9415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교육부	033-640-3114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교육부	053-600-7114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교육부	055-360-51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교육부	02-2072-3114

병원명	종별	관계기관	대표전화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병원	교육부	062-530-5543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병원	교육부	1577-7877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병원	교육부	055-360-5555
국립중앙의료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02)2260-7114
국립암센터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1588-81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031-900-0114
국립마산병원	병원	보건복지부	055-246-1141
국립목포병원	병원	보건복지부	061-280-1114
국립부곡병원	병원	보건복지부	055-536-6440
국립소록도병원	병원	보건복지부	061-840-0500
국립재활원	병원	보건복지부	02-901-1700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	보건복지부	02)2204-0114
국립춘천병원	병원	보건복지부	033-260-3000
국립공주병원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041-850-5700
국립나주병원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061-330-4114
경찰병원	종합병원	경찰청	02-3400-1114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합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51-720-5114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종합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970-211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종합병원	고용노동부	042-670-5114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종합병원	고용노동부	061-720-7114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종합병원	고용노동부	031-500-1114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종합병원	고용노동부	032-500-0114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종합병원	고용노동부	055-280-7777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종합병원	고용노동부	033-580-3114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병원	고용노동부	053-715-7575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병원	고용노동부	033-530-3100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병원	고용노동부	033-560-7100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요양병원	고용노동부	031-351-308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종합병원	국가보훈처	053)630-7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종합병원	국가보훈처	062-602-61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종합병원	국가보훈처	042-939-01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종합병원	국가보훈처	051-601-6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종합병원	국가보훈처	02-2225-11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	병원	국가보훈처	032-363-9800
국군서울지구병원	병원	국방부	02)397-3990
국군부산병원	병원	국방부	051)702-9147
국군대전병원	병원	국방부	1688-9152
국군일동병원	병원	국방부	031)531-0803
국군청평병원	병원	국방부	1688-9161
국군양주병원	병원	국방부	1688-9163
국군고양병원(명칭변경)	병원	국방부	1688-9162

병원명	종별	관계기관	대표전화
국군수도병원	병원	국방부	1688-9151
국군춘천병원	병원	국방부	033)243-0130
국군홍천병원	병원	국방부	1688-9167
국군강릉병원	병원	국방부	033)662-7802
국군원주병원	의원	국방부	033)735-0181
백두병원(21사단 의무대)	병원	국방부	033-480-5103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병원	국방부	043-290-5412
국군계룡대지구병원	병원	국방부	042-550-4758
논산훈련소지구병원	병원	국방부	041-740-7812
국군함평병원	병원	국방부	061)390-5114
국군대구병원	병원	국방부	053)853-1785
해군포항병원	병원	국방부	054)290-2452
해군해양의료원	병원	국방부	055)549-1711
국립교통재활병원	병원	국토교통부	031-580-5555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요양병원	법무부	041-840-5400
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대한적십자사	054-534-3501
서울적십자병원	종합병원	대한적십자사	02-2002-8000
영주적십자병원	종합병원	대한적십자사	054-630-0100
거창적십자병원	병원	대한적십자사	055-944-3251
인천적십자병원	병원	대한적십자사	032-899-4000
통영적십자병원	병원	대한적십자사	055-644-8901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요양병원	대한적십자사	032-899-4000

【별표 2】

응급환자 판단기준(제2조, 제14조 관련)

□아래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아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생략(소아과적 응급증상)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생략(소아과적 응급증상)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표 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제9조 관련)

1. 제4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예비군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장소 사이에서 입 · 퇴소를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
2. 통상적인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써 어느 정도 일관된 특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코스를 의미하지는 않음.
3. 형식적으로는 통상적인 입 · 퇴소 경로를 일탈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 하더라고 그 행위가 입 · 퇴소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성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입 · 퇴소에 통상 수반되는 사소한 행위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사소한 행위가 아닌 경우로써 통상적인 입 · 퇴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탈 도중 또는 중단 도중 및 그 후의 통상적인 경로로의 복귀 후에 발생한부상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부상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와 장난 · 싸움 등 입 · 퇴소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퇴소경로의 종료는 단독주택은 자택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이고 아파트는 아파트 건물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출발시각 또는 퇴소시각으로부터 부상사고 발생시각까지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지나치게 장시간 지체된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7. 주거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또는 거소지이며, 임무수행 또는 훈련 장소에 용이하게 도착하기 위해 사전 숙박한 장소나 소집해제 후 귀가지로써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장소는 주거지로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예비군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장소를 고려할 때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출발 또는 복귀 장소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함.
8.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함.

【별지 1】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1. 3.>

치료비 또는 휴업보상금 심사의결서

성 명			소속	
계 급			군번	
청구 사항	보상 구분		청구 금액	
심사결과 ※ 군인사법시행령 별표9 또는 별표10 준용			예시: 보상금 지급(공상자 분류기준표 2-2-2 준용)	
지급 심사 결정 금액	위탁 치료비		산출 근거	예시: 치료비 영수금액 합계
	휴업 보상금			예시: 00일×1일 보상액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부대명•지방병무청명 **보상심사위원회**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의 견	서 명
위 원 장					
위 원					

210㎜×297㎜[백상지 80g/㎡]

【별지 2】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 3.>

보상 청구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계 급		군 번	
	주 소		연 락 처	
발병(사고) 경위	훈련유형 또는 임무수행유형	예시: “향방작계훈련”		
	발병(사고) 요약기술	“6하 원칙에 의거 기술”		
청구사항	보상구분	예시: “휴업보상금”	청구금액	
청구서 제출/접수	제출 부대 또는 지방병무청	예시: ○○지방병무청	접 수 자	계급: 성명: (서명)

「예비군법」 제8조의2 및 제9조,「병역법」제75조 및 제75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예시: 1. 진단서, 소견서 각 1부, 2. 진료기록부 총 10매 1부, 3. 재직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래 [ ]안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 [ ] 비동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3】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1. 3.>

발병경위서

① 계 급		② 군 번		③ 성 명	
④ 병과 주특기		⑤ 직 책		⑥ 원 소 속	
⑦ 생년월일		⑧ 입대년월일		⑨ 복무기간	년 월
⑩ 현 주 소					
⑪ 발병일시	년 월 일 시 분		⑫ 발병장소		
⑫ 병명(진단명)					

⑬ 발병원인 및 경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입소 전 건강(정신질환 포함)과 관련한 병력 사항 반드시 기재

⑭ 목 격 자	직책	계급	성명	(인)
⑮ 지휘관 또는 지방청 확인관	질병·부상과 공무(교육훈련, 직무수행, 부대활동 등)의 연관성* : 유 [ ], 무 [ ]			
	직책	계급	성명	(인)

위와 같이 발병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지방병무청장 계급 성명 (관인)

* 군보건의료기관 진료와 관련된 행정 처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며, 전·공상 판정,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지급(예비군) 등은 별도의 심의를 통해 결정

210㎜×297㎜[백상지 80g/㎡]

【별지 4】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1. 3.>

지휘관 (대대장 또는 지방병무청 ○○과장) 확인서

1. 부상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2. 사고 개요

예시: '16. 1. 10. 11:00경 ○○예비군 훈련장 ○○교장에서 ○○전술훈련 중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 떨어지면서 왼쪽에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음.

3. 조치 경과

예시

- '16. 1. 10. 11:10 : 부상직후, 군의관 응급조치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
- '16. 1. 10. 11:30 : 부상(또는 질병)확인서 발급, 예비군이 부상발생보고서 제출
- '16. 1. 10. 15:20 : 국군○○병원, 검사결과 왼쪽 발목 인대 파열로 진단 및 깁스치료
- '16. 1. 11~2. 5 : 민간병원 7회 통원치료(1.11, 1.13, 1.15, 1.19, 1.25, 2.4)
- '16. 2. 6 :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청구 민원 접수

4. 주요 안내 내용 및 예비군 진술

예시: '16. 1. 10. 15:00 대위 ○○○ 이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예)병장 ○○○ 은 이를 거부하고 민간의료기관 치료를 희망하여 거부사실과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징수한 후 민간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고, 민간의료기관에 치료할 경우의 휴업보상 내용을 설명함.

년 월 일

확인관 직책: 계급: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5】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1. 3.>

목격자 진술서

1. 부상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예시: ○○사단 ○연대 ○○대대	예시: 예)병장		

2. 진술 내용

예시: '16. 1. 10. 11:00경 ○○예비군 훈련장 ○○교장에서 조교 임무 수행 중에 위 예비군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미끄러져서 땅으로 떨어진 후 발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옆에 있던 교관(5급 ○○○)이 부축하여 인근 나무그늘로 이동시켰고, 이후 현장에 군의관(대위 ○○○)이 와서 부목 등 응급조치를 하고 구급차로 후송하는 것을 목격함.

년 월 일

목격자 직책: ○○조교 계급: 병장 성명: 홍 길 동 (서명)

210㎜×297㎜[백상지 80g/㎡]

【별지 6】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1. 3.>

보상결정 통지서

제 호 (예시: 년-01호)

인적 사항	성 명		소 속	
	계 급	예시 "예)병장"	군 번	
청구 사항	예시: 00년 00월 00일 00시 00경 동미참훈련간 부상치료로 인한 치료비 0000원 또는 휴업보상금 0000원 청구			
결정 사항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예시: "지급"		
	보상 구분	예시: "위탁치료비"		
	지급 금액	금 "한글" 원 ("숫자" 원)		
	지급 계좌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금 주

「예비군법」 제8조의 2 및 제9조, 「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 2에 따라 귀하가 청구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직인

참고사항

보상금은 본 통지서 발송일 이전에 지급계좌로 입금되었거나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금예정입니다. 다만, 부대 또는 ○○지방병무청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사단 계급 성명 전화번호

210㎜×297㎜[백상지 80g/㎡]

【별지 7】

■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1. 3.>

00년 보상 현황

□ 총 괄

단위: 원

구 분	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휴업보상금	위탁 치료비
건 수					
예산액					
집 행					
잔 액					

○ 사망보상금

일 자	소 속	계급/성명	지급액(원)	사고개요

○ 장애보상금

일 자	소 속	계급/성명	지급액(원)	사고개요

○ 휴업보상금

일 자	소 속	계급/성명	지급액(원)	사고개요

○ 치 료 비

일 자	소 속	계급/성명	지급액(원)	사고개요

210㎜×297㎜[백상지 80g/㎡]

1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1031호(2009. 03. 04.)
국방부 훈령 제1147호(2009. 08. 17.)
국방부 훈령 제1246호(2010. 05. 28.)
국방부 훈령 제1298호(2010. 12. 30.)
국방부 훈령 제1365호(2011. 12. 07.)
국방부 훈령 제1481호(2012. 12. 03.)
국방부 훈령 제1518호(2013. 02. 26.)
국방부 훈령 제1695호(2014. 09. 26.)
국방부 훈령 제1808호(2015. 06. 29.)
국방부 훈령 제1851호(2015. 12. 14.)
국방부 훈령 제1910호(2016. 04. 11.)
국방부 훈령 제2143호(2018. 03. 20.)
국방부 훈령 제2253호(2019. 01. 25.)
국방부 훈령 제2402호(2020. 02. 19.)
국방부 훈령 제2506호(2020. 12. 30.)
국방부 훈령 제2630호(2022. 02. 09.)
국방부 훈령 제2775호(2023. 03. 03.)

국방부(동원기획과) 02-748-5209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 <개정 2020.2.19.>
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포함), 예비군훈련대,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포함),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9.26., 2022.02.09.>

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9.26.>
5. “직장예비군지휘관”이란 대학 및 일반직장 예비군부대의 중대급 이상 예비군지휘관을 말한다.
6. <삭제> <개정 2012.12.3., 2018.3.20., 2022.02.09., 2023.03.03.>
7. “동원지원단”이란 동원전력사령부(육군), 해병대교육훈련단(해군) 예하에 편성하여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 자원관리 및 동원훈련을, 전시에는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방증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9.1.25., 2023.03.03.>
8. “장비·물자관리대”란 평시 동원보충대대의 장비·물자를 관리하고 전시 창설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원지원단 예하 부대를 말한다.
9. “동원보충대대”란 전시 전방사단 및 군단에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원전력사령부(동원지원단)에서 동원병력을 대대단위로 편성하여 보충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0.2.19., 2022.02.09.>
10. <삭제> <2012.12.3.>
11. “지역·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12.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 대대(이하 “관리대대”라 한다)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로서 통상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는 부대를 말하며,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3.20., 2020.12.30.>
13.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시(구가 있는 시 제외)·군·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4.9.26., 2018.3.20., 2020.12.30.>
14. “예비군훈련대”란 현대화된 훈련시설과 과학화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22.02.09.>
15. “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보”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7. “수임군부대”란 「예비군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신설 2016.4.11., 개정 2018.3.20.>
18. “동원전력사령부”란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를 말한다. <신설 2019.1.25.>

제3조(적용범위 및 준용)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서 해당 직장의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시험에 의하지 않고 직장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원에 대하여는 수임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예비군지휘관 관리를 위하여 명단 등 현황을 유지한다. <개정 2018.3.20.>

③ 이 훈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6., 2022.02.09.>

제4조(업무분장)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각급부서에서 수행하되 인사행정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3.20.>

1. 인사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따른 행정조치. 단,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이후 보직을 제외한 인사 관련 업무는 다른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수행<개정 2020.2.19.>
2.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선발·임명·면직 건의 등의 업무 수행<개정 2020.2.19.>
3. 각 군 법무업무 수행부서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시 출제위원 지원 협조
4. 선발 필기시험 시행부서(육군본부): 평가지원 업무수행부서와 협조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시행
5. 평가지원업무 수행부서(합동군사대학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를 위한 육군본부 협조사항에 대한 지원

제5조(임용 및 임명권자)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5급 이상은 각 군 참모총장의 임용건의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고, 군무원 6급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9.26.>

② 지역예비군지휘관 중 지역대장, 읍·면·동대장(이하 “중대장”이라 한다), 기동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하며, 부중대장, 소대장은 여단·연대장이,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2012.12.3., 2019.1.25.>

③ 직장예비군지휘관 중 대대장 이상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중대장, 독립소대장, 독립분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다만, 예속 소대장 및 분대장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하되, 직장 중대장이 없는 경우 상위 제대 부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신분)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은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9.26.>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신분이다.

제6조의2(보직관리 원칙) ①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신규 임용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보직함에 있어서 선발성적, 본인희망 순으로 보직한다. <개정

2019.1.25., 2022.02.09.>

②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의 군무원 임용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부 관할구역 내의 예비전력관리기구에 한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보직한다. 다만, 연고지역에 가용할 사람이 없는 때에는 다른 지역 요원으로 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 도서지역 예비군지휘관은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 보직하며,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임용자 중 성적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3.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의3(합격자 명부)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직장예비군지휘관은 제외한다)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직급별 및 합격 직위·지역별로 성적순위에 따라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합격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합격자로 등록한 사람은 명부 상 직위·지역에 공석이 생길 경우 해당 순위에 따라 임용 및 보직한다. 다만, 합격자로 등록한 후 1년 6월 이내에 해당 직위·지역에 공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반기에 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공석직위에 우선 임용 및 보직한다.

제2절 위원회

제7조(군무원인사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3., 2018.3.20., 2019.1.25., 2023.03.03.>

② 군무원인사위원회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8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23.03.03.>

1. <삭제> <2012.12.3.>
2. <삭제> <2014.9.26.>
3. <삭제> <2023.03.03.>
4. <삭제> <개정 2022.02.09., 2023.03.03.>
5. <삭제> <신설 2022.02.09., 2023.03.03.>
6. <삭제> <신설 2022.02.09., 2023.03.03.>
7. <삭제> <신설 2022.02.09., 2023.03.03.>

③ <삭제> <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0.12.30., 2023.03.03.>

④ <삭제> <2023.03.03.>

⑤ <삭제> <개정 2022.02.09., 2023.03.03.>

⑥ <삭제> <개정 2014.9.26., 2015.6.29., 2023.03.03.>

⑦ <삭제> <개정 2014.9.26., 2018.3.20., 2019.1.25., 2023.03.03.>
⑧ <삭제> <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⑨ <삭제> <신설 2022.02.09., 개정 2023.03.03.>

제7조의2(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는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03.03.>

1.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적부심사
2.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3. 그 밖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개정 2023.03.03.>

제3절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4절 체력검정

제11조 <삭제>

제12조(체력검정 대상 및 적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체력검정에 관하여는 「부대관리훈령」 제7편 제1장을 준용한다.

② 체력검정은 각 군의 연도별 체력검정 계획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5., 2023.03.03.>

③ <삭제>

④ <삭제>

제5절 근무실적종합평가

제13조(근무실적종합평가 시기)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연도 근무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9.1.25.>

제13조의2(평가집단의 구성) 평가집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6.29., 개정 2019.1.25.>

1. 예비군지휘관(5급)
2. 동원지원단 군무원(5급)
3. 예비군훈련대 군무원(5급)
4. 동원지원단 군무원(6·7급)<개정 2020.12.30.>
5. 예비군훈련대 군무원(6·7급)<개정 2020.12.30.>

6. 행정담당군무원(6·7급)<개정 2020.12.30.>
7. 직장예비군지휘관(여단・연대・대대・중대)<신설 2022.02.09.>

제14조(근무실적종합평가 방법 및 기준) ① 근무실적종합평가는 별표 1의 근무실적평가 요소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9.26., 2018.3.20.>

1.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해당 연도 전반기 50%, 후반기 50%를 반영한다. <개정 2014.9.26., 2015.6.29., 2018.3.20., 2022.02.09.>
   가. 전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와 후반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직책별 평정배점 기준에 의거 근무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나. 직무파견, 육아휴직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평정점수가 없는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정점수를 반영한다. <개정 2023.03.03.>
      1) 당해 연도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1회만 있으면 그 1회의 평점점수를 평정점수가 없는 평정기간의 평점점수로 한다.
      2) 당해 연도에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하나도 없으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67조제3항을 준용한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한다. <개정 2023.03.03.>
2. 정기 감사 성적의 등급별 점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감사결과 우수 등급으로 다음해 정기감사 면제시 감사성적은 전년도 등급으로 하고, 1년차에 정기감사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 평균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9.>
3. 상훈점수 평가기준은 훈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3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되, 연 2회 이상 상훈을 받은 경우에도 배점이 가장 높은 상훈 1회의 점수만 인정한다. 다만, 연간 상훈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배점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5.6.29., 2020.12.30.>
4. 교육성적 평가는 합격·불합격제로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임용 전 직무교육(최초 선발 시 임용 전에 부여받은 교육을 말한다)과 보수교육 중 최근 교육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별표 4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직무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 보수교육 부적합 직위자에 대한 점수부여는 각 군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5. 체력검정은 합격·불합격제로 실시하며, 별표 5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5.6.29., 2020.12.30.>
6. <삭제>
7. 부대관리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8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12.12.3., 2020.12.30.>
8. 훈련성적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20.12.30.>
9. 업무성과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6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각 군에서 정한 직책별 업무성과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부여한다. <신설 2020.12.30.>

10. 자기계발 배점은 5점으로 하되, 어학을 포함한 자격증, 미담사례로 받은 표창(상장, 감사장 등), 모범예비군 선발 등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20.12.30.>
11. 기타 항목 배점은 10점으로 하되, 징계·형사처벌, 보안 상·벌점 등 각 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배점 기준을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20.12.30.>

② <삭제>

③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동일점수시 우선순위는 근무성적평정, 정기감사성적, 부대관리, 업무성과, 훈련성적, 상훈, 교육성적, 체력검정, 자기계발, 기타 순으로 한다. <개정 2012.12.3., 2015.6.29., 2020.12.30.>

④ 각 군은 요소별 세부점수를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과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5년간 근무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6., 2019.1.25.>

②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는 모범예비군 선발 및 전보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매년 성과상여금 지급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4.9.26.>

③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저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전보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9.1.25., 2020.2.19.>

④ <삭제> <2014.9.26.>

⑤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당해연도 근무실적 종합평가 최종등급을 공개한다. <신설 2014.9.26., 개정 2019.1.25., 2023.03.03.>

제6절 퇴직 등

제16조(근무기간 도달자 퇴직)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때에 출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되,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는 해당 직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2020.2.19.>

② <삭제> <2020.2.19.>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의2(직권면직 등)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임군부대장의 해임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 <개정 2011.12.7., 2012.12.3., 2018.3.20., 2023.03.03.>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5급 이상에 대하여는 「군무원인사법」

제5조에 의한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며, 대대장 이상의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2 국방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처분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2023.03.03..>

③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일반직 6급 이하에 대하여는「군무원인사법」제5조에 의한 각군본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군총장이 직권면직 처분하며, 직장예비군중대장은 제7조의2 수임군부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예비군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해임 처분한다. <개정 2014.9.26., 2016.12.30., 2018.3.20., 2023.03.03.>

④ 직권면직 또는 해임처분을 위한 세부 양정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다만, 각 군별로 세부적인 기준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⑤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권면직 및 적부심사가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상급부대에 직권면직 및 적부심사를 건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개정 2019.1.25.>

⑥ 「군무원인사법」제29조제4항에 따른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은「군무원인사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장성급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이 행사한다. <신설 2018.3.20., 개정 2019.1.25., 2022.02.09.>

⑦ 직위해제, 직권면직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장예비군지휘관의 해임 심의 시에는 해당 직장의 인사담당(과장급 이상)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3.03.03.>

⑧ 직권면직, 직위해제 처분권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02.09., 2023.03.03.>

제2장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17조 <삭제> <2014.9.26.>

제18조(근무성적평정 기준 등) 평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정하되,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공정하게 작성하며 평정시기, 방법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9.26., 2019.1.25., 2020.2.19.>

1. <삭제> <2019.1.25.>
2.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평정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한다.
4.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개정 2022.02.09.>

제18조의2(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신설 2020.12.30.>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4급이하 일반군무원 중 3인 이하 평정집단을 대상으로 승진권 단위부대에서 평정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정조정을 실시한다.

③ 평정의 조정 집단 구성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법정 분포비율을 준수하여 평정조정을 실시한다.

④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9명 이하일 경우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은 분포인원으로 한다.

구 분	9명	8명	7명	6명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2	1	1	1	1	0~1	0~1	0~1
우	2	2	2	1	1	1	0~1	0~1	0~1
미	3	2	2	2	2	1	0~1	0~1	0~1
양/가	2	2	2	2	1	1	0~1	0~1	0~1

⑤ 그 밖의 평정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평정조정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의3(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검증) <신설 2020.12.30., 2022.02.09.>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검증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평정자 또는 확인자로부터 “가”등급을 부여받은 자
2.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게 “수”등급을 부여한 평정자 또는 확인자

제18조의4(6급 이하 보직의 통합 운용) <신설 2020.12.30.>

6·7급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직급 다단계 추진 등으로 인해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보직을 통합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20.2.19.>

제20조 <삭제> <2020.2.19.>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2020.2.19.>

제23조 <삭제> <2020.2.19.>

제24조 <삭제> <2020.2.19.>

제25조 <삭제> <2020.2.19.>

제26조 <삭제> <2020.2.19.>

제27조(전보 권한)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장기보직으로 인한 침체 방지 및 능동적·창의적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② 전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군부대 관할 내 전보는 수임군부대장이, 동원전력사령부 관할 내 전보는 동원전력사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9.1.25.>
2. 각 작전사령부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전보는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6.4.11. 2020.2.19., 2022.02.09.>
3. 각 군 관할 내 수임군부대 간 또는 동원전력사령부와 전보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9.1.25., 2022.02.09., 2023.03.03.>
4.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 국방부에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2.19.>

제28조(전보계획 수립 등)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전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제7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예비전력관리기구별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9.26., 2019.1.25., 2020.12.30., 2023.03.03.>

1. 정기전보
   가.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5년을 초과하여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2022.02.09., 2023.03.03.>
   나. 전보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03.03.>
   다. 전보대상자 중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 및 예비군의 날 행사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은 각 각 1회에 한하여 '본인 희망지역'에 보직할 수 있으며, 전보 심의 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자는 근무실적 종합평가결과 우수자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선발 후 근무성적 종합평정 "가" 평정시 전보를 제한하며, '본인 희망지역'에 본인의 현 근무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4.11., 2019.1.25., 2022.02.09.>
   라. <삭제>
   마. <삭제> <2020.12.30.>
   바. 전보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
2. 수시전보
   가.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보를 건의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0.2.19.>
      1) 부대개편 또는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포함)의 통합 및 분리·창설 등으로 부대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정원변동 및 지역대장 선발 등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4.9.26., 2019.1.25., 2022.02.09.>
      2) <삭제> <2019.1.25.>

3)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역주민과의 불화, 사생활 문란, 비위행위, 그 밖에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25.>

4) 최근 5년 근무실적 평가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9.1.25.>

가)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 모두로부터 "가"등급 2회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다만, 2년 연속 근무성적 종합평가 "가"등급 평정시 직권면직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회부<개정 2012.12.3., 2022.02.09.>

나) 정기감사에 2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5일 이상 교육훈련 성적이 2회 연속 만점의 60% 미만 취득한 경우 <개정 2022.02.09.>

라)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마) 서면경고 또는 주의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22.02.09.>

바) 형사처벌(확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신설 2022.02.09.>

5)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중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3명(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포함하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양자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신설 2011.12.7., 개정 2019.1.25.>

가) <삭제> <2019.1.25.>

나) 전보지역은 자녀교육 및 부양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 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보 5년 후부터 매년 심의를 거쳐 전보사유 해소 시 정기전보에 포함하며, 동일사유로 인한 전보의 재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20.2.19., 2023.03.03.>

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2년 이상 근속 후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20.2.19.>

6) 별표 8의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가)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전보 신청시 별표 9의 구비서류를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보 5년 후부터 매년 심의를 거쳐 고충사유 해소 시 정기전보에 포함된다. <개정 2022.02.09.>

나)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다른 수임군부대 또는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해당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보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2023.03.03.>

다) 각 군 참모총장은 건의된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

우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전보 조치한다. <개정 2022.02.09., 2023.03.03.>

라)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할 경우 전보권자는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명부 및 전보관련 기록 등 인사 관계 서류를 별도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2년 이상 경과 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마) 별표8에 따른 고충 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고충에 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고충처리 제반절차를 따른다. <신설 2022.02.09.>

나. 위 3) 및 4)에 따른 전보 심사시 전보대상자의 지휘관(1차, 2차 상급지휘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보당사자는 군무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03.03.>

다. 연륙교(連陸橋)가 없는 도서지역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으로서, 내륙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전보하고 계속 도서지역 근무 희망자는 전보를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다만, 각 군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전보 조치한다. <개정 2012.12.3., 2018.3.20.>

라. 위 가. 1)에 따른 전보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9.1.25., 개정 2022.02.09.>

1) 부대조정 대상 지휘관 중 1명은 부대정비 이후의 통합 및 분리·창설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2)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창설 부대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근무실적종합평가, 근속년수, 직무, 자원수(예비군지휘관), 기타 수임군부대장이 정하는 기준(업무의 중요도, 직무능력 등)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최근 5년간 근무실적종합평가의 평균이 C등급 이상일 경우 동등한 조건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2.02.09.>

3) 부대개편 또는 통합 및 분리·창설된 부대로 전보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기간은 전보일자부터 계산한다. 다만, 부대명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어도 종전 근무지역이 포함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대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2.19., 2022.02.09.>

4) 지역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선발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5) 지역대장 임기는 3~5년이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나,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년일이 3년 미만일 경우라도 연임할 수 없다.

6) 보직 만료 후 타 지역대장 또는 예비군중대장으로 전보한다.

마. 부부군무원(배우자가 군인인 경우 포함)으로 승인된 사람은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수임군부대 지역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5년 경과 후 군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 2023.03.03.>

3. <삭제> <2019.1.25.>

제28조의2(공로연수) <신설, 2014.9.26.> 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공로연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사람을 연수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공로연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제28조의3(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 <신설 2019.1.25., 개정 2020.12.30.>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 다른 유형의 예비전력관리기구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9., 2020.12.30.>

② 제1항의 전보는 동일 직책에서 1년 이상(신규임용자는 2년 이상) 근속한 고충군무원, 동일 직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근무실적종합평가 우수자(최근 5년간 서열이 상위 5% 이내인 자), 예비군의 날 행사시 모범예비군으로 선발된 후 성실하게 근무 중인 사람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2.19., 2020.12.30., 2022.02.09., 2023.03.03.>

1. 최근 5년 이내 경징계를 2회 이상 받거나, 중징계를 1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23.03.03.>
2.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결과 종합평정 “가” 평정을 1회 이상 받은 자<개정 2023.03.03.>
3. 최근 5년 이내 근무실적종합평가 “D” 등급 이하를 1회 이상 받은자<개정 2023.03.03.>
4. <삭제>
5. 최근 5년 이내 형사처벌(확정)이 1회 이상 있는 자

③ 전보 심의는 군무원인사위원회 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자체 활용 심의를 통해 전보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12.30., 2023.03.03.>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전보 대상 직위를 사전에 공고하고, 수임군부대장 및 동원전력사령관은 개인별 희망직위를 확인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12.30.>

⑤ 각 군 심의 시에는 전보 대상자를 보직권 부대까지 분류하고, 보직권 부대는 ‘근무실적종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심의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단, 심의 간 전보 가용 직위가 없는 경우 보직권자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⑥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⑦ 전보가 결정된 인원은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28조의4(한시임기제 군무원 운영) <신설 2020.12.30.>

① 각 군 참모총장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휴가로 30일 이상 2년 이내 기간 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은 한시임기제 군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의 대체인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의5(고충처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에서 제119조를 따른다. 이 경우 "인사참모부(인사부서)"는 "동원참모부(동원부서)·인사참모부(인사부서)"로, "인사부서"는 "동원부서·인사부서"로 본다. <신설 2023.03.03.>

제29조 <삭제> <2014.9.26.>

제30조 <삭제> <2014.9.26.>

제30조의2 <삭제> <2014.9.26.>

제30조의3 <삭제> <2014.9.26.>

제31조 <삭제> <2014.9.26.>

제32조 <삭제> <2014.9.26.>

제33조 <삭제> <2014.9.26.>

제34조 <삭제> <2014.9.26.>

제35조 <삭제> <2014.9.26.>

제36조 <삭제> <2014.9.26.>

제37조 <삭제> <2014.9.26.>

제37조의2 <삭제> <2014.9.26.>

제38조 <삭제> <2014.9.26.>

제39조 <삭제> <2014.9.26.>

제3장 직장예비군지휘관

제40조(임명·추천 등) ①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 임명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명상신한 대대장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수임군부대별 인사명령으로 임명한다.
2. 수임군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한 임명장을 임명권자를 대리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다만,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각 군 본부에서 선발 통보한 대령직위에 대하여는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 공석을 고려하여 여단장, 연대장으로 임명 상신하되, 여단급 부대 여단

장에는 예속 연대장보다 선임자를 임명 상신한다. <개정 2023.03.03.>

③ 여단급부대의 연대장으로 이미 임명되어 근무 중인 자가 동일 부대 대령직위 지휘관 중 선임자에 해당되는 경우 여단장으로 재임명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3.03.03.>

④ 직장예비군부대가 명칭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휘관이 재임명되어 직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2.12.3., 2023.03.03.>

⑤ 직장중대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합격자를 수임군부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2.09.>

제41조(보직관리 원칙) 직장예비군지휘관 보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해당 직장의 비상계획관을 겸임할 수 없다.

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지원한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예비군부대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 후 2년 이내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은 당해 수임군부대 관할지역 다른 직장예비군부대에 우선 임명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5.6.29., 2020.2.19.>
3. 예비군 자원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직장예비군부대가 승격, 해체, 격하, 통·폐합될 경우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전보대상 자원 또는 신규 선발하여 충원한다. <개정 2016.12.30.>
4. <삭제>

제42조(직장신분 및 직급) ① 각 직위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하며,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별표 10,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1.12.7., 2019.1.25.>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직급은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처우는 동일 직급의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군 경력 및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경력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5.>

제43조(지휘관의 임명기준) ① 직장예비군부대의 독립제대 지휘관은 군부대에서 선발한 전담요원으로 임명한다.

②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제대 지휘관은 전시에는 전원 전담요원으로 임명하고, 평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1. 연대장, 대대장 : 전담
2. 중대장
   가. 수개의 직장을 통합하여 단일직장부대로 편성한 부대의 예속제대 중대장을 전담 임명한다.
   나. 단일직장으로 편성된 부대의 대대별 예속중대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예속 중대수 2 ~ 3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1명 임명
      2) 예속 중대수 4 ~ 6개인 경우 : 전담지휘관 2명 임명

3) 예속 중대수 7개 이상인 경우 : 전담지휘관 3명 임명

③ 전담지휘관은 소속 예비군대원 및 장비관리 등 예비군 관리업무를 전담한다. <개정 2020.2.19.>

④ <삭제> <개정 2022.02.09., 2023.03.03.>

제43조의2(직무대리) ① 중대장 이상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 퇴직, 해임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직무대리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3.03.03.>

②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명권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이 추천한 직무대리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직무대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신설 2023.03.03.>

제44조(근무성적평정)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1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를 사용한다.

②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준하여 연 1회(전반기)만 실시하되, 전자평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9.26., 2019.1.25.>

제45조(전보) ①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보직 2년 후부터 동일직장 또는 소속 직장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계열 직장 소속의 예비군부대 상호간에 전보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예비군지휘관으로 임명된 지 2년 후에 직장예비군부대의 승격, 해체, 격하, 통·폐합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은 관할 수임군부대에 전보요청을 하고, 전보요청을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공석이 발생한 직장의 장에게 대상자원을 통보하여 해당 직장의 대상자 선발결과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보할 수 있으며,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공석을 확인하여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보 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지휘관을 채용하기로 동의한 직장예비군부대로 전보할 수 있다. 전보가 가능한 기간은 그 직위를 상실한 시점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5., 2020.2.19., 2023.03.03.>

③ 대학직장 예비군부대가 승격되어 직위를 상실한 지휘관은 승격제대 지휘관 자격요건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승격된 당해 부대의 지휘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④ 수임군부대 관할구역 내에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한 후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3.03.>

⑤ 육군의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해군의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직장의 장이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사전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⑥ 각 군 참모총장은 수임군부대장이 소속 직장의 장과 협의하여 건의한 직장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수임군부대 간 전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군 간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에 건의하여 전보 조치한다. <개정 2020.2.19.>

제46조(근무기간)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해당 직장의 장이 60세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46조의2 <삭제> <2019.1.25.>

제47조(적부심사 및 조치) ①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별표 6의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2018.3.20.>

③ 해임건의를 받은 수임군부대장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직장예비군지휘관인 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23.03.03.>

④ <삭제 2015.6.29.>

⑤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적부심사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장이 심사 후 조치한다. <개정 2018.3.20.>

제4장 〈삭제〉 〈개정 2022.02.09., 2023.03.03.〉

제48조 <삭제> <개정 2022.02.09., 2023.03.03.>

제49조 <삭제> <개정 2023.03.03.>

제50조 <삭제> <개정 2023.03.03.>

제51조 <삭제> <개정 2023.03.03.>

제5장 예비군지휘관 근무 〈신설 2023.03.03.〉

제52조(복무선서) 예비군지휘관은 임명장을 수여 받음과 동시에 수임군부대장에게 복무선서를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 선서할 수 있고, 예비군지휘관 복무 선서문은 별표 13과 같다.

제53조(복무자세) ① 예비군지휘관은 언행과 처신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지휘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제14조에 따라 지휘권을 가진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각 군 제식규정에 의한 경례 등의 예의를 표시해야 한다.

제54조(집단행위의 금지) 예비군지휘관(중대장 이상을 말한다.)은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의 결성, 연판장 작성 등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근무위치)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부대 본부에서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작전시에는 현역부대, 경찰관서, 행정관서 등 작전지휘가 용이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예비군을 지휘관리하는 군부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근무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6조(근무시간) ① 예비군지휘관의 근무시간은 수임군부대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의 지침이 없으면 지역예비군 지휘관은 행정관서 근무시간,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 사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군부대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군부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원(교육훈련포함)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원 해제 시 또는 상황의 종료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이 후속조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군지휘관에게 추가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 외로 출장, 기타 이동시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고 보고해야한다.

④ 지역예비군지휘관은 관리대대 관할지역외 출타 시에는 행선지 및 소재지를 소속부대 지휘통제실 또는 관련 요원에게 알려 비상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예비군부대의 전투체육 활동은 수임군부대장 판단하 부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근무지 거주체계) ①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의 취지에 따라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에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도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사전 심의를 통해서 수임군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거주할 수 있다.

③ 지역예비군지휘관이 소속 수임군부대 작전 관할지역이 아닌 인접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관할하는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의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④ 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지휘관의 공로연수, 의원면직, 기타 사유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원될 때까지 대리근무자를 선발·임명하여야하며, 각 군은 대리근무 절차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복장) ① 예비군지휘관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하고 청결한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1. 예비군복(전투복) : 전·평시 교육훈련 및 작전참가, 주요행사 참석, 기타 복장착용 필요시
2. 예비군특수복(근무복) : 지역예비군지휘관이 평시 부대 일상업무 수행 시에 착용한다.

② 예비군특수복(근무복) 착용 시에는 예비군 표지장을 패용하며, 30년 장기근속자는

근속 휘장을 패용하여야한다.
③ 예비군지휘관의 두발기준에 관하여는 각 군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기타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장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에 의한다.

제59조(보안) ① 예비군지휘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인터넷 및 사무용 PC 보안대책(ID, 패스워드, 바이러스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무실 보안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부대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인터넷 및 사무용 PC에 대해 백신프로그램 설치, DRM 교체, 인증서 발급 등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하부대장에게 관련내용을 확인 또는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외부강의) ① 예비군지휘관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대)의 장(행동강령 책임관)"은 수임군부대장으로 본다.
② 수임군부대장은 외부강의 내용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③ 외부강의 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수임군부대장에게 신고 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1조(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인계인수) ① 예비군부대의 상급 지휘관은 예비군지휘관 보직교대 시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보장하고, 인계인수 절차 및 결과를 감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보직교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임무수행철(상황판, 전산 파일 등 포함)
2. 작전지역 특성(국가중요시설, 취약지역 등)
3. 주요 재산(장비 및 물자, 사무비품, 저장매체 등) 및 재산대장
4. 예비군 자원현황
5. 예산운영
6. 상근예비역 신상관리(지역예비군부대)
7. 기타 예비군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인사기록

제62조(인사기록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하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인 인사기록카드를, 직장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인 인사자력표를 유지하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관리한다. <개정 2019.1.25., 2020.2.19., 2022.02.09.>

②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자력표 부본은 임용권 부대에서 관리하고 원본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한다.

③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19.1.25.>

제63조(인사자력표 작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자력관리를 위한 각급 부서의 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9.>

1.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
   가.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최초 임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업무 수행부서로 이관하고, 인사자력표는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
   나. 직장예비군지휘관 최초 임명시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자력표를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 후 전산으로 관리한다.
2. 인사업무 수행부서
   예비군 및 동원업무 수행부서로부터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이관받아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자력관리 및 인사행정 처리를 수행한다.

제64조(인사기록 변경보고) 원본과 부본의 인사자력표 기록내용을 최근 현황으로 동일하게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사항이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록변경보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임명)부대에 보고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한다. <개정 2020.2.19.>

제65조 <삭제>

제66조(전시특례) ① 전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전·사상 등으로 인하여 결원 발생시에는 수임군부대장이 최근 선발시험 응시자 중 미선발자를 성적순으로 우선 임용하고 임용결과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 선발시험 응시자의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 또는 직장 내의 예비역 또는 퇴역 장교, 준사관·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6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2.09.>

부칙 〈제1031호, 2009. 3. 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지침으로 시행중인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47호, 2009. 8. 1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호, 2010. 5.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훈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 또는 이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8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재계약될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부심의에 의한 해임은 이 훈령 공포 이후 선발되는 지휘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5호, 2011. 12. 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속기간에 대한 특례)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에 대한 근속기간은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령출신 대학직장예비군대대장은 2012년까지는 6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7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8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9년, 2022년부터는 10년으로 하며, 중령출신 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은 2018년까지는 5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6년, 2022년부터는 7년으로 한다.

부칙 〈제1481호, 2012. 12. 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호, 2013. 2.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5호, 2014. 9.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상한 연령 및 근속기간의 시행 만료시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2016.1.1 및 2017.1.1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 및 근속기간과 국방부훈령 제1365호(2011.12.7.) 부칙 제2조의 대학직장예비군지휘관의 근속기간에 대한 특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808호, 2015. 6.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감사 및 교육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이전에 감사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감사 및 교육성적은 개정규정에 따라 서열 비율을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851호,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로연수 확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로연수 대상자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 전 8개월 이내인 자로, 2017년 정년퇴직자는 정년 퇴직일 전 10개월 이내인 자로, 2018년 정년 퇴직자부터 정년퇴직일 전 1년 이내인 자로 한다.

부칙 〈제1910호, 2016. 4.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예비군지휘관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 이전에 전보 사유가 발생한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전보가 가능한 기간은 그 직위를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1997호, 2016. 12.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3호, 2018. 3.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3호, 2019. 1.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대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대장 임기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에 수임군부대가 정한 임기는 보장한다.

부칙 〈제2402호, 2020. 2.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6호, 2020.12.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0호, 2022.02.09.〉

이 훈령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5호, 2023.03.0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	제14조	704
2	정기감사 등급별 점수	제14조	705
3	상훈점수 평가 기준	제14조	705
4	교육성적 평가 기준	제14조	705
5	체력검정 평가 기준	제14조	705
6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	제16조의2	706
7	삭제		706
8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제28조	707
9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전보 신청시 구비서류	제28조	707
10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 기준	제42조	707
11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 기준	제42조	707
12	삭제		707
13	예비군지휘관 복무 선서문	제52조	708

❑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쪽
1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	제44조	709
2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	제52조	711
3	인사기록 카드	제26조	713
4	삭제		716
5	경력증명서	제52조	717
6	기록변경보고서	제54조	718

【별표 1】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기준(제14조, 제28조 관련)<개정 2015.6.29., 2020.12.30.2022.02.09.>

(단위:점수)

구 분			계	근무성적 평정	정기감사 (등급별 점수)	부대관리 (상근예비역 관리, 장비·물자 관리, 예산사용, 지휘관의 역할 확대 등)	업무성과 (직책별 업무성과 평가)	훈련성적 (훈련민원처리, 교관 연구강의, 교관임무수행 능력)	상훈	교육성적 (합·불제)	체력검정 (합·불제)	자기계발 [자격증(어학포함), 미담 사례로 받은 표창(상장), 모범예비군 선발 등]	기 타 (징계·형사처벌, 보안 상·벌점, 보안일일결산 등)
예비군부대	지휘관		100	40	20	10	-	-	5	5	5	5	10
	지역대 참모		100	60	-	-	10	-	5	5	5	5	10
혁역부대	육본	담당관(5급)	100	60	-	-	10	-	5	5	5	5	10
		감사관, 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수임군부대	조직편성관, 감사관	100	60	-	-	10	-	5	5	5	5	10
	지작사 조직편성관		100	60	-	-	10	-	5	5	5	5	10
	2작사 정보화·예산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예비군훈련대	통제/지원과장		100	60	-	-	10	-	5	5	5	5	10
	훈련과장		100	60	-	-	10	-	5	5	5	5	10
	시설장비·탄약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훈련교관		100	60	-	-	-	10	5	5	5	5	10
동원전력사령부	본부	감찰, 참모부 담당관(5급)	100	60	-	-	10	-	5	5	5	5	10
		참모부 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동원지원단	훈련/지원과장	100	60	-	-	10	-	5	5	5	5	10
		계획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창설과장	100	60	-	-	-	10	5	5	5	5	10
		교육훈련, 정보작전, 장비물자 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예비전력교육단	교관	100	60	-	-	10	-	5	5	5	5	10
	동원사단	인원/물자동원 담당관	100	60	-	-	10	-	5	5	5	5	10

【별표 2】

정기감사 등급별 점수(제14조 관련)<개정 2014.9.26., 2015.6.29.>

(단위:점수)

구 분	상 (20%)	중상 (60%)	중 (20%)	불합격
정기 감사	20	17	14	11

【별표 3】

상훈점수 평가 기준(제14조 관련)

<개정 2012.12.3., 2016.4.11., 2019.1.25., 2020.2.19.>

(단위:점수)

구 분	무공훈장	보국훈장	포장	표창·상장
가 점	태극 : 5.0 을지 : 4.8 충무 : 4.6 화랑 : 4.4 인헌 : 4.2	통일장 : 4.9 국선장 : 4.7 천수장 : 4.5 삼일장 : 4.3 광복장 : 4.1	무공 : 3.6 보국 : 3.5 예비군 : 3.2	대통령: 3.0, 국무총리 : 2.5, 부총리급 : 2.0, 장관급(대장) : 1.5, 차관급(중장) : 1.2, 사단장·여단장급 : 1.0, 연대장급 : 0.5, 대대장급 : 0.3

【별표 4】

교육성적 평가 기준(제14조 관련)

<개정 2015.6.29., 2016.12.30., 2018.3.20., 2019.1.25., 2020.12.30.>

(단위:점수)

구 분	합격	불합격
예비군지휘관 동원지원단·훈련대·행정담당군무원 등	5점	3점

1. 합격기준 : 전체 평균 80% 이상 및 과목별 70% 이상 점수 획득
2. 불합격자는 다음 해 재교육 가능

【별표 5】

체력검정 평가 기준(제14조 관련)<개정 2015.6.29., 2020.12.30.>

(단위:점수)

구 분	합 격	불합격
예비군지휘관 동원지원단·훈련대·행정담당군무원 등	5점	3점

【별표 6】

신분별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제16조의2, 제47조 관련)

<개정 2011.12.7., 2012.12.3., 2015.6.29., 2019.1.25., 2020.2.19..>

기 준	근 거	적 용	
		군무원	직장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 •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라 판정한 결과 1년을 초과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제1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	○	○
○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경우 -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 - 지능정도가 낮은 경우 • 2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 직무를 매우 게을리 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무성적 평정점이 가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경우	•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제2호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35조	○	○
○ 직제가 개정 또는 폐지되어 정원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제3호	○	×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제4호	○	○
○ 직위해제 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제5호	○	×
○ 근무성적 종합평가결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	○	○

【별표 7】〈삭제〉

【별표 8】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제28조 관련)<신설 2019.1.25., 2020.12.30. 2022.02.09.>

○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직계존비속(소득이 없는 직계존속 또는 만 8세 미만의 자녀양육 등)을 부양하기 곤란한 사람
○ 배우자, 직계자녀 또는 본인·배우자 직계존속이 중증질환이나 장애로 인하여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전보희망자가 동거하며 보호를 해야 하는 사람
  • 배우자가 중증질환인 경우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서 장기간 보호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질환 또는 장애의 경우
    - 중증질환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중증환자로서 월 1회 이상 통원치료 등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어 전보희망자와 동거하며 보호가 필요한 질환(일반적인 고혈압, 신경통, 편두통, 골다공증 등의 노인성 질환은 제외한다)
    - 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명시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본인에게 인적·물적 고충사유가 발생한 사람
  • 암수술 후 회복치료 기간, 장기이식 수술 후 치료 등과 같이 입원치료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요구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월 1회 이상 통원치료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배우자 또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 정신적 외상의 심리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별표 9】

고충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전보 신청시 구비서류(제28조 관련)

<신설 2019.1.25., 2020.12.30. 2022.02.09.>

○ 사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본인이유서(희망지역 명시), 심의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종합병원급 이상) 및 병원 진료기록서 각 1부
○ 지휘관 확인서 1부
○ 그 밖에 고충관계 증빙서류(필요시) 1부

【별표 10】

일반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 기준(제42조 관련)

구분 \ 직위	여 단 장	연 대 장	대 대 장	중 대 장	독립소대장
국가기관	국장급이상	국장급	과장급이상	계장급이상	계장급
일반직장	이사급이상	부장급이상	차장급이상	과장급이상	계장급이상

【별표 11】

대학직장 예비군지휘관 직급 기준(제42조 관련)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원사	상사/중사	하사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표 12】〈삭제〉

【별표 13】 <신설 2023.03.03.>

예비군지휘관 복무 선서문(제52조 관련)

본인은 ○ ○ ○ ○(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로서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엄수할 것을 선서한다.

1. 본인은 지역(직장)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
2. 본인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부대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여 ○ ○ ○ ○(지역 및 직장예비군지휘관)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3.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확고한 신념과 공정한 자세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9조, 제20조, 제30조의2, 제44조 관련)<개정 2015.6.29., 2018.3.20., 2019.1.25. 2022.02.09.>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근무성적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 기간:**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기록확인관 : 계급	직책	성명	서명		

제2부. 근무실적 평가

※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근무실적 (본인이 기록)	
작성 내용의 사실 정도	사실 □ 일부과장 □ 일부허위 □ ※ 평정자가 해당란에 √표시

평가요소	업무 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급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평정자															
확인자															

※ A: 매우 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 미흡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절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평가요소	정 의	등 급	A	B	C	D	E
기획력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만든다.	평정자					
		확인자					
전문지식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다.	평정자					
		확인자					
추진력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평정자					
		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 g/㎡(재활용품))

직급		순 번		성명		

평가요소	정 의	등 급	A	B	C	D	E
책임감	• 담당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 • 업무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평정자					
		확인자					
성실성	•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조직 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평정자					
		확인자					

※ A: 항상 그렇다, B: 자주 그렇다, C: 가끔 그렇다, D: 거의 그렇지 않다, E: 전혀 그렇지 않다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 상대평가: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점수 및 서열 부여

분 포 율	수(2할) (37.5~40점)	우(2할) (33.5~37.5점 미만)	미(3할) (28~33.5점 미만)	양(2할) (21~28점 미만)	가(1할) (21점 미만)
① 평정자점수					
② 확인자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 점수/등급	/	서열	/	조정점		최종 점수	

※ 종합평가점수는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절대평가를 참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분포비율 범위에서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서열은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급의 분포비율은 양등급의 분포비율에 가산한다.

제5부. 종합평가

종합평가 의견	
평정자	
확인자	

구 분	소속/직책	계급	성명	보직일	서명
평정자					
확인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제25조 관련) <개정 2014.9.26.>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자력표

소속(연필)	직책(연필)		계 급	군 번	성 명

등록기준지	병과	직능	출신	임관구분	
				기 수	

주소	생년월일	직책	전담반		임명연월일
			겸직명		

사 진 3㎝×4㎝ (반명함판)	병역 관계	군별	역종	입대업자	전역	일자		전역사무대명	전역시 직책	동원보직	비취인가
						구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 액 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 기
		cm	kg	좌( ) 우( )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토 지	가 옥	부 업 명	부업월수입	재산총액

가족사항

관 계	성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위

학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군사경력

부터	까지	소 속	직 책

군사보수교육

부터	까지	보 수 과 정	기 수	성 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근무경력				
부터	까지	월수	직책	근거

근무 평정 결과			
연도	등급	점수	기록자 성명(인)

정기 감사 성적		
연월일	등 급	기록자 성명(인)

보수교육				
부터	까지	보수과정	기수	성적

상훈	연 월 일	종 류	근 거

징계형별	연 월 일	종 류	근 거

주의사항	1. 본표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쓰고 그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기록확인		
본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
부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명 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제26조 관련) <개정 2014.9.26.>

(1쪽)

소 속 (연필)	직 급 (연필)	순 번	인 사 기 록 카 드					생년월일		임용구분 공채,특채
성명: (한자:)	등록기준지	성 별 남, 여	주 소					생활 근거지		
사 진 3cm×4cm (반명함판)	병역관계	해당 없음	미필 사유	역 종	군 번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 연월일	제대 연월일	복무기간
	신체사항	신장	체중	시 력 좌( ), 우( )		색 맹	혈액형	건강 상태	종 교	취미	특 기
	재산사항	동 산 원	부 동 산 원	토 지 평	가 옥 자가, 차가	부 업 명		부업 월수입 원		재산총액 원	

가족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위

징계 형벌	연 월 일	종 류	근 거

자격면허	취득 연월일	종 류	발급기관

훈련	기 간		종 류	성적·점수	근 거
	부터	까 지			

외국 시찰 수학	기 간		국명(지명) 및 목 적	근 거

374㎜×254㎜보존용지(1종) 120g/㎡

(2쪽)

포상서훈	연월일	종류	근거	외국어 해독 능력	외국어 명	회화			번역			작문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전력	기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경력							
구분 / 순위	기간		내용	근거번호		직급	기록자 [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1							
2							
3							
·							
:							
43							
비고							

374㎜×254㎜보존용지(1종) 120g/㎡

(3쪽)

승 진 · 승 급			근 무 성 적 평 정			비 밀 취 급			휴 가		
연월일	급·호봉	근 거	연월일	평정점	기록자[인]	취급구분	연월일	근 거	연월일	구 분	근 거
						전 직					
						직 렬	연월일	근 거			
						수 당 · 지 급					
						구 분	연월일	근 거			

주의사항	기록사항확인		
1. 이 표의 기록은 확실·정확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된다. 2. 본인의 성명란만 한글과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적는다. 3. "29. 근무성적평정"란은 인사명령으로 발령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사관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적는다..	본인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대장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 성명 (서명 또는 인)	

374㎜×25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 서식】 〈삭제〉〈개정 2014.9.26., 2018.3.20., 2022.02.09., 2022.03.02〉

【별지 제5호 서식】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별지 제5호 서식]

경력증명서

<table>
<tr><td rowspan="2">인적사항</td><td colspan="4">성명
(한글) (한자)</td><td>생년월일</td></tr>
<tr><td colspan="5">주소</td></tr>
<tr><td rowspan="4">경력사항</td><td colspan="2">근무기간</td><td rowspan="2">직급</td><td rowspan="2">직위</td><td rowspan="2">근무부서</td></tr>
<tr><td>부 터</td><td>까 지</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근무연한</td><td colspan="2">년 월</td><td colspan="2">최종직위 또는 직급</td><td></td></tr>
<tr><td>퇴직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5">상벌사항</td><td colspan="3">포 상</td><td colspan="3">징 계</td></tr>
<tr><td>년월일</td><td>종류</td><td>시행청</td><td>년월일</td><td>종류</td><td>처분청</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직위해제</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3">사유</td><td>처분청</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td><td></td></tr>
<tr><td>용도</td><td colspan="5"></td></tr>
</table>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 . .

(수 임 군 부 대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제54조 관련)

기록변경보고서

기록변경 보고서	수신		발신		보고일자		접수일자	
수임군부대명			예비군부대명					
계 급		군 번			성 명			
변경 내용								
보고부대	인사장교	인	접수부대	기록장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제 3 장

전시법령 등

01.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02.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03. 전시 행정조직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04. 전시 예산·회계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05. 전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규정
06. 문서고 관리·운영 훈령

▌전시법령 / 비문(목록만 기재)

1. (전시법령)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2. (전시법령)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 (전시법령)전시 행정조직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4. (전시법령)전시 예산·회계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5. (전시법령)전시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규정

6. (비문)문서고 관리·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2206호, 2018.10.18.)
   - 담당부서 : 국방부 동원기획과(02-748-5208)

2023년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발 행 일 2023년 5월 17일

편 집 처 동원기획과

발 행 처 국방부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 M23040360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2023

동원예비군
관계법령집

